연구보고서

산재발생보고통계 중 요양 미신청 산재사고 실태 현황 분석 연구

오 상 호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요 약 문

연구기간 2019년 03월 ~ 2019년 10월

핵심단어 산재발생보고제도, 보고통계, 보상통계, 요양 미신청

연구과제명 산재발생보고통계 중 요양 미신청 산재사고 실태 현황 분석 연구

1. 연구배경

- 산업재해와 관련한 통계 중 산재보상통계와 산재보고통계를 비교하는 가운데 산재발생에 대한 보고는 하고 산재요양은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파악됨
- 이러한 산재보고통계와 산재보상통계의 불일치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 두 자료의 불일치 원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어 산재보고통계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재해자가 요양을 미신청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요양신청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산재보상통계가 효율적인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산재통계 현황 및 비교 분석

-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과 그 밖의 OECD 국가별 산재통계 현황을 ILO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하였음
- 국내 산재통계와 관련하여 기본 현황과 함께 산재보상통계와 산재보고통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실태조사의 당위성을 제안
- 해외사례 및 국내의 현재 통계산출 방식을 검토한 결과, 업종분류체계, 요양과 휴업의 산정기준, 통계 산출 기준일 및 적용목적과 작성자 그리고 적용범률 등의 다양한 불일치 요인이 발생하여 통계 일원화시 문제점 발생

- 독립적 통계로서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현재보다 강화할 수 있는 산재통계 방안을 모색하려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안

○ 요양 미신청 사례 원인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 설문조사는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기타산업으로 구분하고, 규모는 50인 미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그리고 300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근로자 대상으로 107개와 사업주 대상으로 190개를 수집
- 면접조사는 설문조사 참여 및 비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과 규모에 따라 8명의 재해근로자와 17명의 재해사업장 사업주 등과 면담을 진행

○ 실태조사 결과 요양 미신청 이유

- 설문조사의 결과 근로자의 경우 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산재인정이 안될 것 같아서, 경미한 상해라서, 인사상 불이익 등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
- 사업주의 경우 요양신청을 하는 이유는 법령 준수를 위해서라고 응답했으며, 요양 미신청 이유로는 회사 불이익과 정부규제 그리고 경미한 재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
- 면접조사에서도 근로자의 요양 미신청 이유로는 회사의 불이익, 회사로부터의 인사상 불이익 그리고 경미한 재해 등이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사업주도 경미한 재해라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가 요양 미신청의 주요한 이유로 확인됨

○ 요양 신청 유도 방안

- 경미한 재해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신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나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한 비권력적 감독 실시할 것을 제안
- 산안법상 교육내용에 산재발생시 조치사항을 포함하는 방안
-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로 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
- 재해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시 4일 이상의 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수급요건 명확화하는 방안으로 요양신청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함.

- 그 외,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보호의 측면에서 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으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이 요구됨을 명문으로 정하는 방안
- 산재발생사실 통합신고제도 또는 병원신고제도 마련하는 방안
- 요양 신청시 재해자 친화형 상담창구 마련 등 편안한 분위기 조성
-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후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시 보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도입으로 귀책없는 지연보고에 따른 책임을 완화한다면 요양신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산재통계 개선방안

- 산재통계 생산과 관련한 개선방안으로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전 의무적으로 교육을 제공받는 방안 또는 작성 후 제출 전 산재예방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확인 받는 방안 혹은 고용노동부 내 교육받은 전문 상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보고통계자료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 마련과
- 통계전담 조직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을 통한 산재통계 생산의 전문성과 신뢰성 보장 방안을 제시함

3. 연구 활용방안

- 산재발생통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요양 미신청 원인 파악과 요양신청 유도 방안 모색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오상호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연구위원 박선영
  - ■ ☎ 052) 7030-824
  - ■ E-mail : psy0906@kosha.or.kr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산재발생보고통계 중 요양 미신청 산재사고 실태 현황 분석 연구”의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연구기관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019.03.08. ~ 2019.10.31

연구책임자 : 오상호(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신영규(경남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공동연구원 : 김윤찬(경남사회조사연구원 원장)

공동연구원 : 박용수(박용수사무소 대표노무사)

공동연구원 : 강문성(하나노동법률 대표노무사)

본 문 차 례

제 1 장 서론 ····· 1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3
1. 연구의 내용 ····· 3
2. 연구의 방법 ····· 4

제 2 장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통계제도 ····· 5

Ⅰ. 산재발생보고제도 ····· 5
1. 산재발생보고제도의 개념 ····· 5
2. 산재은폐와 산재미보고 그리고 단순미보고 개념 ····· 6
3.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의 관계 ····· 11
Ⅱ. 외국의 산재통계 현황 ····· 13
1. 독일 ····· 13
2. 일본 ····· 19
3. 영국 ····· 25
4. 미국 ····· 29
5. 기타 OECD 국가별 산재통계 현황 ····· 35
6. OECD 국가별 산재통계 현황 요약 ····· 69

Ⅲ. 국내 산재통계 현황 및 분석 ····· 76
1. 산재통계 현황 ····· 76
2. 보상통계와 보고통계 연관성 분석 ····· 83
3. 보상통계와 보고통계의 통합통계 산출 ····· 84
4. 보고통계의 공식통계 ····· 91
5. 보상통계의 공식통계 유지 ····· 91

제 3 장 산재통계 실태조사 ····· 94

Ⅰ. 조사설계 ····· 94
1. 조사개요 ····· 94
2. 조사 문항 ····· 95
3. 표집 대상 수 ····· 95
4. 자료처리 및 분석 ····· 96
Ⅱ. 설문조사 ····· 96
1. 설문조사결과 분석(근로자) ····· 96
1) 표본 ····· 96
2) 요약 ····· 97
3) 설문지 분석 ····· 101
2. 설문조사결과 분석(사업주) ····· 127
1) 표본 ····· 127
2) 요약 ····· 127
3) 설문지 분석 ····· 131
Ⅲ. 면접조사 ····· 180
1. 배경 및 목적 ····· 180
2. 조사방법 ····· 180
3. 면접조사 결과 분석 ····· 182

1) 면접조사 업종별 특성 ····· 182
2) 사업주 면접조사 결과 종합 ····· 182
3) 재해근로자 면접조사 결과 ····· 215
4) 면접조사 결과 ····· 226

제 4 장 개선방안 ····· 232

Ⅰ. 산재보험 신청 유도 방안 ····· 232
1. 실태조사(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 개요 ····· 232
2. 산재미신청 원인으로서 경미한 재해와 관련 ····· 233
3. 산재발생조치사항 교육내용 포함 ····· 237
4.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로 산재신청 ····· 237
5.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수급요건 명확화 ····· 239
6.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보호 ····· 241
7. 통합신고제도 또는 병원신고제도 마련 ····· 242
8. 산재처리 과정의 실무 개선 ····· 243
9. 지연보고의 예외적 인정 ····· 243
Ⅱ. 산재발생 감소 방안 ····· 245
1. 업종별 특화된 매뉴얼 제작과 안전포스터 확대 배포 ····· 245
2. 맞춤형 안전보건 어플 개발 ····· 245
Ⅲ. 산재통계 개선 방안 ····· 246
1. 의의 ····· 246
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관련 ····· 247
3.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적 촉진조치 ····· 248
4. 통계전문 인력 확충 ····· 249

제 5 장 결론 ····· 250

참고문헌 ····· 252

ABSTRACT ····· 253

부록 1 업종별, 규모별 교차분석 ····· 255

표 차 례

<표 II-1> 2015년도 안전보건 보고서 …… 17
<표 II-2> 일본의 노동재해 통계: 제출, 보고, 보상 건수 추이 …… 21
<표 II-3> 노동재해와 관련된 통계 종류 …… 23

그 림 차 례

<그림 II-1> 독일의 이원적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 15

제 1 장 서론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이 승인된 자료를 토대로 업종·규모·재해형태별로 분석하여 집계한 것으로서 이것이 현행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즉,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재통계가 공식 산재통계자료로서 1964년부터 적용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요양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관리차원에서 취급되는 요양 승인자료라는 특성 때문에 산업재해 원인분석을 위한 기초정보가 부족하여 고용노동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1983년~1992년)와 재해현장 조사자료(1993년~현재)를 분석하여 산업재해 원인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1997년부터 연간 산업재해 요양승인자의 약 10%를 표본으로 추출해 산업재해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원인조사를 생산하여 왔으나,[1] 2014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조사표에 의한 산업재해현황통계와 중복되어 산업재해원인조사 통계는 취소되었다.

문제는 현재 요양승인 기초 산재통계가 국가 전체의 정확한 산재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하 '전자'라 함)과 동종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방지 등 국가 전체의 산재예방정책 수립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이하 '후자'라 함).

산재통계의 산출 의미를 전자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산재발생 전체 건수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통계 산출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고 후자의 측면에서 산재통계의 의미를 강조하려면, 보고통계를 국가 공식 산재통계를 공표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1) 이경용 외 5인, 산업재해 예방제도 구축 및 운영,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13.

먼저 전자의 경우 산재발생보고는 하였으나 요양신청이 되지 않는 재해자 규모를 확인하거나 또는 요양신청은 하였으나 산재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양 통계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적어도 통계조사에 따른 산재통계 범위가 합산되어 산출되므로 산재발생 규모는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합산통계를 공식통계로 활용하게 될 경우 자료 병합을 위한 다양한 산출기준 재검토가 요청된다. 보상통계와 보고통계의 규모 파악에 있어 불일치 원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상통계의 요양건수 산정기준이 4일 요양인데 반하여 보고통계의 보고건수 산정기준이 3일 휴업이라는 측면이 대표적인 불일치 원인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 후자의 경우 산재통계의 공식 통계로서 보고통계를 사용할 경우 산재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통계 활용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다만, 통계 산출 기준이나 방법에 따르면 보상통계의 규모가 보고통계보다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고통계의 불신 및 산재은폐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는 전자의 내용 중 보고통계 재해자 중 요양신청 되지 않은 재해자 규모가 양 통계의 현황 연관 분석을 통해 파악되므로 요양 미신청 재해사례의 원인 파악을 통해 요양 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검토이다.

둘째는 전자의 내용 중 이원화되어 있는 산재통계의 일원화를 위해 양 통계간 집계 규모 불일치 원인을 파악하여 통합 산출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통계 분석이다.

셋째는 국가 산재예방대책 수립의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고통계의 공식통계화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것이며, 결국 이 단계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율 증가 및 제출된 조사표 내용의 신뢰성 확보 등의 문제와 연관되는 사항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재통계 자료의 활용을 현행과 같이 유지(보상통계의 공식통계와 보고통계의 보조지표)하기 위한 고려 대책도 검토해볼 수 있다. 산재통계 자료는 산재발생 규모의 전체적인 파악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산재예방대책 수립에 따른

산재발생 원인 분석 또한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산재통계 자료에 대한 효율적 연계성 확보를 통해 이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산업재해조사표나 요양신청서를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요양신청서식에 사고발생경위 등을 보다 자세히 기재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그리고 향후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접수하든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든지 간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산재통계 수치를 파악하고, 부족한 경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담당자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사실 확인을 하는 등의 운영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 제1단계(요양미신청 원인파악 및 요양신청 유도방안)

- 산재발생보고 통계자료 중 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3일 이상 산재사고에 대한 실태 파악.
- 산재발생보고 통계 중 요양 미신청 산재사례의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요양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제2단계(산재통계 불일치 문제와 신뢰도 제고 방안)

- 요양통계와 보고통계간의 통계자료 불일치에 대한 원인 파악
- 산재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산재발생 요양통계의 문제점과 산재발생 보고통계와 분리 또는 일원화 할 경우 장단점 및 정확한 통계생산을 위한 운영방안 모색

- 외국의 산재 통계 산출기준 및 생산방식과 우리와의 비교기준 검토 및 국제통계의 장점과 일치화를 위한 검토 사항 제안

2. 연구의 방법

○ 문헌 및 자료조사
- 국내외 문헌조사 및 행정기관 내부자료 검토

○ 조사연구(설문조사+면접조사)
- 설문조사
- 면접조사

○ 정책적 연구
- 문헌 및 자료조사,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의 내용을 토대로 산재발생 보고는 하였으나 산재요양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를 파악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요양신청 유도를 위한 대책방안 제안
- 산재발생 요양통계와 산재발생 보고통계의 이원화 및 일원화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신뢰도 높은 산재통계 산출 방안 모색

제 2 장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통계제도

Ⅰ. 산재발생보고제도

1. 산재발생보고제도의 개념

산재발생보고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요양급여 · 유족급여 신청) 신청하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산업재해(이하 '산재'라고 함)가 발생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재해가 발생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발생원인을 면밀하게 조사 · 분석하여 그 결과를 유사재해의 방지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고,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는 발생한 재해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재해발생 현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유사재해의 방지를 위한 재해예방대책 수립이나 감독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경우에 특정 산재발생 사실의 보고규정을 둔 것은 보고제도를 통하여 산재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정 산재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사업주가 차후에 동종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제출의무는 단순한 보고의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산재에 대한 인식과 산재 예방활동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부기관의 산재 방지대책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2)]

사업장에서 산재가 은폐되는 순간 그 사고는 똑같이 재현되거나 유사한 형태로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산재발생 원인개선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 대책마련을 위한

2) 오상호 외 3인, 산재발생 보고실태 및 활용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공단, 2017, 8면.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산재를 계기로 안전보건조치 및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해 활용되는 제도가 산재발생보고제도이며 산재의 발생 사실과 발생원인 분석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이 기록되고 보고되는 것이 기본 전제조건이다.[3)]

2. 산재은폐와 산재미보고 그리고 단순미보고 개념

1) 의의

2017년 10월 19일 개정 산안법은 산재발생보고제도의 특징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산재미보고와 산재은폐 개념을 구분하고, 산재미보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여 제재 수준을 강화하였으나 단순미보고와 거짓보고로 구분하여 제재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형벌제도를 신설하여 산재은폐를 조장 또는 유발하는 기제를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산재발생보고제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면서 최초 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한해 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게 되었으나, 이 경우 단순미보고만을 대상으로 한다.[4)]

따라서 산재발생보고제도는 제재조치의 경중에 따라, 형벌이 적용되는 산재은폐와 과태료가 부과되는 산재미보고(단순미보고+거짓보고)로 구분되며, 산재미보고 중 단순미보고에 한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결국, 산재은폐, 산재미보고, 단순미보고, 거짓보고 등의 개념은 산안법 개정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법개념으로 설정되어 문언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용이성을 띄게 되었다.

---

3) 오상호, 산재은폐의 법적 쟁점과 과제, 노동법연구 제44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8, 84면.
4) 오상호 외 3인, 산재발생 보고실태 및 활용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공단, 2017, 203-208면 참조.

2) 산재은폐

현행법 제10조 제1항으로 산재은폐의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게 되었다. 산안법 제68조 제1호에 따르면, 산재은폐의 유형은 산재발생 사실을 직접 은폐한 경우와 은폐하도록 교사 및 공모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의 직접 은폐한 자는 현행법상 산재발생보고가 사업주의 고유의무이므로 사업주를 의미한다. 반면 후자의 공모나 교사 형태의 은폐한 자는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이나 이해관계자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4. 18.>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2017. 4. 18., 2018. 4. 17.>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개정안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3) 산재미보고와 거짓보고

현행 산안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의 산재발생보고대상 재해에 관한 기준과 보고기한 등을 정하고 있다. 사망자와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

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된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산재발생보고제도에서 휴업재해의 개념은 산재발생일 기준 1개월이내 요양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산안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중대재해의 경우 보고기한이 1개월이 아니라 '즉시'보고해야 한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③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2조(정의)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안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중대재해발생을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한 경우 차수구분 없이 3,000만원인 반면에, 일반재해발생을 미보고한 경우는 1차(700만원), 2차(1,000만원), 3차(1,500만원)로 구분 부과하며 거짓보고한 경우는 차수구분 없이 1,50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0	3,000	3,000
다.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700	1,000	1,500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따라서 산재미보고의 경우 단순미보고와 허위(거짓)보고로 구분되며, 후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전자보다 가중되어 있다. 특히, 단순미보고의 경우만 산업재해조사표 시정기회가 부여되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한다.

4) 단순미보고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보고기한 1개월(중대재해는 즉시)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대상이 되었다. 다만, 단순미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보고하더라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신설하였다(산안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산안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0. 28., 2017. 10. 17.>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

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위 규정에 따르면,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재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 자진 보고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을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와 관련해 특정 업종 기준이 최소 5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후 보고가 가능한 사업장은 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된다.

3.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의 관계

1) 의의

기존에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재발생보고제도를 갈음함으로써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처리가 주된 관심대상이 되며,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수 가 없어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건강장해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정확한 산재예방대책 수립이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산재에 대한 심각성과 사업주의 산재예방 관심 제고를 위해 산재처리제도와 산재발생보고제도를 구분하여 운영할 당위성이 나타나게 된다.

현행 산안법상 산재보고대상 기준은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발생보고기준을 기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에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로 변경한 취지는 약물처치로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재해 등은 국가의 산재예방대책 수립에 있어 행정상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재보고제도는 산재요양신청 갈음제도에서 탈피하고 보고기준을 요양에

서 휴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입법적 개선을 통해 산재처리기준과 산재보고제도는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2) 산재미처리+산재보고 사례 검토의 시사점

위와 같은 이원화를 통한 운영체계가 실시된 이후 ⅰ) 산재처리+산재보고, ⅱ) 산재미처리+산재미보고, ⅲ) 산재미처리+산재보고와 ⅳ) 산재처리+산재미보고라는 4가지 상이한 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이번 연구는 산재발생 보고는 하고 산재보험처리는 하지 않아 보상통계에 누락된 사례의 일부가 보고통계 자료와 비교를 통해 파악되고 있어 ⅲ) 산재미처리+산재보고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산재보고+산재미처리의 경우 산재보고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산재미처리+산재미보고로 변형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산재미처리를 단절 또는 산재처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즉, 재해자가 요양을 미신청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요양신청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현행법상 산재미처리가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산안법상 산재보고제도 제재수준 강화로 인해 사업주의 산재보고율이 높아지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자의적으로 축소 기록되거나 또는 미흡한 수준으로 작성되어 궁극적으로 산재예방대책 수립과 활동에 일정한 한계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산재미처리를 선택하는 전략적 기제가 예컨대, 경미한 재해이거나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특성별 맞춤형 또는 중점적 산재예방대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데 불충분할 수도 있다.

결국 산재보험 신청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산재미처리+산재보고가 산재미처리+산재미보고로 변형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와 다른 한편으로는 산재보고통계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산재통계의 정상화와 효율적인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인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Ⅱ. 외국의 산재통계 현황

1. 독일

1) 산재통계 기본자료

1884년 세계 최초로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10년 정도의 제도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1900년부터 산재보험의 제 1 목표를 재해의 보상에서 재해의 예방으로 변경한다. 이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산업재해에 대한 독일 정책의 우선순위는 예방 > 요양과 재활 > 보상의 순이다. 예방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빠르고 적확한 방법으로 치료하고 사회재활을 포함한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피재자의 노동력 회복과 일자리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물론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필요한 금전적 보상도 보장되어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정책의 1순위인 예방을 위해서는 산재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및 보건의 현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독일 산재통계의 기본 자료는 주로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관장하는 공적 기관인 DGUV의 통계이며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적인 통계는 BAuA의 보고서이다.

(1) BAuA의 보고서

독일 산재보험법(사회법전 제7권) 제 25 조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매년 발생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현황을 그 다음해의 연말까지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상원(Bundesrat)에 보고해야 하며, 이 임무는 「연방노동보호및노동의학청(Bundesanstalt fü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 BAuA)」이 수행하고 있다. BAuA는 산재보험관장기관(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DGUV)의 보고서와 각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연례 보고서를 토대로 「노동에서의 안전과 건강 - 사고예방보고서: 노동」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의회에 제출한다.

(2) DGUV의 보고서

사업주의 제1차 산재신고처인 산재보험관장기관도 산재통계를 생산한다. 대표적인 통계보고서는 “산업재해현황(Statistik, Arbeitsunfall- geschehen 0000년)”과 “실무를 위한 DGUV-통계 0000년(DGUV- Statstiken für Praxis 0000년)”이다. “산업재해현황 0000년” 보고서는 산재, 재활 그리고 직업병의 발생과 관련한 중요한 현황을 수집한 자료이며, “실무를 위한 DGUV-통계 0000년” 보고서는 보고의무가 있는 산재와 직업병의 모든 현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69[5]년부터 발간되었으며, 민간부문 산재보험조합과 공공부문 산재보험조합이 통합한 2007년부터는 상기의 이름으로 발간되고 있다.

“실무를 위한 DGUV-통계”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보고서와는 달리 직업병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업병 신청 건수와 인정 건수, 질병 종류별 직업병 현황,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 등의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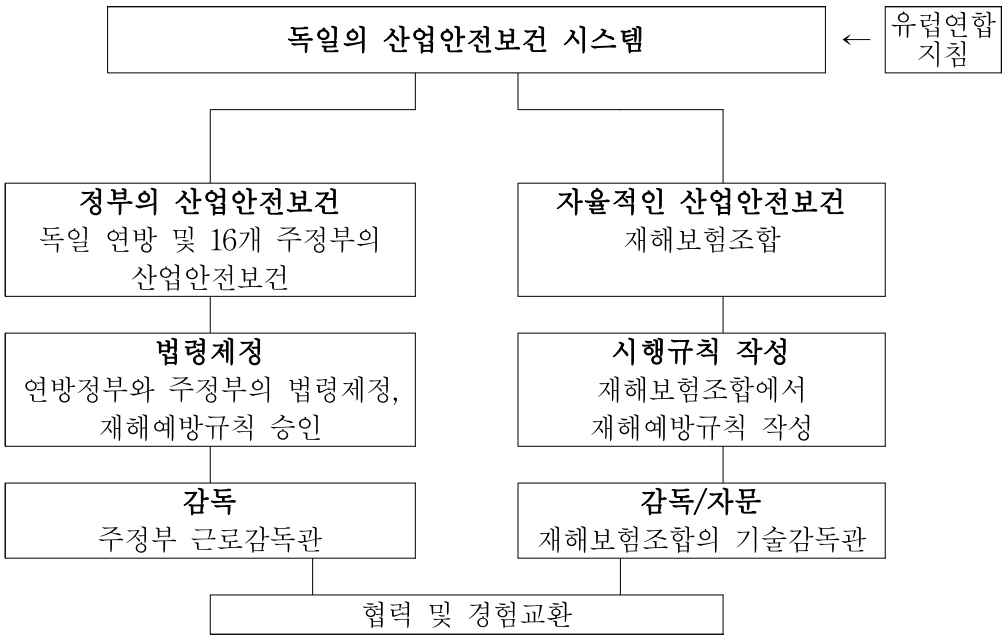
2) 산재통계 생산방식

독일의 산재통계는 산재보험관장기관에 보고된 의사 및 산재의사의 보고서, 사업주가 제출한 산재신고서를 토대로 생산되며, 이는 독일의 독특한 이원적 산업안전보건 시스템(Dualsystem)에서 비롯된다.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산업안

5) 1969년 발간된 보고서의 이름은 “실무를 위한 산업재해 통계”이며, 1991년부터 2006년까지는 “실무를 위한 BG-통계”였다.

전과 관련한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동관서와 산재보험관장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1> 독일의 이원적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대체적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보건의 등에 관한 법규의 제정은 연방정부, 이 법규의 집행, 즉 법규를 준수하는지, 특히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하여 정하는 일은 주정부의 임무이고, 산재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회복하는 일은 산재보험법이 관장기관으로 정한 산재보험관장기관이 맡는다.

즉, 법률 및 행정체계 상,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산업안전에 대한 법의 제정과 정책의 수립 그리고 감독과 조언, 법률의 집행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련한 산재예방, 근로자의 보건 증진, 피산재자의 요양 등과 관련한 산재의 처리 등의 활동에는 동업조합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산업안

전보건 분야의 노동행정은 근로감독관이 있는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실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술적인 지원은 BG에서 수행한다. BG의 기술감독관은 BG에서 제정하여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재해예방규정과 규칙들이 단위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사할 의무와 권리도 가진다.

신고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는 3일을 초과하여 '노동불능상태'가 지속되는 재해와 사망사고이다. 사업주는 사고를 인지한 후 공휴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사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독일의 이원적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에 따라 사고신고서는 산재보험관장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제출한다. 즉, 사업주는 산재보험관장기관에는 사고신고서의 원본을, 관할 산업안전 담당 관서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여부는 산재의사보고서를 토대로 산재보험관장기관에서 '직권'으로 결정하는데, 이에 따라 피재자는 아주 빨리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고를 당한 재해자를 가장 빠르고 적확한 방법으로 치료하기 위해서이다.

산재의사의 보고서는 재해가 발생한 상황(장소, 시간, 과정,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환자를 치료하여야 할 의사의 보고서인 만큼 산재보험 적용여부와 요양 및 필요한 치료 그리고 진료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산재사고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의 신고서에는 피재자의 인적사항, 업무 등을 포함하여, 사고발생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와 달리 재해의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진술은 없다.

산재보험관장기관과 각급 노동관서에서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발간하는 연례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발생현황 뿐 아니라 산재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의 활동도 정리되어 있다. 또한 매년 산재와 관련하여 중요한 영역을 선별하여 그 활동 현황과 결과를 별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정리, 보고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근로시간'을 중점 영역으로 택하여 설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5년도 보고서[6]의 내용을 목차를

6) 출처: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15. Unfallverhütungsbericht Arbekt,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BMAS) & BAuA, 2016. 12. *www.baua.de/suga*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I-1> 2015년도 안전·보건 보고서

목차

1. 요약 8
2. 용어설명 10
2.1 개념 10
2.2 축약어 14
2.3 심볼 15
3. 산업안전 및 보건의 현 상태에 대한 개관 16
3.1 산업안전 및 보건의 현황에 대한 기본자료 16
3.2 법적인 토대 19
3.3 산업안전 활동가의 활동 20
3.3.1 산업(노동)안전을 위한 독일의 공동전략(GDA) 20
3.3.2 주정부 산업안전관서의 공동연례활동보고서 23
3.3.3 법적 산재보험기관의 특별 예방활동 25
3.3.4 노동의 새로운 질을 위한 시민활동(INQA)) 29
3.4 재해현황 32
3.4.1 산업재해 현황 32
3.4.2 통근재해 현황 35
3.5 직업병 현황 36
3.6 예방과 경제성 39
3.6.1 산재, 통근재해 그리고 직업병에 위한 산재보험관장기관의 비용(지출) 39
3.6.2 국민경제상의 비용 41
3.6.3 산재예방 법령 44
3.7 근로조건과 건강 48
3.7.1 반복적인 출퇴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48
3.7.2 노동불능상태 53

3.7.3 직업능력의 경감에 따른 급여 58
4. 중점분야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60
4.1 서론 60
4.2 근로시간(의 길이) 60
4.3 근로시기(주간, 야간, 주말 등) 63
4.4 근로시간의 유연성 65
4.5 총괄 요약 및 전망 69
5. 학교에서의 사고 70
T. 표 및 그림의 목차..... 73

독일의 공식적인 산재통계는 사업주가 산재보험관장기관에 제출한 산재신고서와 산재의사가 제출한 산재의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생산된다. 신고의무가 있는 재해는 3일을 초과하는 '노동불능상태'를 야기하는 사고나 사망사고이다. "연방노동안전및노동의학청(BAuA)"은 산재보험관장기관(DGUV)과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된 사고신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전년도 산재통계를 생산하여 연방정부에 제출하고 이는 연방의회 및 연방상원에 보고된다. BAuA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영역별로 구성된 6개의 부서에서 산재예방과 산업안전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3) 산재통계 변화추이 및 현행제도 고수 이유

세계최초로 산재보험제도를 실시한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은 정부와 재해보험조합의 역할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는 산재보험제도 도입 당시, 산재보험을 BG(Berufsgenossenschaft)에서 관장하도록 한 전통에서 비롯된다. 산재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일의 정책에서 차지하는 산재보험관장기관의 역할은 막중하다. 산재보험관장기관은 재해예방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감독하며,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술적인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가장 빠르고 적확한 방법으로 재활을 도운다. 특히 산재여부를 산재보험 관장기관이 산재의사의 진단을 바탕으로 직권으로 판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피재자가 치료와 재활에 집중하도록 해 준다.

이는 산재통계의 생산과 활용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우리나라의 산재조사표에 해당하는 산재신고서와 요양승인의 판단에 활용하는 산재의사 보고서의 기재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피재자의 육체적, 사회적 재활이므로 산재여부의 판단과 치료 절차를 전문가인 산재의사에게 맡김으로써 산재보험제도의 제1차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해 준다. 재해의 발생에 대한 진단과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주로 산재보험관장기관의 전문가들에게 맡김으로써 사업주가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독일 산재보험의 원칙 중 하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즉,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다. 독일의 산재통계가 실제 산재발생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이다.

2. 일본

1) 산재통계 기본자료

일본에서 노동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노동자사상병보고서를 소관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작성 제출하고 이 데이터는 후생노동성에서 집계하여 공표한다. 그러나 휴업4일 이상 사상재해통계는 공표되고 있지만 휴업4일 미만의 데이터는 공표되지 않고 있다.[7)]

2007년 총무성 행정평가국은 '노동안전위생 등에 관한 행정평가 감시결과에

7) 이 절의 내용은 일본의 전국노동안전센터 연락회의의 '노동재해 직업병의 통계데이터'『安全センター情報』(2016年9月号 通巻第441号, 全国労働安全衛生センター連絡会議)에 의존하고 있다.

기초한 권고'에서 "휴업 4일 미만의 노동재해에 관하여 노동자사상병보고에 대하여 당해 데이터의 집계 분석 공표를 행하는 등 그 이용을 촉진할 일"이라고 권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8]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이 위탁하여 실시된 2008~9년도 '행정지원연구: 휴업4일 이상과 4일미만의 사상재해 비교' 연구보고서에서 휴업4일 미만 노동재해 데이터가 금후의 노동재해방지대책의 검토에 유용하다는 결론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업 4일 미만 재해 데이터는 아직 공표되거나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노동자사상병보고의 대상에는 노재보험급부의 대상이 되는 통근재해, 급성중독 이외의 직업병, 노동자가 아닌 노재보험특별가입자의 사상병은 포함되지 않는가 하면 노재보험 비적용 사상병이 포함되기도 한다.

2) 산재통계 생산방식

위와 같이 노동자사상병보고에 기초한 노동재해 데이터의 한계를 감안하여, 일본의 전국노동안전센터 연락회의는 일본에서 노동재해의 총건수를 보다 잘 반영하는 통계로 후생노동성의 '노재보험사업연보'의 노재보험 신규수급자수를 소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노재보험사업연보』는 노재보험의 신규수급자수를 공표하고 있다[9]. 2000년도 이후에는 업무상 재해와 통근재해의 내역이 제시되고 있다. 사망재해발생상황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매년 5월경에 공표되어 『안전 지표』 등에 소개되고 있다.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는 2003년분부터 「사망재해발생상황」과 합해서 「중대재해발생상황」도 발표된다. 이들은 중

8) 총무성 행정평가국, '노동안전위생 등에 관한 행정평가 감시결과에 기초한 권고', 2007.8.7.

9) 『노재보험사업연보』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통계정보 백서>각종통계조사>후생노동통계일람>노동자재해보상보험사업연보)에 게재되어 있다. 연보의 자료출처는 '사망재해보고로부터 작성' 또는 '안전과 조사'로 기재되고 있다.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는 분야별 정책>고용 노동>노동기준>안전위생>안전위생관계통계·재해사례>안전위생관계통계등일람>노동재해발생상황 중에도 게재되고 있다. 또, 노재보험통계의 장제료 장제급여의 지급건수를 참조하는 것이 가능하다(청구의 시효는 5년).

대재해보고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대재해란 '일시에 3인이상의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상 또는 질병을 입은 재해사고'이다.

후생노동성은 2011년도 부터 '사망재해발생상황' '중대재해발생상황', '사상재해발생상황'도 발표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상재해(사망재해 및 휴업4일이상의 사상재해)'의 출처는 '노재보험급부데이터 및 노동자사상병보고(노재비적용)에서 작성'으로 되었지만, 2012년도 이후에는 '노동자사상병보고에서 작성'으로 되고 있다.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노동재해발생상황에 게재되고 있는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2012년분부터 노동자사상병보고 데이터로 대체되고 있다.[10)]

노동자사상병보고에 의한 데이터는 사업주가 제출한 보고 건수를 그대로 집계한 것이므로 '제출건수'로 부르고, 종래 후생노동성이 공표해 온 노재보험급부 데이터 및 노동자사상병보고(노재 비적용)에 의한 수치는 공표건수라고 하고, 다시 보상건수를 나란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 일본의 노동재해 통계: 제출, 보고, 보상 건수 추이

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자 수			
연도	노동자사상병보고	노재보험급부데이터 및 사상병보고(노재비적용)	상병성질코드별 노재보상상황
	제출건수	공표건수	보상건수
1988	223,470	226,318	
1989	216,118	217,964	
1990	207,581	210,108	
1991	196,803	200,633	
1992	186,532	189,589	

10) 제12차 노동재해방지계획의 수치 목표 등도 노동자사상병보고 데이터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한편, 후생노동성의 "직장의 안전 사이트"(http://anzeninfo.mhlw.go.jp/)"산업 재해 통계"의 각년 "사상 재해 발생 상황" 가운데에서, 1988~1998년분의 사고의 형태별 및 기인물별 데이터는 명기되지 않았지만 "노동자사상병 보고"에 의한 데이터로 추측된다. 1999~2004년분의 모든 데이터는 "노동자 사상병 보고"에 의한 데이터로 명기되어 있다. 2005~2009년 분에 대해서는 "노재보험급부 데이터 및 노동자사상병보고(노재비적용)에 의한 것과 '노동자사상병보고'에 의한 것의 두 가지가 명기되어 있다. 2010년분 이후는 '노동자사상병보고'에 의한 사상재해발생상황(확정치)'로 표제가 바뀌어 엑셀파일이 다운로드 가능하게 되었다.

1993	180,575	181,900	
1994	173,517	176,047	
1995	164,998	167,316	
1996	160,712	162,862	
1997	154,489	156,726	
1998	144,838	148,248	
1999	141,055	137,316	
2000	139,974	133,948	
2001	140,149	133,598	
2002	132,339	125,918	142,688
2003	132,936	125,750	142,207
2004	132,248	122,804	139,024
2005	133,050	120,354	138,444
2006	134,298	121,378	140,308
2007	131,478	121,356	140,622
2008	129,026	119,291	134,751
2009	114,152	105,718	120,528
2010	116,733	107,759	123,592
2011	117,958	111,349	123,619
2012	119,576		123,862
2013	118,157		120.294
2014	119,535		123,314
2015	116,311		

주: 2011년의 제출·공표건수는 동일본대지진을 직접원인으로 한 것(제출 1,664인, 공표 2,827인)을 제외함.

출처: 『安全センター情報』(2016年9月号 通巻第441号, p.5)

보상건수에는 노동자사상병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통근재해, 노재보험 특별가입자나 퇴직 후 발생한 사망 등도 포함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들을 제외한 업무 재해만의 보상 건수에 산재 비적용 사업에 관련된 노동자사상병보고 건수를 더한 것이 공표 건수가 되는 듯도 하지만 그런 설명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 또. 공표 건수는 (부상에 한정했다고 하더라도) 보상 건수보다 훨씬

적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즉, 1999년 이후 제출 건수가 공표건수를 상회하고, 실제 제출된 건수보다도 적은 건수만 공표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일본의 노동안전센터연락회의(2016:5)는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산정되었는가가 불분명한 숫자가 오랜 기간 사상재해의 공표건수로 노동재해 방지계획 등의 수치 목표로서도 사용되어 왔다는 것 자체가 실로 불가해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3) 산재통계 변화 추이 및 현행 제도 고수 이유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재해 발생 상황의 파악, 안전위생 관리, 예방대책, 공공보험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노동재해에 관한 통계는 아래 표 2와 같이 5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11]

<표 II-3> 노동재해와 관련된 통계 종류

통계·조사명(統計 · 調査名)	조사내용(統計 · 調査內容)
노동재해동향조사 (勞働災害動向調査)	주요 산업의 연간 노동 재해의 발생 상황을 분명히 하여 후생 노동 행정의 기초 자료
업무상 질병발생 상황 등 조사 (業務上疾病發生狀況等調査)	업무상 질병의 발생 상황, 정기 건강 진단에 의한 유소견자 수 등을 파악하여 보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
노동재해발생현황 (勞働災害發生狀況)	사고 재해 발생 상황 (사망 재해 및 휴업 4 일 이상 사고 재해) 사망 재해 및 중대 재해 (일시에 3 명 이상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병에 걸린 재해사고)를 파악하여 산업 안전 보건 행정의 기

11) 후생노동통계일관(https://www.mhlw.go.jp/toukei/itiran/index.html)

	초 자료
석면에 의한 질병에 대한 산재 보험 급여 등의 청구 · 결정 상황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산재 보험금 등의 청구 · 결정 건수
과로사 등에 노재보상상황	뇌 · 심장 질환이나 정신 질환 산재 보험 급부의 청구 · 결정 건수

후생노동성의 노동재해동향조사(勞働災害動向調査)의 용어의 설명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동재해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노동재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일어난 재해로, 업무상의 부상, 업무상 질병 (휴업 1 일 이상 및 신체의 일부 또는 기능을 잃음) 및 사망을 말한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도, 지발성의 것 (질병의 발생, 사고, 재해 등의 돌발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진행되고 발생한 질병 예로 진폐, 납 중독, 진동 장애 등) 및 식중독 전염병은 제외한다. 또한 통근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및 사망은 제외[12)]

그러나 노동재해발생현황(勞働災害發生狀況)의 용어의 설명 부분은 열람할 수 없었다. 다만 노동재해동향조사와 노동재해발생현황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동재해의 정의는 비슷할 것으로 추정한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2012년부터 '노재보험급부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노동자사상병보고'를 추론해 보면, 노재보험급부데이터의 경우 업무상 재해, 통근중 부상 및 직업병(지발성 증상: 진폐 및 납 중독)의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의 기인성을 고려할 때 '노재보험급부데이터' 보다는 '노동자사상병보고'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노재보험급부데이터'를 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후생노동성 통계정보 및 백서 (https://www.mhlw.go.jp/toukei/list/44-23.html)

3. 영국

1) 산재통계 기본자료

영국은 산업재해의 기록·유지 및 신고제도가 산업재해, 직업병 및 위험발생 보고 규칙(RIDDOR :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산업재해통계는 신고된 자료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 자영업자, 공공인에 대해서 휴업 4일 이상 재해, 중대재해 및 사망재해 통계를 산출하고 업무상 질병 및 중대사고 통계는 별도로 편집·생산하는 것이다.

영국의 산업재해 통계는 작업장 보건안전법, 공장법, 사회안전과 가정이익법 및 RIDDOR에 근거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조사는 RIDDOR에 의하여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실제조사는 사업주의 편의를 위하여 채용된 안전보건업무 담당자가 하고 있으며, 재해조사시 노조에 의하여 임명된 안전대표자(Safety Representative)와 함께 조사하여 가장 빠른 방법(전화 등)으로 법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화로 약식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청(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HSE에서는 보고내용에 따라 법위반 사항이나 직업병발생, 사망사고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시키거나 위반한 내용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철도, 원자력발전소, 유전에서의 사고 등 언론에 의하여 수시로 일반국민에게 노출되는 사고)에는 항상 감독관 및 관련전문가를 파견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업병을 발견한 병원에서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산재보고체제가 사고의 치사성, 심각도, 그리고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 그에 적합한 보고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향후 보고제도

의 정립을 위해 참고할 만하다.

또한 영국의 산재통계 산출에서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점은 사업장의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도급근로자, 그리고 노동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까지 산업재해의 범위에 넣어 폭넓게 통계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즉 사업장의 직접적 작업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사업장(현장)에서 외부 시민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역시 산재로 포함된다. 이를 범주화 하면 작업자에 대한 비치사적인 사고, 비작업자(일반인)에 대한 비치사적인 사고, 작업과 관련된 치사적 사고(일반인 포함), 그리고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발생하면 매우 위험한 산재 상황(Dangerous occurrences) 등으로 분류된다.

영국에서 산재환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NHS에 의해 재활 및 요양급여를 받는다. 따라서 수가체제가 단순하게 형성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한국, 일본, 독일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다른 수가체계와 심사체제의 혼란과 복잡성을 지니고 있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영국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상이한 수가체계와 심사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일정 해소하고 있는 제제란 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타 국가에서도 참고할 만할 것으로 사료된다.[13]

2) 산재통계 생산방식

o 주관기관 : 보건안전청(HSE)

- 관련기관 : 보건안전위원회(HSC)

o 적용범위 : 업무상 관련된 모든 재해

13) 오상호, 산재발생 보고실태 및 활용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7, 38면.

※ 업무상 교통사고는 포함하되 도로상 교통사고 및 통근재해는 제외

o 조사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4일 이상 휴업재해 (전수조사)

o 조사방법(보고제도)
- 사망 및 중대재해발생시 즉시 HSE지역사무소 및 지방행정청에 전화 등을 이용해 보고하고 10일 이내에 2508 양식에 의거하여 보고
- 4일 이상 휴업재해발생시 사업주는 일반재해 2508 양식 또는 직업병 보고서식 2508A 양식에 의거 10일 이내에 HSE 지역사무소 및 지방행정청에 보고
- 의사로부터 직업병 진단결과가 있을 경우 관련기록을 유지하고 10일이내에 2508A 양식에 의거하여 보고
-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전화 등으로 보고하고 10일 이내에 규정된 보고양식에 의거하여 보고
- 직업병은 하나의 총괄적인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RIDDOR, 호구조사, 산업재해조사, 자원의료 계획, 사망진단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직업병 통계자료를 작성

o 재해분석방법 :
- 근로자, 자영업자,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 재해통계 산출에 있어 사망, 중대재해, 4일 이상 휴업재해를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인적 피해유무에 관계없는 중대사고 통계를 발표
- 재해지표는 사망, 중대재해, 4일 이상 휴업재해자 각각의 경우에 대해 발생율

(IR : Incident Rate)을 산출

- IR(10만명당 재해발생율) = (휴업재해자수(직업병제외)/대상근로자수)×100,000명

※ 회계연도 : 매년 4. 1 - 익년 3. 31까지

o 기록 보존

- 사업주는 보고해야 할 재해, 직업병 또는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기록을 유지·보존

- 보고기록에는 재해발생일자, 시간, 장소, 재해관련자의 인적사항, 재해나 직업병의 개요 등을 포함

3) 산재통계 변화 추이 및 현행 제도 고수 이유

○ 업무상 사고 통계

- 연간 업무상 사고사망자 137명 / 업무상 사고부상자 70,116명
- 보고대상 이외의 사고 60만 건 추정
- 사고로 인한 총 손실 비용 추정액 약 7조 6,000억 원

○ 업무상 질병 통계

- 업무상 질병 발생 130만 건 추정
- 정신건강 악화 및 근골격계질환 발생 각 50만 건 추정
- 과거 석면노출에 기인한 호흡기 중피종 사망자 2,542명 (사망진단서 기준)
- 석면 포함 업무상 폐질환 관련 전체 추청 사망자 약 12,000명

○ 총 근로손실일 추정 3,120만 일 등 (업무상 사고부상 및 질병 합산)

영국은 노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조사 보고된 추정데이터를 포함한 통계생산과 비용분석 모델 활용 등 보다 다차원적 접근과 분석기법 활용하고 있고,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기인한 직무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리, 근골격계 질환, 폐질환 등 노동자건강관리에 중점을 둔 통계데이터 생산방식 등은 향후 우리나라가 좀 더 관심을 - 가져야 할 산업재해 예방영역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강도 높은 감독활동과 산업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해 산업재해예방활동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별로 차별화된 벌금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재해예방과 인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엄정한 법규적용을 통해 산업재해예방 선진국의 지위 유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높은 사고사망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법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규적용과 처벌이 노동자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14)]

4. 미국

1) 산재통계 기본자료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으로 연방 법률인 직업안전보건법(OSH Act)과 연방 규정(행정규칙)인 제29장(29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을 제정하여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 법령으로 시행하고 있다. OSH Act 제8조는 “The Secretary of Labor는 사망, 응급처치 이외의 부상 및 질병, 의식상실・업무 및 행동의 제한・타 업무로의 이전 불가피 등을 유발하는 재해에 관하여 기록유지 및 정기적 보고를 요구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산업안전보건공단, 영국의 2016-2017 산업재해 통계, 국제안전보건동향, 2017년 12월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산업안전 및 보건 기준 제정(standard development), 작업장 산업안전 및 보건 기준 준수 감독(enforcement), 작업장 안전관리 협력지원 사업(consultation assistance)을 담당하고 있다.

- ○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산재예방 프로그램(I2P2 Program)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의 원인 파악과 이의 예방을 위한 정보 개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OSHA 300 양식의 산재기록양식을 마련, OSH Act에서 누락된 자영업자, 소규모 농장, 비정규직, 독립계약자, 공공 근로자 등도 포함시켜 통계 산출하고 있음
- ○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사업장의 재해율을 기준으로 특정 산업에서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SST(Site Specific Targeting), 추락, 절단, 납중독, 크리스탈 실리카, 조선, 정유, 가연성 분진 등과 같이 특정 위험 요인을 기준으로 조사 감독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NEP(National Emphasis Programs), 해당 지역 사업장의 위험과 산업재해 및 질병 발생률에 기초하여 관할 지역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LEP(Local Emphasis Program)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산업재해 발생 통계 산출에 반영하고 있음

아울러 노동통계청(BLS, Board of Labour Statistics)은 매년 표본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이를 사업장에 통보,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향후 1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고 익년 초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요약 정리하여 응답할 수 있는 조사표를 배포하여 응답된 요약조사표를 이용해 산업재해 발생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중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수조사를 통해 통계를 산출하고 있고(사망재해조사에는 사망근로자, 사고내용, 관련된 기계 및 장비

등 약 30개의 데이터가 코드화되어 표로 완성)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사망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 ○ 노동통계청(BLS)에서는 1992년부터 별도로 사망산업재해조사(CFOI :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를 실시하여 사망재해통계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사망산업재해조사(CFOI)는 연방정부, 주 및 지방행정부 등 각 기관으로부터 사망증명서, 근로자보상보고서, 경찰보고서 등 여러 경로의 자료를 수집하여 산출되고 있음
- ○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사망 및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발생을 인지한 후 1일 이내에 감독을 실시하고 근로자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일 이내에 조사 또는 5일 이내에 감독을 실시하며 내부 고발이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OSH Act가 정하는 시일 내에 조사하여 산업재해 발생 통계에 반영

또한 미국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통일적인 산재보험의 형태는 없고 1908년 연방근로자보상법(Federal Employees'compensation Act), 1927년 해안 및 항만근로자보상법 Longshoremen's and Harbor Workers'Compensation Act), 1972년 진폐급여법(Black Lung Benefits Act) 등의 연방 법률 및 각 50개주가 제정한 개별 근로자보상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관할 소관 업무가 아닌 주정부의 개별 보상 법률에 따라 자가보험, 민영보험, 주(州)정부 및 연방 산재보험 기금을 통해 산업재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단순한 응급처치 이상의 진료 또는 하루 이상의 휴무를 요하는 일시장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근로자보상보험청구 및 재해보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보험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사업주는 재해발생 인지 이후 1일 이내에 DWC Form 1(근로자보상보험 청구서)를 산재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양식을 돌려받은 이후 1일 이내에 사업주란을 작성하여 근로자, 해당 민간 보험 보상행정관에게 사본을 송부하여야 함

○ 부상 및 질병 재해의 경우 사업주는 재해발생 인지 이후 5일 이내에 Form5020(사업주의 근로자 부상 및 질병 보고서)양식을 작성하여 가입 보험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사망 재해의 경우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DIA Form510 (근로자사망보고서)을 작성하여 산업안전과(Division of Industrial Accidents)의 행정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 산재 근로자는 산재법원의 승인을 요건으로 보상합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보상합의의 종류로 하나는 일시금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 C&R(compromise and release)이고 또 다른 하나는 휴업급여의 기간, 영구장해도, 추후 진료와 요양 등에 대한 합의를 하여 계속 보상을 해 주는 Stip(Stipulations with an Award)임

반대로 워싱턴 주의 경우 산재 근로자가 재해사실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산재 발생 보고서를 통해 보험청구 절차를 진행하도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산재 근로자는 사고 후 무엇보다 먼저 사업주에게 재해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는 산재 근로자의 클레임을 기각하라고 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담당 의사는 공식적인 청구양식으로 제공되는 '산재상해 및 직업병 발생 보고서(a Washington State Fund Report of Industrial Injury or Occupational Disease)' 양식을 산재 근로자에게 제공

2) 산재통계 생산방식

미국은 1인 이상(농장은 1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산재사고 통계를 산출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고, 특히 산재사고의 유형을 부상 · 질병과 사망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후자의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고 유형별로 조사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특색을 가진다.

부상 및 질병의 산재사고 통계를 위한 표본조사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민간사업장(자영업자, 11인 미만 농업종사자, 가사종사자, 공무원 제외)을 대상으로 선정된 약 16만 개의 표본조사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이후 인구조사자료를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산출되고 있다.

사망의 산재사고 통계를 위한 전수조사는 표본에 의한 사망자 추정치는 신뢰도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로 별도 사망증명서, 근로자보상보고서, 경찰보고서 등 여러 경로의 자료를 수집하여 사망산업재해조사(CFOI :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가 실시된 이후 자영업자를 포함한 고용 및 임금자료를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산출되고 있다.

○ 사망재해는 사고 당시 고용된 상태로서 작업 중 이거나 작업을 위해 사고현장에 있었을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고 출·퇴근 시 발생한 사망재해는 제외하고 있음

○ 직업병 잠복기간 및 직업병을 작업에 의한 것으로 판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업병 사망재해에 관한 정보는 노동통계청(BLS) 조사에 보고하지 않고 사망자통계에서도 제외됨

3) 산재통계 변화 추이 및 현행 제도 고수 이유

미국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과 산업재해 통계자료 수집·분석을 목적으로 한 OSH Act 1970의 실행을 위해 사업주의 산업재해발생 기록과 이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상 및 질병 재해 통계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생산하고 사망 재해 통계는 신고자료, 사망진단서 등의 전수조사를 통해 연간 통계를 산출하여 이를 정책 활동 과정에 반영하는 공식통계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1904년 Massachusetts를 필두로, 1907년 Illinois, 1908년 Connecticut, 1909년 New York의 각 주별 위원회 회의, 1910년 Chicago의 전국 위원회 대표자의 회의에서의 Uniform Workmen's Compensation(통합 근로자보상법) 작성 등 근로자보상을 위한 국가 단위의 포괄절인 강제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나 1911년 Ives v. South Buffalo Ry. 201 N.Y. 271, 94 N.E. 431(1911)에서 "고용주에 대해 과실 없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州 또는 연방 헌법 하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위헌성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연방 의회가 이를 회피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다. 즉 현재 미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주 부담의 급증에 대한 억제와 민사 배상의 성격을 지닌 강제적 보상 보험의 특성으로 사업장 재해와 관련한 모든 의료비용과 손실 임금 비용의 일부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가보험, 민영보험, 주(州)정부 및 연방 산재보험 기금을 통해 보험을 들 수 있는 방식을 정하고 있는 관계로, 산재 보상 통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계자료로서는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산재보험수급권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참조할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OSHA는 기업들의 자율보고 작성이 실제 사업장의 산업재해보다 200% 낮게 작성되었다는 OSHA 표본조사 프로그램의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OSHA

의 규제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징벌 강화, 경보체제 작동 강화, 기업의 정확한 보고 강화 및 사고사업장의 추후 조사 강화 등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5. 기타 OECD 국가별 산재통계 현황[15)16)]

1) 호주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 수집(collection)과 편집(compilation)은 노동부와 근로자 보상 청구 절차를 담당하는 사무처(Ministries responsible for labour and offices responsible for processing claims for workers' compensation)이며 발간(Publication)은 위 두 기관과 전국 산업보건안전 위원회[the National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NOHSC: 노동안전 오스트레일리아(Worksafe Australia]]가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NOHSC는 통합 현황을 연간 1회 발행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발행도 가능하다.

(3) 통계생산 자료

산재통계 생산 자료는 보상통계(Compensation based Statistics: NDS)이다.

(4) 통계생산 목적

국가 산재 통계는 호주 산업과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15) http://laborsta.ilo.org/applv8/data/SSM8/E/SSM8.html
16) 김수근 외 2인,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경제활동 지표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공단, 2009, 15면 이하 참조.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 데이터는 관할 및 산업 그룹이 자신의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비교하고 중요한 동향이나 새로운 이슈를 식별하고 그리고 개별 사업장에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통계 활용을 통해 적절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예방조치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다.

(5) 통계산출 재해

업무상 사고에 의한 재해만 해당하며,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여 공표하며, 출퇴근 사고에 의한 재해에 관한 자료는 수집대상이기는 하나, 자료 분석에서는 제외된다.

(6) 통계산출 범위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재해를 통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7) 보고제도

보험회사, 자기보험사 그리고 특정 정부 부처에 제출된 보상 청구는 연방, 주 그리고 지방 근로자 보상 당국에 제공되며, 그 후 그 정보를 NOHSC에 전달한다. 재해자는 사업주에게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보험회사는 청구서를 근로자들의 보상당국기관에 전달한다.

2) 오스트리아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 담당조직은 오스트리아 사회보험 운영기관 연맹(Hauptverband der Österreichischen Sozialversicherungsträger, Abteilung Statistik [Confederation of Austrian Social Insurance Institutions, Statistics Departmen]t)이다.

(2) 통계발간 주기

통계는 연간 1회 주기로 발간한다.

(3) 통계생산 자료

산재통계 생산 자료는 오스트리아 연방 사회보험기관인 4개 산재보험운영기관에 제출된 보고자료이다.

(4) 통계생산 목적

(5) 통계산출 재해

업무상 사고에 의한 모든 유형의 재해만 해당하며,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사고에 의한 재해에 관한 통계는 별도로 정리되어 발간되고 있다.

(6) 통계산출 범위

휴업일수에 관한 별도의 기간은 없다.

(7) 보고제도

산재보험기관에 제출된 사고보고서 양식(accident report form)을 통해 통계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오스트리아 사회보험 운영기관 연맹에 전달되어 편집 및 발간된다.

3) 벨기에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 수집은 업무상 사고 기금[Fonds des Accidents du Travail (FAT) (Fund for Occupational Accidents)]이며, 편집 및 발간은 국립 통계 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statistiques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로 이원화되어 있다.

(2) 통계발간 주기

산재통계 편집은 가변적이며 FAT는 기술예방위원회(Technical Committee for Prevention)에 의해 작성된 통계와 표를 검수한다. 발행은 연간 1회 주기로 이루어진다.

(3) 통계생산 자료

산재통계생산 자료는 FAT에 제출된 업무상 재해 보고서와 해당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승인한 보험사에 제출된 출퇴근 재해 보고서이다.

(4) 통계생산 목적

업무상 사고의 효과적인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5) 통계산출 재해

출퇴근 재해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보상된 재해를 대상으로 하며,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수집해 발간한다.

(6) 통계산출 범위

사고 발생일을 제외하고 휴업 1일 이상이다. 사망은 사고후 1일 이내 사망한 경우 포함된다.

(7) 보고제도

업무상 사고로 인한 모든 재해는 보상제도에 의해 보호되는데, 사고는 사고 발생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제공자 또는 기술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상에 대한 신청(청구)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하다.

4) 캐나다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 수집 및 편집은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 노동과[(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Labour Branch (HRDC-L)]와 캐나다 근로자 보상 위원회 협회[the Associ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Boards of Canada (AWCBC)]이며 , 발간은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 노동과이다.

캐나다 통계청은 재해율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고용 데이터를 수집, 편집 그리고 발간한다.

(2) 통계발간 주기

발간은 연간 1회 주기로 이루어진다.

(3) 통계생산 자료

캐나다 주 및 지역 노동자 보상위원회(Canadian provincial and territorial workers′ compensation boards)는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에 보상된 업무상 재해의 규모와 그 비용에 대한 연간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적용대상은 전국 그리고 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산업들이다. 비록 이러한 근로자 보상위원회에 의해 활용되는 사고보고 시스템이 업무상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설계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캐나다 관할구역의 업무상 재해 경험(현황)을 비교하기 위한 업무상 안전보건 데이터의 중요한 자료(source)로 부각되고 있다.

(4) 통계생산 목적

제한된 재정적 자원의 맥락에서, 이 분야에서 더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활동, 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 등)에 대한 관련 영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점과 관할영역간 성과의 비교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업무상 안전보건 상황의 공간적 시간적 형상(representation)을 획득하기

위해 통계적 성과 지표를 확립하기 위한 점이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다.

(5) 통계산출 재해

업무상 사고에 의한 재해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료 모두 통계에 포함되나, 출퇴근 재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6) 통계산출 범위

휴업일수에 관한 별도의 기간은 없다.

(7) 보고제도

보상보고서 제출절차는 주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제로 각 주나 지역은 특정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재해일지(Injury log) 작성을 요청하고, 만약에 있다면 근로자 보상위원회에서 발간한 재해신청서(Notice of Injury)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이 양식은 사용자 대표나 사고 목격자가 서명해야 한다. 그 뒤에 신청인이 서명이 들어간 양식을 직접 또는 전화로 근로자 보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해신청서의 사본도 근로자 보상위원회에 제출되어야만 한다.

한편,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은 근로자 보상위원회에 기밀 의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한다.

5) 체코 공화국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는 체코 통계청[Cesky Statisticky Urad (Czech Statistical Office - CSO)]이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발간은 연간 1회 주기로 이루어진다.

(3) 통계생산 자료

매년 사용자가 체코 통계청에 작성하여 보고한 자료이다.

(4) 통계생산 목적

근로감독과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이다.

(5) 통계산출 재해

업무상 사고에 의한 재해가 보고대상 재해이며, 업무상 질병에 관한 통계는 별도로 편집 및 발간된다. 그리고 출퇴근 재해도 포함되지 않는다.

(6) 통계산출 범위

사고 발생일을 제외하고 1일 이상 지속되는 사고(휴업 1일)이며,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사고는 심각한 부상으로 분류해 장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7) 보고제도

모든 기관들은 조사기간 동안 업무상 재해와 질병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보고서를 체코 통계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관의 인구조사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6) 덴마크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는 작업환경청((Danish Working Environment Service)이다.

(2) 통계발간 주기

발간은 연간 1회 주기로 이루어진다.

(3) 통계생산 자료

덴마크 업무상 재해 등록부에 기록된 자료들이다.

(4) 통계생산 목적

주로 예방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데이터는 규제 체계에 있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보를 보급하며, 산업안전보건 캠페인을 준비하고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계획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통계는 대부분의 재해의 원인이 되는 작업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5) 통계산출 재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재해 통계를 대상으로 하나, 출퇴근 재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6) 통계산출 범위

사고 발생일을 제외하고 휴업 1일 이상이다.

(7) 보고제도

덴마크에서 발생한 모든 업무상 사고와 작업장의 독성 재해의 사례는 사고발생일 이외에 1일 이상 휴업을 초래하는 경우에 반드시 덴마크 작업환경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사고발생 8일 이내에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덴마크 국립 업무상 재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7) 에스토니아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는 국가 노동 환경 위원회 감독부(Department of Supervision,

National Working Environment Board)가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편집은 치명적 그리고 중증 업무상 재해에 대한 통계는 분기별로, 1년마다 그리고 2년을 주기로 집계되며, 1년에 한번씩 모든 업무상 재해 통계가 집계된다. 발간은 연간 1회 주기로 활용된다.

(3) 통계생산 자료

통계생산 자료는 사용자가 보험회사에 제출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고서이며, 그 이후 지역 노동 감독(the local labour inspection)기관에 보고하고 그 이후 전국 노동환경위원회(the National Working Environment Board)에 최종 보고한 데이터다.

(4) 통계생산 목적

노동감독 점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고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이다.

(5) 통계산출 재해

업무상 사고로 인한 모든 형태의 재해가 포함되며, 출퇴근 재해도 포함된다. 다만, 업무상 질병에 관한 통계는 별도로 정리하여 공표한다.

(6) 통계산출 범위

사고 발생일을 제외하고 휴업 1일 이상이다.

(7) 보고제도

사업주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건강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사업주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의 통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의사 또한 사업주에게 업무상 질병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

사업주는 업무상 사고와 작업장에서 중독 재해의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 노동감독기관에, 업무상 질병의 사례는 전국 건강보호위원회(the National Board for Health Protection)에 그리고 재해자 혹은 그의 대리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 한 부를 건강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표준양식을 사용하며, 지침도 관련 법률(노동보호법 Labour Protection Law)에 따라 제공된다.

8) 핀란드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 수집은 연방 산재보험기관[Federation of Accident Insurance Institutions (FAII)]이며, 편집 및 발간은 핀란드 노동부와 통계청이며, 1996년 이후로는 통계청만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발간은 연간 1회 주기로 활용된다.

(3) 통계생산 자료

산재보험법상 사고보험기관에 사용자가 작성한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 보고서이다. 이후 FAII는 핀란드 노동부와 통계청에 정보를 전달하고 발간은 통계청이 담당한다.

(4) 통계생산 목적

노동감독관, 사용자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산업안전예방 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5) 통계산출 재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재해 통계를 대상으로 하나, 업무상 질병

으로 인한 사망통계는 별도로 작성하여 공표하며, 출퇴근 재해도 포함되지만, 동일 간행물에 별도로 현황을 발표한다.

(6) 통계산출 범위

사고 발생일을 제외하고 휴업 3일 이상이며, 사망은 사고 후 1년 이내 통계에 포함된다.

(7) 보고제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청구는 사고 발생 1년 이내 제출해야 한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청구는 의료진의 주의가 있은 때로부터 1년 이내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을 청구하는 자는 재해자이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는 자는 사용자나 의사이다.

9) 프랑스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 수집은 지역 질병 보험 금고(15개)와 국영기업[Regional sickness insurance funds (fifteen) and large State enterprises]에서 편집 및 발간은 전국 질병 보험 공단[Caisse Nationale de l'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CNAMTS) (National Sickness Insurance Fund for Paid Employees)]이다.

(2) 통계발간 주기

발간은 연간 1회 주기로 활용된다.

(3) 통계생산 자료

지역 질병 보험공단에 제출된 업무상 재해 보고서를 기초로 한다.

(4) 통계생산 목적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출퇴근 재해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업무상 사고로 기인되어 보상된 재해를 포함하며, 업무상 질병에 관한 통계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통계와 별도로 정리하여 공표한다.

(6) 통계산출 범위

사고 발생일을 제외하고 휴업 1일 이상이다.

(7) 보고제도

데이터 수집에 관한 근거법률은 Social Security Code이며, 고용관계 중 사고로 인한 모든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가 48시간(일요일과 공휴일 제외)이내에 재해자가 소속된 1차 질병 보험 금고에 보고(report)해야 하며 또는 사용자는 기업 외부에서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정보를 통지(inform)해야할 의무가 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자 또는 그의 대리인 중 한 명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스스로가 1차 질병보험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자는 사고일로부터 2년의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는 업무상 사고로 인해 재해가 재발한 경우도 근로자가 직접 1차 질병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와 함께 보고해야 한다.

10) 그리스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 수집은 사회보장기관[Organisation de la Securité Sociale (OSS) (Social Security Organization)]에서 편집 및 발간은 그리스 국가 통계

청[Office national de Statistique de Grèce (Greek National Statistics Office)]이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발간은 연간 1회 주기로 활용된다.

(3) 통계생산 자료

자료원의 대부분은 국내 최대 보험기관인 사회보험연구원(Social Insurance Institute (IKA))에 제출한 보상청구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4) 통계생산 목적

통계생산은 특히,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의 공식화를 위해서 그리고 업무상 재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비용의 결정 및 그에 따른 생산 비용의 결정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출퇴근 재해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상된 재해를 포함하나, 업무상 질병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6) 통계산출 범위

사고 발생일을 제외하고 휴업 1일 이상이다.

(7) 보고제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고는 재해자 또는 그의 사용자가 사회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한 표준 형식이 사용된다.

11) 헝가리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는 국가 노동감독 및 노동안전국[Országos Munkaügyi És Munkabiztonsági Fofelüugyeloség (National Inspectorate of Labour and Labour Safety, NILLS)]이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편집은 주와 주도에서 매월, NILLS는 분기별로 하며, 발간은 분기별로 한다.

(3) 통계생산 자료

자료원은 사용자가 NILLS에 제출한 업무상 사고에 대한 보고서이다.

(4) 통계생산 목적

통계생산은 업무상 사고의 원인 관계를 밝혀, 산재예방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사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모든 유형의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상된 재해를 포함하나,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사고에 의한 재해는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6) 통계산출 범위

사고 발생일을 제외하고 휴업 3일 이상이다.

(7) 보고제도

근거법률은 노동안전법(Law of Labour Safety)이며, 사업주는 NILLS에게 통지해야 한다.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이 있다.

12) 아이슬란드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는 산업안전보건부[Vinnueftirlit rikisuis (Administr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가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3) 통계생산 자료

자료원은 행정기록(Administrative records)이다.

(4) 통계생산 목적

(5) 통계산출 재해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모든 유형의 재해를 포함하나, 출퇴근중 사고로 인한 재해는 제외한다.

(6) 통계산출 범위

사고 발생일을 제외하고 휴업 2일 이상이다.

(7) 보고제도

13) 아일랜드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는 보건안전국(Health and Safety Authority)이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발간은 연간 1회 주기로 이루어진다.

(3) 통계생산 자료

자료원은 1989년 안전, 보건 복지법(the Safety, Health and Welfare Act 1989)에 따라 보건안전 시행 당국에서 파악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

(4) 통계생산 목적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에 대해 보고하며, 업무상 질병에 관한 통계는 별도로 정리하여 공표하며, 출퇴근 재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6) 통계산출 범위

사고 발생일을 제외하고 휴업 3일 이상이다.

(7) 산재발생보고제도

14) 이스라엘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는 국가보험청(National Insurance Institute)이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발간은 연간 1회 주기로 이루어진다.

(3) 통계생산 자료

자료원은 국가보험청 행정기록(Administrative records of the National Insurance Institute)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4) 통계생산 목적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여 보상된 모든 재해를 포함한다.

(6) 통계산출 범위

휴업일수에 관한 별도의 기간은 없다.

(7) 보고제도

15) 이탈리아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는 업무상 사고에 대한 국가보험청[Istituto Nazionale per l'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INAIL) (National Institute for Insurance against Occupational Accidents)]이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발간은 연간 1회 주기로 이루어진다.

(3) 통계생산 자료

자료원은 INAIL에 제출된 보상청구자료이다.

(4) 통계생산 목적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업무상 사고로 인해 보상된 재해만 다루며, 출퇴근 재해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상 질병 통계는 별도로 정리하여 공표한다.

(6) 통계산출 범위

사고 발생일을 제외하고 휴업 3일 이상이다.

(7) 보고제도

사업주는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인지(Learning)한 날로부터 2일 이내 보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모든 산업 및 서비스 분야 근로자 그리고 시간 제한 없는 계약형태로 고용된 농업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진단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자영업 형태의 농업 종사자의 경우 먼저 의사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6) 라트비아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는 라트비아 중앙 통계청[Central Statistical Bureau of Latvia (CSB)]이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발간은 연간 1회 주기로 이루어진다.

(3) 통계생산 자료

자료원은 사용자가 완료하고 CSB에 제출한 업무상 재해에 관한 설문지를 토대로 한다.

(4) 통계생산 목적

업무상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만 포함하고, 업무상 질병도 통계

로 활용하나 별도로 발간하며, 출퇴근 재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6) 통계산출 범위

사고 발생일을 제외하고 휴업 1일 이상이다.

(7) 보고제도

서베이로 수집하려는 정보는 업무상 사고 및 재해자 규모에 관한 정보만 수집된다.

17) 리투아니아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는 주 노동 감독국(State Labour Inspectorate)이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발간은 6개월 주기로 이루어진다.

(3) 통계생산 자료

자료원은 사업주에 의해 주 노동감독국에게 발송되는 업무 중 경미한 사고 조사와 관련된 양식 그리고 주 노동감독국 최고위원회[commission headed by State Labour Inspectorate]가 작성한 중대하고 치명적인 사고의 조사와 관련된 양식을 기초로 한다.

(4) 통계생산 목적

사업주 및 노동조합에 대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에서 주 노동감독국의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에 출퇴근 재해도 포함하여 공표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에 관한 통계는 주 공공 보건센터(the State Public Health Centre)에서 별도로 등록부에 정리되어 있고 그에 따라 별도로 수집 후 발간한다.

(6) 통계산출 범위

사고 발생일을 제외하고 휴업 1일 이상이다.

(7) 보고제도

사업주는 주 노동감독국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1시간 이내에 통지(notify)해야 한다. 그 밖의 사고에 대한 보고는 사고 발생 10일 이내 이루어지면 된다.

우선 재해자는 가능한 경우 직속 상관이나 그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고를 보고해야 하고, 사고 목격자 역시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 상사는 보고받은 사고를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심각하고 치명적인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주 노동감독국에 통보하고, 주 노동 감독국은 조사를 실시하여 감독위원회(the inspection board)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덜 심각한 사고에 관한 정보를 주 노동감독국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

18) 멕시코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 수집은 노동 사회보장 사무국[Secretaría del Trabajo y Previsión Social (STPS) (Secretariat for Labour and Social Security)], 멕시코 사회보장국[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 (IMSS) (Mexican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국[Instituto de Seguridad Social y Servicios Sociales de los Trabajadores del Estado (ISSSTE) (Social Security and Social Services Institute for State

Workers)] 그리고 Petróleos Mexicanos (PEMEX)가 담당한다. 반면 편집 및 발간은 STPS가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자료수집은 4개월 단위와 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발간은 2년 주기로 실시된다.

(3) 통계생산 자료

자료원은 업무상 재해보험[IMSS: Occupational injury (riesgos de trabajo) insurance]; 승인된 보상과 관련된 정보[ISSSTE: Information concerning awarded compensation]; 업무상 재해의 후속조치[PEMEX: Follow-up of occupational injuries]; 기업이 제출한 보고서[STPS: Reports submitted by enterprises] 등의 자료들이다.

(4) 통계생산 목적

작업장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준과 예방적 조치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출퇴근 재해와 업무상 질병 등 모든 유형의 업무상 재해를 포함한다.

(6) 통계산출 범위

사고 발생일을 제외하고 휴업 1일 이상이다.

(7) 보고제도

사업주는 IMSS 또는 ISSSTE에 보상 청구를 해야 한다. 보상청구시 정보 경로는 우선 재해자로부터 사업주에게, 사업주로부터 IMSS 또는 ISSSTE까지 이루어진다. 별도의 보상청구에 대한 공식적인 양식은 없고 보상계획에 대한

지침도 없다.

19) 네덜란드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 수집은 무역협회(Trade associations)가 편집 및 발간은 네덜란드 통계청(Statistics Netherlands)이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발간은 1년 주기로 실시된다.

(3) 통계생산 자료

자료원은 노동감독국(the Labour Inspectorate)에 무역협회(trade associations)를 통해 제출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고서이다.

(4) 통계생산 목적

질병보험법을 포함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모든 유형의 재해만 포함되고, 출퇴근 재해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1968년부터 1985년까지 업무상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표하였다.

(6) 통계산출 범위

통계 산출 재해 대상에 관한 별도의 휴업 일수 없다. 다만, 사망을 치명적인 업무상 재해로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 후 30일 이내의 사망이다.

(7) 보고제도

사업주는 재해자가 고용이 유지되는 동안 재해를 당해 장해나 사망에 이를 경우 무역협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최소 사고 발생 2일 까지는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은 자는 가능한 한 서둘러, 늦어도 2일까지는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일반 보고를 받은 사업주는 늦어도 3일까지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무역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재해자가 회사로 복귀한 경우, 사업주는 가능한 한 서둘러 무역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지만, 업무에 복귀한 이후 2일이 지나서 통지해서는 안 된다.

20) 뉴질랜드

(1) 통계담당 조직

통계는 사고재활 및 보상 단체[Accident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Corporation (ACC)]가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편집은 월 단위로 실시되나 통계자료는 1년 주기로 발간된다.

(3) 통계생산 자료

자료원은 재해자를 재활 및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기반으로 한 제도인 사고재활 및 보상단체에(ACC)에 제출된 보상 청구 자료이다.

(4) 통계생산 목적

- 고위험 또는 높은 비용활동에 대한 재해예방 이니셔티브를 목표로 함
- ACC 제도하에서 기금의 배분
- 보험료율의 예측 및 설정
- 성과 모니터링
- 손해관리 및 재활을 목표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모든 유형의 재해에 대해 ACI 체계에 따라 보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포함된다. 업무상 질병도 통계에 포함된다. 출퇴근 재해도 포함되나, 사용자가 제공한 차량에 의한 사고만을 포함한다.

(6) 통계산출 범위

휴업일수에 관한 별도의 기간은 없다.

(7) 보고제도

재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규정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재해자나 유족은 M46 형태의 양식의 일부를 완성하고 관련 부분의 완성을 위해 치료 의사 혹은 병원으로 제출한다. 그 후 양식은 등록센터(Registration Centre로 전송되며, 등록 센터는 세부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상청구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결정된 정보는 ARCI Corporation의 관련 지사로 전달된다.

21) 노르웨이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는 노르웨이 통계청(Statistics Norway)이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1년 주기로 발간된다.

(3) 통계생산 자료

자료원은 국가보험청(the National Insurance Administration)이 노동감독국(the Directorate of Labour Inspection), 노르웨이 페트롤리엄국(the Norwegian

Petroleum Directorate) 그리고 노르웨이 해양수산부(the Norwegian Maritime Directorate)에 제출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고서들이다.

(4) 통계생산 목적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계를 생산한다.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만 다루며, 업무상 질병에 관한 통계는 별도로 활용한다. 그리고 출퇴근 재해는 통계에서 제외되지만, 업무와 관련된 차량이나 기타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에 포함하여 공표한다.

(6) 통계산출 범위

휴업일수에 관한 별도의 기간은 없다.

(7) 보고제도

모든 업무상 재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역 국가보험사무소(the local National Insurance Office)에 보고해야 한다. 사업주는 부상이나 질병을 5장으로 구성된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1면에서 3면은 지역 국가보험사무소에 전송하고, 3면은 노동감독국(the Directorate of Labour Inspection)에 전달해야 한다. 사업주는 4면을 보관하고, 5면은 재해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선박이나 어선의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식을 활용하며 안내 지침은 양식에 첨부되어 있다.

22) 폴란드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 중앙통계청[Główny Urzad Statystyczny (Central Statistical

Office)]이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편집은 월 단위로 실시하며 발간은 분기별 그리고 1년 주기로 시행한다.

(3) 통계생산 자료

자료원은 사업주가 중앙통계청에 제출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고서이다.

(4) 통계생산 목적

통계는 작업조건 관련 규범 및 표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과 기계 및 기구의 설계자와 제작자가 고려할 수 있도록 특정 발생에 관련된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2 가지 목적으로 활용된다.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만 산출하며, 출퇴근 재해는 제외된다. 업무상 질병에 관한 데이터도 업무상 재해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이 데이터는 노동의료기관(the Institute of Labour Medicine)에 의해 별도로 수집된다.

(6) 통계산출 범위

휴업일수에 관한 별도의 기간은 없다.

(7) 보고제도

모든 유형의 업무상 재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되어야 한다. 사업주가 사고통계카드(the Accident Statistical Card)라고 불리는 표준 양식을 이용해 중앙통계청에 통보한다. 지침서는 양식과 함께 제공된다.

23) 포르투갈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 노동연대부, 통계국[Department of Statistics, Ministry of Labour and Solidarity (Departamento de Estatística do Ministério do Trabalho e da Solidariedade)]가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편집은 월 단위로 실시하며 발간은 분기별 그리고 1년 주기로 시행한다.

(3) 통계생산 자료

자료원은 법적 결정에 따라 보험회사를 대체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일부 기업의 자료를 기초로 한다.

(4) 통계생산 목적

통계는 업무상 사고와 직업성(professional) 질병을 알리고 예방조치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한다.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통지되고 보상되는 모든 유형의 업무상 사고를 포함한다. 출퇴근 재해에 관한 통계는 법적으로 업무상 사고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이래로 별도로 정리하며,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재해도 포함되지 않는다.

(6) 통계산출 범위

휴업일수에 관한 별도의 기간은 없다.

(7) 보고제도

사업주는 모든 업무상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양식은 사고 발생한 달 15일까지 보험회사가 노동연대부 통계국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가 보험회사

에 업무상 사고를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은 보험정책에 규정되어 있다.

재해자는 사업주에게 업무상 사고를 통보하고, 사업주는 보험회사에 통지서(Notification form)를 전달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노동연대부 통계국에 전달한다.

24) 슬로바키아 공화국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자료는 슬로바키아 공화국 통계국[Statistical Office of the Slovak Republic (SO SR)]이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발간은 연간 2회 실시한다.

(3) 통계생산 자료

자료원은 모든 기업이 통계국[the Statistical Office (IIRS)]에 제출한 연간 2회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다.

(4) 통계생산 목적

예방목적의 업무상 재해의 규모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공식적인 출장 중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를 포함한다. 업무상 질병에 관한 통계는 별도로 기록해 공표하며, 출퇴근 재해를 적용제외 대상이다.

(6) 통계산출 범위

사고 발생일을 제외하고 휴업 1일 이상이다.

(7) 보고제도

25) 슬로베니아

(1) 통계담당 조직

슬로베니아 공화국 공공 보건기관(Institute of Public Health of Republic of Slovenia)이 슬로베니아 공화국 통계사무소(Statistical Office of Republic of Slovenia)로부터 임명된 작업중 보건안전 통계에 대한 유능한 당국기관이다.

(2) 통계발간 주기

발간은 연간 1회 실시한다.

(3) 통계생산 자료

자료원은 두 가지 출처에서 나오는데, 작업장에서 치명적인 사고에 관한 자료는 작업장에서 보고된 사고 사례를 건강보험, 노동감독국, 공공보건기관 등에서 얻고, 일반적인 사고는 사업주에 의해 작성되고 일반 실무자에 의해 인증된 보고양식을 통해 얻는다.

(4) 통계생산 목적

현재까지 통계자료의 활용은

- 활동인구의 건강 분석
-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의 원인에 대한 분석

미래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것임

- 동일한 활동중에 재해의 규모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한 개입을 정의
- 근로자에 대한 개별 기업의 기여도 결정
- 업무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 계획 수립
- 국가수준의 업무상 안전보건에 관한 개입 계획 수립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공식적인 출장 중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를 포함한다. 출퇴근 재해도 포함은 되나, 업무상 질병에 관한 통계는 통지(Notification)관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만 작성되지 않는다.

(6) 통계산출 범위

휴업일수에 관한 별도의 기간은 없다.

(7) 보고제도

사업주는 표준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또한 일부는 재해자의 주치의가 작성해야 한다.

26) 스페인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는 노동사회부, 사회노동통계총국[Ministerio de Trabajo y Asuntos Sociales, Subdirección General de Estadísticas Sociales y Laborales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Subdirectorate General for Social and Labour Statistics)]이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편집은 월별, 발간의 경우 임시데이터는 월별 단위로 그리고 최종 데이터는 연간 단위로 실시한다.

(3) 통계생산 자료

기업이 보고하는 업무상 사고에 관한 서류는 사회보장을 관리하고 협력하는 자격이 있는 관할 노동당국(the competent labour authority)에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한다.

(4) 통계생산 목적

통계는 공공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고 잠재적인 예방조치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한다.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관할 노동당국에 보고된 모든 유형의 업무상 사고를 포함한다. 출퇴근 재해도 포함은 되나, 업무상 질병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질병에 관한 보고는 별도의 문서로 통지하고, 수집된 자료는 업무상 사고와는 별도로 작성하여 공표한다.

(6) 통계산출 범위

사고 발생일을 제외하고 휴업 1일 이상이다.

(7) 보고제도

사업주는 업무상 사고 보고서를 사고 발생일 또는 의료적으로 인정된 휴업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관리 또는 협력하는 사회보장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진 또는 협력기업은 그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관할노동당국은 사본을 노동사회부, 사회노동통계총국에 제출한다.

27) 스웨덴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 수집은 국가 사회보험위원회(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에서, 편집과 발간은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National Bo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가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수집과 편집은 업무상 재해의 등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보다 짧은 보고서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리고 발간은 1년에 2회, 1개의 예비보고서와 1개의 최종보고서의 형태이다.

(3) 통계생산 자료

노동재해보험법(the Work Injury Insurance Act)에 따라 사회보험사무소(social insurance offices)에 제출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한다.

(4) 통계생산 목적

통계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의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이다.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모든 유형의 업무상 사고가 포함되며, 업무상 질병에 관한 통계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통계와는 별도로 정리 및 분석되어 있지만, 같은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연관성이 있는 사고에 한해서만 포함되어 있어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6) 통계산출 범위

치아부상을 제외하고는 사고 발생일을 제외하고 휴업 1일 이상이다.

(7) 산보고제도

근거법률은 Work Injuries Insurance Act이며, 근로시간(worktime) 상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업무상 재해는 사고 발생일 이후 14일 이내 25개 지역 사회보험청(regional social insurance office) 중 한 곳에 보고해야 한다. 사업주는 노동감독국(the Labour Inspectorate)에 보고서의 사본을 전달하

고, 등록과 감독관의 자체 조사를 위해 지역 사회보험청에 업무상 재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용되는 표준 양식이 있다. 노동감독국의 전문 직원은 제공된 정보를 검토, 코드화 및 등록한다.

28) 스위스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는 중앙사고보험청[Service de la centralisation de l'assurance accidents LAA (SSAA) (Centralised accident insurance service)]이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발간은 연간 1회 실시한다.

(3) 통계생산 자료

자료원은 LAA에 제출된 사고보상 청구 자료들이다.

(4) 통계생산 목적

통계는 위험트렌드에 근거한 산재보험료와 기업의 보험료율 결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활동의 우선순위 영역을 확립하고 작업장에서 안전 촉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모든 유형의 업무상 사고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도 모두 포함된다.

(6) 통계산출 범위

통계 산출 재해 대상은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이다.

(7) 보고제도

업무상 사고나 질병 그리고 업무외 재해까지 기업은 표준 양식을 이용해 보험제공자에게 보고한다. 보험제공자는 통계에 포함된 모든 사고에 관한 데이터를 전산화된 형태로 SSAA 데이터 처리 부서에 전송한다.

29) 터키

(1) 통계담당 조직

산재통계는 사회보험청(Social Insurance Institutions)이 담당한다.

(2) 통계발간 주기

(3) 통계생산 자료

통계생산 자료는 보상을 위해 사회보험기관에 제출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고서이다.

(4) 통계생산 목적

(5) 통계산출 재해

통계는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 업무상 재해가 포함되며,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 개념에 따르면, 출퇴근 시 근로자를 집단으로 운송하는 동안 사고를 포함하고 있어 순수한 의미의 출퇴근 재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6) 통계산출 범위

휴업일수에 관한 별도의 기간은 없다.

(7) 보고제도

6. OECD 국가별 산재통계 현황 요약

1) 요약표

국가	발간주기	생산자료	생산목적	산출재해	산출범위
한국	1년	보상	재해원인 분석 산재예방 정보제공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요양 4일 이상
독일	1년	보상	예방, 재활, 교육과 자문	업무상 사고 출퇴근 사고	휴업 3일 이상
일본	1년	보고	-	업무상 사고	휴업 4일 이상
영국	1년	보고	사고 경향 분석 정책 및 재원 결정 공공영역 산업안전보건 촉진	업무상 사고	휴업 4일 이상
미국	1년	Survey와 Census	산업안전보건 통계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행	업무상 사고	휴업 1일 이상
호주	1년	보상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예방조치 개발 및 촉진	업무상 사고 출퇴근 사고(수집O, 발간X)	휴업 3일 이상
오스트리아	1년	보상	-	업무상 사고	-

벨기에	1년	보상	업무상 사고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연구 촉진	업무상 사고 출퇴근 사고	휴업 1일 이상 사고후 1일 이내 사망
캐나다	1년	보상	산업안전보건 대책 통계의 성과지표 확인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
체코공화국	1년	보고	근로감독과 사고예방	업무상 사고	휴업 1일 이상 휴업 3일 이상(장해)
덴마크	1년	보고	예방목적 재해원인 분석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편집 O, 발간 X)	휴업 1일 이상
에스토니아	1년	보고	근로감독과 사고예방프로그램 개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사고	휴업 1일 이상
핀란드	1년	보고	산업안전보건 예방 촉진 정보 제공	업무상 사고 출퇴근 사고 업무상 질병 (사망재해는 별도 발간)	휴업 1일 이상 사망은 사고후 1년 이내
프랑스	1년	보상	-	업무상 사고	휴업 1일 이상
그리스	1년	보상	산재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산재보상비용 결정	업무상 사고 출퇴근 사고	휴업 1일 이상
헝가리	분기	보고	재해원인 분석하여 산재예방 조치 수립	업무상 사고	휴업 3일 이상
아이슬란드	-	행정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휴업 2일 이상

아일랜드	1년	보고	-	업무상 사고	휴업 3일 이상
이스라엘	1년	보상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사고	-
이탈리아	1년	보상	-	업무상 사고	휴업 3일 이상
라트비아	1년	보고	재해원인 분석 근로환경 개선	업무상 사고	휴업 1일 이상
리투아니아	반기	보고	산재예방정보 제공(사업주와 노동조합) 근로감독 활동	업무상 사고 출퇴근 사고	휴업 1일 이상
멕시코	2년	보상	작업장 위험 감소를 위한 기준과 예방조치 개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사고 업무상 질병	휴업 1일 이상
네덜란드	1년	보고	법 준수	업무상 사고	- 사망은 사고후 30일 이내
뉴질랜드	1년	보상	산재예방 보험료율 예측 및 설정 손해관리 및 재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사고 (업무연관성 사고만)	-
노르웨이	1년	보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업무상 사고 출퇴근 사고 (업무관련성 사고)	-
폴란드	1년	보고	산재예방활동 기계기구관련 산재발생	업무상 사고	-

			요인 평가		
포르투갈	1년	보상	재해원인 정보 제공 산재예방	업무상 사고	-
슬로바키아	반기	보고	예방목적의 업무상 재해 규모 분석	업무상 사고	휴업 1일 이상
슬로베니아	1년	보고	근로자 건강분석과 재해원인 분석	업무상 사고 출퇴근 사고	-
스페인	1년	보고	정보제공 예방조치 수립	업무상 사고 출퇴근 사고	휴업 1일 이상
스웨덴	반기	보상	산재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업무상 사고 출퇴근 사고 (업무관련성 사고)	휴업 1일 이상
스위스	1년	보상	산재보험료 결정 안전보건예방조치 촉진	업무상 사고 출퇴근 사고 업무상 질병	휴업 3일 이상
터키	-	보고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사고 (업무관련성 사고)	-

2) 분석

개별 국가마다 산재발생 현황 및 분석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되고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ILO의 LABORSTA의 업무상 재해(Occupational Injuries)자료를 통해 OECD 국가별 발간주기, 생산자료 대상, 생산목적과 산출대상 재해와 포함되는 산출범위 등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다만, 칠레,

룩셈부르크는 관련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생략하였다.

아래에서는 OECD 국가별 주요 현황과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간주기

구분	대상국가	비고
연간 1회	한국, 독일, 일본, 연국,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기타	분기: 헝가리 반기: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2년 멕시코	
미제시	아이슬란드, 터키	

(2) 생산자료

구분	대상국가	비고
보상자료	한국,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칼, 스웨덴, 스위스	
보고자료	일본, 영국,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2년 멕시코	

기타자료	서베이자료: 미국 행정자료: 아이슬란드	

(3) 생산목적

구분	대상국가	비고
산재예방	한국, 독일, 영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이, 스웨덴, 스위스	
근로감독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보고자료 활용 국가
보험급여지급 현황	그리스, 뉴질랜드, 스위스	보상자료 활용 국가
재활	독일, 뉴질랜드	보상자료 활용 국가
미제시	일본,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이슬란,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터키	

(4) 산출재해

업무상 재해 범위	대상국가	비고
업무상 사고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사고	독일, 호주(수집 O, 발간 X), 에스토니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노르웨이(업무관련성 출퇴근 사고),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업무관련성 출퇴근 사고)	보고자료 활용 국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캐나다, 덴마크(편집 O, 발간 X), 아이슬란드	보상자료 활용 국가
업무상 사고, 출퇴근 사고, 업무상 질병	핀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업무관련성 출퇴근 사고), 스위스, 터키(업무관련성 출퇴근 사고)	보상자료 활용 국가
미제시	일본,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이슬란,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터키	

(5) 산출범위

구분	대상국가	비고
휴업 1일 이상	미국,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휴업 3일 이상	독일, 호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위스	
휴업 4일 이상	일본	
휴업 미적용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터키	
요양 4일 이상	한국	

Ⅲ. 국내 산재통계 현황 및 분석

1. 산재통계 현황

1) 개요

산재통계가 공식적으로 공표(발간)되는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 분석이며, 이 연보는 산업재해조사 개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구성	내용
조사목적	○ 이 조사는 산업재해의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발생시기별, 원인별 분포와 재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등 특성을 파악하여 산업재해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일반통계(승인번호 118006호*)이다. * 11806호 → 118006호(2016. 8. 28. 승인번호 체계변경, 통계청)
조사 연혁 및	1975. 8. 11 총리령 제154호에 따라 보고양식 44-4호로

주기	최초 승인을 받은 이후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지방 고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적용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별도로 수록하였음
분석 방법	○ 제1장의 총괄과 제2장의 전체 재해 현황 및 분석은 2017.1.1~2017.12.31 중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 재해를 규모별, 성별, 연령별 등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 제4장의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 중 “1. 전체 사망재해 현황” 및 “2. 업무상사고 사망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유족 급여지급이 결정된 사망자수(지방고용 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규모별, 성별, 연령별 등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고, “3. 조사대상 사망재해 원인분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86호, ’16.3.30.) 제27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재해 중 사망재해자를 발생형태별, 기인물별 등 원인별로 분석하였다. ※ 제4장의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 중 “1. 전체 사망재해 현황” 및 “2. 업무상사고 사망재해 현황”의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공표방법 및	○「산업재해 현황 분석 연보」 발간 및 고용노동부 홈페

시기	이지 게시(매 익년 하반기)
공표주기	매년

위 산재현황 통계 개요에 따르면, 조사목적은 재해발생 상황과 원인을 파악·분석하여 재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이며, 조사대상은 산재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과 4일이상 요양)다. 다만, 분석방법은 전체 산재 현황 및 분석과 전체 사망재해 현황 및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은 요양신청서와 산재미보고 적발재해를 토대로 실시되며, 조사대상 사망재해 원인분석은 근로감독관의 재해현장 조사자료를 토대로 원인별로 분석한다. 사망재해에 대한 원인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사망재해 원인분석
가. 발생형태별
나. 기인물별
다. 관리적 원인
라. 직접원인별(불안전한 상태)
마. 직접원인별(불안전한 행동)
바. 작업내용 및 과정별
사. 상해종류별
아. 상해부위별
자. 동시작업인원별
차. 동시재해 유발자수별

한편 2017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제7장 산업재해분석 참고자료」에 따르면 2017년 산업재해발생보고 현황(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을 별도로 수록하고 있다. 산안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 조사표를 바탕으로 업종, 규모, 발생형태, 기인물, 작업공정, 작업내용 등 재해발생 원인분석·제공하고 있으며, 분석대상은 2017.1.1. - 2017.12.31.인

재해자 52,476명과 그 중 사고사망자 876명이다.

재해발생 원인분석
□ 산업별
□ 규모별
□ 성별
□ 연령별
□ 직종별
□ 발생형태별
□ 기인물별
□ 작업지역·공정별
□ 작업내용별

2) 2017년, 2018년 산재발생 현황

2017년도 산재법 적용사업장 2,507,364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8,560,142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89,848명이 발생(사망 1,957명, 부상 79,449명, 업무상질병 이환자 8,190명)하였고, 재해율은 0.48% 이었다.[17] 그리고 2018년 재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6% 증가하여 0.54%이며, 재해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457명(13.9%) 증가된 102,305명이다.[18]

17) 고용노동부, 2017 산업재해현황분석, 2018, 9면.
18) 고용노동부,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19, 15면.

구분	’18년	’17년	증감
○ 근로자수(명)	19,073,438	18,560,142	513,296
○ 사망만인율(‰)	1.12	1.05	0.07
- 사고 사망만인율	0.51	0.52	-0.01
- 질병 사망만인율	0.61	0.54	0.07
○ 사망자수(명)	2,142	1,957	185
- 사고사망자(명)	971	964	7
- 질병사망자(명)	1,171	993	178
○ 재해자수(명)	102,305	89,848	12,457
- 사고재해자(명)	90,832	80,665	10,167
- 질병재해자(명)	11,473	9,183	2,290
○ 재해율(%)	0.54	0.48	0.06
- 사고재해율(%)	0.48	0.43	0.05
- 질병재해율(%)	0.06	0.05	0.01

※ 재해자에는 ‘18.1.1.부터 확대적용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 제외

※ 사망자수 및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산재통계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2017년 사고사망자수는 964명으로 5명 줄어들었지만 질병사망자수가 2016년 대비 185명(22.9%) 늘어난 993명으로 집계된 영향이 컸다. 2018년은 사고사망자수는 971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질병사망자수도 1,171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한 이유는 산재신청건수가 증가했고, 실제로 산재를 신청한 재해자수는 2016년 1만3436명에서 2017년 1만4874명으로 10.7% 늘어났다.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50.2%에 불과했지만 '추정의 원칙'이 도입된 9월부터 12월까지는 승인율이 58.3%로 8.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6년 산재현황 휴업통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분석 통계 자료 중 별도 수록된 부분에 휴업급여 지급일 기준 휴업재해 현황을 공표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재해자수 90,656명 중[19] 휴업급여 지급 재해자수는 68,918명[20]으로 산재현황통계의 휴업재해자 통계 비중은 약 76%이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업무상사고 재해자수에는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는 제외하지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16년 휴업기간별 휴업재해 현황은 91-180일 재해가 22,050명(32.0%)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29-90일 재해가 20,051명(29.1%)이 발생하였다. 91-180일 재해는 22,050명으로 전년(22,331명) 대비 -281명(-1.26%)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29-90일 재해는 20,051명으로 전년(19,647명) 대비 404명 (2.06%)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

(단위: 명, %, %p)

19) 고용노동부,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17, 16면.
20) 고용노동부, 2017 산업재해현황분석, 2018, 711면
21) 고용노동부, 2017 산업재해현황분석, 2018, 716면

구분	2016년		2015년		증감		증감율	
	재 해 자 수	비중	재 해 자 수	비중	재 해 자 수	비중	재 해 자 수	비중
총계	68,918	100.00	68,391	100.00	527	0.00	0.77	0.00
4~7일	1,775	2.58	1,648	2.41	127	0.17	7.71	7.05
8~14일	3,000	4.35	2,837	4.15	163	0.20	5.75	4.82
15~28일	5,944	8.62	5,956	8.71	-12	-0.09	-0.20	-1.03
29~90일	20,051	29.09	19,647	28.73	404	0.36	2.06	1.25
91~180일	22,050	31.99	22,331	32.65	-281	-0.66	-1.26	-2.02
181일이상	16,098	23.36	15,972	23.35	126	0.01	0.79	0.04

다른 한편 2016년 규모별 휴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5인 미만이 24,447명(35.5%)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10-29인이 16,357명(23.7%)이 발생하였으며, 10-29인 사업장(407명), 50-99인 사업장(278명), 100인-299인 사업장(72명) 등의 순으로 증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22]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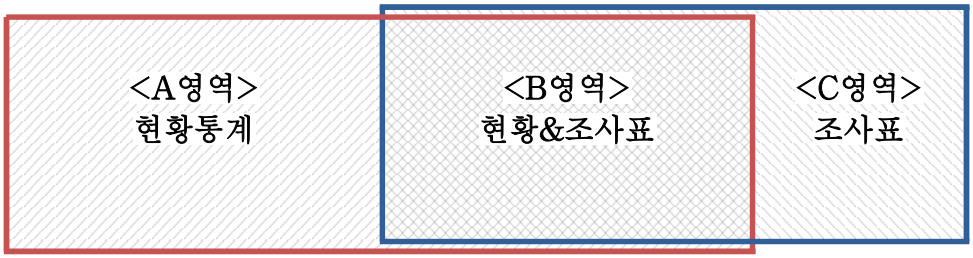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5년		증감		증감율	
	재해자수	비중	재 해 자 수	비중	재 해 자 수	비중	재 해 자 수	비중
총계	68,918	100.00	68,391	100.00	527	0.00	0.77	0.00
5인 미만	24,447	35.47	24,602	35.97	-155	-0.50	-0.63	-1.39
5-9인	12,334	17.90	12,422	18.16	-88	-0.26	-0.71	-1.43
10-29인	16,357	23.73	15,950	23.32	407	0.41	2.55	1.76
30-49인	5,567	8.08	5,522	8.07	45	0.01	0.81	0.12
50-99인	4,541	6.59	4,263	6.23	278	0.36	6.52	5.78
100-299인	3,353	4.87	3,281	4.80	72	0.07	2.19	1.46
300-499인	780	1.13	742	1.08	38	0.05	5.12	4.63
500-999인	503	0.73	456	0.67	47	0.06	10.31	8.96
1,000인이상	1,036	1.50	1,153	1.69	-117	-0.19	-10.15	-11.24

22) 고용노동부, 2017 산업재해현황분석, 2018, 714면.

2. 보상통계와 보고통계 연관성 분석

1) 보상통계와 보고통계의 중복 현황

<A영역> 현황통계에만 있는 자료
<B영역> 현황통계와 조사표가 중복되는 자료
<C영역> 조사표에만 있는 자료로 구분할 수 있음



- 2017년도 기준 A영역은 4일 이상 요양 대상 재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다.

- B 영역은 4일 이상 요양 대상 재해자와 3일 이상 휴업 대상 재해자가 중복되는 부분이다.

- C 영역은 3일 이상 휴업 대상 재해자 영역을 나타낸다.

- 그렇다면 A 영역의 재해자 중 휴업급여를 받은 재해자를 제외하면, 요양급여만을 받은 재해자 규모가 추산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더라도 B 영역에서 휴업 3일과 요양 4일에 따른 재해자 규모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 요양급여 재해자 규모가 도출되어도 실제 양 통계의 규모 파악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 따라서 C+B영역과 A+B영역의 집계규모 차이는 산재은폐, 조사표 제출의 지연, 사업장 폐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B+C영역의 규모가 A+B영역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C 영역 조사 연구의 함의

- C 영역은 산재발생보고는 하였으나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해당 영역 자료는 한편으로 공상처리를 한 3개월 이상 중상해 재해자의 경우 요양 이후에도 많은 후유증이나 장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요양기준으로 추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산재요양을 신청하지 않은 원인파악과 산재신청 유도방안을 제안하여 통계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C 영역의 요양 미신청 사례 원인 분석과 신청 유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검토결과는 후술하도록 한다.

3. 보상통계와 보고통계의 통합통계 산출

1) 의의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통계와 산재발생 보고통계의 분리의 타당성은 지극히 현재의 통계산출 목적이 산재법상 산재발생 규모 집계와 산안법상 산재예방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산재유형과 산재건수의 정확도를 찾아서 국가 산재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

해 산재통계가 생산되는 이유이므로 다양한 통계수단을 활용하여 예컨대, 양 통계치 중에서 중복되는 것을 하나의 재해로 본다면 보다 정확한 통계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 산재보고는 되어 있으나 산재처리가 공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산재미처리 유인을 찾고 산재처리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경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문제는 보상통계와 보고통계 자료를 통합하여 공식 통계나 지표로 활용할 경우 기존 보상통계 자료의 신뢰성, 축적된 DB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보고통계가 흡수되는 형태로 활용될 것이므로 보고통계를 마련해 운영하는 취지 유지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더 나아가 양 통계는 작성대상, 적용법률, 작성기준, 운영기관, 작성자 등이 모든 다른 자료로서 서로 다른 목적과 기준에 따라 독립적 통계로 운영 공표되어 온 것을 통합 공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은 점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보상통계와 보고통계 통계 산출 방법 불일치 요인

(1) 보상통계와 보고통계 업종분류체계 불일치

① 산재보험요율 적용 업종분류(보상통계)

- 공식통계로서 보상통계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자료는 산재보험요율에 근거한 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어 산업재해 현황 역시 동 분류에 의거해 산출된다.[23] 산재보험요율에 근거한 산업분류에 관한 근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매년

23)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통계정보 보고서, 2017, 4면.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기준이다.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0. 금융 및 보험업	6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1. 광업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8
석탄광업 및 채석업	225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57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8
2. 제조업		통신업	9
식료품 제조업	16	**6. 임 업**	72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7. 어 업**	2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8. 농 업**	20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0	**9. 기타의 사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9	기타의 각종사업	9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 제조업	7	전문기술서비스업	6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1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6
금속제련업	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8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 제조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8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8	사업서비스업	8
4. 건 설 업	36	* 해외파견자: 15/1,000	

- 금융 및 보험업을 비롯한 농업 까지 9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기타의 사업에 10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총 19개 산업분류 기준에 따르고 있다.

② 산업재해조사표 적용 업종분류

- 보상통계의 경우와 달리 보고통계의 산업분류는 산재보험요율에 따른 분류가 아닌 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다.

대 분 류	업종구분	중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B	광 업	(05~08)
C	제 조 업	(10~3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39)
F	건 설 업	(41~42)
G	도매 및 소매업	(45~47)
H	운수 및 창고업	(49~52)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J	정보통신업	(58~63)
K	금융 및 보험업	(64~66)
L	부동산업	(6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P	교육 서비스업	(8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97~98)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③ 보상통계와 보고통계의 업종별 비교의 의미

- 산재보험의 업종분류가 산재보험요율과 관련이 있고, 산재보험요율은 기초요율과 개별실적요율 등 사회보험으로서 연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위험부담의 연대성 측면에서 집단별, 위험별 분류체계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는 산재예방의 측

면, 산재보험운영 경비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업종분류 및 그에 따른 보험요율산정은 업종간 형평성과 보험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기본적인 토대 위에 업종분류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농업가지 9개 업종 이외에 나머지 10개 업종은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해 구분하고 있는데, 보험료 부담과 관련한 불공정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분류화가 지속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통계 구분 분류기준 자체가 위험의 재구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업종 재분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제 이질적인 유형의 업종들이 기타 산업으로 함께 묶여 분류되고 있다.
- 반면에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1963년 3월 경제활동 중에서 우선 광업과 제조업 부분에 대한 산업분류를 제정하였고, 이듬해 4월 비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분류를 추가로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체계를 완성하였다. 표준산업분류체계는 무엇보다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업종 및 생산 공정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산업의 분화과정을 참작하여 그 분류체계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의 동질성 차원에서는 현재의 산재보험의 분류체계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준산업분류체계가 산업활동의 유사성을 최대한 유형화하여 특성별 분류를 위험의 정도 및 종류 등에 따라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 물론 재해율을 토대로 업종간의 조정과 업종의 재분류 작업이 산재통계 생산 목적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 오히려 표준산업분류체계보다 산재보험의 업종분류체계가 타당할 수 도 있으나, 이러한 타당성이 존재할만한 영역도 결국 산재예방의 목적과 연관되는 개별실적요율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고 하여 산재보험의 업종분류 체계를 보험운용상의 비용적인 측면의 업종형태와 예방요율 운용을 위한 측면의 업종형태

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 개별 업종분류체계의 장단점과 불일치의 원인 분석 그리고 개별 사업장의 업종분류 적용시 타당성 문제 등 다양한 실태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업종분류 체계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보상통계의 요양 산정기준과 보고통계의 휴업 산정기준의 불일

- 양 통계의 불일치가 이루어지는 요인으로서 산재법상 요양건수 산정기준인 4일 요양인데 반해 산안법상 보고건수 산정기준인 3일 휴업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기준간의 차이에 따른 재해자 수 규모를 현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요양 재해자수가 휴업 재해자수 보다는 그 규모가 클 것이므로 산재발생 요양통계 수치가 보고통계 수치보다는 높을 것이므로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3) 보상통계의 요양승인일과 보고통계의 산재발생일 기준의 불일치

- 그리고 보상통계는 요양승인일 기준으로 산출되나 보고통계는 산재발생일 기준으로 산출되어 재해발생 이후 요양승인까지 소요기간이 길 경우 통계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발생 보고통계는 유족급여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망자가 통계에 산입되나 보상통계의 경우 유족급여 지급일을 보상통계 산입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동일한 재해에 대해 동일한 년도에 통계로 집계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4) 작성자

- 일반적으로 보상통계의 경우 신청자가 재해자 본인이며, 산재승인을 위해

가능한 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기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는 체계이다. 게다가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올해는 산재신청 서식 간소화(기재항목 대폭 축소) 및 온라인 신청 등 신고정책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재해조사표의 경우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실제 제도 이해정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정보 제공이나 활용의 측면에서 신뢰도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5) 근거법률과 그에 따른 적용목적의 상이성

- 보상통계의 경우 근거법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며 운영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의 사무인데 반해 보고통계의 경우 근거법률이 산업안전보건법이며 운영주체가 안전보건공단이다. 보상과 예방이라는 서로 다른 적용목적을 위해 별개의 기관이 관장하며 그에 따라 특화되어 있는 조직 체계(담당 업무 직원 규모 등)와 고유업무의 비중 등에 있어서도 상이성을 띄고 있어 산재통계를 일괄적으로 구축하고 연계하여 생산하기 위해서는 통계관리 전반에 대한 전략수립과 법률적 근거 등 법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OECD 국가와 비교

- OECD 국가의 산재통계 생산자료와 대상재해 그리고 공표주기 등 다양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산재통계를 보상자료와 보고자료를 통합하여 산출하는 국가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보고통계의 공식통계

- B+C 영역을 공식통계로 활용할 경우 현행 보상통계는 보조지표로 사용되어 질 것이다.

- 현실적으로 산재발생 예방통계는 보상통계와 달리 상이한 조사항목(재해발생 과정 및 원인)과 추가적인 분석(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통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 둘은 상이한 목적으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이원화된 통계 분석의 당위성에 따르면, 기존 공식통계로서 보상통계와 보조통계로서 보고통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산재통계 자료의 문제점이 보고통계의 공식통계화의 경우에도 그대로 되풀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실제 A+B 영역(보상)이 B+C 영역(보고)과 비교해 통계 산출 방법에 따르면 그 규모가 큰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통계에 대한 불신 및 산재은폐 문제가 현안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보다 통계수치 감소를 위한 통계 활용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보상통계의 공식통계 유지

- 산업재해 현황을 파악하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분석과 산업재해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인 있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산업재해원인조사 모두 산업안전보건 예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을 목적으로 하면서, 요양이 결정된 재해자의 재해 현황을 통계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 2014년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재 발생 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해야 한다” 는 내용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에 의한 「산업재해현황통계」와 중복되어 2015년 9월 1일자로 「산업재해원인조사」 작성승인이 취소되었고, 2014년 마지막 산업재해원인조사(업무상 사고)에서도 조사의 목적이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 및 안전·보건 관련 단체,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이용될 수 있도록 업무상사고의 발생과정 및 원인을 조사하여 사고에 영향을 미친 작업수행상의 요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한편, OECD 국가 중 (데이터 미제공 2개국 제외) 산재통계로서 보상통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15개국이며 보고통계는 17개국임. 미국은 서베이와 인구조사방식을 아이슬란드는 경제활동 통계자료(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OECD 국가 산재통계 현황에서 통계생산목적에 따르면, 보상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대부분 산재예방 정책 수립 및 활용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고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주요 생산목적이 산재예방과 재해원인 분석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감독 대상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 보상통계와 보고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공통적인 통계상의 적용 기준이 많지 않아 통계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보상통계의 경우 최대한 그 규모 집계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크고 보고통계의 경우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가 높은 조사표 작성 및 제출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산재통계의 공식적인 생산자료가 보상된 자료에서 또는 별도의 보고대상 자료에서 수집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계의 목적이 산재예방조치 수행과 정책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산재통계의 기능과 역할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지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산재통계와 관련한 개선방안은 별도로 후술하도록 한다.

제 3 장 산재통계 실태조사

Ⅰ. 조사설계

1. 조사개요

산업재해 보고 후 요양 미 신청 사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공받은 리스트의 사업장 중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 2017년 산업재해보고 자 중 요양미신청자(11,588건)
조사기간	▶ 2019년 7월 1일(월) ~ 9월 20일(82일)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
표본추출	▶ 2017년 산업재해보고 후 요양미신청자 중 300 사업장 및 근로자
표본추출방법	▶ 편의 무작위 표본 추출방법
조사기관	▶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서베이센터 및 경남사회조사연구원

2. 조사 문항

구 분	조사영역	조사내용
사업주	A. 인적사항	1. 회사정보 2. 응답자 정보
	B.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요양신청 관련 제도의 인지	1 - 4번 문항
	C.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1 - 11 문항
	D. 산재보험급여 미신청(공상) 처리 요인	1 - 8 문항
	E. 개선방안	1 - 3번 문항
근로자	A.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1 - 6번 문항
	B. 산재보험급여 미신청(공상) 처리 요인	1 - 7번 문항
	C. 개선방안	1 - 3번 문항

3. 표집 대상 수

- 2017년 산업재해보고 후 요양 미신청건수는 11,588 건이지만 이 중 분류불능대상자를 제외한 8,214건 중에서 아래의 분류에 기준에 따라 편의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300개 사업장을 표집함

규모 * 업종 교차표					
구 분		규모			**전체**
		50인 미만기업	50인이상 300인 미만기업	300인이상기업	
업종	제조업	51	28	45	**124**
	건설업	51	10	7	**68**
	기타	71	24	13	**108**
전체		**173**	**62**	**65**	**300**

4.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설문자료는 사회과학통계프로그램인 IBM SPSS Statistics (V.25)를 이용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 (Crosstabs Analysis) 등의 분석을 실시함.

Ⅱ. 설문조사

1. 설문조사결과 분석(근로자)

1) 표본

구 분		규 모			전체
		50인 미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35	26	6	67
		52.2%	38.8%	9.0%	100.0%
	건설업[24]	6	7	0	13
		46.2%	53.8%	0.0%	100.0%
	기타	7	14	6	27
		25.9%	51.9%	22.2%	100.0%
전체		48	47	12	107[25]
		44.9%	43.9%	11.2%	100.0%

2) 요약

24) 근로자 300인상 대기업의 경우 사고가 주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현재 공사가 완료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료수집이 거의 불가능함

25) 업종, 규모 미 응답자 제외

(1) 산업재해 치료기간

○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치료기간은 30일 미만이 55.7%, 30일-90일 미만은 22.1%로 나타났지만 90일 이상도 18.6%로 나타났음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30일미만이 50.0% 인 반면, 건설업은 81.9%, 기타업종은 57.7%로 비율적으로 보면, 제조업종의 치료기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2) 재해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 원인

○ 재해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 원인으로는 본인의 과오가 5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작업과정의 문제가 24.8%로 등으로 나타나 산재사고는 본인의 과오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본인의 과오가 66.6%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53.8%, 기타 업종이 38.5%로 비율적으로 보면 제조업이 본인의 과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 이유(제도적 이유)

○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 이유로 산재인정이 안 될 것 같아서와 산재처리 절차가 까다로워서가 32.6%, 회사 불이익과 정부규제의 부담 때문이 34.9%로 나타나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이유로 주로 절차가 힘들거나 회사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보험급여신청을 안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산재보험 처리 시 사업장 감독 등 정부규제의 부담이 31.9%, 건설업은 회사가 산재보험요율 인상 등 향후 발생할 불

이익의 예상이 55.6%, 기타 업종은 산재인정이 안 될 것 같아서가 50.0%로 가장 많이 나타나, 업종별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제도적) 이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 이유(비 제도적 이유: 재해자 관점)

○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 이유로 경미한 상해라고 생각해서가 35.8%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본인이 희망하거나+본인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서)가 27.7%인 것으로 나타나 산업재해가 주로 경미한 상해이거나 본인의 과실 혹은 희망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유로 일부 근로자들이 건강보험 및 개인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향으로 추정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경미한 상해라서가 56.1%, 건설업은 69.0%, 기타업종은 69.2로 나타나 업종별 역시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비 제도적)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 이유(비 제도적 이유: 제 3자 관점)

○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 이유로 본인과 안전관리자 등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가 3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가 34.8%, 회사가 공상처리를 종용해서가 12.9%로 많았음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기타가 44.4%, 건설업은 산재처리로 인해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가 60.0%, 가타업종은 기타가 35.2%로 나타나 업종별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제3자 관점)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6) 사고 후 치료비용의 부담주체와 방법, 별도보상

○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치료비용의 부담주체로 회사가 79.5%, 본인부담이 12.5%로 나타났지만, 사고 후 치료비 계산방법은 건강보험 및 개인실비보험이 32.4%, 일반이 25.2%로 나타났으며, 근재보험(회사)이 31.5%로 나타나, 일부 개인부담과 일반으로 처리한 것을 추후 비공식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응답자의 49.2%가 휴업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22.1%)과 소정의 위로금(17.6%)까지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치료부담 주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회사부담이 90.0%, 건설업은 62.3%, 기타 업종의 경우는 56.0%를 부담해 주는 걸로 나타나 업종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치료비의 계산방법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겨우 근재보험(회사)이 24.6%, 건설업의 경우 일반이 53.8%, 기타업종의 경우 개인 실비보험이 3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 치료계산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치료비 이외의 별도보상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휴업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67.9%, 건설업은 69.2%, 기타업종은 54.2%로 나타나 업종별 별도보상에서도 차이가 잇는 것으로 나타남

(7)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로 휴업한 기간

○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로 휴업한 기간은 30일 미만(4일 이하 포함)(67.3%)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공상처리 이유가 경미한 상해라고 한 응답(35.8%)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30일 미만(4일 이하 포함)이 63.6%, 건설업은 76.9%, 기타업종은 73.8%로 업종별 실제 휴업한 기간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8) 산업재해보험 신청 유인 방안

○ 신청절차 간소화, 단순화 요청
○ 신청 의무화(법제화)
○ 회사 불이익 금지

(9) 산재발생 감소방안

○ 안전 관리 준수
○ 주기적인 교육
○ 근로자 의식개선
○ 작업환경 개선

(10) 산재발생보고제도 개선의견

○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자료로 신고에 갈음
○ 중대재해 외 경미재해 회사 불이익 금지
○ 보고 양식의 간소화

3) 설문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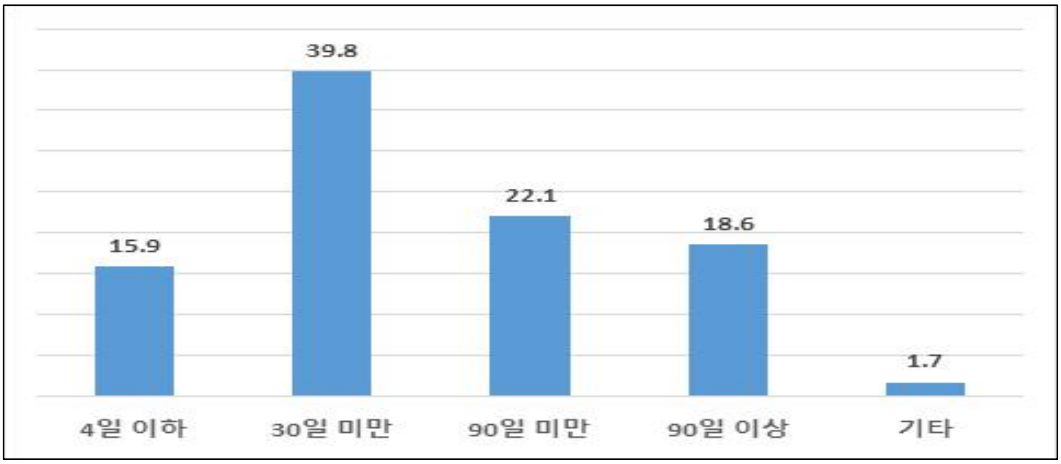
A.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1. 산업재해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① 4일 이하 ② 30일 미만 ③ 90일 미만 ④ 90일 이상 ⑤ 기타 (일)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4일 이하	18	15.0	15.9
30일 미만	45	37.5	39.8
90일 미만	25	20.8	22.1
90일 이상	21	17.5	18.6
기타	2	1.7	1.7
소계	113	94.2	100.0
무응답	7	5.8	
전 체	120	100.0	

기타	입원15일 통원5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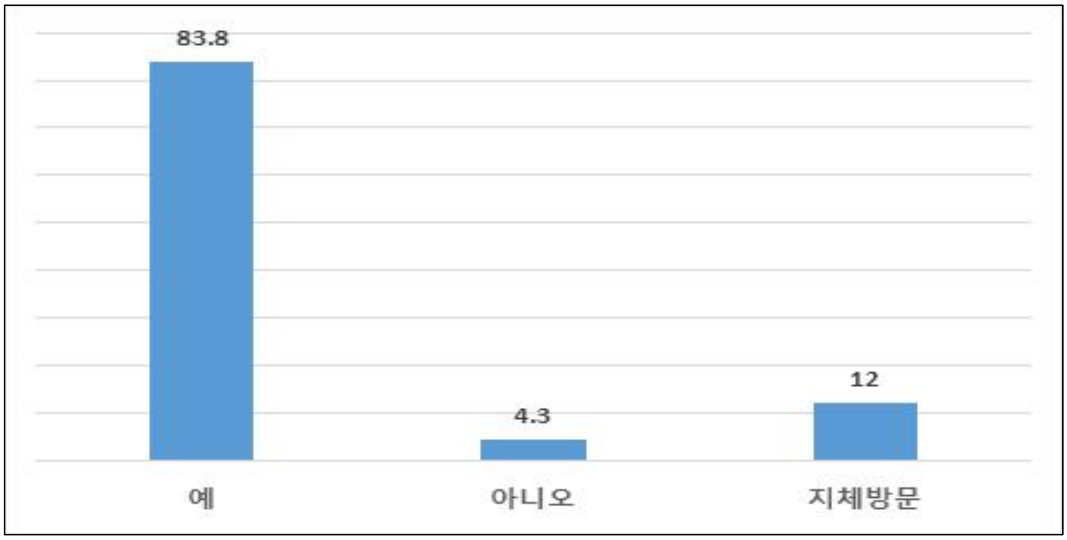


산업재해 발생시 치료기간은 30일 미만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90일 미만 22.1%, 90일 이상 18.6%, 4일 이하 15.9% 순으로 나타났음

2. 사고 발생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지체 방문(부상 정도에 따른 판단)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예	98	81.7	83.8
아니오	5	4.2	4.3
지체방문	14	11.7	12.0
소계	117	97.5	100.0
무응답	3	2.5	
전 체	1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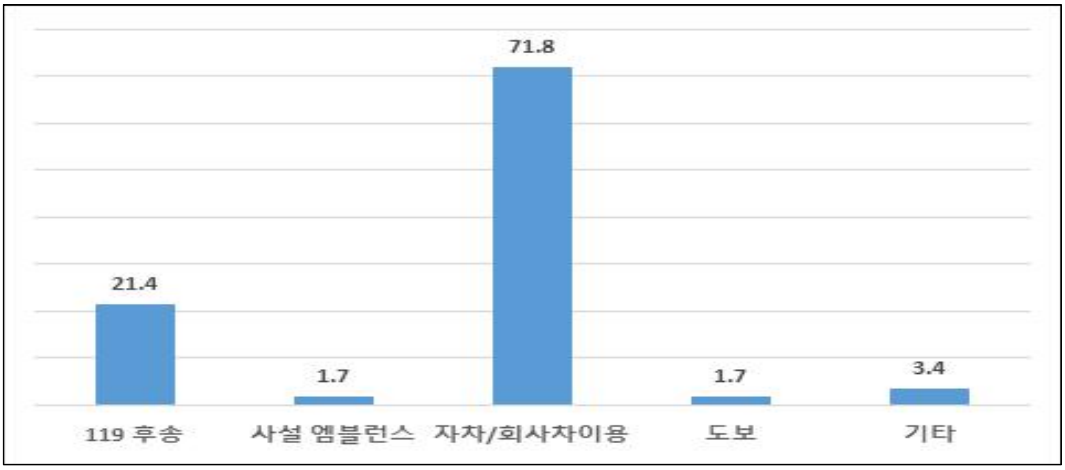


산업재해 사고 발생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83.8%가 방문하였지만 4.2%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났으며, 자체방문도 12.0%로 나타났음

3. 사고 발생 후 의료기관 방문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119 후송 ② 사설 엠블런스 ③ 자차/회사차이용 ④ 도보 ⑤ 기타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119 후송	25	20.8	21.4
사설 엠블런스	2	1.7	1.7
자차/회사차이용	84	70.0	71.8
도보	2	1.7	1.7
기타	4	3.3	3.4
소계	117	97.5	100.0
무응답	3	2.5	
전 체	1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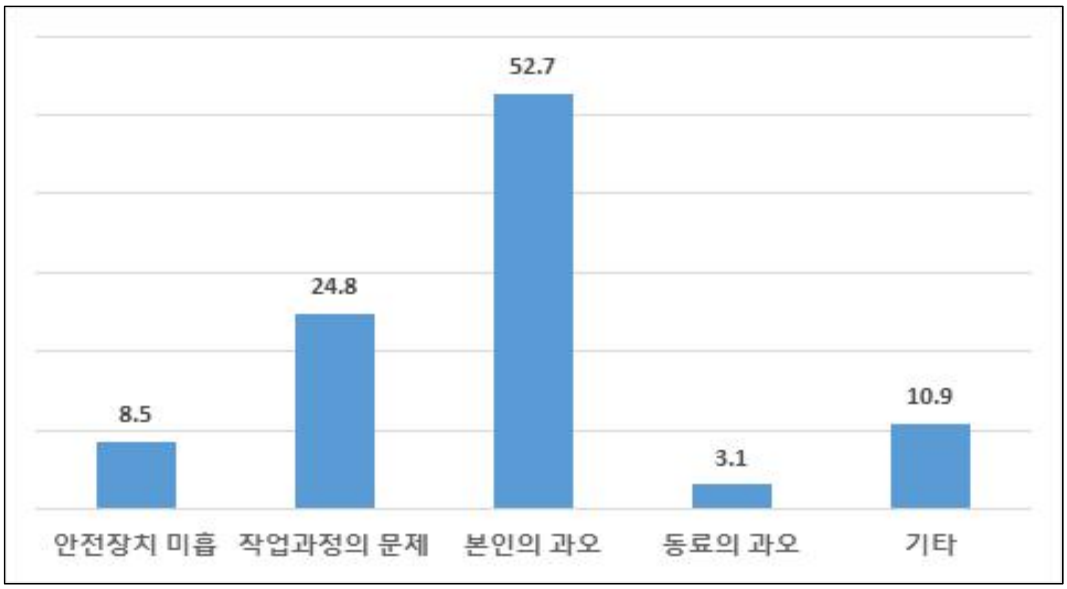


산업재해 사고 발생 후 의료기관 방문방법으로는 자차/회사차 이용이 7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19 후송이 21.4%, 기타 3.4%, 사설 엠블런스와 도보가 각각 1.7% 순으로 나타났음

4. 재해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 안전장치 미흡 ② 작업과정의 문제 ③ 본인의 과오 ④ 동료의 과오 ⑤ 기타

구 분	반응		케이스 중 %
	N(명)	비율(%)	
안전장치 미흡	11	8.5	9.4
작업과정의 문제	32	24.8	27.4
본인의 과오	68	52.7	58.1
동료의 과오	4	3.1	3.4
기타	14	10.9	12.0
전 체	129	100.0	110.3



재해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 원인은 본인의 과오가 5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작업과정의 문제가 27.4%, 기타 12.0%, 안전장치의 미흡 9.4%, 동료의 과오 3.4% 순으로 나타났음

5. 산업재해조사표에 기입한 사고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조업
결구작업 미준수
계단 발판 미고정
고소작업을 하기전 충분한 작업인지가 부족하고 랙 상부에서 부주의한 행동
근골격계
넘어져 부딪힘
롤러에 우측 손이 말려 들어감
미끄러짐
반복작업 및 안전 표준 미준수
보호장갑 미착용, 작업 미숙련
본인 부주의
불안전한 행동
불안정한 자세로 중량을 취급
선반끼임
순간의 방심
안전교육 미흡
안전모 미착용
안전수칙 미준수, 작업자 부주의, 서리이상
안전인식
안전장비 미사용
안전장치 설치되어 있으나 반응 속도가 늦음
연령 등 여러요인으로 인해 발가락 아픈 증상
옥상설비 점검중 발목을 삠
작업 부주의
작업발판 헛딛음
작업장 및 작업강도 증가
작업장소 불합리
작업장에서 미끄러짐
절단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발에 걸려 넘어짐
주의결핍 및 교육부족
철재자재인 데코일을 외주기공업체로 배송하기 위하여 상차준비 작업을 하던 중 철재자재인 데코일이 넘어지면서 다리를 파경한 재해
추락
출 퇴근시 산재처리
크레인/지게차를 이용해야 하는 작업을 인력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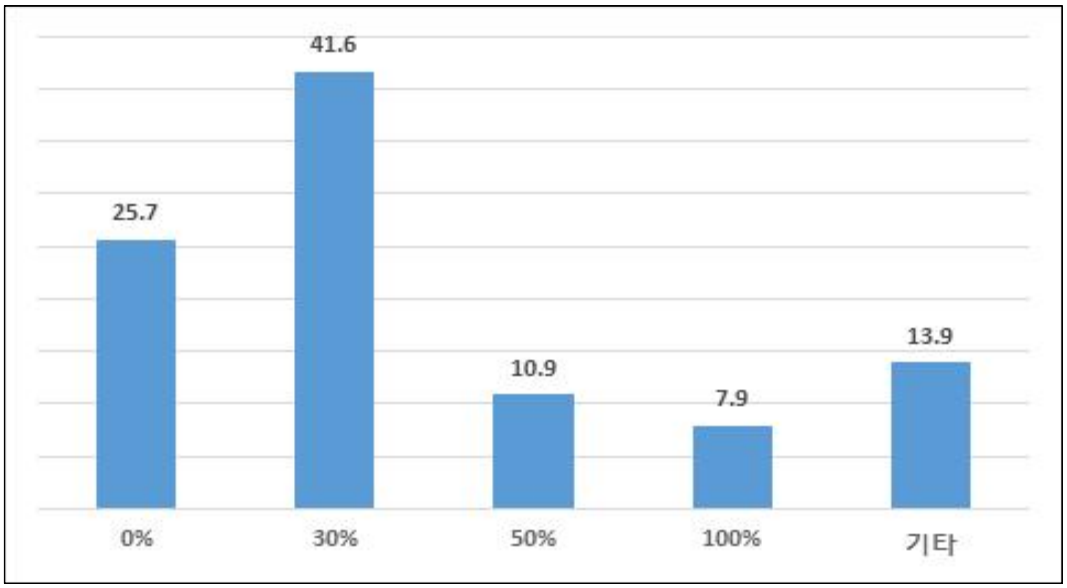
건설업
낙상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재를 제대로 보지 못해 넘어짐
배관설치잔업중 배관을 덜어드려 협착
생각안함
안전부주의
작업부주의
현장주변상황 인지미흡
협착

기타업종
과오와 다른 차량 과실
교통사고
기입한적 없음
도로면의 포트홀(패인 곳)로 인한 사고
미끄러짐(물기)
별목도중 철사가 엉켜 다리를 다침
본인 부주의
불안전한 행동
사내체육대회 도중 발목부상
산재 미처리(공상처리)
안전 수칙 미교육
안전에 대하여 수차례교육을 하지만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다.
업무상 사고 (도마가 떨어져 부상당함)
원인 파악하기 어려움
차량(스타렉스 구형) 접이식 의자를 내리는 중 미끌어짐
퇴근 재해

6. 재해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① 0% ② 30% ③ 50% ④ 100% ⑤ 기타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0%	26	21.7	25.7
30%	42	35.0	41.6
50%	11	9.2	10.9
100%	8	6.7	7.9
기타	14	11.7	13.9
소계	101	84.2	100.0
무응답	19	15.8	
전 체	1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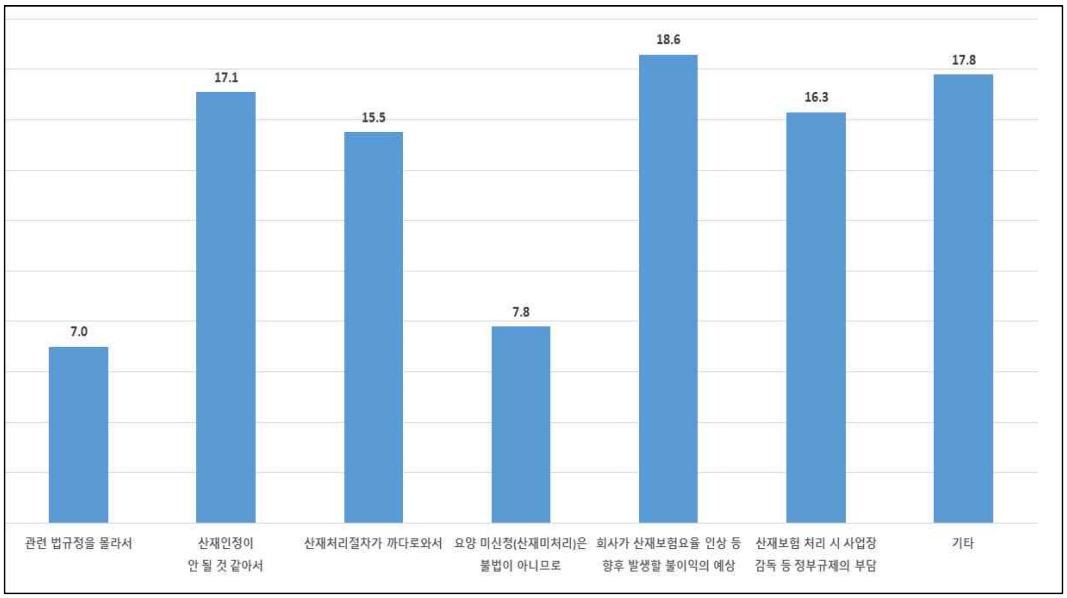
재해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과실 비율에서 30%가 4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0% 25.7%, 50%가 10.9%, 기타 13.9%, 100% 7.9% 순으로 나타났음

B. 산재보험급여 미신청(공상) 처리 요인

1.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제도적 이유)(중복 답변 가능)

① 관련 법규정을 몰라서　② 산재인정이 안 될 것 같아서
③ 산재처리절차가 까다로와서　④ 요양 미신청(산재미처리)은 불법이 아니므로
⑤ 회사가 산재보험요율 인상 등 향후 발생할 불이익의 예상
⑥ 산재보험 처리 시 사업장 감독 등 정부규제의 부담　⑦ 기타 (　　)

구 분	반응		케이스 중 %
	N(명)	비율(%)	
관련 법규정을 몰라서	9	7.0	10.7
산재인정이 안 될 것 같아서	22	17.1	26.2
산재처리절차가 까다로와서	20	15.5	23.8
요양 미신청(산재미처리)은 불법이 아니므로	10	7.8	11.9
회사가 산재보험요율 인상 등 향후 발생할 불이익의 예상	24	18.6	28.6
산재보험 처리 시 사업장 감독 등 정부규제의 부담	21	16.3	25.0
기타	23	17.8	27.4
전 체	129	100.0	153.6



기 타
경미한 사고라 판단
공무원 임
다친 부위가 며칠만(3~7일정도)치료하면 문제가 없어서
미미한 사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재보험 신청했음
산재신청 함
산재처리 과정이 길어서 임금이 나오지 않아 경제적으로 부담
산재처리 안함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판단
업무시간외에 부상을 입어 치료하지 않고 일하다가 덧나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안됨
조그마한 부상으로 병원 방문시에도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므로 산재처리 시 산재다발 사업장의 불행은 물론이고 사업장 감독 등 정부규제의 특별대상이 됨
처리하였음
추후 신청하였음
충분한 치료가 된 것으로 판단
회사에서 급여 지급 받음
회사에서 산재기준에 맞게 처리해 줌
경미한 사고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함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회사가 산재보험요율 인상 등 향후 발생할 불이익의 예상이 1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가 17.8%, 산재인정이 안 될 것 같아서가 17.1%, 산재보험 처리 시 사업장 감독 등 정부규제의 부담 16.3%, 산재처리절차가 까다로와서 15.5%, 요양 미신청(산재미처리)은 불법이 아니므로 7.8%, 관련 법규정을 몰라서 7.0%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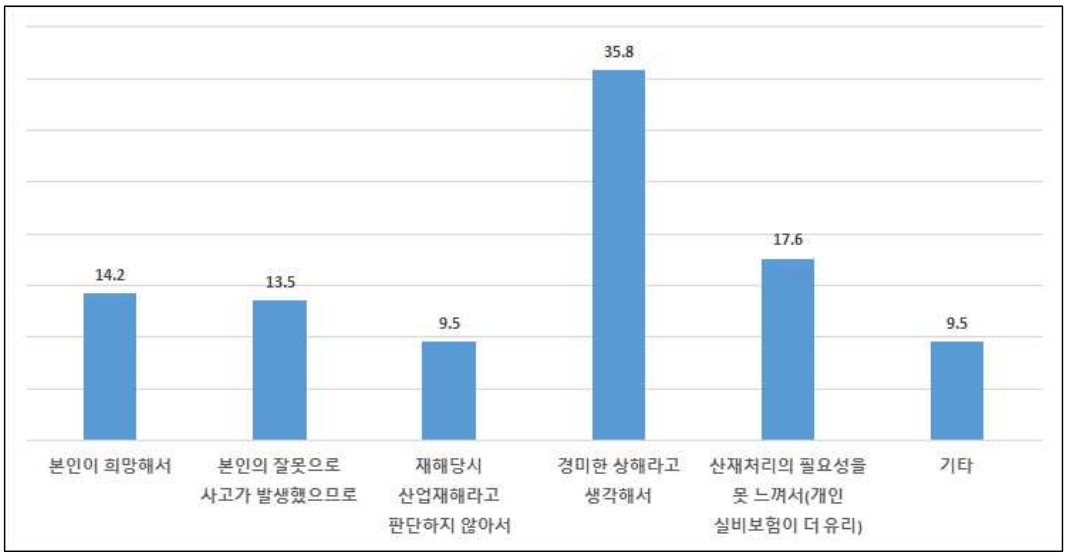
2.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비제도적 이유: 재해자 관점)(중복 답변 가능)

① 본인이 희망해서 ②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③ 재해당시 산업재해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④ 경미한 상해라고 생각해서

⑤ 산재처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개인 실비보험이 더 유리) ⑥ 기타 ( )

구 분	반응		케이스 중 %
	N(명)	비율(%)	
본인이 희망해서	21	14.2	19.8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20	13.5	18.9
재해당시 산업재해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14	9.5	13.2
경미한 상해라고 생각해서	53	35.8	50.0
산재처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개인 실비보험이 더 유리)	26	17.6	24.5
기타	14	9.5	13.2
전 체	148	100.0	139.6



기 타
개인 실비보험이 더 유리하고 개인적인 질병이었음
공무원
법규정 잘 모름
신청함
처리완료
산재요양 등으로 인해 동료 근로자의 업무 가중이 부담됨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제도적)는 회사가 산재보험요율 인상 등 향후 발생할 불이익의 예상이 1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가 17.8%, 산재인정이 안 될 것 같아서가 17.1%, 산재보험 처리 시 사업장 감독 등 정부규제의 부담 16.3%, 산재처리 절차가 까다로와서 15.5%, 요양 미신청(산재미처리)은 불법이 아니므로 7.8%, 관련 법규정을 몰라서 7.0% 순으로 나타났음

3.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비제도적 이유: 제3자 관점)(중복 답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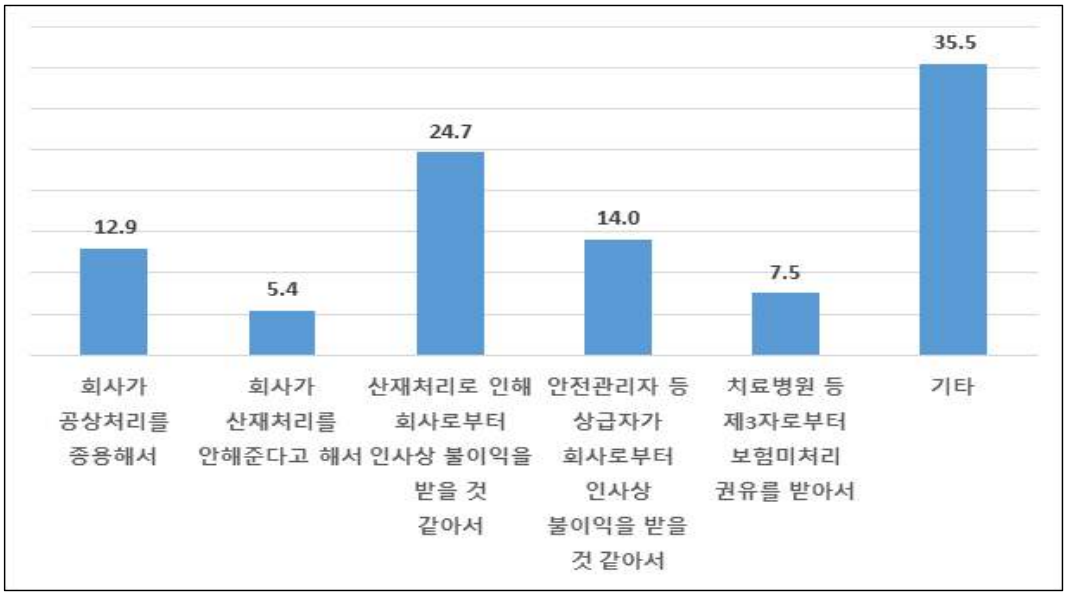
① 회사가 공상처리를 종용해서 ② 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준다고 해서

③ 산재처리로 인해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④ 안전관리자 등 상급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⑤ 치료병원 등 제3자로부터 보험미처리 권유를 받아서 ⑥ 기타 ( )

구 분	반응		케이스 중 %
	N(명)	비율(%)	
회사가 공상처리를 종용해서	12	12.9	14.8
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준다고 해서	5	5.4	6.2
산재처리로 인해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23	24.7	28.4
안전관리자 등 상급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13	14.0	16.0
치료병원 등 제3자로부터 보험미처리 권유를 받아서	7	7.5	8.6
기타	33	35.5	40.7
전 체	93	100.0	1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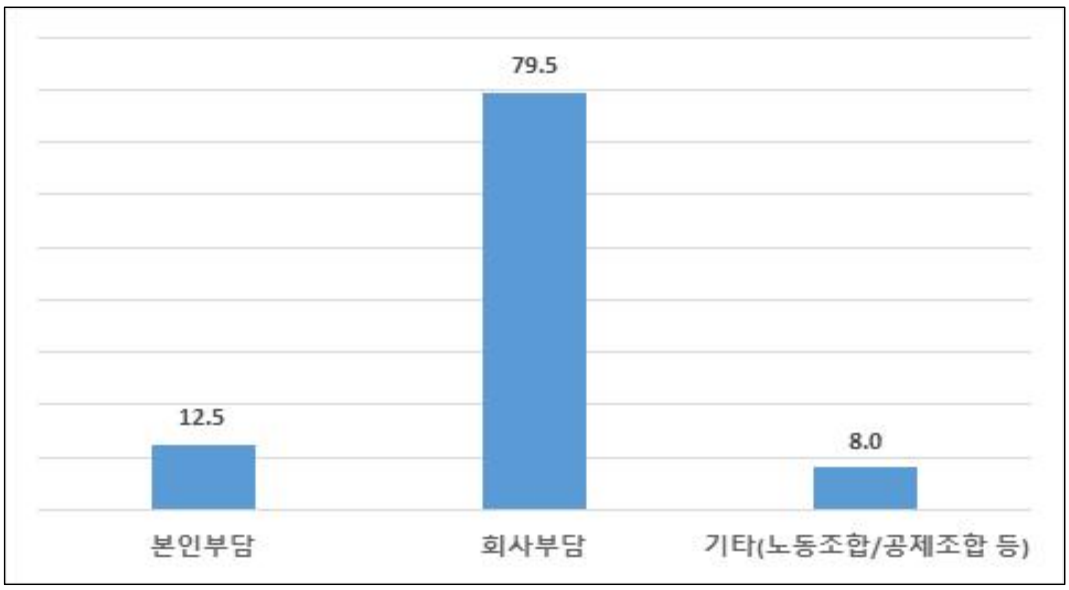
기 타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
가족이라 청구기각
경미한 부상일 경우(후유증 없음) 사내규정을 통하여 치료비도 받을 수 있기 때문(비급여 포함)
경미한 부상(긁힘, 부딪힘)
급여를 지급받음
몰라서
법규정 잘 모름
본인실수 경미한 부상
본인의 희망으로
신청함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
전액 회사에서 처리해 주어서
치료가 완료 된 것으로 판단
회사에서 산재기준에 맞게 처리해 주어서 산재처리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회사에서 자체 공상비로 지급하여 주었기 때문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비제도적)는 기타가 3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전관리자 등 상급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14.0%, 산재처리로 인해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24.7%, 치료병원 등 제3자로부터 보험미처리 권유를 받아서 7.5%, 회사가 공상처리를 종용해서 5.4% 순으로 나타났음

4. 사고 후 치료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본인부담 ② 회사부담 ③ 기타(노동조합/공제조합 등)

구 분	반응		케이스 중 %
	N(명)	비율(%)	
본인부담	14	12.5	12.7
회사부담	89	79.5	80.9
기타(노동조합/공제조합 등)	9	8.0	8.2
전 체	112	100.0	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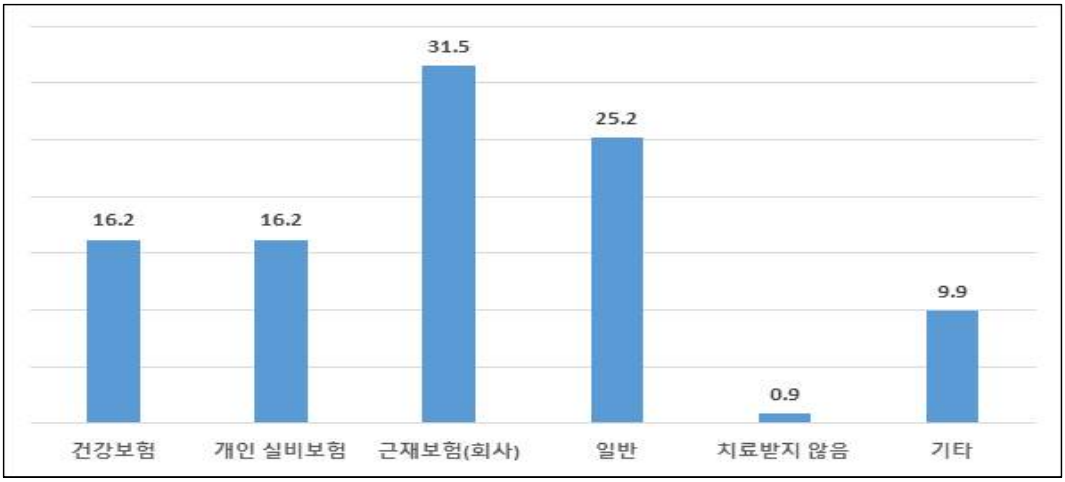


사고 후 치료비용의 부담 주체는 회사부담이 7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본인부담 12.5%, 기타(노동조합/공제조합 등) 8.0%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치료부담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5. 사고 후 치료비 계산방법은?

① 건강보험 ② 개인 실비보험 ③ 근재보험(회사) ④ 일반 ⑤ 치료받지 않음 ⑥기타

구 분	반응		케이스 중 %
	N(명)	비율(%)	
건강보험	18	16.2	17.1
개인 실비보험	18	16.2	17.1
근재보험(회사)	35	31.5	33.3
일반	28	25.2	26.7
치료받지 않음	1	0.9	1.0
기타	11	9.9	10.5
전 체	111	100.0	105.7



기 타
산재처리완료
회사 비용처리

사고 후 치료비 계산방법은 근재보험(회사)가 3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 25.2%, 건강보험, 개인 실비보험이 각각 16.2%, 기타 909%, 치료받지 않음 0.9%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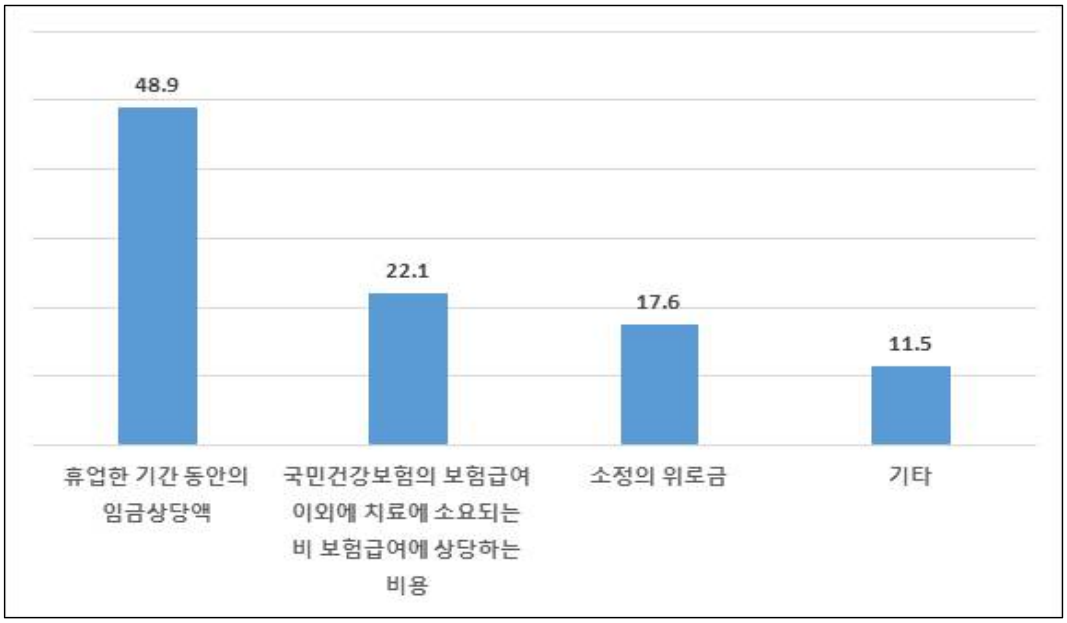
6. 치료비 이외에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지급하여 준 경우 해당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① 휴업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②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이외에 치료에 소요되는 비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

③ 소정의 위로금 **④ 기타 ( )**

구 분	반응		케이스 중 %
	N(명)	비율(%)	
휴업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64	48.9	64.6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이외에 치료에 소요되는 비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	29	22.1	29.3
소정의 위로금	23	17.6	23.2
기타	15	11.5	15.2
전 체	131	100.0	1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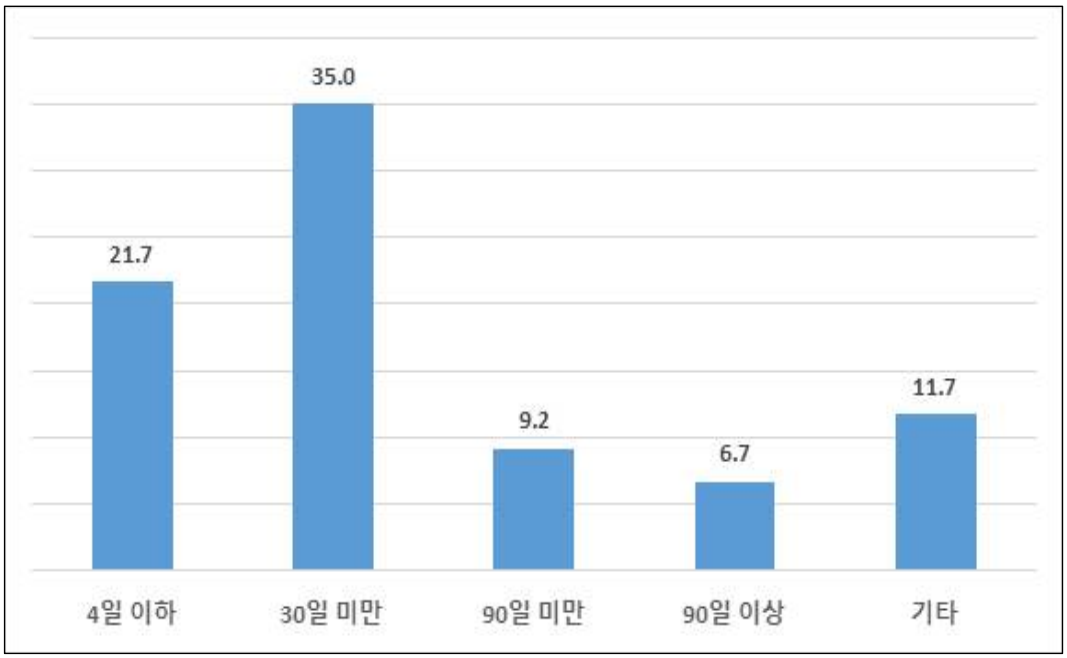
기 타
공상처리절차 없음
노사간의 합의 중 치료에 관련된 비 보험급여는 지원함
산재처리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만근으로 보고 연차발생일 및 휴무처리 정상 발생
양 중 퇴사

치료비 이외에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지급하여 준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4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이외에 치료에 소요되는 비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 22.1%, 소정의 위로금 17.6%, 기타 11.5% 순으로 나타났음

7.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휴업기간은(실제로 휴업한 기간)?

① 4일 이하 ② 30일 미만 ③ 90일 미만 ④ 90일 이상 ⑤ 기타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4일 이하	26	21.7	25.7
30일 미만	42	35.0	41.6
90일 미만	11	9.2	10.9
90일 이상	8	6.7	7.9
기타	14	11.7	13.9
소계	101	84.2	100.0
무응답	19	15.8	
전체	120	100.0	



기 타
다 나을 때까지
산재 교육 지침 내용 교육 자료필요
산재처리 45일 후 퇴사
휴업 없음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휴업기간은(실제로 휴업한 기간) 30일 미만이 3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일 이하 21.7%, 기타 11.7%, 90일 미만 9.2%, 90일 이상 6.7% 순으로 나타났음

C. 개선 방안

가. 업종별

제조업
산업재해 발생시 공상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은 방안에 관한 의견
간단한 재해시 까다로운 지급 방법 없다
근로 복지 공단의 사전관리 감독 철저
노동조합의 감시 및 산재 은폐에 대한 고발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자의 장기치료 및 후유증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산재처리가 타당하다고 봄. 회사에서 여유가 있다면 보험사에 단체 보험가입이 좋을 것 같음
산재 신고 의무, 산재요건 홍보
산재발생시 산재보험급여 신청 국정화
산재보험 처리시 사업장 감독 등 정부규제의 부담(ex1년 1번 점검을 2번 받음으로써 비용 및 업무증가요인)회사측 기피현상
산재보험급여 신청관련해서 행정적으로 간소화 됐으면 합니다.
산재신청후 급여부분은 별도로 추가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 필요함
산재처리방식이 단순화되었으면 함
산재처리시 가족은 제외하는 것이 이해가 안됨
산재처리시 위험작업장으로 분류되지 않게 하면 될듯
신청절차 간소화
신청절차 간소화 필요
실 급여 이상의 보험급여 지급
안전준수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재해 때 일정 레벨을 정하여 수준이하(경미)일 경우 감독관 의무 면제
표준 작업 교육 활성화(안전교육)
확실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사고 건에 대해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축소한다.
산업재해 발생 감소 방안
계속적인 교육, 주의 유해요소의 제거
근로자 개인들의 안전의식 개선 필요
근로자 안전의식 강화
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사전에 대비할 것

사고성의 경우 작업표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생산량에 대한 압박을 줄여야 함,근골격계의 경우 오전, 오후 유급으로 체조 강제 실시
사람이 우선이 되는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 변화
산업재해 방지와 관련한 안전장비 예산이 더 확대됐으면 합니다.
설비투자, 안전교육
안전관리 준수
안전예방교육 지속적으로 진행
안전장치점검 철저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교육을 통해서도 늘어나겠지만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
정부 지도 점검
제조업 근로자 안전 관련 지원
주기적인 교육
주기적인 안전교육(사업주에게)
지속적인 교육
직원 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현장의 관리 감독자의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업무시작 전 간단한 체조 또는 몸풀기로 근육이완을 해소 후 현장 작업 필요함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 관련 개선의견
24년 동안 일해 왔으나 산재발생과 함께 퇴직을 권유받음. 섭섭한 마음이 큼
1. 3일이상의 휴업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에 관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한다는 제도자체가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음. 2. 작은 산재만으로도 최소 2주 진단이 나오는데 매번 조사표를 작성 보고 하였을 때 지역 관할 노동부에서 조사표 접수 헛수고. 3. 사업장 지도 방문을 한다면 어느 사업장에서 3일 이상 휴업에 대한 조사표를 전부 작성해서 보고할 지 의문이 듦
경미한 사건이라도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무조건 산재로 처리해야 되는 제도 개선되어야 할 듯
근로자 및 사업주 안전의식
산업재해 발생시 우선적인 조치의 노동부신고 및 병원 담당자의 근로 복지공단 보고함 산재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구태여 노동부에 신고는 생략하여도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자료로 신고에 갈음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산업재해의 경증과 과실 상태를 잘 판단하여 서로가 피해를 줄였으면 좋겠다. 규제 강화만이 정부가 해야 할 것이 아닌 것 같다

산재 보고 시 중대재해(장애등급이상 또는 사망 등)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미한 재해보고에 대해서는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산재 승인 과정에서 4개월~5개월간 신청 및 조사에 소요, 이 기간동안 무급임 이에 대한 대출 등 임금자원에 대해 고민해야함, 업무 연관성 조사는 개별 노동자가 할 수 없음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절차나 원칙을 떠나 스스로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도 안되고 일반으로 치료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시정됐으면 좋겠다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시 공상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은 방안에 관한 의견
산재요율을 낮춰서 공상의 유입을 막고 산재조사는 철저히 해서 비용이 과다 지급되지 않게 관리
안전관리 철저
여유로운 작업일정
항상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주지 시키고 안전교육 필수
산업재해 발생 감소 방안
공상처리 법규상 금지
보상비율의 증가(0.73%에서 100%)
산재보험급여 신청 방법에 관한 교육,안내
산재보험급여 인상 및 휴업보상
산재요율을 낮춤
신고 절차 간소화
원청사 제재(불이익)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 관련 개선의견
사고 누락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산재가 발생이 되면 조건 없이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아야 산업재해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산재가 발생하면 조건없이 산재를 처리해 줘야 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아야 산업재해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재해자 과실 부분 반영

기 타 업 종
산업재해 발생시 공상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은 방안에 관한 의견
1.신청절차 간편　　2.보상도 공상에 가까운 수준이었음 함
사고발생시 전산으로 윈스톱 입력되게 S무응답을 개발하였음 좋겠다.
사업장 지도대상 및 관계자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 공단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장 담당자를 위주로 한 산재보험 실무교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재 발생에 따른 회사 부담 및 처리업무 속도
산재보험급여 신청 의무화(법제화)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
임금 100% 보존
산업재해 발생 감소 방안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재해 교육 부상 안전장치 확충
노사 양측 모두의 안전 인식과 사내 교육의 필요성
안전시설 학습 및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예방을 위한 예산지원
인원보충
작업공정상의 위험 요소 제거(개선),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주기적 실시
작업전 스트레칭 운동
작업환경개선요망
재해예방체계, 교육, 근로자(작업자)주의
정부에서 정기적인 교육 필요
근무환경 개선 등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 관련 개선의견
다친 후 병원에 갔을 때 경미한(약1주일이하)경우 굳이 산재처리 하는 것보다 자체공상으로 회사에서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자와 회사가가 서로 좋을 것 같음 산재처리보고는 최소한 1주일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
보고 양식의 간소화
상담개선 활성화
의미없는 제도

나. 규모별

50인 미만
산업재해 발생시 공상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은 방안에 관한 의견
간단한 재해시 까다로운 지급 방법 없다
사업장 지도대상 및 관계자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자의 장기치료 및 휴우증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산재처리가 타당하다고 봄.회사에서 여유가 있다면 보험사에 단체 보험가입이 좋을 것 같음
산재 신고 의무, 산재요건 홍보
산재발생시 산재보험급여 신청 국정화
산재보험급여 신청관련해서 행정적으로 간소화 됐으면 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인상 및 휴업보상
산재신청후 급여부분은 별도로 추가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 필요함
산재처리시 가족은 제외하는 것이 이해가 안됨
산재처리시 위험작업장으로 분류되지 않게 하면 될듯
신고 절차 간소화
신청절차 간소화
실 급여 이상의 보험급여 지급
안전준수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축소한다.
산업재해 발생 감소 방안
계속적인 교육, 주의 유해요소의 제거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를 철저히 차단하여 행동해야 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사전에 대비할 것
산업재해 방지와 관련한 안전장비 예산이 더 확대됐으면 합니다.
안전관리 준수
안전시설 학습 및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의식을높여야 합니다.
안전장치점검 철저
의견없음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교육을 통해서도 늘어나겠지만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 관련 개선의견
24년동안 일해 왔으나 산재발생과 함께 퇴직을 권유받음. 섭섭한 마음이 큼
경미한 사건이라도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무조건 산재로 처리해야 되는 제도 개선되어야 할듯
산업재해 발생시 우선적인 조치의 노동부신고 및 병원 담당자의 근로 복지공단 보고함 산재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구태여 노동부에 신고는 생략하여도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자료로 신고에 갈음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 보고 시 중대재해(장애등급이상 또는 사망 등)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미한 재해보고에 대해서는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절차나 원칙을 떠나 스스로 조심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도 안되고 일반으로 치료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시정됐으면 좋겠다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산업재해 발생시 공상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은 방안에 관한 의견
1.신청절차 간편 2.보상도 공상에 가까운 수준이었음 함
공상처리 법규상 금지
근로 복지 공단의 사전관리 감독 철저
사고발생시 전산으로 윈스톰 입력되게S시스템을 개발하였음 좋겠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 공단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장 담당자를 위주로 한 산재보험 실무교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재 발생에 따른 회사 부담 및 처리업무 속도
산재보험 처리시 사업장 감독등 정부규제의 부담(ex1년 1번 점검을 2번 받음으로써 비용 및 업무증가요인)회사측 기피현상
산재보험급여 신청 방법에 관한 교육,안내
산재보험급여 신청 의무화(법제화)
산재요율을 낮춤
신청절차 간소화 필요
원청사 제재(불이익)
임금 100% 보존
재해때 일정 레벨을 정하여 수준이하(경미)일 경우 감독관 의무 면제
확실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사고 건에 대해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 할 수 있

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감소 방안
근로자 개인들의 안전의식 개선 필요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재해 교육 부상 안전장치 확충
근로자 안전의식 강화
근무환경 개선 등
노사 양측 모두의 안전 인식과 사내 교육의 필요성
사람이 우선이 되는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 변화
산재요율을 낮춰서 공상의 유입을 막고 산재조사는 철저히 해서 비용이 과다 지급되지 않게 관리
안전관리 철저
안전예방교육 지속적으로 진행
여유로운 작업일정
예방을 위한 예산지원
인원보충
작업공정상의 위험 요소 제거(개선),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주기적 실시
작업환경개선요망
재해예방체계, 교육, 근로자(작업자)주의
정부 지도 점검
정부에서 정기적인 교육 필요
제조업 근로자 안전 관련 지원
직원 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 관련 개선의견
3일이상의 휴업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에 관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한다는 제도자체가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음 작은 산재만으로도 최소 2주진단이 나오는데 매번 조사표를 작성 보고 하였을 때 지역 관할 노동부에서 조사표 접수 헛수고 사업장 지도 방문 벙벙을 한다면 어느 사업장에서 3일 이상 휴업에 대한 조사표를 전부 작성해서 보고할 지 의문이듬
근로자 및 사업주 안전의식
다친 후 병원에 갔을 때 경미한(약1주일이하)경우 굳이 산재처리 하는것보다 자체

공상으로 회사에서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자와 회사가가 서로 좋을 것 같음 산재처리보고는 최소한 1주일이상 치료가필요한 환자에 한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
보고 양식의 간소화
사고 누락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증과 과실 상태를 잘 판단하여 서로가 피해를 줄였으면 좋겠다. 규제 강화 만이정부가 아닌 것 같다
산재가 발생하면 조건없이 산재를 처리해 줘야 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아야 산업재해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상담개선 활성화
의미없는 제도
재해자 과실 부분 반영

300인 이상
산업재해 발생시 공상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은 방안에 관한 의견
노동조합의 감시 및 산재 은폐에 대한 고발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
산재처리방식이 단순화되었으면 함
표준 작업 교육 활성화(안전교육)
산업재해 발생 감소 방안
사고성의 경우 작업표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생산량에 대한 압박을 줄여야 함,근골격계의 경우 오전, 오후 유급으로 체조 강제 실시
설비투자, 안전교육
작업전 스트레칭 운동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 관련 개선의견
산재 승인 과정에서 4개월~5개월간 신청 및 조사에 소요,이 기간동안 무급임 이에 대한 대출등 임금자원에 대해 고민해야함, 업무 연관성 조사는 개별 노동자가 할 수 없음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설문조사결과 분석(사업주)

1) 표본

구 분		규모			전체
		50인 미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59	36	11	106
		55.7%	34.0%	10.4%	100.0%
	건설업	17	6	1	24
		70.8%	25.0%	4.2%	100.0%
	기타	20	31	9	60
		33.3%	51.7%	15.0%	100.0%
전체		96	73	21	190[26]
		50.5%	38.4%	11.1%	100.0%

2) 요약

(1) 산업재해의 발생 보고제도 인지여부

○ 산업재해의 발생 보고제도의 인지여부에 대해 92.3%가 알고 있으나 하지만 7.7%은 인지하고 있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2) 재해근로자의 공상요구 경험 및 산재보험급여대신 공상처리를 한 경험여부

26) 업종, 규모에 미 응답자의 경우 제외

○ 재해근로자가 산재급여보험대신 공상처리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6.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에서 재해근로자를 설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공상처리를 한 경험여부에서 14.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공상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 신청이유

○ 사업체가 공상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을 결정한 이유로 관계 법령의 준수가 우선이라 생각되어서가 27.6%로 나타나 업무담당자의 1/4 정도는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으로 근로자의 과실이 37.8%**(근로자 설문의 경우 52.7%)**, 작업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성이 24.0%, 작업자의 교육 및 지식부족이 14.3%, 안전장치 미흡 12.0%로 산업체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원인을 주로 근로자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 이유(제도적 이유)

○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 이유로 향후 회사 불이익과 정부규제 때문이 54.8%**(근로자 설문의 경우 : 34.9%)**로 나타나 사업체들은 주로 산재사고 후 정부규제 및 회사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6)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 이유(비 제도적 이유)

○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 이유로 경미한 상병이라서가 41.4%로(**근로자 설문의 경우: 35.8%**)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재해근로자가 희망해서와 재해근로자 잘못으로가 34.2%(**근로자 설문의 경우: 27.7%**)인 것으로 나타나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이유로 주로 경미한 상병이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재해근로자가 희망해서의 경우에도 상병이 경미해서가 32.1%로 나타남

(7) 공상처리하는 경우 치료비용의 부담 방법과 별도보상

○ 공상처리하는 경우 치료비용의 부담 방법으로 기타가 3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재해 근로자가 우선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이후 이 비용의 지급과 재해근로자의 실비보험으로 처리한 이후 이 비용의 지급이 41.1%(**근로자 설문의 경우: 32.4%**)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치료비용의 부담은 주로 재해근로자가 우선 선 처리하고 회사가 이 이 비용을 지급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한 경우에 휴업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44.7%(**근로자 설문의 경우: 49.2%**)로 나타나 회사가 공상처리하였지만 다수가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상처리 이후 재해근로자가 후유장애나 추가 합의가 요구에 대해서는 91.2%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추가 합의요구에 대해서는 72.4%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8) 산업재해보험 신청 유인 방안

○ 사업주 강력 처벌

○ 산업재해 발생원인과 경중에 따라 사업장 감독 규제 완화
○ 산재보험 요율인상 반대 및 완화
○ 산재신청 절차 간소화

(9) 산재발생 감소방안

○ 안전 관리 준수
○ 주기적인 교육
○ 근로자 안전의식 개선
○ 작업환경 개선

(10) 산재발생보고제도 개선의견

○ 조사무응답구축필요
○ 조사내용 간결
○ 보고 양식의 간소화(조사표 작성 전산처리)

3) 설문지 분석

A. 인적사항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안전관리자 근무여부	회사내 안전관리자(자격증 소지)가 상주하고 있다	91	46.0	49.2
	회사내 안전관리자(자격증 소지)가 상주하고 있지 않다	94	47.5	50.8
	소계	185	93.4	100.0
	무응답	13	6.6	
안전보건 전문 위탁여부	그렇다(전문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120	60.6	64.9
	그렇지 않다(전문기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65	32.8	35.1
	소계	185	93.4	100.0
	무응답	13	6.6	
노동조합 여부	있다	52	26.3	26.9
	없다	141	71.2	73.1
	소계	193	97.5	100.0
	무응답	5	2.5	
전체		1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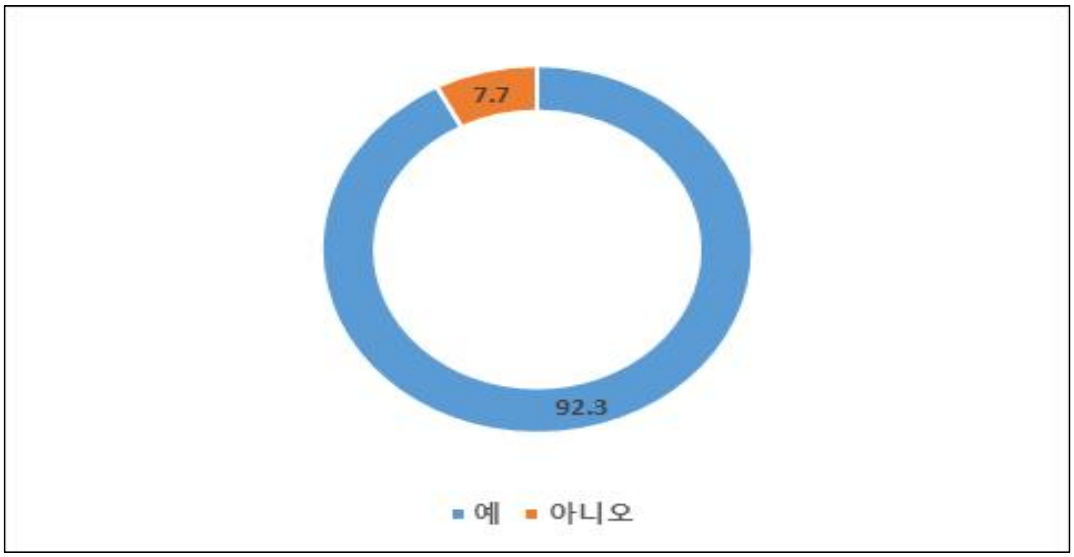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성별	남성	124	62.6	63.6
	여성	71	35.9	36.4
	소계	195	98.5	100.0
	무응답	3	1.5	
연령	20대	32	16.2	16.5
	30대	40	20.2	20.6
	40대	86	43.4	44.3
	50대	28	14.1	14.4
	60대 이상	8	4.0	4.1
	소계	194	98.0	100.0
	무응답	4	2.0	
직급	사원	19	9.6	9.7
	대리급	33	16.7	16.9
	과장및부장급	26	13.1	13.3
	임원급	39	19.7	20.0
	사장	78	39.4	40.0
	소계	195	98.5	100.0
	무응답	3	1.5	
근무기간	1년 이하	15	7.6	7.7
	2-3년	53	26.8	27.2
	4-5년	76	38.4	39.0
	6-9년	47	23.7	24.1
	10년 이상	4	2.0	2.1
	소계	195	98.5	100.0
	무응답	3	1.5	
전체		198	100.0	

B.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요양신청 관련 제도의 인지

1,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재발생보고제도(제10조)를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예	180	90.9	92.3
아니오	15	7.6	7.7
소계	195	98.5	100.0
무응답	3	1.5	
전 체	1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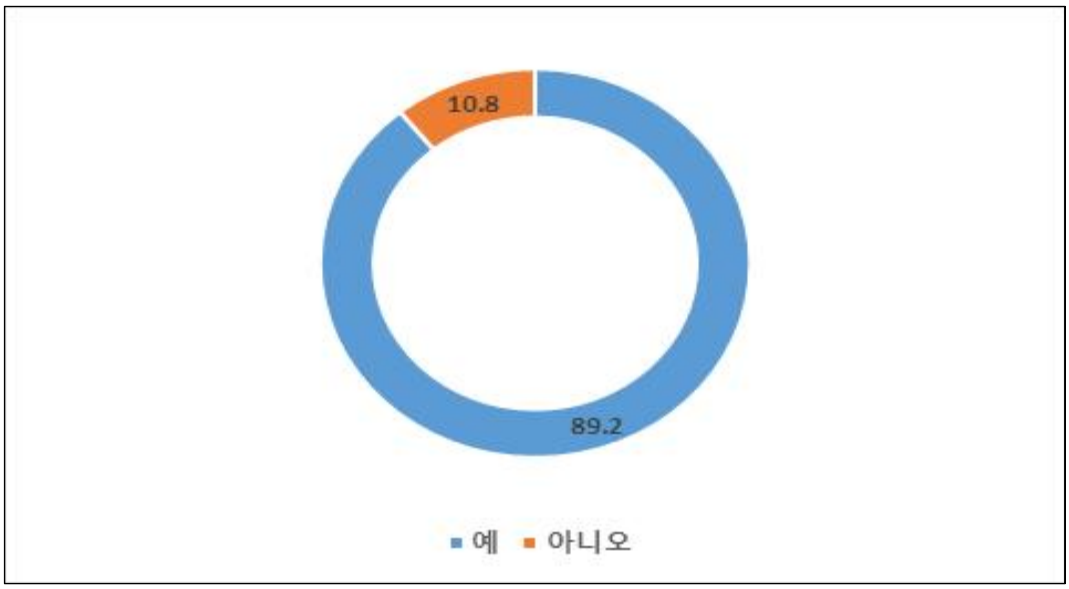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재발생보고제도(제10조)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거의 대부분인 92.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7.7%에 불과하였음

2. 위 제도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예	174	87.9	89.2
아니오	21	10.6	10.8
소계	195	98.5	100.0
무응답	3	1.5	
전 체	198	100.0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재발생보고제도(제10조)를 위반 할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이 89.2%이고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10.8%로 나타났음

3.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예	187	94.4	95.9
아니오	8	4.0	4.1
소계	195	98.5	100.0
무응답	3	1.5	
전 체	1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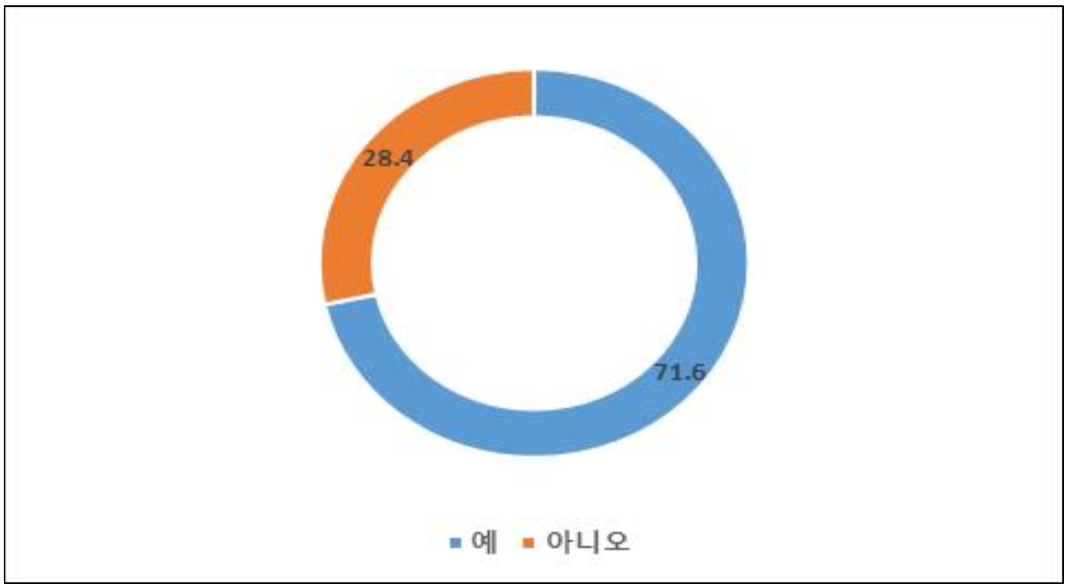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재발생보고제도(제10조)를 위반 할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이 89.2%이고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10.8%로 나타났음

4. 위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예	139	70.2	71.6
아니오	55	27.8	28.4
소계	194	98.0	100.0
무응답	4	2.0	
전 체	1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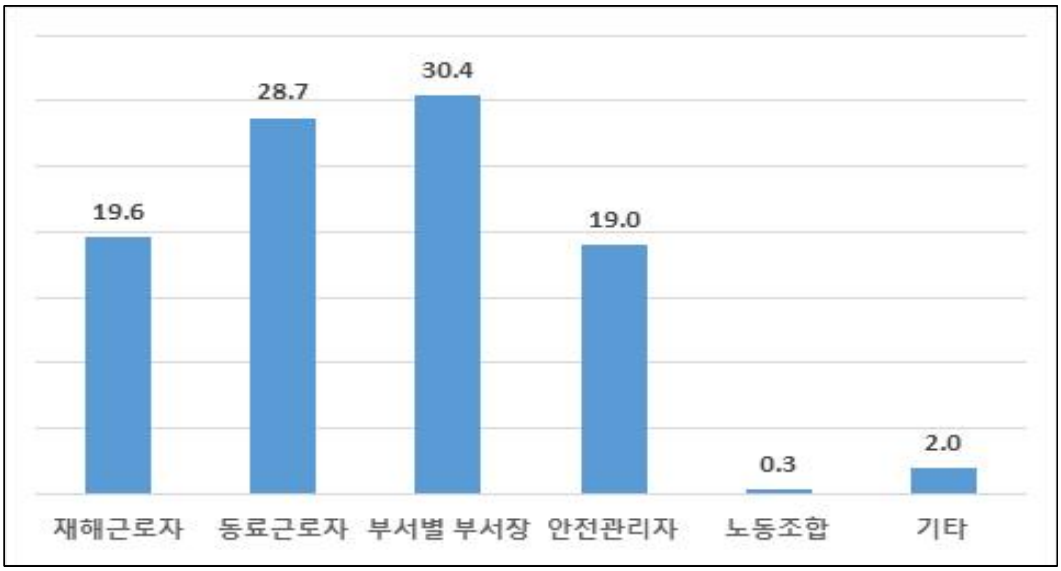


▶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이 71.6%로 나타났고, 알고 있지 못한다는 응답은 28.4%로 나타났음

C.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1. 귀사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최초로 보고합니까?(중복 답변 가능)
① 재해근로자 ② 동료근로자 ③ 부서별 부서장 ④ 안전관리자 ⑤ 노동조합 ⑥ 기타

구 분		반응		케이스 중 %
		N(명)	비율(%)	
산재최초보고자	재해근로자	69	19.6	35.8
	동료근로자	101	28.7	52.3
	부서별 부서장	107	30.4	55.4
	안전관리자	67	19.0	34.7
	노동조합	1	0.3	0.5
	기타	7	2.0	3.6
전 체		352	100.0	1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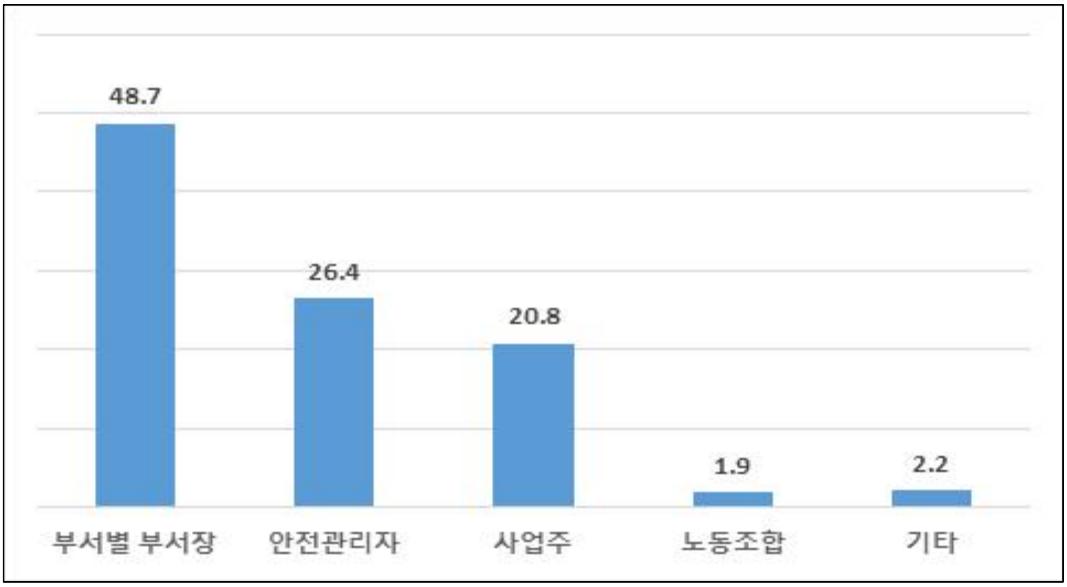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보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부서별 부서장이라는 응답이 3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료근로자 28.7%, 재해근로자 19.0%, 안전관리자 19.0%, 기타 2.0%, 노동조합 0.3% 순으로 나타났음

2. 귀사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최초로 보고받습니까?(중복 답변 가능)

① 부서별 부서장 ② 안전관리자 ③ 사업주 ④ 노동조합 ⑤ 기타

구 분		반응		케이스 중 %
		N(명)	비율(%)	
산재최초보고 받는자	부서별 부서장	155	48.7	80.3
	안전관리자	84	26.4	43.5
	사업주	66	20.8	34.2
	노동조합	6	1.9	3.1
	기타	7	2.2	3.6
전 체		318	100.0	1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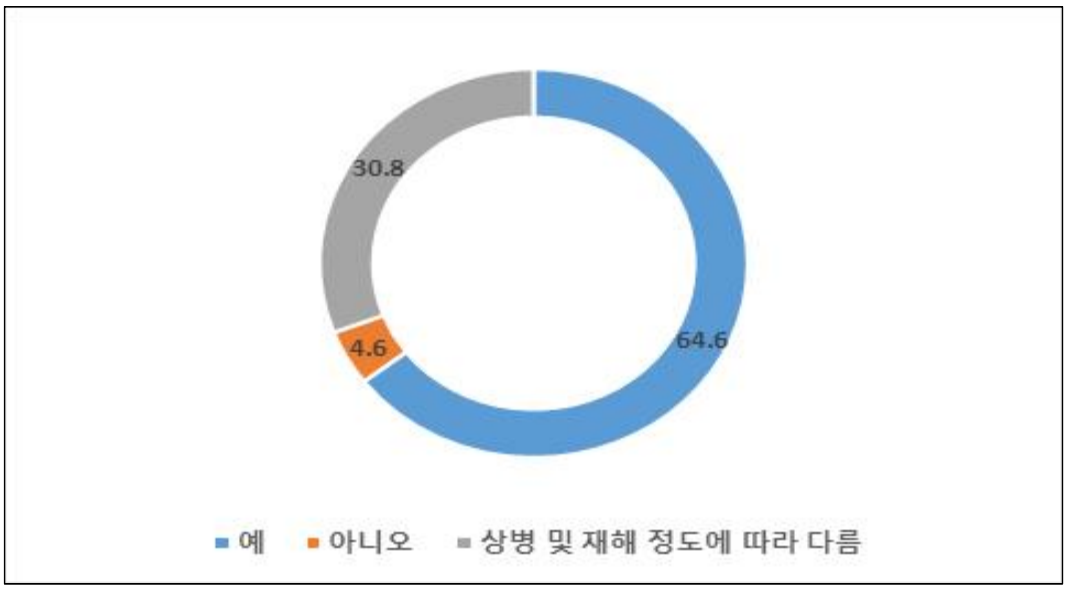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보고를 받는 사람이 누군인지에 대한 질문에 부서별 부서장이라는 응답이 4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전관리자 26.4%, 기타 2.2%, 노동조합 1.9% 순으로 나타났음

3. 재해근로자의 의료기관 방문 시 회사 담당자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상병 및 재해 정도에 따라 다름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예	126	63.6	64.6
아니오	9	4.5	4.6
상병 및 재해 정도에 따라 다름	60	30.3	30.8
소계	195	98.5	100.0
무응답	3	1.5	
전 체	1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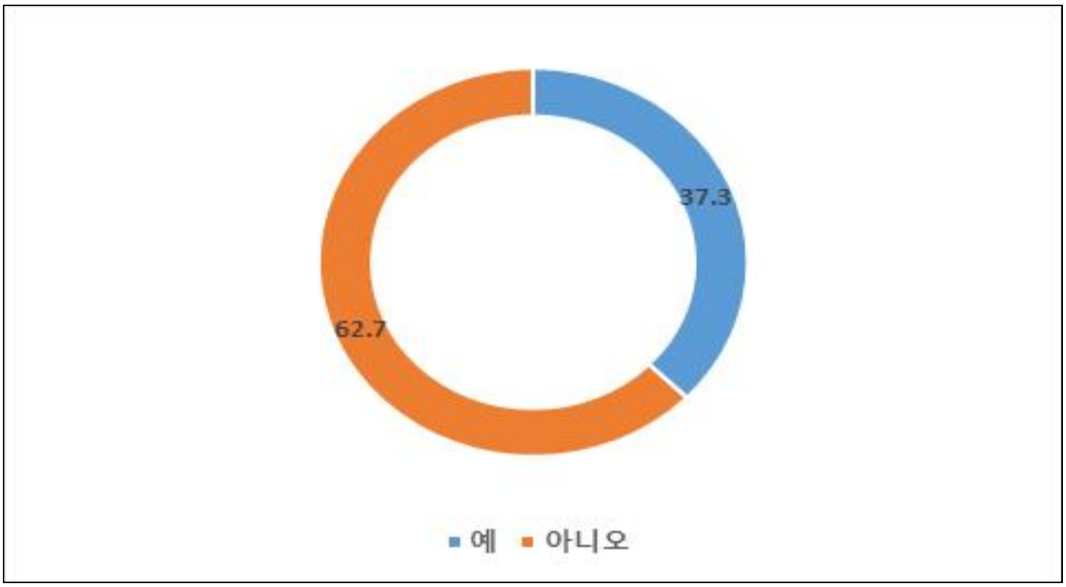


▶ 재해근로자의 의료기관 방문 시 회사 담당자가 동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동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63.6%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병 및 재해정도에 다라 다르다 30.3%, 동행하지 않는다 4.5% 순으로 나타났음

4.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예	72	36.4	37.3
아니오	121	61.1	62.7
소계	193	97.5	100.0
무응답	5	2.5	
전 체	1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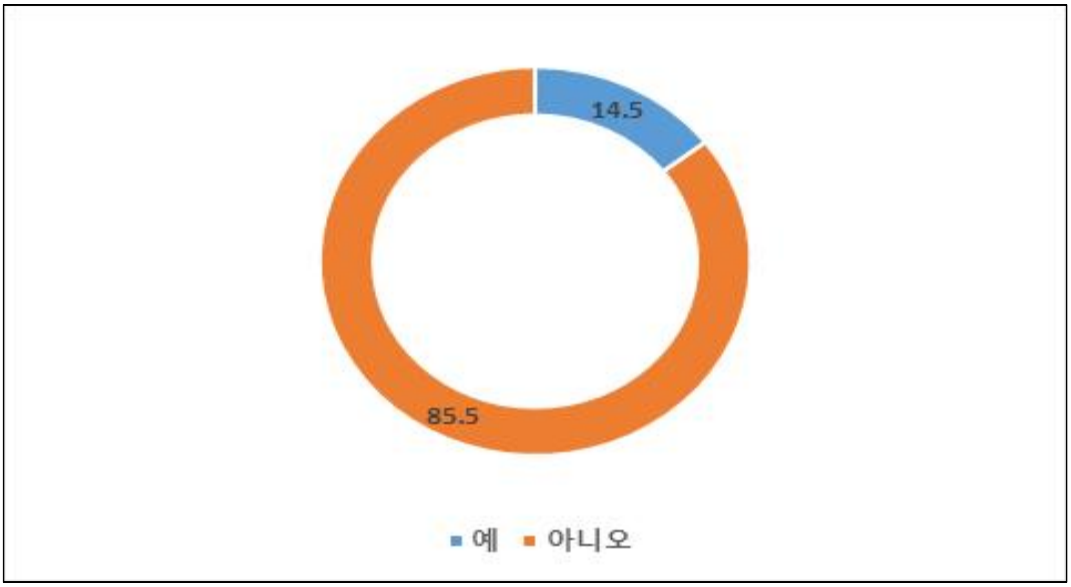


▶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2.7%가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요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4%로 인 것으로 나타났음

5. 사업주가 재해근로자를 설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공상처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예	28	14.1	14.5
아니오	165	83.3	85.5
소계	193	97.5	100.0
무응답	5	2.5	
전 체	1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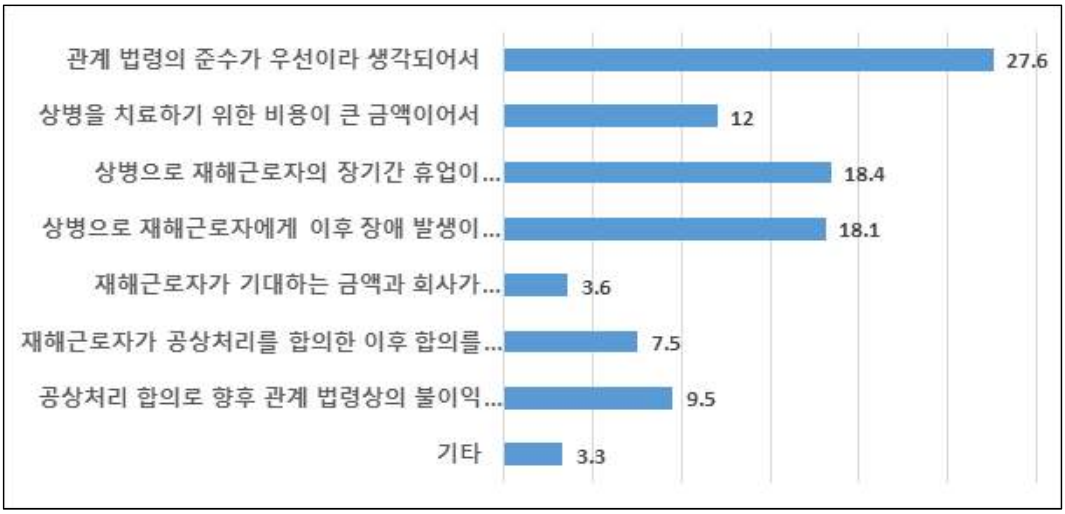


▶ 사업주가 재해근로자를 설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공상처리를 한 경우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85.5%가 공상처리를 한 경우가 없다는 응답이 62.7%로 나타났고, 공상처리를 한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14.5%로 인 것으로 나타났음

6. 귀사가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하는 대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① 관계 법령의 준수가 우선이라 생각되어서
②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 큰 금액이어서
③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의 장기간 휴업이 예상되어서
④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에게 이후 장애 발생이 예상되어서
⑤ 재해근로자가 기대하는 금액과 회사가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 차이가 커서
⑥ 재해근로자가 공상 처리를 합의한 이후 합의를 위반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것이 예상되어서
⑦ 공상 처리 합의로 향후 관계 법령상의 불이익 발생이 예상되어서
⑧ 기타( )

구 분	반응		케이스
	N(명)	비율(%)	중 %
관계 법령의 준수가 우선이라 생각되어서	99	27.6	55.3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 큰 금액이어서	43	12.0	24.0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의 장기간 휴업이 예상되어서	66	18.4	36.9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에게 이후 장애 발생이 예상되어서	65	18.1	36.3
재해근로자가 기대하는 금액과 회사가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 차이가 커서	13	3.6	7.3
재해근로자가 공상처리를 합의한 이후 합의를 위반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것이 예상되어서	27	7.5	15.1
공상처리 합의로 향후 관계 법령상의 불이익 발생이 예상되어서	34	9.5	19.0
기타	12	3.3	6.7
전체	359	100.0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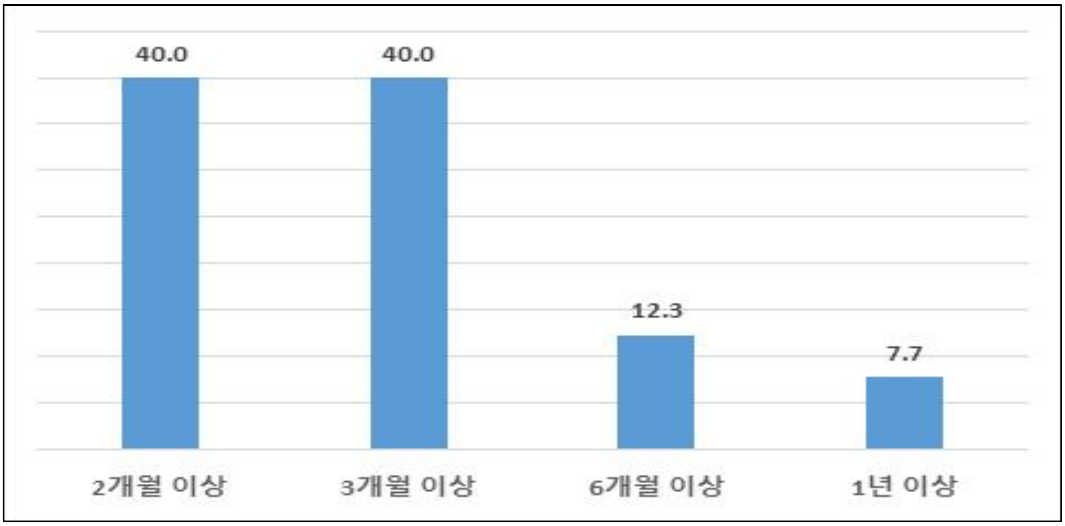
기타
공상처리가 없음
공상처리를 위한 보상금 예산 미편성
산업재해 여부가 불분명 한 경우
산재로 처리를 해야 피해자가 치료를 받음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산재발생시 공상처리하지 않음
산재산청하였음(승인완료)
외국계 기업으로 법규준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음.
재해근로자의 산재신청 희망

▶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하는 대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로는 관계 법령의 준수가 우선이라 생각되어서가 2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의 장기간 휴업이 예상되어서 18.4%,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에게 이후 장애 발생이 예상되어서 18.1%,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 큰 금액이어서 12.0%, 공상처리 합의로 향후 관계 법령상의 불이익 발생이 예상되어서 9.5%, 재해근로자가 공상처리를 합의한 이후 합의를 위반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것이 예상되어서 7.5%, 기타 3.3% 순으로 나타났음

7. 위 '6'와 관련, '③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의 장기간 휴업이 예상되어서'라고 답변한 경우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① 2개월 이상 ② 3개월 이상 ③ 6개월 이상 ④ 9개월 이상 ⑤ 1년 이상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2개월 이상	26	13.1	40.0
3개월 이상	26	13.1	40.0
6개월 이상	8	4.0	12.3
1년 이상	5	2.5	7.7
소계	65	32.8	100.0
무응답	133	67.2	
전 체	1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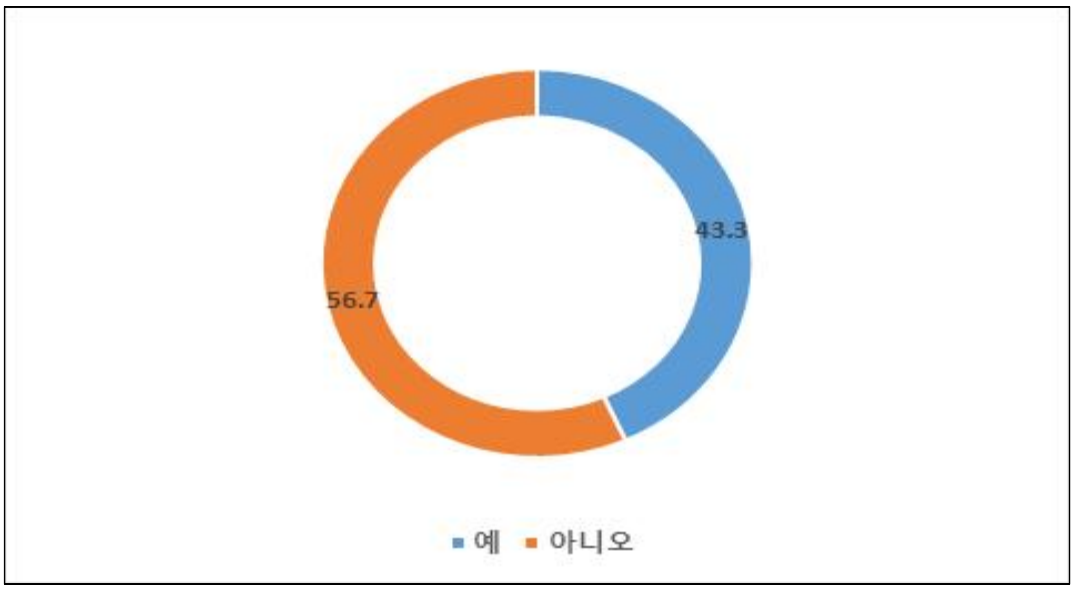


▶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의 장기간 휴업이 예상 될 경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이 각가 40.0%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개월 이상 12.3%, 1년 이상 7.7% 순으로 나타났음

8. 위 '6'와 관련, '④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에게 이후 장애 발생이 예상되어서'라고 답변한 경우 예상되는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공상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예	26	13.1	43.3
아니오	34	17.2	56.7
소계	60	30.3	100.0
무응답	138	69.7	
전 체	198	100.0	



▶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의 장기간 휴업이 예상 될 경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이 각각 40.0%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개월 이상 12.3%, 1년 이상 7.7%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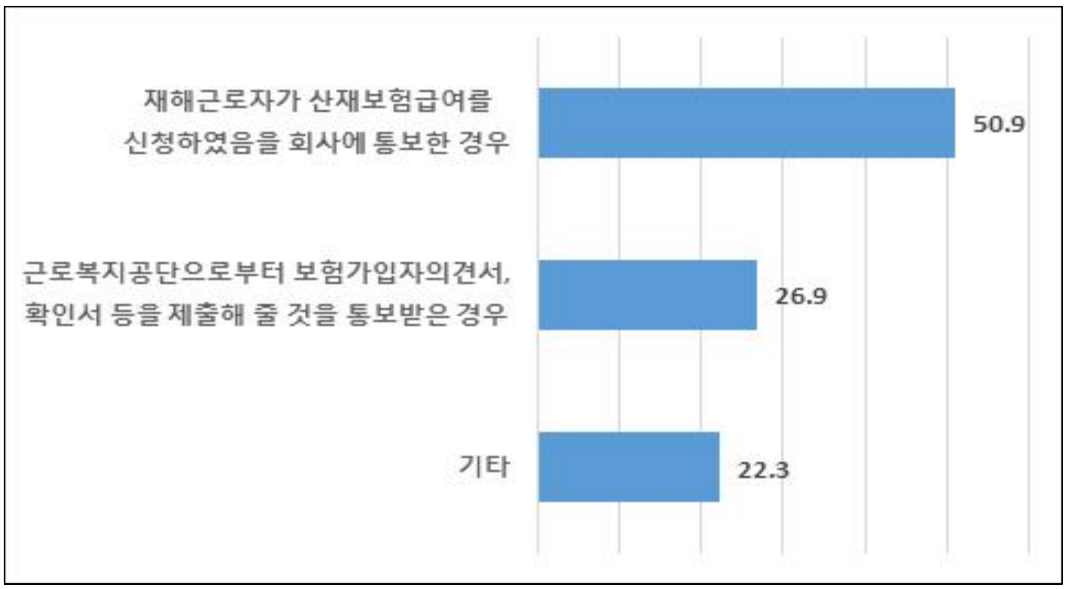
9.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 귀사가 이를 최초로 인식하게 되는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①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였음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②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가입자 의견서, 확인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통보받은 경우

③ 기타( )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였음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89	44.9	50.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가입자의견서, 확인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통보받은 경우	47	23.7	26.9
기타	39	19.7	22.3
소계	175	88.4	100.0
무응답	23	11.6	
전체	198	100.0	



기 타
3년전 운전기사분이 퇴사 후 1건 어깨 질환으로 공단에서 통보 받았음
보통 산업재해발생시 재해당사자가 재해가 있었음을 각 부서(사업단포함)회계담당자에게 알리고 4대보험 담당자에게 최종적으로 알려서 공단에 신고, 신청하는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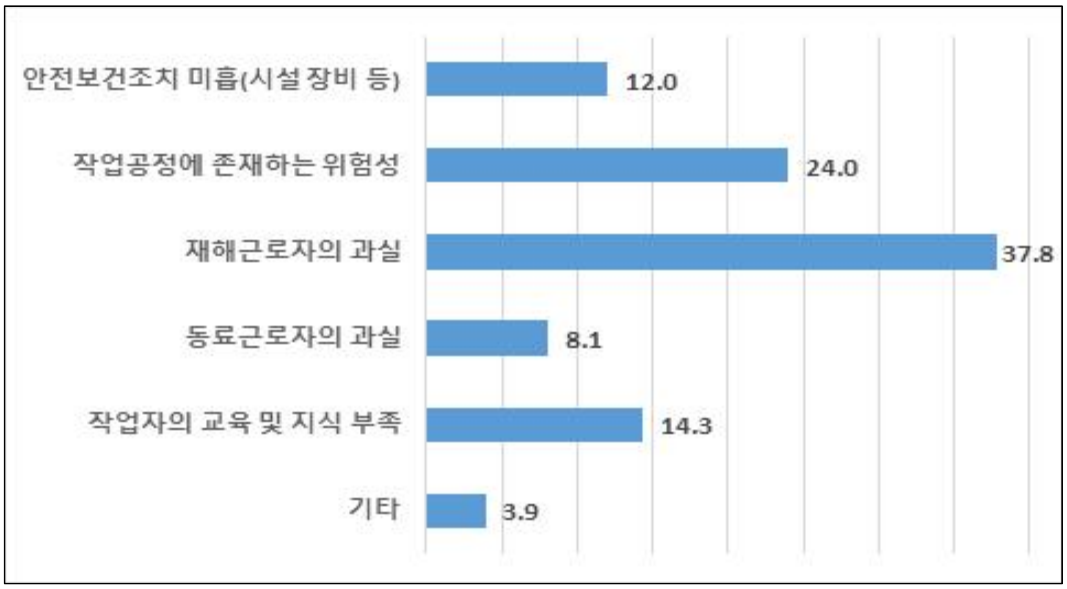
차를 따르고 있음
본인(재해자)이 직접 산재처리 요구해서
사고보고서 제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부터 인지
산재가 난 직후 바로
산재가 발생하여
산재신청한다고 하고 병원진료 받음
아직 사례가 없음
재해근로자 신청 전 통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재해근로자가 산재신청 전에 회사에 통보, 협의
재해근로자대신 사업장직원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재해근로자와 면담
재해근로자와 상의할 때
재해시 바로 산재처리 함
재해자-사업주요청-근로복지공단
재해자와 합의하여 산재신청
재해자와 협의 후 신청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산재신청하지 않고 회사에 요구를 합니다.
퇴직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자의견서를 제출(운전기사)
협력사소속 관리자가 원청측에 즉시보고 등 사례가 다양함
회사가 신청함
회사에서 먼저 신청
회사에서 신청하여줍니다(대리하여)
회사에서 신청함
회사와 협의
회사측에서 산재보험급여 청구해줌

▶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 이를 최초로 인식하게 되는 경위로는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였음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가 50.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가입자의견서, 확인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통보받은 경우 26.9%, 기타 22.3% 순으로 나타났음

10. 귀사가 생각하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① 안전보건조치 미흡(시설 장비 등)
② 작업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성
③ 재해근로자의 과실
④ 동료근로자의 과실
⑤ 작업자의 교육 및 지식 부족
⑥ 기타(　　)

구 분	반응		케이스 중 %
	N(명)	비율(%)	
안전보건조치 미흡(시설 장비 등)	46	12.0	23.8
작업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성	92	24.0	47.7
재해근로자의 과실	145	37.8	75.1
동료근로자의 과실	31	8.1	16.1
작업자의 교육 및 지식 부족	55	14.3	28.5
기타	15	3.9	7.8
전체	384	100.0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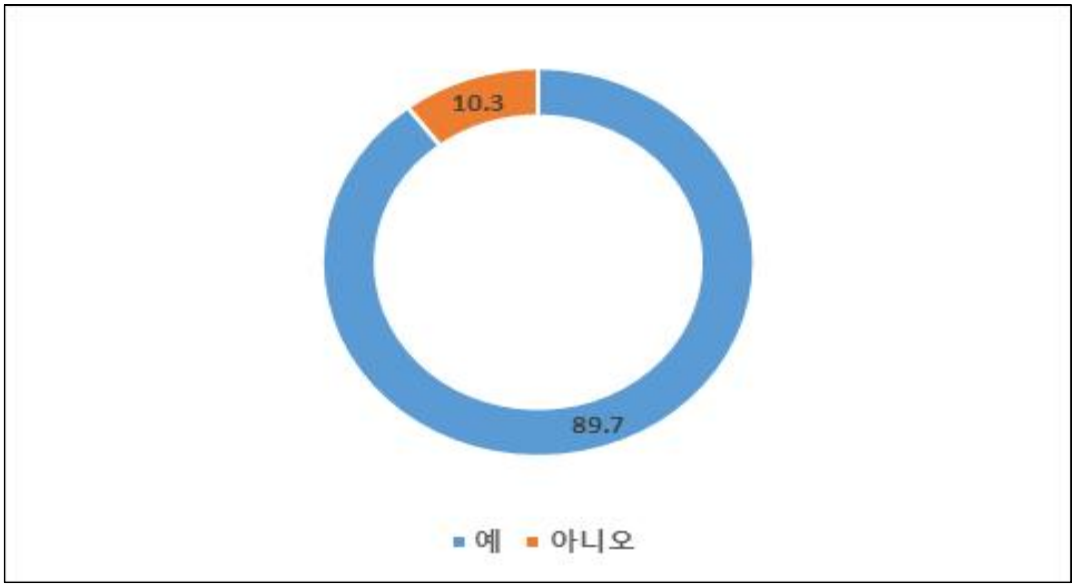
기타
근로자 불안전 행동
근로자의 안전의식부재, 교육에도 불구하고
순간적 사고과실
안전메뉴얼을 숙지하지 않고 안전불감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령이 고령이다 보니 인지력이 자꾸 떨어짐
운전미숙, 안전수칙 미 준수(쌍방)
재해근로자의 건강상태
재해근로자의 평소정신건강상태
재해발생율이 낮은 업종이라 대부분은 경미한 부상이거나 출퇴근시 교통사고
출퇴근수단
고령화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관련 산재발생

▶ 산업재해 발생 원인으로는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3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작업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성 24.0%, 작업자의 교육 및 지식 부족 14.3%, 안전보건조치 미흡(시설 장비 등) 12.0%, 동료근로자의 과실 8.1%, 기타 3.9% 순으로 나타났음

11.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예	166	83.8	89.7
아니오	19	9.6	10.3
소계	185	93.4	100.0
무응답	13	6.6	
전 체	1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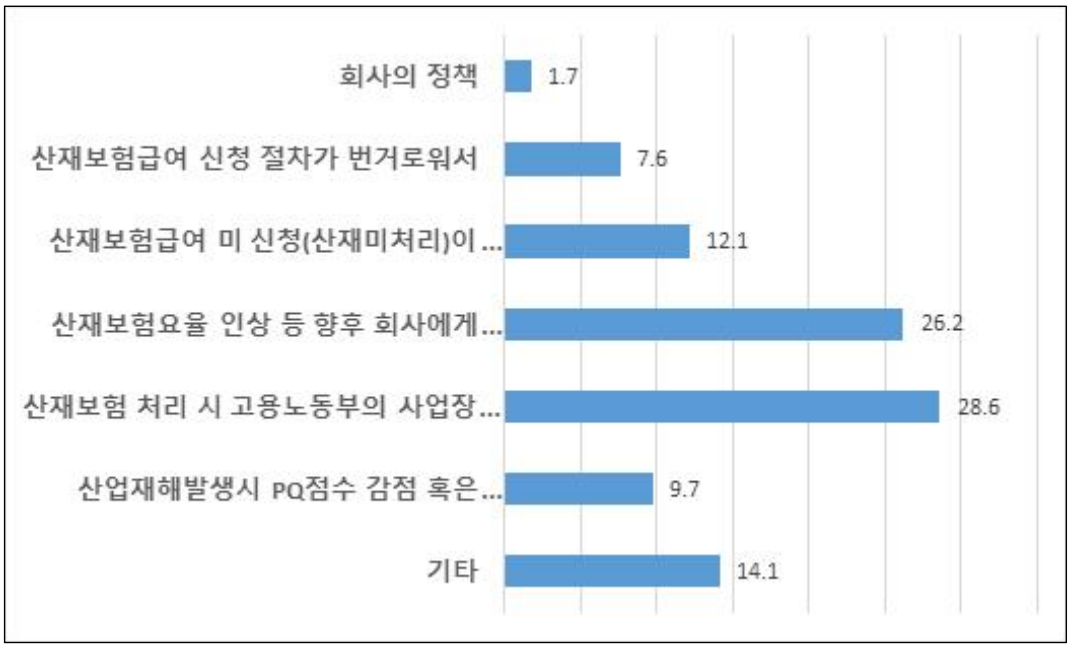
▶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89.7%, 제도화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10.3%로 나타났음

D. 산재보험급여 미신청(공상) 처리 요인

1.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제도적 이유)(중복 답변 가능)

① 회사의 정책 ② 산재보험급여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서
③ 산재보험급여 미신청(산재미처리)이 불법은 아니므로
④ 산재보험요율 인상 등 향후 회사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예상되어서
⑤ 산재보험 처리 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등 정부 규제가 부담되어서
⑥ 산업재해 발생 시 PQ점수 감점 혹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공공부문과의 도급계약 체결에 불이익이 발생하여서 ⑦ 기타 ( )

구 분	반응		케이스 중 %
	N(명)	비율(%)	
회사의 정책	5	1.7	3.0
산재보험급여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서	22	7.6	13.3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산재미처리)이 불법은 아니므로	35	12.1	21.2
산재보험요율 인상 등 향후 회사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예상되어서	76	26.2	46.1
산재보험 처리 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등 정부 규제가 부담되어서	83	28.6	50.3
산업재해발생시 PQ점수 감점 혹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공공부문과의 도급계약 체결에 불이익이 발생하여서	28	9.7	17.0
기타	41	14.1	24.8
전체	290	100.0	175.8



기타
가벼운 사고로 파악되어
개인적으로 필요성이 없다 생각
경미한 부상(2일 이내)
경미한 부상
경미한 사고일 경우
경미한 상병이라 생각해서
경미한 상해
공무원
공상처리 및 산재처리 적극적으로 함
공상처리가 없음
공상처리 없음
공상처리한 적 없음
관련법규를 인지하지 못했음
교통사고처리가 재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서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자복귀 오래 걸림, 경미한 치료도 즉시 복귀하지 않고 병원에 과잉진료도 복귀하지 않고 병원에 과잉진료로 수주가 소요됨(의사단치 확인서는 의사가 책임질 수 없다며 끊어주지 않음)
당사의 경우 공상처리절차가 없음

본인요청
본인이 원치 않아서
본인이 원하지 않음
사고가 경미하여 하루 이틀이 이후 복귀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본인이 원할 때
사고 후 치료비가 경미하여서
산재대상인 아닌 것 같아서
외국계 기업으로 법규준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음
원청사 규제
재해근로자가 공상처리를 원할 경우..
처리한 적 없음
치료병원,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 등 중용
해당사항없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 요양진료로 처리
회사내 복리후생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선택권 내지는 유리한 쪽으로
재해근로자의 공상처리 희망

▶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는 이유(제도적)에 대해 산재보험 처리 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등 정부 규제가 부담되어서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산재보험요율 인상 등 향후 회사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예상되어서 26.2%, 기타 14.1%,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산재미처리)이 불법은 아니므로 12.1%, 산업재해발생시 PQ점수 감점 혹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공공부문과의 도급계약 체결에 불이익이 발생하여서 9.7%, 산재보험급여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서 7.6%, 회사의 정책 1.7% 순으로 나타났음

2.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비제도적 이유)(중복 답변 가능)

① 재해근로자가 희망해서 ② 재해근로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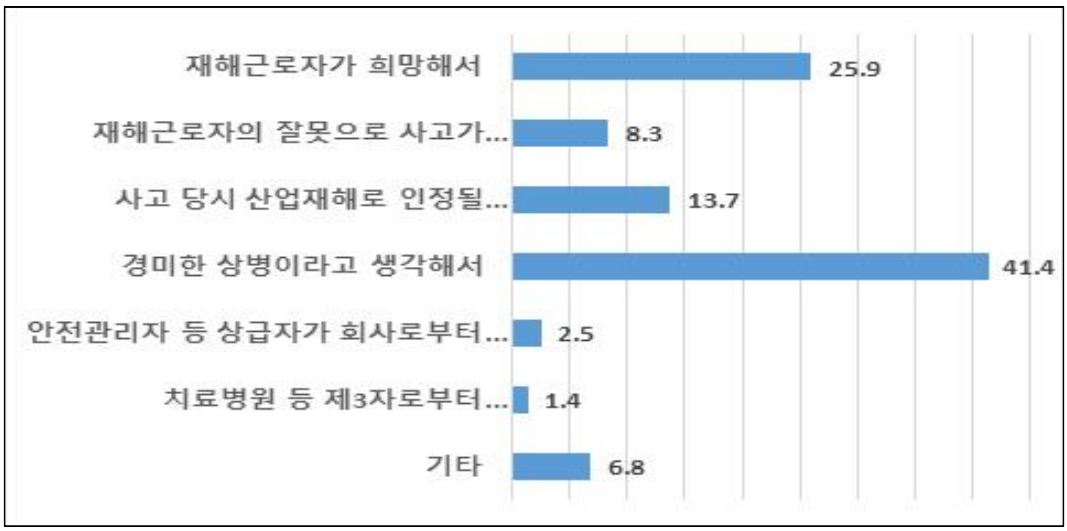
③ 사고 당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④ 경미한 상병이라고 생각해서

⑤ 안전관리자 등 상급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⑥ 치료병원 등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미처리 권유를 받아서 ⑦ 기타 ( )

구 분	반응		케이스 중 %
	N(명)	비율(%)	
재해근로자가 희망해서	72	25.9	43.4
재해근로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23	8.3	13.9
사고 당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38	13.7	22.9
경미한 상병이라고 생각해서	115	41.4	69.3
안전관리자 등 상급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7	2.5	4.2
치료병원 등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미처리 권유를 받아서	4	1.4	2.4
기타	19	6.8	11.4
전체	278	100.0	1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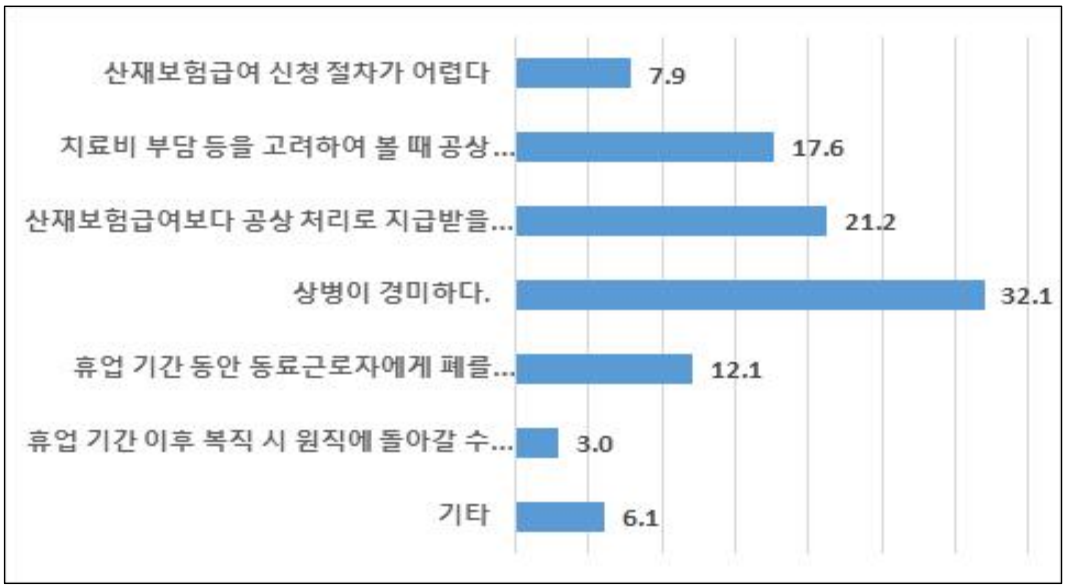
기타
공무원
공무원이라서
공상처리 없음
공상처리절차가 없으며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
병원비 및 임금을 회사에서 산재기준 처리
본인과실이고 신체상 큰 문제 없어서
산재보다 더 많은 급여가능한 경우 발생
산재신청시 산업재해급여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움
외국계 기업으로 법규준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 요양진료로 처리
경미한 부상으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 해 회사에서 치료비용 등 부담처리

▶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는 이유(비 제도적)에 대해 경미한 상병이라고 생각해서가 4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재해근로자가 희망해서 25.9%, 사고 당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13.7%, 재해근로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8.3%, 기타 6.8%, 안전관리자 등 상급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2.5%, 치료병원 등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미처리 권유를 받아서 1.4% 순으로 나타났음

3. 위 '2'와 관련, '① 재해근로자가 희망해서'라고 답변한 경우 재해근로자가 말하는 공상 처리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① 산재보험급여 신청 절차가 어렵다.
② 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상 처리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르다.
③ 산재보험급여보다 공상 처리로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많다.
④ 상병이 경미하다.
⑤ 휴업 기간 동안 동료근로자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⑥ 휴업 기간 이후 복직 시 원직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⑦ 기타( )

구 분	반응		케이스 중 %
	N(명)	비율(%)	
산재보험급여 신청 절차가 어렵다	13	7.9	14.1
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상 처리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르다.	29	17.6	31.5
산재보험급여보다 공상 처리로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많다.	35	21.2	38.0
상병이 경미하다.	53	32.1	57.6
휴업기간 동안 동료근로자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	20	12.1	21.7
휴업기간 이후 복직 시 원직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5	3.0	5.4
기타	10	6.1	10.9
전체	165	100.0	179.3



기타
개인적인 상해보험가입으로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여
몰라서
회사권유
치료비용 등 실비정산처리

▶ 재해근로자가 희망해서'라고 답변한 경우 재해근로자가 말하는 공상 처리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에서 상병이 경미하다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재산재보험 급여보다 공상 처리로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많다 21.2%, 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상 처리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르다 17.6%, 휴업기간 동안 동료근로자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 12.1%, 산재보험급여 신청 절차가 어렵다 7.9%, 기타 6.1%, 휴업기간 이후 복직 시 원직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3.0% 순으로 나타났음

4.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① 재해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이후 이 비용의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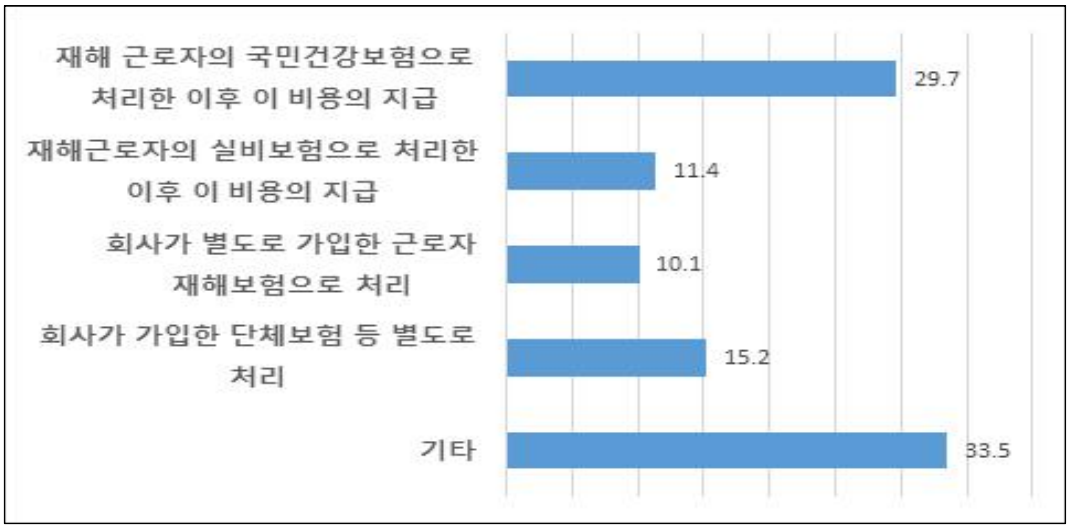
② 재해근로자의 실비보험으로 처리한 이후 이 비용의 지급

③ 회사가 별도로 가입한 근로자재해보험으로 처리

④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 등 별도로 처리

⑤ 기타( )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재해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이후 이 비용의 지급	47	23.7	29.7
재해근로자의 실비보험으로 처리한 이후 이 비용의 지급	18	9.1	11.4
회사가 별도로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험으로 처리	16	8.1	10.1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 등 별도로 처리	24	12.1	15.2
기타	53	26.8	33.5
소계	158	79.8	100.0
무응답	40	20.2	
전 체	198	100.0	



기타
개인비용으로 처리
건강보험미적용 및 일반처리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상으로 일반처리
공상처리
공상처리절차없음.
과실여부에 따른 비용부담
병원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비용처리), 국민건강보험 처리안됨.
일반으로 처리
일반진료
자동차사고, 상대방이 해결
재해상태가 경미하여
해당없음(공무원연금)
회사가 모두 비용부담(14)
회사에서 공상금액으로 결제(병원에서 공상처리 비용을 안내해줌)
회사의 지정병원에
회사전액부담-비수술등 경미한 산재로 보험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기타가 3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재해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이후 이 비용의 지급 29.7%,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 등 별도로 처리 15.2%, 재해근로자의 실비보험으로 처리한 이후 이 비용의 지급 11.4%, 회사가 별도로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험으로 처리 10.1% 순으로 나타났음

5. 치료비 이외에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지급하여 준 경우 해당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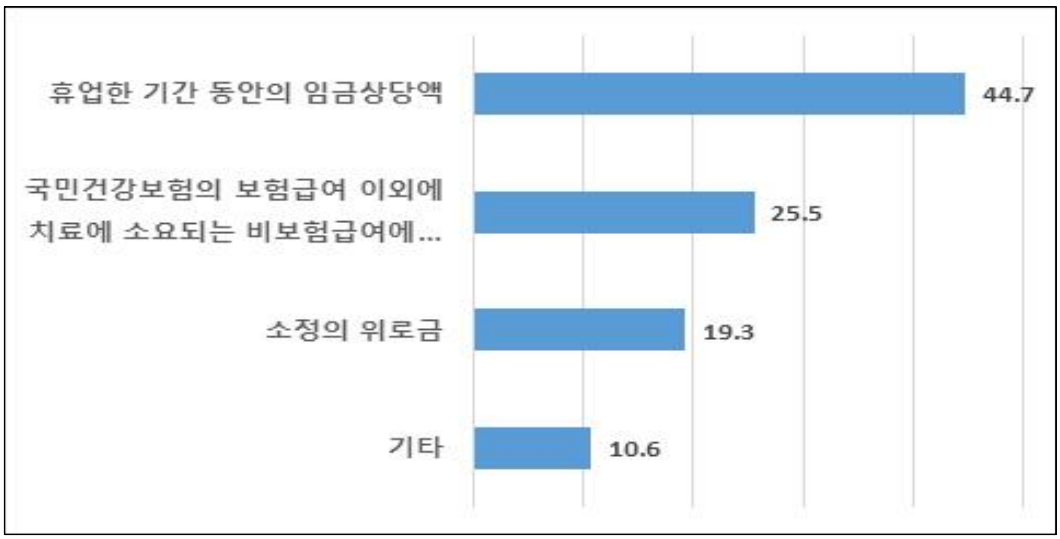
① 휴업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②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이외에 치료에 소요되는 비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

③ 소정의 위로금

④ 기타 ( )

구 분	반응		케이스 중 %
	N(명)	비율(%)	
휴업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72	44.7	72.0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이외에 치료에 소요되는 비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	41	25.5	41.0
소정의 위로금	31	19.3	31.0
기타	17	10.6	17.0
전체	161	100.0	161.0



기타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처리한 의료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
별도보상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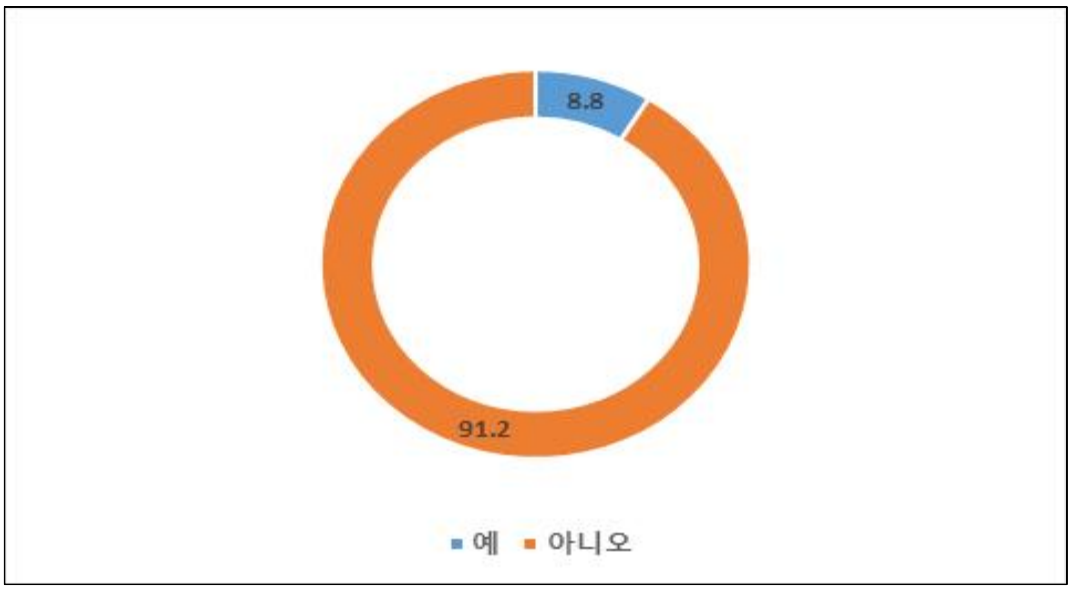
본인부담금
비급여 치료비
산재가 없었음
실비보험의 추가비용지급
지급할 수 없음
치료비
치료비전액 회사부담
향후치료비와 위자료금액
휴무/월차 지급

▶ 치료비 이외에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지급하여 준 경우 해당되는 항목으로 휴업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이외에 치료에 소요되는 비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 25.5%, 소정의 위로금 19.3%, 기타 10.6% 순으로 나타났음

6.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재해근로자에게 후유장애 등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거나 추가 합의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예	14	7.1	8.8
아니오	146	73.7	91.2
소계	160	80.8	100.0
무응답	38	19.2	
전 체	1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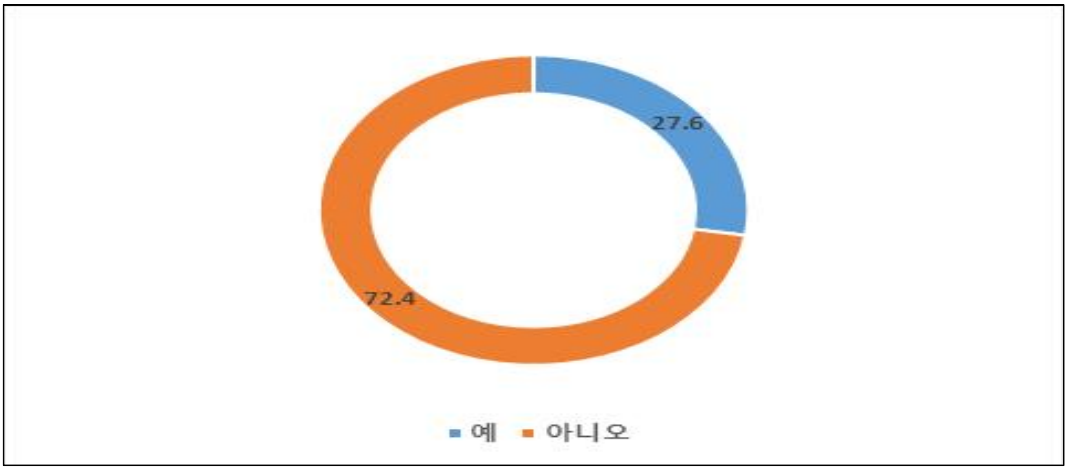


▶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재해근로자에게 후유장애 등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거나 추가 합의를 요구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91.3%로 대부분이지만, 응답자의 8.8%는 요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7. 위 '6'과 관련, '① 예'라고 답변한 경우 추가적으로 보상을 지급했는지 만약, 지급했다면 얼마정도 지급하였습니까?

① 예 (추가지급액 :) ② 아니요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예	8	4.0	27.6
아니오	21	10.6	72.4
소계	29	14.6	100.0
무응답	169	85.4	
전 체	1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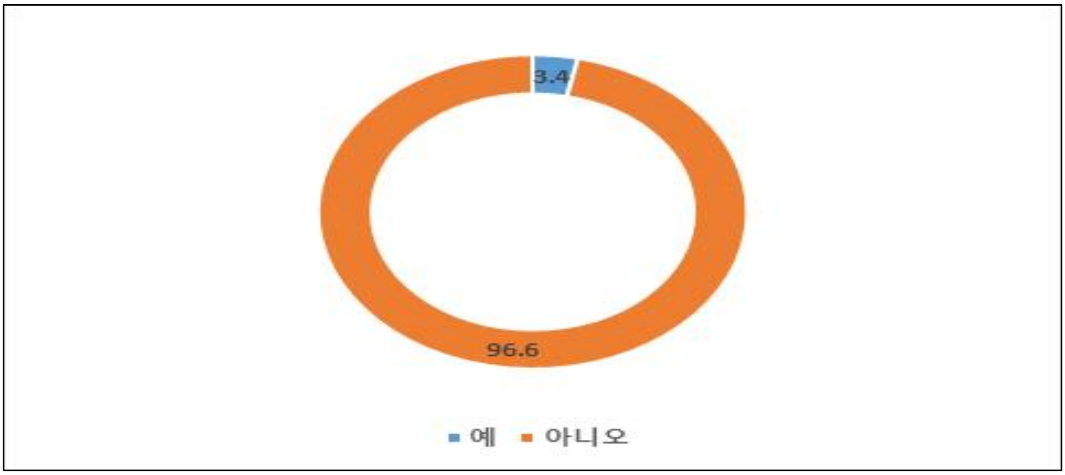
추가지급액
300-500만원
100만원
대중없음
추가요양비, 추가휴업수당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함

▶ 추가적으로 보상을 했는지 했다면 얼마정도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추가적인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2.4%로 나타났고, 추가적인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7.6%로 나타났음

8. 공상처리 이후 재해근로자가 회사에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회사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① 예 (처리방법 :) ② 아니요

구 분	N(명)	비율(%)	유효 비율(%)
예	5	2.5	3.4
아니오	142	71.7	96.6
소계	147	74.2	100.0
무응답	51	25.8	
전 체	198	100.0	



처리방법
산재신청
산재재가입
설비보완 및 조사실시 통한 대처
추가지급

▶ 공상처리 이후 재해근로자가 회사에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없다는 응답이 96.6%로 거의 대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는 응답이 3.4%로 나타났음

E. 개선 방안

가. 업종별

제조업
산업재해 발생시 공상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은 방안에 관한 의견
1.신청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 2.사업주 불이익 배제
간단한 치료 보험료 상승 없다 까다로운 절차 없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후유장애 없는)까지 모두 산재보험급여로 진행을 한다면 회사로서는 노동부 규제 및 집중점검대상이 되고 산재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자연스레 공상으로 더 가는 것 같다. 이는 정부에서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을 부추기는 꼴이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상처리 자체를 싫어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주면 된다
법 강화
보험요율인상 및 고용노동부의 감사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사업주교육
산재 신청후 급여부분을 별도로 추가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 필요함
산재발생시 산재보호급여 신청을 의무화한다
산재발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이면 됨
산재발생하면 노동부에서 감독을 많이 나오니 사업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산재보고 및 산재보험급여신청으로 인해 회사에 돌아올수 있는 불이익을 축소한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접수로 인한 사업장 감독(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사고성 재해 그 건(현재기준)이상시 감독)을 받을 수 있어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산재보험 비할증구간 설정(소액요양비에 대한 할증면제)
산재보험신청기준에 대한 사원교육홍보
산재보험요율 인상에 대한 부담과 산재보험처리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부담을 줄여주세요
산재처리(재행발생보고)에 다른 규제를 줄여야 한다.
산재처리시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 법령규정 완화 요청
신청절차 간소화
실제로 담당자가 처리하는 업무들이 많다. 작성 제출 및 노동부 감시 등 하는 일도 많은데 그런 부차적인 일까지 도맡아 하다보니 꺼려지는 건 당연지사 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라 내외부 안전관리자 기준을 두지 말고 모든 사업장은 외부안전관리자를 통해 실시해야 함이 맞는 것이다. 이러다 내가 일 많아 죽을 거 같다.
장애등급 발생시 회사에서 처리 어렵고 3일 이상 휴업 발생시 합법적인 처리방법이 아니기에 산재처리 요청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교육강화 및 위험요소 차단 등 위험성 평가 실행

재해경중에 따라 익년도 정기감독대상 재해가 어떤 것들인지 메뉴얼화
제도의 간소화, 관리감독약화
제도적 제재 미통보(도제, 병무청, 입찰, 각종인증, 포상 등 조회, 각종규제 때문에 신청못함)
제조업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높음. 사망 및 대형산재사고가 아닐 경우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들 규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웠으면 좋겠음. 그러면 산재신청에 부담을 갖지 않을 것 같다.
중대재해이외 감독자제
중대제외 제외, 노동부 점검 간소화
처리절차의 간소화, 고용부 점검에 대한 부담감 해소
회사나 재해근로자 모두 간편하게 처리되는게 제일 좋습니다.
회사의 불이익이나 별도의 규제를 감할 수 있는 방안
산업재해 발생 감소 방안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자본인의 안전불감증 개선(교육), 작업공정상의 위험요소 최소화 노력
1.근로자의 안전의식강화 2.안전시설정부지원확대
감독자가 계속해서 주의시키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교육한다
관리감독 강화에 따른 처벌을 줄이고 산재감소에 따른 지원정책 강화
교육시간 할애시 비용보전(생산에 차질발생)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인식 개선필요
근로자 안전의식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현장지식 및 능력개발
근로자의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 및 위험요소 발견 즉시 위해요소 차단
근로자의 의식전환(산재의 대부분은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데도 원칙을 지키지 않는데 있음)
꾸준한 안전관리와 관심
사업주 및 작업자가 최대한 안전의식을 항상가지고 작업장 안전설비에 만전, 작업시 안전규정준수에 대해 항시 유념하는 의식적 사고 외 제도적으로 마련할 방안을 없을 듯하다
사업주 안전교육강화
소규모사업장 위주의 정책이 필요함(재해빈도 많은)
실제 산재 및 공상 사고 발생원인은 설비 및 안전장비 미설치도 있지만 근로자의 부주의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노사 양측의 패널티를 정한다던지 조율이 필요하지 무조건 회사에서 산재 또는 공상으로 처리만 하는 상황이니 별다른 답이 안보인다. 실제 사고 발생시, 근로자들은 대부분 본인 부주의를 인정하지만 병원을 가고 시간이 지나면 산재를 해달라느니 보상을 요하는 등 태도가 바뀌는 것도 부지기수다.
안전관리 철처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수하여 안전불감증을 없애야겠습니다.
안전교육수시로 실시
안전교육전문강사 지원
안전규정이 많다보니 오히려 독이 된다
안전기준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장은 벌금/과태료 처분보다는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확인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어쩌다 걸리면 재수 없었네로 끝.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위험포인트 대과지정), 계층별 교육, 안전점검 실시 문제점 개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물리는 전적으로 정책으로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둔감. 근로자본인도 책임감을 갖는 강제조치마련
안전장치 검사 철저
안전장치보강 및 설비자동화
작업자에게 철저한 안전교육 및 회사의 적절한 안전보호구 지급
작업장내 위험요소 발굴, 개선 및 위험성평가활성화
정기적으로 철저한 안전교육 및 사업주의 관심과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도 교육 및 조치사항들은 충분하니 근로자 인식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대하니 경미한 것을 산재를 일으키려 하지 않지요
현장 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비 현실적 교육시간 규제로 인하여 담당자의 교육 외부위탁으로 인한 지식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교육시간을 규정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정 및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 관련 무엇이든 좋은 개선의견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해발생이 빈번하고, 그 부담을 회사가 모두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과 중요성의 관점 구분
사업주에 대한 교육강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당사자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인터뷰로 끝. 작성은 그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통보기간연장
설문조사지처럼 순서에 따라 따라가면서 쉽게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도입
실제 제조공장 운영에 대해선 별다른 지원 및 관심이 없다가 산재가 발생하면 안전장치 미설치했으니 과태료를 때린다든가, 사업주처벌을 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이 문제라고 보인다. 노사 및 대관관계자 모두 초심으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로 보인다
안전장치보강 및 설비자동화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도록 요청
일반근로자가 자신잘못으로 회사가 아닌 곳에서 다치면 1일 내지 몇일 휴업 후 회사로 돌아오는 것이 금전적 문제인데 산재는 이를 보상해준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좋은 제도가 분명하다. 회사입장에서 수많은 위험요인에서 경미한 사고도(찰과상) 근무나 업무에 이상이 없지만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고, 병원에 자연치료 걸리는 시간 약 2주는 기본임. 일반근로자는 1일만에 나온다. 이것이 회사로서는 불만이다. 근로자가 악용한다(특히 경미한 사고)
현 제도 및 절차에 만족합니다.
현행 3일이상의 휴업에서 5일이상의 휴업으로 변경요망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 시 공상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은 방안에 관한 의견
공상처리가 재해자에게 불리하게 느껴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공상처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재요율도 있지만 산재처리를 하면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아여 패널티 또는 원청의 압박때문이겠지요
사고건수와 P.Q 등 입찰관련 연계차단
산재누적으로 불이익을 주지말고 지적대신 관리법, 교육, 현장상담 등의 재해발생 원인감소 활동이 추가되어야 하나 감독 등으로 불이익을 주니 산재를 안하려고 하는것
산재보험급여 신청의 절차 간소화
산재보험급여 인상
산재처리로 인한 패널티 폐지(근로감독, 신인도 점수)
원청사 규제완화
입찰참여시 PQ점수 감점사항 폐지
산업재해 발생 감소 방안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자과실에 대하여 비율보상제가 있었으면 좋겠음
때로는 재해자가 잘못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다면 더욱 조심할 것 같다
사고발생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근로자 과실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부여
안전의석 개혁 필요,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해 동의하고 한 인터뷰를 통해 사고 전후 느낀 점 등을 녹취하여 감성교육자료배포(인터뷰 응할 경우 일정비용지급)
작업장 정리정돈
적정한 공사비 책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류업무간소화가 필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정 및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 관련 무엇이든 좋은 개선의견
근로자과실에 대하여 비율보상제가 있었으면 좋겠음
때로는 재해자가 잘못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다면 더욱 조심할 것 같다
사고발생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근로자 과실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부여
안전의석 개혁 필요,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해 동의하고는 한 인터뷰를 통해 사고 전후 느낀 점 등을 녹취하여 감성교육자료배포(인터뷰 응할 경우 일정비용지급)
작업장 정리정돈
적정한 공사비 책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류업무간소화가 필요

기타 업종
산업재해 발생시 공상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은 방안에 관한 의견
공상처리를 하지는 않지만, 신청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산재처리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서 신청할 때 조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신청방법이나 산재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상처리시 강력한 처벌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홍보와 실무관 위주의 산재보험관련 교육필요
사고발생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무응답필요
사업장 감독대상에서 제외하여야합니다. 산업재해는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근로자의 안전의식결여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보험급여 신청의무화(법제화)
산업재해 진단을 상해경중을 따져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재해발새원인과 경중에 따라 사업장 감독 규제 완화
산업재해발생 후 적절한 치료(보험급여신청 후 사례)로 인한 사례 등을 알기쉽게 매스컴 등지에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승인범위를 확대하여 신청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음
산재발생건수에 다라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오니 대부분 사업장에서 이를 은폐함. 과태료부과를 위한 점검이 아닌 지도예방을 위한 점검이 필요
산재발생기업에 대한 불이익(산재요율, 행정제재 등) 제거, 절차간소화
산재보상심사가 엄격해지길 원함. 환산재해율을 사망인율로 산정기준변경
산재보험요율인상 안돼요
산재보험 인정범위 확대, 절차간소화, 보상액증가, 회사의 패널티삭제
실비보험보다 산재보험급여가 좋음을 홍보
장기휴업의 경우 휴업급여신청은 하나 요양급여는 신청을 잘 하지 않음. 절차들이 복잡합니다(단어들이 어려움)
재해시 적극적으로 홍보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회사 병원 등)
회사방침 또는 법률로 제정
보통 산재발생은 회사에 대한 노동청의 사업장 감독 대상이 되어 추후 과태료 및 벌금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어 산재처리 자체를 꺼려지게 만듦. 처벌을 강화하기 보단 산재 재발방지 및 그에 대한 컨설팅 등에 중점을 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산업재해 발생 감소 방안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자본인의 안전불감증 개선(교육), 작업공정상의 위험요소 최소화 노력
노사양측의 안전의식 제고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재해발생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본 주의 사항들을 그림으로 그린 포스터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의 당부시키고 의무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산재기간 끝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근로자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1회 체계적인 교육이수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한다(재발사고우려)
산재를 악용하는 경우(개인이 다친후 산재라고 주장)에 해당자 처벌 가능한 법률필요
시설확충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제고,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사례 위주의 안전교육 및 안내
안전위험요인사전파악개선 및 교육강화
안전장치에 대한 국가의 보조
예방활동강화, 산재발생적은 사업주포상
자체교육보다는 산재담당자가 직접 방문교육활성화(또는 교육전문가), 각종 스티커 제작배포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한다
재해근로자 본인 과실율 반영시 산재사고 감소
재해자 과실여부파악 산재보상율에 적용
정부지원의 교육, 자체교육 보완 전무자체에서 교육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꾸준한(반복적인)교육
특별법에 의해 안전보건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을 사측에서 선택함. (업무위탁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함)
현재 저희 업종은 사무업무이기에 출퇴근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산재처리를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무직은 업무도중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일리 매우 적기 때문에 감소방안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 주의의무 강화, 회사 : 근무환경 개선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정 및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 관련 무엇이든 좋은 개선의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신청시 대부분 승인을 해주는데 개인과실이 명백한 경우 승인 불가하여야 함. 조사무응답구축필요
근로자가 산재신청시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 본 사업장은 근로자가 비상근하여 재해발생시 보고받는 것 외에 산재발생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을 기한내에 작성치 못한 경우가 발생함
기일 단축요망
사고발생 1개월 내라고 하는 보고기간이 너무 짧은 것
사용용어의 간편화
산업재해예방관련 점검표(체크리스트) 표준안을 배부하여 사업장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바랍니다
산재처리를 진행했던 회사들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같습니다. 신청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설문하고 개선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재해나 일반행사(체육활동)등의 산업재해조사표의 경우 제출대상에서 제외
항목간소화
산업재해조사표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 업무 가중만 시킨다고 생각함. 이전과 같이 산재요양급여신청서 접수로 갈음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나. 규모별

50인 미만
산업재해 발생시 공상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은 방안에 관한 의견
1.신청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 2.사업주 불이익 배제
간단한 치료 보험료 상승 없다 까다로운 절차 없다
공상처리를 하지는 않지만, 신청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산재처리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서 신청할 때 조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신청방법이나 산재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상처리자체를 싫어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주면 된다
사업주교육
산업재해 진단을 상해경중을 따져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재 신청후 급여부분을 별도로 추가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 필요함
산재발생시 산재보호급여신청을 의무화한다
산재발생으로 인한 여러가지 불이익을 줄이면 됨
산재발생하면 노동부에서 감독을 많이 나오니 사업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산재보고 및 산재보험급여신청으로 인해 회사에 돌아올수 있는 불이익을 축소한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의 절차 간소화
산재보험급여 인상
신청절차 간소화
실제로 담당자가 처리하는 업무들이 많다. 작성 제출 및 노동부 감시 등 하는 일도 많은데 그런 부차적인 일까지 도맡아 하다보니 꺼려지는건 당연지사 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라 내외부 안전관리자 기준을 두지 말고 모든 사업장은 외부안전관리자를 통해 실시해야 함이 맞는 것이다. 이러다 내가 일 많아 죽을 것 같다.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교육강화 및 위험요소 차단 등 위험성 평가 실행
제도적 제재 미 통보(도제, 병무청, 입찰, 각종인증, 포상 등 조회, 각종 규제 때문에 신청못함)
처리절차의 간소화, 고용부점검에 대한 부담감 해소
회사나 재해근로자 모두 간편하게 처리되는게 제일 좋습니다.
회사방침 또는 법률로 제정
회사의 불이익이나 별도의 규제를 감할 수 있는 방안
산업재해 발생 감소 방안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1.근로자의 안전의식강화 2.안전시설정부지원확대

감독자가 계속해서 주의시키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교육한다
교육시간 할애시 비용보전(생산에 차질발생)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현장지식 및 능력개발
근로자의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 및 위험요소 발견 즉시 위해요소 차단
사업주 안전교육강화
산재기간 끝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근로자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1회 체계적인 교육이수의무화할 수 있도록 한다(재발사고우려)
안전관리 철처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수하여 안전불감증을 없애야겠습니다.
안전교육수시로 실시
안전규정이 많다보니 오히려 독이된다
안전기준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장은 벌금/과태료 처분보다는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확인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어쩌다 걸리면 재수 없었네로 끝.
안전장치 검사 철저
작업자에게 철저한 안전교육 및 회사의 적절한 안전보호구 지급
작업장 정리정돈
재해근로자 본인 과실율 반영시 산재사고 감소
정기적으로 철저한 안전교육 및 사업주의 관심과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도 교육 및 조치사항들은 충분하니 근로자 인식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대하니 경미한 것을 산재를 일으키려 하지 않지요
현재 저희 업종은 사무업무이기에 출퇴근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산재처리를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무직은 업무도중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일리 매우 적기때문에 감소방안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정 및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 관련 무엇이든 좋은 개선의견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해발생이 빈번하고, 그 부담을 회사가 모두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에 대한 교육강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당사자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인터뷰로 끝. 작성은 그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간을 연장하였으면 좋겠다
산재처리를 진행했던 회사들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같습니다. 신청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설문하고 개선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일반근로자가 자신잘못으로 회사가 아닌 곳에서 다치면 1일 내지 몇일 휴업 후 회사로 돌아오는 것이 금전적 문제인데 산재는 이를 보상해준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좋은 제도가 분명하다. 회사입장에서 수많은 위험요인에서 경미한 사고도(찰과상) 근무나 업무에 이상이 없지만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고, 병원에 자연치료 걸리는 시간 약2주는 기본임. 일반근로자는 1일만에 나온다. 이것이 회사로서는 불만이다. 근로자가 악용한다(특히 경미한 사고)
현행 3일이상의 휴업에서 5일이상의 휴업으로 변경요망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산업재해 발생 시 공상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은 방안에 관한 의견
경미한 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없는)까지 모두 산재보험급여로 진행을 한다면 회사로서는 노동부 규제 및 집중점검대상이 되고 산재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자연스레 공상으로 더 가는 것 같다. 이는 정부에서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을 부추기는 꼴이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상처리가 재해자에게 불리하게 느껴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공상처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재요율도 있지만 산재처리를 하면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 패널티 또는 원청의 압박때문이겠지요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홍보와 실무관 위주의 산재보험관련 교육필요
법강화
보험요율인상 및 고용노동부의 감사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사고건수와 P.Q 등 입찰관련 연계차단
사고발생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필요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보험급여 신청의무화(법제화)
산업재해 발생원인과 경중에 따라 사업장 감독 규제 완화
산업재해발생 후 적절한 치료(보험급여신청 후 사례)로 인한 사례등을 알기쉽게 매스컴 등지에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재발생건수에 다라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오니 대부분 사업장에서 이를 은폐함. 과태료부과를 위한 점검이 아닌 지도예방을 위한 점검이 필요
산재발생기업에 대한 불이익(산재요율, 행정제재 등) 제거, 절차간소화
산재보험인정범위 확대, 절차간소화, 보상액증가, 회사의 패널티삭제
산재처리(재행발생보고)에 다른 규제를 줄여야 한다.
산재처리로 인한 패널티 폐지(근로감독, 신인도 점수)
산재처리시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 법령규정 완화 요청
실비보험보다 산재보험급여가 좋음을 홍보
원청사규제완화
입찰참여시 PQ점수 감점사항 폐지
장기휴업의 경우 휴업급여신청은 하나 요양급여는 신청을 잘 하지 않음. 절차들이 복잡합니다(단어들이 어려움)
장애등급 발생시 회사에서 처리 어렵고 3일 이상 휴업 발생시 합법적인 처리방법이 아니기에 산재처리 요청
재해경중에 따라 익년도 정기감독대상 재해가 어떤 것들인지 메뉴얼화
제도의 간소화, 관리감독약화
제조업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높음. 사망 및 대형산재사고가 아

닐 경우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등 규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웠으면 좋겠음. 그러면 산재신청에 부담을 갖지 않을 것 같다.
중대제외 제외, 노동부 점검 간소화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회사 병원 등)
산업재해 발생 감소 방안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감독 강화에 따른 처벌을 줄이고 산재감소에 따른 지원정책 강화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인식 개선필요
근로자 안전의식
근로자본인의 안전불감증 개선(교육), 작업공정상의 위험요소 최소화 노력
근로자의 의식전환(산재의 대부분은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데도 원칙을 지키지 않는데 있음)
꾸준한 안전관리와 관심
노사양측의 안전의식 제고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재해자가 잘못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다면 더욱 조심할 것 같다
사고발생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근로자 과실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부여
사업주 및 작업자가 최대한 안전의식을 항상 가지고 작업장 안전설비에 만전, 작업시 안전규정준수에 대해 항시 유념하는 의식적 사고 외 제도적으로 마련할 방안을 없을 듯하다
산업재해발생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본 주의사항들을 그림으로 그린 포스터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의 당부시키고 의무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산재를 악용하는 경우(개인이 다친 후 산재라고 주장)에 해당자 처벌가능한 법률필요
실사례위주의 안전교육 및 안내
실제 산재 및 공상사고 발생원인은 설비 및 안전장비 미설치도 있지만 근로자의 부주의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노사 양측의 패널티를 정한다던지 조율이 필요하지 무조건 회사에서 산재 또는 공상으로 처리만 하는 상황이니 별다른 답이 안보인다. 실제 사고 발생시, 근로자들은 대부분 본인 부주의를 인정하지만 병원을 가고 시간이 지나면 산재를 해달라느니 보상을 요하는 등 태도가 바뀌는 것도 부지기수다.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위험포인트 대과지정), 계층별 교육, 안전점검 실시 문제점 개선
안전장치보강 및 설비자동화
안전장치에 대한 국가의 보조
예방활동강화, 산재발생적은 사업주포상
자체교육보다는 산재담당자가 직접 방문교육활성화(또는 교육전문가), 각종 스티커 제작배포

적정한 공사비 책정
정부지원의 교육, 자체교육 보완 전무, 자체에서 교육
현장 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비 현실적 교육시간 규제로 인하여 담당자의 교육 외부위탁으로 인한 지식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교육시간을 규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류업무 간소화가 필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정 및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 관련 무엇이든 좋은 개선의견
7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도 건설사고 발생시 2시간내 보고하게 법이 개정되어 일선 안전관리자들의 업무가 추가된 것. 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업요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신청시 대부분 승인을 해주는데 개인과실이 명백한 경우 승인불가하여야 함. 조사시스템구축필요
근로자가 산재신청시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 본 사업장은 근로자가 비상근하여 재해발생시 보고받는 것 외에 산재발생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을 기한내에 작성치 못한 경우가 발생함
단순과 중요성의 관점 구분
사고발생 한달내라는 보고기간이 너무 짧은 것
사용용어의 간편화
산업재해예방관련 점검표(체크리스트) 표준안을 배부하여 사업장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바랍니다
실제 제조공장 운영에 대해선 별다른 지원 및 관심이 없다가 산재가 발생하면 안전장치 미설치했으니 과태료를 때린다든가, 사업주처벌을 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이 문제라고 보인다. 노사 및 대관관계자 모두 초심으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로 보인다
안전장치보강 및 설비자동화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도록 요청
조사표 작성이 전산처리 되면 좋겠다
항목간소화

300인 이상
산업재해 발생시 공상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은 방안에 관한 의견
공상처리시 강력한 처벌
산업재해로 인한 기업피해 소지제거((재해율공포, 보험수가 미반영)
산업재해 승인범위를 확대하여 신청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음
산재누적으로 불이익을 주지말고 지적대신 관리법, 교육, 현장상담 등의 재해발생 원인감소 활동이 추가되어야 하나 감독 등으로 불이익을 주니 산재를 안하려고 하는 것
산재보험급여 신청접수로 인한 사업장 감독(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사고성 재해 그건(현재기준)이상시 감독)을 받을 수 있어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산재보험신청기준에 대한 사원교육홍보
산재보험요율 인상에 대한 부담과 산재보험처리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부담을 줄여주세요.
산재보험요율인상 안돼요
재해시 적극적으로 홍보
중대재해이외 감독자제
산업재해 발생 감소 방안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자과실에 대하여 비율보상제가 있었으면 좋겠음
사고유발자 패널티 부과
소규모사업장 위주의 정책이 필요함(재해빈도 많은)
안전교육전문 강사지원
안전위험요인 사전파악 개선 및 교육강화
안전의석 개혁 필요,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해 동의하고는 한 인터뷰를 통해 사고 전후 느낀 점 등을 녹취하여 감성교육 자료배포(인터뷰 응할 경우 일정비용지급)
작업장내 위험요소 발굴, 개선 및 위험성 평가활성화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한다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꾸준한(반복적인)교육
특별법에 의해 안전보건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을 사측에서 선택함. (업무위탁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함)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정 및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 관련 무엇이든 좋은 개선의견
기일을 단축요망
대구모 현장의 경우 만인률로 따졌으면 좋겠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통보기간연장
최근 생계형 산재주장 사례가 늘고 그 방식도 점차 발전하고 있음. 실제 디스크, 인대 등의 부상의 경우 지병 또는 사업과 무관한 것을 출근부 접점을 만들어 병원자료 진행, 가환이 많이 경우한 후 공상을 요구하고 사례도 있으면 일일이 대응하고 싸우기에 소모가 커 산재발생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음
출퇴근재해나 일반행사(체육활동) 등의 산업재해조사표의 경우 제출대상에서 제외
현 제도 및 절차에 만족합니다.

4. 현재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용목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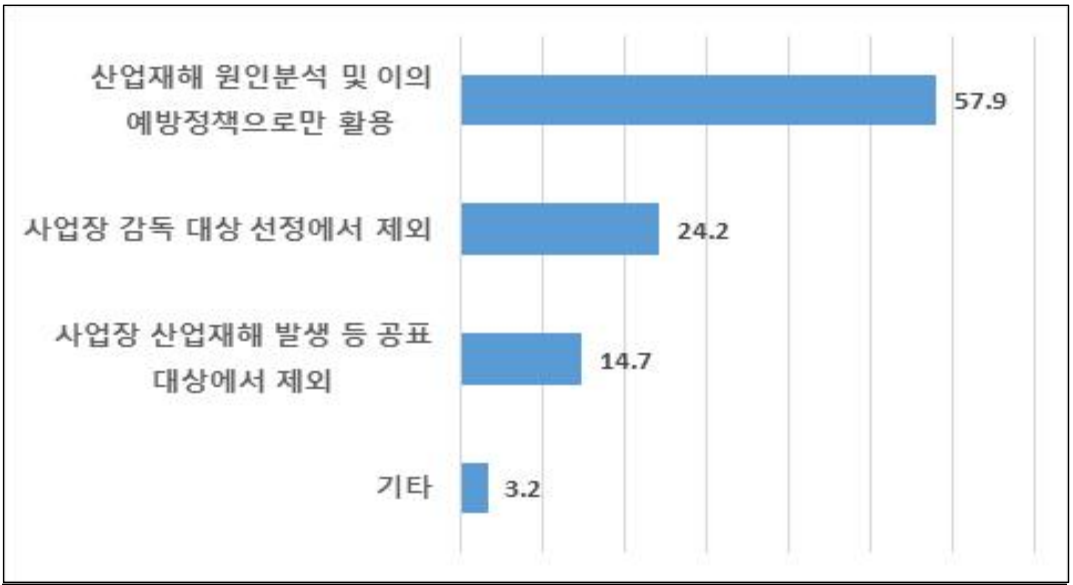
① 산업재해 원인분석 및 이의 예방정책으로만 활용

② 사업장 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③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등 공표 대상에서 제외

④ 기타 ( )

구 분	반응		케이스 중 %
	N(명)	비율(%)	
산업재해 원인분석 및 이의 예방정책으로만 활용	55	57.9	78.6
사업장 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	23	24.2	32.9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등 공표 대상에서 제외	14	14.7	20.0
기타	3	3.2	4.3
전체	95	100.0	135.7



기 타
산재처리시 병원에서 입원실과 환자(사고피해자)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여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 외의 활용을 원치 않음
현재 산업재재율 산정시 산업재해조사표제출내역과 요양신청내역을 합산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생계형 공의성 공상요구 등 부당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재은폐 및 통계자료로만 활용하고 산업재해산정은 요양신청 및 산재승인건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견으로 산업재해 원인분석 및 이의 예방정책으로만 활용 5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업장 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 24.2%,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등 공표 대상에서 제외 14.7%, 기타 3.2% 순으로 나타났음

Ⅲ. 면접조사

1. 배경 및 목적

1) 설문조사 보완

산업재해 보고 후 요양 미신청 사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공받은 리스트의 사업장 중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비면접 설문조사는 표준화된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답을 얻을 수 있고, 응답에 대한 부담을 줄여 비교적 솔직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설문지의 회수율이 낮을 수 있으며, 질문이 한정되어 있어서 융통성이 없고 따라서 대답이 불충분할 수도 있다.

2) 면담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보강

설문조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의 설문조사 결과와 면접을 통한 진술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함. 면담조사는 설문조사의 약점을 보완하여 산재보고-요양 미신청의 구체적 과정을 조사함으로써 문제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미신청 이유에 대한 진솔한 답변과 요양 신청 증가 방안 등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견을 수집하여 실현가능한 대안 제시의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

2. 조사방법

1) 대상 선정

2019년 7월 현재, 산재 발생 보고 통계에 포함된 총 사업장 중 업종(제조업, 건설업, 기타), 규모(300인 이상, 50인 이상 300인 미만, 50인 미만)를 기준으로 표본

추출한 300개 사업장(‘설문조사 샘플(300표본)’)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국 단위로 실시 하였다.

비면접 조사는 표준화된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답을 얻을 수 있고, 응답에 대한 부담을 줄여 비교적 솔직한 답을 얻을 수 있으나, 질문이 한정되어 있어서 융통성이 없고 따라서 대답이 불충분할 수 있다.

면담조사는 설문조사의 약점을 보완하여 요양 미신청의 구체적 과정을 조사함으로써 문제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 면담조사 방법

2019년 9월, 설문조사가 완료된 설문조사 샘플(300표본)에 포함된 사업장 및 설문조사 미참여 사업장 중 업종(3)×규모(3) = 9개, 각 2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총 18개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인터뷰를 진행하여 36개의 사례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설문조사 참여 대상 300인 이상 업종의 규모가 많지 않아 사업장 자체를 찾는 것이 어려운 점, 설문조사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의견이 많아 면담조사 진행에 소극적인 점, 건설업의 경우 특성상 공사완료에 따른 재해자 인터뷰가 어려운 점과 매우 폐쇄적인 태도, 재해자들의 면담 거부, 공상처리 근로자가 퇴사한 사례가 많은 점, 다수 기업들이 공상처리자가 없다는 강경한 태도 그리고 산재신청 불승인으로 인해 데이터 오류(산재보고+산재미처리가) 등의 이유로 예상 면담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구분	300인 이상	50인 - 300인	50인 미만
제조	2개 사례	2개 사례	2개 사례
건설	2개 사례	2개 사례	2개 사례
기타	2개 사례	2개 사례	2개 사례

3) 면담조사 과정

업종 및 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나 지역별 차이의 유의미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례에 대한 면담조사는 연구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자가 2명씩 팀 구성하여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면담 조사하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연구자로 참여중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비설문조사 참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면담을 진행하였다.

3. 면접조사 결과 분석

1) 면접조사 업종별 특성

구 분		규모			전체
		50인 미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2/1*	2/2	2/1	6/4
	건설업	3/1	2/0	0/0	5/1
	기타	2/1	2/2	2/0	6/3
전체					17/8

* 주: “/”의 앞부분 숫자는 사업자의 수, 뒷부분 숫자는 근로자의 수임

2) 사업주 면접조사 결과 종합

(1) 제조업

가. 50인 미만

사업주 * 회사의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부서)		
항목	내용	비고
기본사항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 인지 여부 - 제도의 이원화는 알고 있음 - 양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사업장별로 상이함 -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를 알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를 경험하고 보고와 요양신청을 경험해 본 사업장임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에 대한 근로자 인지 여부 - 사업주와는 달리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신청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함 - 그러나 신청서는 회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잘 모른다고 함 - 또한 산재발생보고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함.	
산재처리과정	○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고자 관련 사항 - 소규모 사업장이라 재해발생은 바로 인지되고 주로 동료가 확인 후 보고함 - 절차는 사고자 또는 동료근로자(발견자) -> 부서장 또는 안전관리자 -> 대표자	
	○ 근로자가 공상처리 요구하는 이유 - 근로자가 공상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회사가 공상처리 요구하는 이유 - 회사가 공상처리를 **요구**한 사실도 없음	
	○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는 대신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이유 - 법령준수, 비용측면, 후유장애, 향후 불이익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산재처리함	

	○ 근로자가 산재신청한 경우 회사가 인식하게 되는 경위 - 대부분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하지만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신청하여 공단으로부터 통보받기도 함	
	○ 회사가 생각하는 산재 발생 원인 - 재해근로자나 동료근로자의 과실이라는 답변이 우세	
	○ 산재발생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	
산재미처리과정과이유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무재해 운동 목표 달성을 위함 - 혜택 감소 우려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비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경미한 상병이라고 생각하여	
	○ 공상처리시 치료비용 부담 방법과 추가 지급 항목 - 과거에는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처리했으나, 현재는 급여의 70% 수준으로 보상하며 진료비 관련 비보험급여에 대한 비용 정도를 보전해주는 사례가 다수임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후유장애 관련 사항 - 문제된 경우가 없음(후유장애 생길만한 사고는 무조건 산재로)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불만을 제기한 사항 - 문제된 경우가 없음	
개선방안	○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 회사입장에서는 산재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제거 -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단이 비용을 100% 보상해주면 신청할 것임	
	○ 산재 발생 감소 방안 -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교육의 강화와 동시에 안전수칙 미준수 재해근로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 - 사업체의 비용 문제로 안전수칙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음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정 및 산재발생보고제도 관련 의견 - 재해조사표 자체는 간편하므로 작성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며, 산재발생보고제도와 관련한 개선의견 없음	

	○ 산업재해조사표의 활용목적 - 단속과 처벌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산업재해의 원인분석과 예방을 위해 활용	
기타의견	- 산재신청제도와 산재보고제도를 일원화 했으면 좋겠음 - 노동부에 산재보고하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만으로 보고제도를 갈음하면 될 것임 - 산재처리기준 4일은 지나치게 짧으므로 공상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2주 정도로 연장했으면 함. - 경미한 재해까지 모두 산재처리할 경우, 3D업종과 인력난 등의 이유로 생산성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2주 이내 치료가 필요한 재해는 공상처리하도록 했으면 함	

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주 * 회사의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부서)		
항목	내용	비고
기본사항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 인지 여부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의 이원화 사실과 산재발생보고의 요건 및 산재보험처리의 요건 알고 있음 - 산재발생 미보고가 형사상 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보험 미처리가 형사상 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지 못함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에 대한 근로자 인지 여부 - 산재발생보고제도를 인식하고 있는 비중은 낮음 - 산재보험처리제도를 인식하고 있는 비중이 높음	
산재	○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고자 관련 사항 - 매뉴얼의 존재 여부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상이함	

처리과정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발견자(사고자)가 병원 치료 후 관리과 담당자에게 직접 보고	
	○ 근로자가 공상처리 요구하는 이유 - 경미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공상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존재 ○ 회사가 공상처리 요구하는 이유 - 수회의 통원치료조차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재해의 경우 공상처리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공상처리하고 있음 - 또한 경미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여 공상처리를 하고 있음	
	○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는 대신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이유 - 상병을 살펴 휴업이 발생하는 입원이 필요한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희망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하고 있음 - 산재 승인이 불명확한 사고,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공상을 요청하는 경우도 존재하나 산재보험을 신청하고 있음 ○ 근로자가 산재신청한 경우 회사가 인식하게 되는 경위 - 근로자의 독자적 신청 이후 공단의 관련 통지를 통해 인식 -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근로자가 상당 기간 치료 이후 추가 휴업을 이유로 산재보험을 신청하고 이후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 존재	
	○ 회사가 생각하는 산재 발생 원인 - 근로자의 작업 중 부주의로 경미한 재해 발생	
	○ 산재발생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 휴업이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필요함	
산재미처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회사의 보험요율 상승, 병역특례제도 신청 불승인, 사업장 감독 등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이유로 경미한 재해 및 일정 재해에 대하여는 공상처리를 고려하고 있음	

리 과 정 과 이 유	- 중대재해가 아닌 산재 사고 발생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활동에 현실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공상처리하고 있음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비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경미한 재해라고 판단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공상처리를 하고 있음 * 재해의 경중 판단 기준 - 입원이 필요한가 여부	
	○ 공상처리시 치료비용 부담 방법과 추가 지급 항목 -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보전하는 방법을 채택 - 실제 발생한 치료비 - 입원이 발생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의 급여(평균임금의 70%) - 발생한 치료비, 휴업기간 동안의 급여(평균임금의 70%),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된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 및 기타 위로금으로 합의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후유장애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불만을 제기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개 선 방 안	○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 근로복지공단에의 산재보험 신청 자료는 통계자료로만 활용된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 - 현행 산재보험급여 승인 기준은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 근골격계 질환 등 추적검사가 필요한 질환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통증 호소 및 치료 병원의 진단서가 산재 승인의 1차 판단기준이라 생각하고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연속되는 산재 신청보다 합의를 통한 공상처리가 유리하다고 판단 - 현행 산재보험급여의 수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어느 정도 유사하여 일부 재해의 경우 추가 민사합의를 필요로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	

	- 산재발생건수에 따른 제재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산재신청이 활성활 될 것이라 판단 - 산재보험 승인 이력에 따른 현실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상처리 보다 산재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고 생각	
	○ 산재 발생 감소 방안 - 국가 지원의 유인이 있으면 산업안전교육->산재예방->산재발생 감소의 선순환을 위한 일련의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 - 산업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이 있다면 이들을 통해 사업장의 산재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정 및 산재발생보고제도 관련 의견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어려움 없음 - 공상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재발생보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사후 사실 확인, 정보 공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는 재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국가로서는 산재 발생 현황과 관련된 통계 수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 휴업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근로자 스스로 결근이 필요하다면서 통증을 요청하는 경우(외견상 근로가 가능하다고 생각됨에도)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업장으로서는 사후에 산재발생보고 등을 하여 산재 다발 사업장이 되어야 하는 부담이 발생 - 휴업일수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인가 여부라고 생각 - 벌금 혹은 과태료 부과 보다는 산재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산재발생보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이라고 판단	
	○ 산업재해조사표의 활용목적 - 산재 발생 현황,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자료로만 활용 - 사업장 감독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에 반대	
기	○ 개선 또는 건의 사항	

타 의 견	- 산재 발생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요율 하락 등의 소극적인 이익을 넘어서 보험료 환급 등의 적극적인 이익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 중소기업으로서는 환급 등의 국가 지원이 큰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유인이 있으면 산업안전교육->산재예방->산재발생 감소->산재보험료 환급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 - 장애인 고용 시 지급되는 장려금과 같이 산업안전 준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따라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 - 중소기업으로서는 산업안전교육->산재예방->산재발생 감소의 선순환을 위한 전문적인 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수급이 현실상 힘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적발보다는 교육지원, 비용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 산재사고 유형 - 유리 제조업의 특성상 피부가 살짝 베이는 등 간단한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사고가 대다수임 - 유리 제조 공정에서 휴업이 발생하는 사고 발생은 거의 없음 - 염좌, 타박상 등의 근골격계 질환 재해가 몇 건 발생 - 예전 중대재해 발생 사실 존재 - 도시락 제조업의 특성상 원재료를 다듬은 과정에서 자동화된 칼날에 베이는 사고가 다수 발생 - 원재료 준비, 생산품 이동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작업으로 근골격계의 업무상 질병이 최근 발생 - 기타 청소 과정에서 미끄러짐, 추락 등의 업무상 사고 발생 - 중대재해 발생 사실 없음 ○ 종합 의견 - 휴업이 발생하지 않는 경미한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이 예견되어 공상 처리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자료는 사업장에 현실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로 이러한 판단이 공상처리를 하고자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사업장에 발생이 우려되는 불이익 이외에 산재보험 급여수준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상처리가 이루어진 사실 있음 - 산재 승인 내역 혹은 산재발생보고 내역이 현실적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공상처리 원인으로 휴업이 발생하지 않는 경미한 재해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휴업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요양 판단의 기준 또한 치료일수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다.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주 * 회사의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부서)		
항목	내용	비고
기본사항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 인지 여부 - 산재발생보고제도 및 산재보험처리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 - 산재발생 미보고가 형사상 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알고 있음 - 공상처리시 미처벌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있음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에 대한 근로자 인지 여부 - 다양한 정보 오픈으로 잘 알고 있는 경우와 - 두 제도를 인식하고 있는 비중은 낮은 경우로 나뉨	
산재처리	○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고자 관련 사항 - 재해자가 재해사실을 보고하지만, - 상황에 따라 보고받는 자는 다를 수 있음. 야간작업의 경우 부서장이나 담당관리자가 없으므로, 해당 반장한테 먼저 보고하고 주간	

과정	작업에는 담당관리자에게 보고 들어옴. - 사고성 재해는 통상 관리자가 현장에서 바로 재해자와 동반하여 병원 방문하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는 본인이 혼자 방문함	
	○ 근로자가 공상처리 요구하는 이유 - 보통 기간에 따라 다르나, **2주 정도**면 치료후 업무 복귀에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하면 근로자가 요구하고 비용처리 합의가 가능하므로 담당관리자와 **상담후** 공상처리가 진행됨. - 경미한 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존재 ○ 회사가 공상처리 요구하는 이유 - 원칙적으로 회사는 공상처리를 요구하지 않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면담을 진행하여 확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근로자의 공상처리 요구가 있으면 절차를 안내함. - 경미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여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음	
	○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는 대신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이유 - 법령준수 우선, 재해근로자 휴업이 장기화 예상, 합의 후 향후 보험신청을 주요요인으로 답변함. - 이 중 법령준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기업 규모가 있다보니 3가지 요인이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됨. - 휴업의 장기화 예상되는 이유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장기의 범위를 **3개월**로 보고 있음. ○ 근로자가 산재신청한 경우 회사가 인식하게 되는 경위 -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인식하게 되는 경우와, - 근로자가 총무과 담당자에게 산재 신청을 희망하는 의사를 먼저 전달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음	
	○ 회사가 생각하는 산재 발생 원인 - 작업공정에 존재하는 위험과 근로자 과실을 주요요인으로 지목함. - 이중 근로자 과실이 좀 더 비중이 높은 요인으로 보고 있음. 안전	

	팀이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안전장비 미착용이나 불안전한 자세 등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임. - 공정의 위험성도 문제는 될 수 있음. 다만 특별한 고위험 공정이 없다는 측면에서 공정이 불가피하게 위험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	
	○ 산재발생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 정보공유 차원에서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해주면 회사입장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 미작성에 따른 산재은폐 등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산재미처리과정과이유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산재미처리가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함 - 다른 회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그 결과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요율 상승 등을 이유로 공상처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당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요율 상승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미한 재해의 경우 공상처리를 하고 있음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비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재해근로자가 희망해서로 답변함.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상처리가 더 시간적으로 빠르고 상병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이며, 공상으로 휴업하게 되면 100% 비용처리 다해주고 추가 비용도 지급하기 때문임 - 경미한 재해의 경우 공상처리가 유리하다고 판단. 휴업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 경미한 재해로 생각	
	○ 공상처리시 치료비용 부담 방법과 추가 지급 항목 - 치료비 전액(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그 비용과 자기부담금 그리고 치료에 소요되는 비보험급여) 부담하며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추가로 지급함 - 다른 회사의 경우 이와 함께 추가 합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존재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후유장애 관련 사항 - 해당 사항 없음(후유장애가 있는 사고라면 산재처리 함)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불만을 제기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개선방안	○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봄 - 그러나 요양 3일 이상의 업무상 재해가 아닌 모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면 산재 신청이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 - 산재미처리를 법으로 금지시키면 산재처리 건수는 늘어나겠지만. 이 경우 산재율 증가에 따른 보험요율이나 근로감독 등의 제재를 완화시켜주는 장치도 필요함	
	○ 산재 발생 감소 방안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과 같은 기관이 주관해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 - 그리고 이러한 기관이 지금보다 좀 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형태로 위험을 판단하고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또는 어플을 깔아서 권장하는 방법도 필요함. - 사업장 스스로 산재 발생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장 실태 조사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 안전보건공단의 자율점검 및 개선권고, 고용노동지청의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의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산재 발생 감소를 위하여 효과적이라 생각 - 산재발생보고가 이루어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사고 예방 및 자율 개선 목적의 점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 현재의 안전협회 등으로의 업무 위탁만으로는 사고 예방 및 자율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정 및 산재발생보고제도 관련 의견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어려움 없음 - 회사의 고의없는 지연보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간 연장을 원함	

	- 산재발생보고 이후 사업장 감독 등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생각 - 휴업이 발생하지 않는 경미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발생보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휴업일수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 근로제공이 힘든가 여부라고 생각	
	○ 산업재해조사표의 활용목적 - 산재 발생원인 분석과 예방대책 수립 자료로만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감독 위주의 방법은 실적 위주의 대책에 불과하여 산재 예방 대책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기타의견	○ 개선 또는 건의 사항 - 산업안전교육의 내실화가 필요 - 근무시간 내 관련 교육 실시가 현실적으로 곤란, 업무 위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이유로 사업장 소속 실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 ○ 종합 의견 - 휴업이 발생하지 않는 경미한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 이후 산재발생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산재처리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상 처리가 유리하다고 판단 -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예견되는 경우 산재 신청 절차를 통한 보상이 유리하다고 판단	

(2) 건설업

가. 50인 미만 건설업

사업주 * 회사의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부서)		
항목	내용	비고

기본사항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 인지 여부 - 산재보험처리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의 이원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음 - 정확한 보고제도의 기준 그리고 미보고시 벌칙에 대하여는 모름 - 산재보험미처리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함 - 산재보고나 산재신청을 직접 경험한 사례가 이전에 거의 없었음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에 대한 근로자 인지 여부 - 재해발생시 산재신청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재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이전에 경험이 없으므로 잘 알지 못함 - 산재발생보고제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함	
산재처리과정	○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고자 관련 사항 - 소규모 사업장이라 별도의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고발생 직후 즉시 보고됨 - 산재 발생시 보고는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임 - 보고 받는자는 현장소장이나 부서장들임 - 병원 방문시 보고받는자가 동행함	
	○ 근로자가 공상처리 요구하는 이유 - 근로자도 공상처리를 요청한 사실은 없으며, 해당 사건의 경우 재해근로자가 산재가 아닌 개인 무릎질환과 함께 산재부위를 병행 치료하게 되어 별도의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함 ○ 회사가 공상처리 요구하는 이유 - 회사가 공상처리를 요구한 사실은 없으나, 공상처리를 한다면 가벼운 상해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재해시 공상처리 필요성 있다고 생각함	
	○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는 대신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이유 - 산재처리비용 과다 등 금액적인 측면이 주요 요인 - 합의를 위반하고 산재보험을 신청할 것이 예상되어서로 답변함 - 근로자가 공상처리를 요구하더라도 차후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바로 산재처리를 함.	

	- 후유장애가 없는 경미한 사고같은 경우 회사는 공상처리를 원해도 근로자들이 대부분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근로자가 산재신청한 경우 회사가 인식하게 되는 경위 - 소규모 사업장이라 거의 모든 사고는 사고발생 즉시 인지 재해근로자나 동료근로자로부터 알게 됨. - 공단으로부터 보험가입자 의견서나 확인서 제출 통보	
	○ 회사가 생각하는 산재 발생 원인 - 재해근로자의 과실(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 작업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성(유리 취급) - 재해근로자의 과실(회사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도 있을수 있지만 최근 건설업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활성화하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근로자들이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불편함으로 착용을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있음)	
	○ 산재발생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 찬성함. -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이라 거의 모든 사고는 즉각 인지되므로 필요성이 크다고 느끼지 못함	
산재미처리과정과이유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보험요율 인상, 사업장 감독문제, PQ점수 감점이나 입찰자 참가자격 제한을 제도적 이유로 답변함 - 이중 보험요율 상승에 대한 경제적 부담(동종업계와 비교해 0.5 - 0.8% 요율이 높게 책정되었으나, 최근 3년간 경미사고 2-3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요율상승이 과도하다고 판단)이 중대한 이유라고 답변함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비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경미한 재해(단순골절과 같이 후유장애가 없다면 공상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 - 소규모 인테리어 사업장으로 초/단기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공상처리(즉각적인 보상).	
	○ 공상처리시 치료비용 부담 방법과 추가 지급 항목	

	- 가벼운 상해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재해시에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며, 치료비용과 휴업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만큼 비용을 보전해주고 자기부담금도 지급해줌. 휴업 일수를 대략 감안해서 임금상당액도 지급함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후유장애 관련 사항 - 기본적으로 후유장애가 예측되면 공상처리를 하지 않으며, 근로자도 요구하지 않음. - 공상처리 하였는데, 재해근로자가 1개월 이내에 다른 불만이 있거나 요양이 지속될 것 같아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례에서 공상으로 처리한 비용 다시 받고 산재처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함(산업재해조사표 1개월 작성 기준 때문).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불만을 제기한 사항 - 원만한 금액으로 합의되므로 불만사항 없음	
개선방안	○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 산재보험요율제도(개별실적요율제 보다 현실화) 개선 필요	
	○ 산재 발생 감소 방안 - 지급된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산재발생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을 개선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포스터를 건설현장에서 잦은 왕래가 있는 곳에 부착 또는 비치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 - 사업주 개인 비용으로 안전포스터를 부착하지만 효과의 측면에서 안전보건공단이 많은 포스터를 제작해 제공해주기를 요청함. - 근로자의 안전불감증 제고를 위해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필요하다는 의견(현장에서 회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다보니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 개선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입장)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정 및 산재발생보고제도 관련 의견 - 조사표 작성에 큰 어려움을 느끼진 못했고 개선안도 별로 없음	

	○ 산업재해조사표의 활용목적 - 단속과 처벌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예방목적으로만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임	
기타의견	- 회사입장에서는 3개월 정도의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1년 이상 전원하며 요양을 진행해 문제제기한 사례도 있었음. - 건설업이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장기요양하면서 휴업급여 받는 사례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건설업

사업주 * 회사의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부서)		
항목	내용	비고
기본사항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 인지 여부 - 산재발생보고제도 및 산재보험처리제도에 대하여 잘알고 있음 - 공상처리시 미처벌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있음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에 대한 근로자 인지 여부 - 교육을 통해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건설업의 일용직 근로자 신규교육에서 언급함.	
산재처리과정	○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고자 관련 사항 - 사고 발생하면 작업팀장들이 관리감독자나 안전담당자에게 연락 - 사안마다 다르나 협력사 소장이나 관리감독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동행할 때도 있고 원청에 직접 연락해 동행이 이루어질 때도 있음.	
	○ 근로자가 공상처리 요구하는 이유 - 회사의 불이익과 개인적 불이익(회사로부터의 패널티 등) ○ 회사가 공상처리 요구하는 이유 - 회사가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 -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정말 경미한 사고, **휴업일수가 1일이나 2일 이내**일 때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음.	
	○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는 대신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이유 - 재해자가 원하는 금액과 회사금액의 차이, 공상처리 이후 산재처리 재신청 예상, 공상처리 후 법적으로 불이익 예상 등을 주요요인으로 생각함. - 예전 회사 사례로서, 허리부상으로 공상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는데, 1개월 이후 부상이 악화되었다며 산재처리를 진행하여, 회사 입장에서 산재은폐가 되버렸고, 이후 자진신고를 하였음(이 사건 이후 공상처리 하지 않음) ○ 근로자가 산재신청한 경우 회사가 인식하게 되는 경위 - 공단으로부터 통보	
	○ 회사가 생각하는 산재 발생 원인 - 작업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근로자 과실, 작업자 교육 및 지식 부족을 주요요인으로 지목함. - 이중 공정의 위험을 가장 중요한 위험성으로 보고 있음. 공기 때문에 동시작업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혼합공정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사고 발생율이 높아진다고 봄. - 그리고 근로자 과실도 중요 원인이나 원천적으로 위험하고 불안전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산재발생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 산재은폐가 일어날 여지가 있음. 공상처리 합의후 산재처리 하게 되면 회사입장에서는 지연보고에 따른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므로, 양벌기준을 작업자들한테도 주어 서로 신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 - 건설업의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에 산재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산재신청을 하면 자신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오히려 근로자들의 산재처리 건수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임.	
산재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산재미처리가 불법이 아니며 노동부 감독 규제를 주요 요인으로	

미처리과정과이유	답변함. - 원청도 노동부 근로감독을 두려워하나 특히,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음.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비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경미한 재해와 안전관리자 등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를 요인으로 답변하였음. - 경미하다는 기준은 **사고 다음날 출근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병원 다녀온 이후 의사의 소견도 중요함(3일이상 나오면 산재보고 대상이므로 산재인정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산재처리함) - 실제 안전관리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관리자들이 꽤 있음. 물론 현장에서 사고 책임이 안전관리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부담을 가지고 있음.	
	○ 공상처리시 치료비용 부담 방법과 추가 지급 항목 - 협력사에서 사고가 나면 치료비나 위로금은 협력사가 지급하며, - 치료비용은 부담은 입원이든 통원이든 휴업기간 동안의 급여를 100%는 아니나 충분하게 지급하며 위로금도 지급함. - 비용부담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은 아니며 일반으로 처리함.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후유장애 관련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불만을 제기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개선방안	○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 산재신청으로 인한 패널티 폐지 및 근로감독 제외 제안(일단 감독을 받으면 과태료나 벌금 등 페널티를 받으므로 현장 관리자들은 부담을 많이 가짐)	
	○ 산재 발생 감소 방안 - 안전관리자 선임 수 증가 - 현장에서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려면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만 전업으로 해야 하나 현장감독과 행정업무까지 과중한 부담으로 산재발생 감소에 현실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봄. - 다만, 안전관리자 수급 활성화를 위해 선임기준 완화도 필요할 수	

	있지만 적정한 자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고려가 필요함.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정 및 산재발생보고제도 관련 의견 - 해당 의견 없음	
	○ 산업재해조사표의 활용목적 - 현재와 같이 예방목적으로도 활용이 필요하나, 사업장 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여 중대재해가 빈번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독대상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있었으면 함.	
기타의견	- 현재 사업장은 아니나 이전 직장에서 공상처리 합의후 1개월 지난 이후 추가 요양을 요구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은폐가 되버려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음. - 이전 사업장에서 목격자가 전혀 없는 사고를 겪은 근로자가 1개월 이후 공상처리 합의를 요청하게 될 경우 사고발생과정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여서 물증은 없으나 병원치료비나 위로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음.	

(3) 기타 업종

가. 50인 미만 기타 업종

사업주 * 회사의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부서)		
항목	내용	비고
기본사항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 인지 여부 - 산재보고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함 - 산재신청제도에 대하여는 알고 있음 - 정확한 산재신청제도와 보고제도의 기준에 대하여도 알지 못함 - 산재보고나 산재신청을 직접 경험한 사례가 이전에 없었음 - 산재발생보고제도 및 산재보험처리제도에 대하여 잘알고 있음 ※과거에 노동부 감독관이 사업장 점검을 왔던 차에 산업재해조사	

	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어 보고제도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음 - 공상처리시 미처벌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있지 못함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에 대한 근로자 인지 여부 - 재해발생시 산재신청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알고 있음 - 구체적인 산재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이전에 경험이 없으므로 잘 알지 못하나 주변에 경험들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울 거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 - 산재신청시 본인의 인사상 불이익,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업무량 증가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 산재발생보고제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함 - 재해발생시 산재신청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알고 있으며, 경미한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 산재발생보고제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함	
산재처리과정	○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고자 관련 사항 - 소규모 사업장이라 별도의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고발생 직후 즉시 보고됨 - 발견자(사고자) 또는 동료근로자 -> 부서장 -> 대표자 - 항상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하므로 사고발생시 현장대리인에게 즉시 보고됨	
	○ 근로자가 공상처리 요구하는 이유 - 근로자가 공상처리 요청한 사실은 없음 - 거의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산재처리 하고 공상처리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경미한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할 경우 출근하지 못하고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게 되나, 출근하여 작업을 할 경우 정상적인 일급 100%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상처리를 요청함 ○ 회사가 공상처리 요구하는 이유 - 회사가 공상처리 요구한 사실은 없음	
	○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는 대신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이유 - 법령준수, 비용측면을 주요요인으로 생각함	

	-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가 업무담당자 입장에서 편함 ○ 근로자가 산재신청한 경우 회사가 인식하게 되는 경위 - 그 동안 산재신청 사례가 거의 없었음 - 근로자가 병원 입원 후 산재보험 신청여부를 회사에 통보해 옴 - 산재신청서 작성은 과거와 달리 재해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담은 완화됨	
	○ 회사가 생각하는 산재 발생 원인 - 급식소 종사자들의 경우 바닥타일 미끄러짐 등 작업공정 자체에 존재하는 위험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음 - 벌목작업을 할 경우 나무의 위치, 바람 등 날씨의 영향 등으로 작업공정 자체에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사고발생시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이 크므로 나무가 덮치는 경우 등에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더라도 피해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산재발생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 찬성함	
산재미처리과정과이유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공상처리 사실 없음 - 산재보험요율 인상 등 향후 회사에 발생할 불이익이 예상으로 공상처리를 한다고 서면상 답변하였으나, 실제로는 재해발생시 대부분 산재처리한다고 함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비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공상처리 사실 없음 - 경미한 재해에 대하여 일용근로자들이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산재처리할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 반면, 출근할 경우 임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공상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 공상처리시 치료비용 부담 방법과 추가 지급 항목 - 공상처리 사실 없음 - 경미한 재해를 공상처리할 경우 치료비 정도만 조합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음(왜냐하면, 조합에서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임)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후유장애 관련 사항 - 공상처리 사실 없음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불만을 제기한 사항 - 공상처리 사실 없음	
개선방안	○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 산재 발생시 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을 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 산재 발생 감소 방안 - 산업재해는 환경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되므로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시설확충,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지속적인 안전교육 필요함 - 대상사업장의 경우, 벌목작업을 하는 관계로 작업공정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조치를 최대한 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음 -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좀 더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정 및 산재발생보고제도 관련 의견 - 개선의견 없음 - 재해조사표 작성기준을 조금 완화했으면 좋겠음 - 3일 휴업기준은 찰과상의 경우에도 2주 정도의 진단이 나오므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함	
	○ 산업재해조사표의 활용목적 - 단속과 처벌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원인분석과 예방목적으로만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임	
기타의견	○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해 보면, 교육내용이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업종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으므로 교육내용의 다양성과 차별화가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램임 ○ 경미한 재해에 대해서까지 전부 산재처리는 비현실적이므로 기준을 완화하여 공상처리의 범위를 다소 넓히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됨	

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타 업종

사업주 * 회사의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부서)		
항목	내용	비고
기본사항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 인지 여부 - 산재발생보고제도 및 산재보험처리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 - 공상처리시 미처벌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있음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에 대한 근로자 인지 여부 - 재해발생시 산재신청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알고 있으나, 산재발생보고제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함 - 매스컴이나 홍보 등 다양한 정보 오픈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임.	
산재처리과정	○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고자 관련 사항 - 사고발생 사실은 재해근로자가 직접 보고 - 사고발생 보고는 현장 관리자나 사무직 관리자가 받음 - 업무(운수)의 특성상 병원은 대부분 회사관계자 동행없이 근로자 스스로 방문	
	○ 근로자가 공상처리 요구하는 이유 - 근로자가 공상처리를 요청한 직접적 사실은 없음 ○ 회사가 공상처리 요구하는 이유 - 원칙적으로 회사는 공상처리를 요구하지 않음 - 경미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치료 받는다고 한 이후 회사에서 사고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치료비 상당액을 처리한 사례는 있음.	
	○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는 대신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이유 - 법령준수와 재해근로자의 산재신청 희망을 원인으로 답변 - 재해근로자의 산재신청 희망과 관련해서는 사례마다 다른데, 운수업의 특성상 외근업무가 많고 근골격계 질환이 잦다보니, 근로자들이 개인치료를 받다가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재해조사표를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70% 이상은 된다고 함. ○ 근로자가 산재신청한 경우 회사가 인식하게 되는 경위 - 개인치료를 받는 중 그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 회사와 상의후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와 공단으로부터 직접 확인받는 경우가 반반 정도라고 답변함. - 공단으로부터 통보	
	○ 회사가 생각하는 산재 발생 원인 -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을 위해 차량정비나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리작업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음. - 안전부주의나 본인의 행동상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재해근로자의 과실을 산재발생 원인으로 지목함 - 작업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을 주요요인으로 지목함. - 작업공정 중 충돌로 찰과상이나 골절 등이 발생하면 골절은 산재처리 함	
	○ 산재발생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 찬성함	
산재미처리과정과이유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공상처리를 처음부터 협의하지는 않음. - 근로자가 치료 중 공상처리에 대한 희망을 요청받으면, 업무상 재해인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보상의 기준 등을 조정하는 형태임. - 공상처리시 금액은 보통 회사가 먼저 제안함. - 공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 근로자의 산재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였으나, 이후 근로자의 산재가 불승인 난 사례임.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비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제도적 이유와 비제도적 이유 모두 재해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정을 원인으로 보고 있음.	

	- 구체적으로 1건의 사례여서 일반화는 어려우나, 교대제근무로 인해 요양시 대체근로의 여력이 어려워져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 부담의 과중을 우려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례가 있었음 - 공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 산재가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산재처리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애매한 경우 우선 근로자 요청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회사는 법적 문제를 전달후 근로자의 결정에 따름. 경미한 재해임.	
	○ 공상처리시 치료비용 부담 방법과 추가 지급 항목 - 병원 영수증을 참고하여 비용을 지급하며, 추가로 위로금 형태의 약간의 비용을 지급함 - 치료비는 일반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으로는 처리하지 않음.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후유장애 관련 사항 - 대부분 경미한 재해여서 후유장해 사례는 없음.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불만을 제기한 사항 - 해당사실 없음	
개선방안	○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 빈번한 산재사고로 인해 매년 근로감독을 받는 부분의 고충 - 주로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가 많으며, 회사에서 참여독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나 근로자 본인이 무관심한 사례도 간혹 있다고 함(자주회사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함). - 산안법 강화로 산재처리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함.	
	○ 산재 발생 감소 방안 - 위험성평가나 근골격계 질환 조사와 같은 것을 직접 배울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음. - 비용절감차원과 담당자의 역량 제고 차원에서 컨설팅이나 관련 교육 제공의 필요성	

	- 운수업에 적합한 안전매뉴얼 제공(제조업 중심의 매뉴얼에서 확대) -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예컨대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운영해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함 -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장 내 안전보건 준수와 관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함. - 그럼에도 산재가 일어나서 산재처리시 근로감독 등 사후조치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함.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정 및 산재발생보고제도 관련 의견 - 재해조사표 작성보다 내용 기입을 위해 파악하는 시간이 다소 오래 소요됨 - 재해조사표가 팩스로 접수되다 보니 기관에 확인요청을 해도 휴업일수(3일 휴업)만 확인하고 별다른 피드백 없는 부분	
	○ 산업재해조사표의 활용목적 - 현재와 같이 원인분석과 예방목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임	
기타의견	- 업무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 연간 산재건수의 80% 정도인데, 그 중 70% 이상 승인이 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근로감독을 매년 받고 있다고 답변함. - 2018년도에는 근골격계로 인한 수시조사만 3번을 받았다고 함 - 과거 불승인 난 재해에 대해 재신청 기간 동안 신청이 진행되어 2-3건 정도 승인이 난 사례가 있다고 함 - 산업재해조사표가 지연되는 경우가 주된 재해가 근골격계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보면서, 통계의 불일치 발생하는 이유가 된다는 의견임	

다. 300인 이상 기타 업종

사업주 * 회사의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부서)		
항	내용	비고

목		
기본사항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의 사용자 인지 여부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의 이원화 사실은 인식 - 산재발생보고의 요건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나 산재보험처리의 요건은 알음 - 산재보험 미처리가 형사상 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지 못함 - 산재발생 미보고가 형사상 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알지 못함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에 대한 근로자 인지 여부 - 산재발생보고제도를 인식하고 있는 비중은 낮음 - 산재보험처리제도를 인식하고 있는 비중이 높음	
산재처리과정	○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고자 관련 사항 - 매뉴얼 있고 보고 절차 있음. - 발견자(사고자)가 현장대리인에게 1차 보고 이후 현장대리인이 본사의 총무과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방식 - 발견자(사고자) -> 물류과 접수 및 산재 신청 요청 -> 운영지원과의 절차로 이루어짐	
	○ 근로자가 공상처리 요구하는 이유 - 경미한 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 노동조합이 공상 처리를 원하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 공상처리의 보상 수준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존재 ○ 회사가 공상처리 요구하는 이유 - 경미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산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로 근로자 의사에 따라 공상처리를 하고 있음	
	○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는 대신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이유 - 최초 내원한 병원의 진료 차트에서 사고 발생의 경위가 '업무상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산채처리 - 위의 경우 사고 발생의 경위가 '기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를 청취하여 산재처리 혹은 공상처리	

	- 장해가 예상되는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신청을 하고 있음 - 도급 업무의 특성, 종사 근로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산재 승인이 불명확한 사고, 질병(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신청이 이루어짐 - **휴업일수 1주일 미만**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산재처리 혹은 공상처리 - 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는 성과급을 고려하여 볼 때 산재보험 신청이 재해 근로자에게 유리 - 관련 법규의 준수가 중요하다고 판단 - 실제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재보험 신청이 재해 근로자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판단 ○ 근로자가 산재 신청한 경우 회사가 인식하게 되는 경위 - 근로자가 현장대리인에게 산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산재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통보를 통해 산재 신청을 인식하고 있음 - 재해 근로자 단독으로 산재 신청을 하기 보다는 운영지원과에서 산재 신청 절차 진행을 조력	
	○ 회사가 생각하는 산재 발생 원인 - 근로자의 작업 중 부주의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다고 판단 - 근로자의 작업 중 부주의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업무 과정이 산재 발생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고 봄	
	○ 산재발생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 현실적으로 모든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	
산재미처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보험요율 상승, 사업장 감독 등의 불이익 발생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공상처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음 - 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산재 발생 이력이 불이익하게 작용하지 않	

리과정과이유	음 - 사업장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도급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민원 제기 등의 실태를 고려하여 볼 때 부담이 적음 - 해당 사항 없음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비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휴업이 발생하지 않는 경미한 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공상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 - **휴업일수가 1주일 미만의 재해**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공상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사업장은 이에 따라 관련 합의를 진행 - 근로자로서는 산재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도급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회사로의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계약 체결이 거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공상처리 시 치료비용 부담 방법과 추가 지급 항목 - 발생한 비용 회사 부담으로 지출 - 발생한 치료비 - 휴업기간 동안의 급여(평균임금의 70%)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후유장애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불만을 제기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개선방안	○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 산재 신청 및 산재발생보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상처리 보다 산재처리를 통하여 재해에 대한 보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이 미흡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공상처리 요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 산재 발생 감소 방안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사업장에서 담당자가 이를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 한계가 존재하여 담당자 교육이 필요 - 업무 위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한고 있지만 안전교육 실시 등이 도급사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안전설비 확보, 근로자 교육이 필요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정 및 산재발생보고제도 관련 의견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어려움 없음 - 산재발생보고 이후 사업장 감독 등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생각 - 휴업이 발생하지 않는 경미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발생보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 - 휴업일수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 **근로제공이 힘든가 여부**라고 생각 - 현행 산재 신청과 별도로 산재발생을 보고하는 제도는 정책적 목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 - 다만 중대재해의 경우 24시간 이내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재해 근로자에 대한 병원 후송, 관련 절차 진행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다소 괴리가 있다고 판단	
	○ 산업재해조사표의 활용목적 - 산재 발생원인 분석과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로만 활용되어야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감독 대상 선정기준으로 작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	
기타의견	○ 개선 또는 건의 사항 - 도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현장마다의 산업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 -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기준이 전문적이라 일반 사업장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예방 목적의 산업안전, 산재보험이 될 것이라 판단	

	- 인사이동 시 담당자 배치전환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에 대한 실무자 교육이 필요 - 산재보험처리와 산재발생보고를 하나의 기관에서 일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 산재사고 유형 - 미화 업무 종사자의 경우 업무 환경을 원인으로 미끄러짐, 부분 골절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 - 경비 업무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근로자에게 존재하는 위험인자가 발현된 뇌경색 등의 질병이 발생 - 기타 통근재해 발생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보임 - 집배원 이륜차 사고 비중이 높음, 수년전 중대재해 발생 - 우편물 분류 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사고 발생	
	○ 종합 의견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산재처리 시 발생이 예상되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상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종사 근로자의 연령이 고령이라는 특성에서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고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산재 승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상처리 대신 산재 신청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임 - 공공기관 특성으로 민간부문의 공상처리 사례는 없음 - 보수체계 특성으로(실 근로일수 기준 성과급 산정) 재해 근로자에게는 공상처리에 따른 합의보다 산재 신청이 유리하다고 인식되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 신청이 제도적으로나 비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음 - 우정사업 업무 특성에서 비롯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재해근로자 면접조사 결과

(1) 제조업

가. 50인 미만

재해근로자		
항목	내용	비고
기본사항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 인지 여부 - 재해발생시 산재신청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알고 있음 - 구체적인 산재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산재신청서를 작성해 줬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함 - 산재발생보고제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함 ○ 위 제도를 알고 있다면 인지 경로 - 산재발생하면 당연히 산재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산재발생과정	○ 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취한 행동 - 즉시 119를 불러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취한 후 좀더 큰 병원으로 후송됨 ○ 사고 발생후 회사에 보고는 어떻게 진행 - 회사 안전관리자와 대표이사에게 이야기 하였음	
	○ 사고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여부 - 즉시 방문하였음 ○ 사고 발생 후 의료기관 방문 방법 - 119 앰블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동함	
	○ 근로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 원인 - 응답 거부 ○ 근로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에 대한 자신의 과실비율 - 응답 거부	
산재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공상처리 사실 없고, 산재신청하여 산재요양 받았다고 함	

미처리과정과이유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재해자 관점의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공상처리 사실 없고, 산재신청하여 산재요양 받았다고 함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제3자 관점의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일공상처리 사실 없고, 산재신청하여 산재요양 받았다고 함	
	○ 사고 후 치료비용의 부담주체 - 산재처리함 ○ 사고 후 치료비 계산방법과 추가 지급 항목 - 산재처리함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휴업기간(추가 소요기간) - 90일 정도	
개선방안	○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 응답거부	
	○ 산재 발생 감소 방안 - 응답거부	
	○ 산재발생보고제도 관련한 개선의견 - 응답거부	
기타의견		

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재해근로자		
항목	내용	비고
기본사항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 인지 여부 - 산재발생보고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함 - 산재보험처리제도 관련 보험급여의 종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함 ○ 위 제도를 알고 있다면 인지 경로	

	- 해당 의견 없음	
산재발생과정	○ 재해 경위 - 김밥 절단기에 끼인 원재료를 손을 넣어 제거하는 과정에서 절단기가 작동하여 손가락 일부가 부분 절단됨 - 절단기는 덮개가 닫혀 있으면 가동되고 덮개가 열려 있으면 가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절단기의 덮개가 열린 것을 확인하고 끼인 원재료를 제거하였으나 갑자기 절단기가 가동 - 현재는 추가 조치를 취한 이유에서인가 절단기의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는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음 ○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취한 행동 - 생산 2편(야간반) 생산부장이 응급실로 긴급 후송 ○ 사고 발생 후 진행된 회사 보고 방식 - 생산 2편(야간반) 생산부장이 총무팀을 통해 보고	
	○ 사고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여부 - 김해OO병원을 거쳐 김해OO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 ○ 사고 발생 후 의료기관 방문 방법 - 생산 2편(야간반) 생산부장이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후송	
	○ 근로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 원인 - 현재 절단기의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 전혀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계의 오작동 혹은 안전조치 미흡이라 판단 ○ 근로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에 대한 자신의 과실비율 - 교육 시 전달받은 절단기 작동 방법에 따라 취한 행동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	
산재미처리과정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병원 산재 담당을 통해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 관련 문의를 하였으나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알아서 결정하시라는 답변 이외에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 - 근로복지공단에 사고 경위를 말하면서 산재보험의 급여수준, 소요기간 등 관련 문의를 하였으나 일단 신청하고 다시 문의해달라는 답변만을 들음	

과 이 유	- 일반 근로자로서는 평소 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막상 업무 중 발생한 사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산재보험을 신청하고자 하여도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 상당한 불만이 발생 - 회사로부터 산재보험 신청을 원하시면 적극 협조하여 진행할 것이고 공상처리를 원하시면 충분한 보상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받음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재해자 관점의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치료 이후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회사라 생각하여 우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보전, 휴업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을 요청하고 갈등 없이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공상처리 신청을 함 - 공상처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수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를 고려하지는 않음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제3자 관점의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생산 라인의 근무형태가 1편(주간반), 2편(야간반)의 교대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2편의 경우 소수의 관리직 인원만이 근무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담당 관리직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산재보험 신청 대신에 공상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임 - 휴업급여 지급이 불확실한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는 치료비, 일정기간 동안의 휴업 부여 및 이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공상처리가 향후 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임	
	○ 사고 후 치료비용의 부담주체 - 회사가 발생 치료비용을 전액 부담 ○ 사고 후 치료비 계산방법과 추가 지급 항목 - 1차 봉합수술, 2차 봉합수술, 성형수술의 3차례에 걸친 수술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상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되는 1인실 병실 입원비 등의 치료비 - 입원기간 동안의 기본급 및 주휴수당으로 산정된 급여 - 소정의 위로금	

	- 소정의 위로금은 사고 부위의 보조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원이라 부족하다고 생각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휴업기간(추가 소요기간) - 총 3개월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 - 최근 사고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고 물집이 생기는 등 불편함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예정하고 있음 - 회사로부터 의사 진단 결과를 제출하면 추가 발생하는 치료비 등의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음	
개선방안	○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 산재보험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 이유로 산재보험 신청보다 공상처리가 일정 부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병원 원무과,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상병 및 치료 경과에 따라 산재보험 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다면 산재보험 신청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	
	○ 산재 발생 감소 방안 - 기계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회사 소속 관리자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재해가 발생하므로 이들 인력의 교육 및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 생산라인 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상시 교육하고 위험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이 필요함에도 부족하여 이들 인력의 배치가 절실하다고 생각 - 위탁교육으로 실시되는 산업안전교육이 실제 수행 중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경우가 다수 있어 충실한 관련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 산재발생보고제도 관련한 개선의견 - 근로자에게 산재발생보고를 의무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음	
기타의	- 회사가 산재보험,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를 채용하거나 기존 담당자에게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해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재해 근로자가	

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 무엇보다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재해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함께 사고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	

다. 300인 이상 제조업

- 해당사항 없음

(2) 건설업

가. 50인 미만 건설업

재해근로자		
항목	내용	비고
기본사항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 인지 여부 - 재해발생시 산재신청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알고 있음 - 구체적인 산재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이전에 경험이 없으므로 잘 알지 못함 - 그 동안 손베임 등 경미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나, 산재신청 필요성에 대하여 그동안 크게 느끼지 못하였고, 산재신청시 불이익 등에 대한 인식도 없음 - 산재발생보고제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함 ○ 위 제도를 알고 있다면 인지 경로 -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있음	
산재발생	○ 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취한 행동 - 응급조치만 취했고, 기존 무릎질환을 치료받으러 의료기관을 방문한 차에 병행하여 1주일 정도 치료하게 되었음 ○ 사고 발생후 회사에 보고는 어떻게 진행	

과정	- 회사 안전관리자와 대표이사에게 이야기 하였음	
	○ 사고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여부 - 추후 방문함. ○ 사고 발생 후 의료기관 방문 방법 - 자차/회사차량으로 이동함	
	○ 근로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 원인 - 대부분 근로자 본인 과실이 크다고 생각함 ○ 근로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에 대한 자신의 과실비율 - 지급된 안전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해가 많다고 답한 점에서 50%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거 같음	
산재미처리과정과이유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질의서에는 산재인정이 안될거 같아서, 요양미신청은 불법이 아니므로 라고 답하였으나, 일반적인 공상처리 사건이 아니라서 특별한 인식은 없었음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재해자 관점의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일반적인 공상처리의 경험이 없음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제3자 관점의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일반적인 공상처리의 경험이 없음	
	○ 사고 후 치료비용의 부담주체 - 회사에서 부담함 ○ 사고 후 치료비 계산방법과 추가 지급 항목 - 애당초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의 환급청구를 받고 환급한 후 회사비용으로 처리함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휴업기간(추가 소요기간) - 1주일 정도	
개선방안	○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 산재신청 경험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함	
	○ 산재 발생 감소 방안 - 회사에서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였으나, 업무수행시 불편하고 걸리적 거려서 잘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므로 안전장	

	구를 잘 착용하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산재발생보고제도 관련한 개선의견 - 잘 알지 못하므로 답변하기 곤란함	
기타의견		

(3) 기타 업종

가. 50인 미만 기타 업종

재해근로자		
항목	내용	비고
기본사항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 인지 여부 - 재해발생시 산재신청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알고 있음 - 구체적인 산재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이전에 경험이 없으므로 잘 알지 못하나 주변에 경험들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울 거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 - 산재신청시 본인의 인사상 불이익, 유치원에 대한 불이익, 업무량 증가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 산재발생보고제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함 ○ 위 제도를 알고 있다면 인지 경로 - 산재신청제도는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있음	
산재발생과정	○ 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취한 행동 - 재해자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며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며, 유치원에서 산재신청이나 공상처리 등의 요청을 하지 않았음 ○ 사고 발생후 회사에 보고는 어떻게 진행 - 유치원에 특수장애아동을 이동시키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이야기한	

	후 별도의 산재신청 요청은 없었고 재해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임	
	○ 사고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여부 - 즉시 방문하지는 못하고 추후 개인적으로 방문함 ○ 사고 발생 후 의료기관 방문 방법 - 자차로 이동함	
	○ 근로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 원인 - 특수장애아동을 데리고 현장체험학습 등을 나깔 때 직접 들거나 휠체어에 태워 다니므로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위험이 높음 - 특수장애아동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위험요인(갑자기 물건을 던지는 경우 등)도 상존함 ○ 근로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에 대한 자신의 과실비율 - 재해자 본인의 과실이 약50% 정도 된다고 생각함	
산재미처리과정과이유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유치원에 산재나 공상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재해자 관점의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유치원에 산재나 공상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제3자 관점의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유치원에 산재나 공상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	
	○ 사고 후 치료비용의 부담주체 - 재해자 본인 ○ 사고 후 치료비 계산방법과 추가 지급 항목 - 재해자 본인 부담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휴업기간(추가 소요기간) - 현재도 지속적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는 상태임	
개선방안	○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므로 회사에서 산재와 관련한 충분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음	
	○ 산재 발생 감소 방안 - 해당 직종의 경우에도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산재처리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산재발생보고제도 관련한 개선의견	

	- 잘 알지 못하므로 답변하기 곤란함	
기타의견	- 산재처리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산재신청을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고, 산재신청할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거 같아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았음 - 재해자 본인의 과실과 산재처리시 조사라든지 유치원에 불이익이 갈 수 있을거 같은 불안함 때문임 - 산재신청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하동 같은 경우는 진주까지 가야 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과실도 있고 해서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함 - 산재신청 경험이 없으므로 잘 알지 못하나,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하니 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타 업종

재해근로자		
항목	내용	비고
기본사항	○ 산재발생보고제도와 산재보험처리제도 인지 여부 - 재해발생시 산재신청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알고 있음 - 산재발생보고제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함 ○ 위 제도를 알고 있다면 인지 경로 -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있으며 노동조합으로부터 정보 얻음	
산재발생과정	○ 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취한 행동 -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차량 정비중 차량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병원은 바로 방문함. - 사고를 유발한 작업은 부득이하게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다보니 소음으로 운전자와 정비사 간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사고 발생후 회사에 보고는 어떻게 진행 - 회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함	
	○ 사고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여부 - 즉시 방문하였고 기사님과 동행하였음. ○ 사고 발생 후 의료기관 방문 방법 - 자차로 이동함	
	○ 근로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 원인 - 근로자 본인 과실이라고 하였음. - 정비시 운전석에 운전자가 있어야 하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답변하였음. - 다만, 소음이 있는 작업이다 보니 무전기 등의 도구가 활용되었으면 사고발생 예방이 가능하였을 것임. ○ 근로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에 대한 자신의 과실비율 - 본인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함.	
산재미처리과정과이유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제도적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경미한 재해라고 답변함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재해자 관점의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경미한 재해와 본인이 희망해서로 답변함 - 업무 특성상 산재처리로 휴업시 업무 부담 초래와 산재처리시 휴업급여 70% 지급에 따른 임금감소가 이유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제3자 관점의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 - 동료 근로자의 업무 과정 부담	
	○ 사고 후 치료비용의 부담주체 - 회사에서 부담함 ○ 사고 후 치료비 계산방법과 추가 지급 항목 - 병원치료 후 치료비 명목의 보상과 별도로 소정의 위로금	
	○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휴업기간(추가 소요기간) - 1일	
개선방	○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유인 내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 휴업급여 100% 지급 - 산재처리와 관련한 교육	

안	○ 산재 발생 감소 방안 -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인원 추가 -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량 정비환경 개선	
	○ 산재발생보고제도 관련한 개선의견 - 잘 알지 못하므로 답변하기 곤란함	
기타의견		

4) 면접조사 결과

-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질문을 바탕으로 산업재해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보다 내밀한 현황을 들여다 볼 수 있었음. 아래에서는 면접조사를 통해 본 연구가 목표하고 있는 산재미신청의 직접적인 연유와 이를 만들어 내는 간접적인 원인을 정리함.

(1) 산재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도

① 사업주

- 대부분의 사업주는 산재관련 양대 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함. 그러나 이는 주된 면접대상자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부서의 직원이 사업장을 대표하여 응답한 결과일 수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산재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사업장의 규모에 반비례하여 나타난다는 점에서 확인됨.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응답하고 있음.

- 양 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조사표의 작성의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조사표는 제출하였으나 공상으로 처리하고 요양은 신청하지 않아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잘 인지

하고 있었음.
-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공상을 권유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음. 즉, 공상처리에는 제도의 인지도가 아니라 다른 요인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

② 근로자
-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산재발생보고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음. 면접대상 사업장이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이고,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나 재해자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의외의 결과임.
- 산재보험처리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주변으로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다고 응답하였고,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음. 그러나 재해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신청서 완성을 위해 공단이 통보함으로써 인지하게 되었다는 사업장도 많음을 보아 요양신청 제도와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 근로자도 많은 것으로 보임.
- 산재가 국가적 또는 사업장별로는 대규모 또는 다수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별로 보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산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요양신청을 하였거나 동료의 사례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산재보험 신청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것임.

(2) 산재발생에 대한 태도

① 사업주
-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업주들은 발생한 산업재해의 37.8%가 재해근로자의 과실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동료근로자의 과실(8.1%)과 작업자의 교육 및 지식부족(14.3%) 등 근로자의 과실로 볼 수 있는 요인을 합치면 60.2%에 달함. 안전보건조치 미흡(시설 장비 등: 12.0%)과 작업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성(24.0%)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36.0%였음.

- 면접조사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이라는 응답이 설문조사보다 높게 나타남. 즉, 면접조사에 임한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자의 대부분은 근로자의 부주의를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꼽았음. 예상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을 포함한 작업공정에 내재한 위험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근로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재해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② 근로자

- 재해근로자의 경우에도 설문조사에서는 본인의 과오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52.7%로 가장 높았음. 그러나 작업과정의 문제(24.8%), 안전장치 미흡(8.5%), 동료의 과오(3.1%) 등의 순서로 발생 원인을 지목하여 사업주의 판단과는 다른 경향을 보임.
- 재해근로자 자신의 과오라는 응답이 사업주가 판단한 원인보다 약 20%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동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려는 보이지 않는 의도와 촉박한 작업시간 등의 배후 사정을 사상한 안전장비 미착용, 미사용으로 인한 재해라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면접조사에서는 사업주(근로자의 부주의)와 재해근로자(교육받은 대로 작업함. 따라서 안전장치가 미흡한 작업설비의 문제임)의 의견이 다른 하나의 사례와 자비로 장만해야 하는 작업도구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가 주로 본인의 과오로 발생하였다고 응답함.

(3) 요양 미신청 이유

- 요양(산재보험급여) 미신청의 이유로는 설문조사의 경향과 유사하게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 같지 않은 경미한 상병이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후속 요인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

① 사업주

- 산업재해의 발생에 대한 보고와는 별도로 재해근로자의 노동력 재건을 위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의 방법이 산재보험을 통한 요양급여 신청과 소위 공상

처리를 통한 방법이 법적으로 양립하는 가운데,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남.

- 가장 빈번한 이유는 재해가 경미한 경우로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거나 근로자가 짧은 기간에 간단한 치료를 통해 작업에 복귀할 수 있을 경우 굳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음.
- 대다수의 사업주가 이런 방법이 위법이 아님을 알고 있으며,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는 경우, 초/단기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들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빠르고 확실하게 보상하기 위해 공상처리를 선호하고 있음.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요양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면 공상으로 처리함.

② 근로자

- 설문조사에 의하면,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불이익, 회사로부터의 인사상 불이익이지만, 경미한 재해(50.0%)이기에 공상으로 처리한다고 응답함.
- 근로자 역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미한 재해일 경우, 요양급여보다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자주 접하는 일이 아니라서 발생하는 신청절차의 번거로움, 나아가 요양이 불승인되는 경우 등을 이유로 공상처리를 합의함.
- 특이한 사례는 소규모 건설업의 사례인데, 사측이 근로자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공상으로 처리한다고 응답한 사례임. 소규모 인테리어사업(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입장으로서는 이 근로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빠른 보상이 필요함.

③ 공상처리의 관행

- 요양 미신청, 즉 공상처리는 사업주나 재해근로자의 일방적 요청이나 강요에 의하기보다는 '합의' 또는 '협의'를 통해 이루어짐.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재해근로자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이 일

반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의 하나로 어쩌면 당연한 과정으로 정착되어 있음.

④ 경미한 재해의 기준

-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미한 재해일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많으나, 경미한 재해에 대한 기준은 사업장별로 극도로 상이함. 보통 치료 또는 요양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가장 짧은 시간은 '다음날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가'이며,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과 함께 일주일 또는 1개월까지도 경미한 재해로 보고 있음. 입원여부를 경미한 재해의 기준으로 삼는 사업장도 존재함.

(4) 개선 방안

① 산재발생 감소 방안

- 산재발생의 가장 큰 요인을 노사가 공히 근로자의 부주의로 지목한 것처럼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산재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함.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각종 홍보물과 안전표식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사업장의 교육과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을 묻는 방법도 고려해봄직 함.
- 또한 산업재해 요양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어야 함.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작업장의 위해요소 제거도 중요하다고 응답함. 각종 안전수칙을 지키기 힘든 작업과정, 공정, 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함.
-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육체적, 정신적 준비를 위한 과정, 예를 들어 간단한 체조 등의 활동 활성화 필요함.

② 요양신청 증대 방안

- 산재신청으로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야 되고,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또한 산재신청의 불승인으로 인한 공상처리는 오히려 재해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음.
- 영세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로자의 이동이 심하고, 면접조사 사례(건설업)에서도 나타났듯이, 공상처리를 통한 빠르고 적절한 보상이 산재 처리 시간과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 그리고 승인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요양신청을 통한 보상보다 초/단기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음.

제 4 장 개선방안

Ⅰ. 산재보험 신청 유도 방안

1. 실태조사(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 개요

1) 산재미신청 이유 관련 일반적 사항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답변한 산재보험 신청을 대신하여 공상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제도적 이유와 비제도적 이유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심층 인터뷰 조사 과정에서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답변이 위 서면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달리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사용자 측에서는 제도적 이유로 산재보험 신청 시 발생이 예상되는 산재보험 요율 인상 등 향후 불이익 내지 산재보험 처리 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등의 정부 규제의 이유가 공상처리를 하는 많은 이유로 답변되었고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자 사업장 규모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제도적 이유로 경미한 재해라고 생각해서 혹은 재해근로자가 희망해서라고 답변한 비율이 사업 목적,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공상처리의 이유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사용자는 장기간 휴업이나 일정 급수 이상의 장애 등이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재해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밖의 업무상 재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수준 이상의 치료비용 및 휴업급여에 준하는 소정의 급여 지급으로 향후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는 고려를 하는 것으로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근로자 측은 산재인정이 안될 것 같아서 혹은 산재처리 절차가 까다로워서 라는 이유로 종사하는 사업장의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사업장 규모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기업에서 이와 같이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제도적 이유로 경미한 재해라고 생각하여 공상처리를 한다는 이유가 종사하는 사업 목적,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는 원인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근로자는 산재법이 정하는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요건, 지급수준 및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내지 질병 발생 당시 회사와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목적으로 치료 과정에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공상처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2) 업종, 규모별 특이사항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 제조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산재보험요율 상승 등의 불이익보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기록이 산업기능요원 신청 과정에서 현실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고 이는 경미한 상병이라고 판단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결과와 공상처리로 처리한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회사 입장에서는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탁계약(도급계약)의 사업 목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 여부가 최대의 이해관계로 작용하여 경미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측에서 공상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규모와 관계없이 2017년도 산재보험관계 일괄신고를 경료하고 현장 공사를 운영한 회사가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회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 신고를 직접 완료하고 재무제표의 공사원가명세서 상 잡급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공사의 특성 상 현재 공사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힘든 현실상 제약이 존재하고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회사가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원청의 협력업체로 공사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 인력에 대하여 직접 고용·산재 신고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제도상 한계가 존재한다.

2. 산재미신청 원인으로서 경미한 재해와 관련

산재미신청의 주된 이유는 대부분 경미한 상해인 경우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미한 상해를 산재처리 하는 경우 산재요양기간(사업주 예상보다 장기화) 동안에는 산재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므로 생산성에 차질이 발생하고,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며, 산재처리건수가 증가되어 근로감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꺼려하기 때문이다.

둘째,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요양기간이 단기임에도 산재처리를 할 경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나오는 반면 공상처리를 할 경우 대부분 100%의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금전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고,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인상과 근로감독 등 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고, 회사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질 수 있음을 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미한 재해에 대하여 개별실적요율제와 근로감독을 면제해 준다면 산재미보고 뿐만 아니라 산재미신청 사례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제외

“경미한 재해”에 대한 개념설정이 중요할 것이지만, 의학적으로도 중상과 경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고, 산안법도 그러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벌점부과 기준을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찰은 인명피해 규모 집계시 중상은 3주 이상, 경상은 5일 이상 3주 미만, 부상은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부대관리훈령 제185조 제2호에 따르면, 부상이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말하며, 중상, 경상 그리고 경미상으로 구분”하면서, 중상은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정도이며, 경상은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 그리고 경미상은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로 치료기간에 따라 상해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벌점부과 기준과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3주 미만의 상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경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실태조사에서는 사업주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치료(요양)기간 기준으로 “약2주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므로 2주에서 4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산재사고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미한 재해의 경우에는 산안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재해근로자의 부주의나 안전장구 미착용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모두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한다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산재신청을 꺼려하므로 요양기간이 2주에서 4주 이내인 산재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을 면제해 주는 방법이다.

2) 근로감독행정의 이원화

2주에서 4주 이내의 경미한 재해의 경우 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선정에 있어 산재사고건수에서도 제외시켜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위험성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 감독정책과 전략도 이 제도와 연계하여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산업안전보건 감독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게다가 실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공단을 통한 기술지도나 정보제공 등 행정주체의 전문적 기술적인 지도·조언과 같은 비권력적 행정수단인 행정지도가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예방행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직접적 규제에 의한 행정목적 달성은 간접적 규제수단에 의하여 보완 가능하다. 즉, 엄격한 권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보다 수평적이고 대등적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비권력적 행정수단으로 유연하게 행정목적을 실현시키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간접적 규제수단의 중점은 동기부여에 의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동기유발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 감독 행정은 경미한 재해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한 기술지도나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비권력적 감독이 진행되고 사망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의 경우는 직접적 근로감독을 통해 효과의 신속성을 담보하는 이원화된 방식의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단의 비권력적 감독에 대해서도 사업장에서는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산재재발대책을 수립할 때,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노사 뿐 아니라 객관적인 진단과 적용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다. 이는 동일한 사고가 재발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되는 특별근로감독시에, 사업장과는 독립된 명예안전감독관 및 장비에 대한 전문가, 노사의 대표 등이 참여하여 안전설비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사업장의 자의적, 형식적 개선방안을 실제 적용가능한 방안이 되게 하는 데에 목적

이 있다.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효과가 있을 경우,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산재발생조치사항 교육내용 포함

근로자 입장에서 산재처리 절차와 방법을 잘 몰라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등 산재보험과 관련한 지식이 없고,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면 절차와 과정 등이 매우 어렵고 힘들 것이다.”, “산재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등의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해보면, 근로자들이 산재신청과 관련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산재신청을 안하거나 사업주에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시키게 하는 사전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산안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별표[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도 현재는 주로 “산재예방”과 관련한 내용만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산재발생시 조치사항)”과 관련한 교육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를 추가하는 방안이다.[27]

4.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로 산재신청

근로자들이 산재신청 절차와 방법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산재요양신청서상에 “사업주 날인란”이 없어진 것은 잘된 정책이나,

27)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9.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산재요양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주치의 및 의료기관의 초진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의료기관에서 그 작성을 다소 꺼려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해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발급받는데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근에 2019.8.26.부터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으나, 일반적인 사보험 절차와 같이 아예 공단이 정한 서식 자체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소견서나 진단서 만으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자료: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19.8.26.)

- ❍ 2019. 8. 26.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된다.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였으나,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아울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 심경우 이사장은 “작년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 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수급요건 명확화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재해 근로자는 1차적으로 발생한 상병을 전제로 치료비 충당, 휴업일 임금 보전,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장애 배상 등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신청 혹은 공상처리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 경우 일반 근로자로서는 평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가 없고 막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재해 근로자 스스로 병원 원무과,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보험 신청을 문의하면서 산재보험 신청을 준비하여도 이마저도 충분한 설명 없이 근로자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되고 있다. 나아가 2차적으로 경미한 상병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산재 신청으로 향후 고용관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을 지급하기로 하는 회사의 공상처리 권유 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공상처리 요청으로 산재보험 신청을 대신하여 공상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산재법이 정하는 '3일 이내의 요양'이라는 요양급여 수급요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는 휴업급여 수급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재해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부터 이의 안내, 서류작성 등의 상시 조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재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의 '요양'이라는 개념 속에 규정된 진찰 및 검사,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입원 등의 추상적인 기준을 대신하여 전문의의 진단을 기초로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 기준에 따라 상병 치료에 필요한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및 이에 소요되는 입원, 약제 중 산재보험 인정 기준이 되는 4일 이상의 치료 등이 무엇인지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별표6]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등급별로 정하고 있고 [별표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제적인 인정 기준을 질환 부위 혹은 질환 원인별로 정하고 있으나 요양급여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등에 따른다.'는 규정 이외에는 일반 근로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즉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승인이 이루어진 상병을 간담췌외과, 대장항문외과, 위장관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감염내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일반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 등의 진료과별로 분류하여 4일 이상의 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매년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를 참조하여 마련한다면, 심층 인터뷰 조사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재해 근로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1회 처치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상처리를 희망하는 경우 혹은 구체적인 산재보험 수급 수준을 알고자 하여도 이를 알 수 없어 공상처리에 합

의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산재보험 신청 대신에 공상처리를 희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산재보험 신청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휴업급여

다음으로 휴업급여의 요건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가에 대하여 위 진료과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식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요청된다고 생각된다. 실무적으로 외상성파절로 인한 앞니 4개의 치아골절의 경우에도 휴업급여 신청이 불승인되어 일반 근로자의 인식과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추간판탈출까지 악화되지 않은 추간판장애에 대하여 연속적인 휴업급여 승인이 이루어져 계속 근로가 가능해보인다는 회사의 인식과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만으로 인정되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를 희망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6.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보호

현재 산안법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줄 경우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통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위 실태조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중소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진성도급의 형태를 불문하고 수급업체를 통하여 간접고용 된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이 마련된다면 산재보험 신청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급업체가 전문적인 위탁관리 면허를 소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영세업체인 경우 업태로 서비스, 종목으로 기타 가공으로 분류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 대신 간이사업자로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 및 신고를 경료하면서 주기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있다. 즉 국세청에 신고된 재무제표 자료를 근거로 서비스 업종에 간이사업자 비율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이들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 도급계약 목적을 위하여 외부 사업장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근로자성 판단을 전제로 하는 시정지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들 수급업체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경우 대부분 임률을 기준으로 매월 도급비를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수급업체 소속 인력의 입사, 퇴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 도급비 대비 낮게 책정된 수수료를 이유로 납입 대상인 4대보험료를 이윤으로 계산하고 있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원청으로서도 수급업체가 채용하여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추측된다. 그렇다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임에도 산재보험 보호, 산업안전보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산안법에서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이전에 도급계약 체결 시 강제되는 계약조건으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이 요구됨을 명문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7. 통합신고제도 또는 병원신고제도 마련

추가적으로 산재실태와 통계를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다면, 경찰, 노동부, 소방서, 의료기간,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들이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기 기관들 모두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소통창구를 단일화하여 신고의무를 사업주에게도 지우지만 유관기관에서 스스로 찾아내서 보고하게 한다면

산재은폐나 미보고, 미신청 등의 문제는 줄어들 것이고 이런 방안이 산재은폐나 산재미신청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 보다는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여겨진다. 이 기관들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은 물론 의료기관이고 산재통계를 확인하는데 가장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초진의사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료기관에서 산재보고를 하는 방법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의료법과 산재법에는 의사의 소견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사의 초진기록이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를 토대로 사업주의 신고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주의 신고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28)]

8. 산재처리 과정의 실무 개선

산재처리 과정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산재신청을 한 후 산재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여러가지 조사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고, 마치 조사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주들이 꺼려할 수도 있다. 일반 민간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인이 직접 부상자를 찾아와서 다소 친절하게 사고발생경위 등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경우 오히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꺼려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즉,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일반 사보험사에 비해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는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산재처리 과정의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친절한 상담과 독립된 공간마련 등으로 재해자 친화형 상담창구 마련이 필요하다.

9. 지연보고의 예외적 인정

28) 신영규·오상호, 독일 산재의사 신고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84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기준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한 경우, 재해자가 보고하지 않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시 확인 절차 등의 시간 지체 등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재해나 귀책없는 사유 등으로 인해 산재발생보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사업주 날인란이 폐지되면서 재해자의 산재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지연보고에 따른 법위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의 예외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 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산안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시정기회 부여후 제출일 참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하게 된 이유, 즉 지연보고하게 된 이유를 별도의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사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연보고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안.
단,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 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별지 제1호의4 서식(지연사유서)을 함께 제출한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2안.
지연보고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연 사유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개별 사유를 별도로 명시하고 간략히 사유를 작성하여 작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Ⅱ. 산재발생 감소 방안

1. 업종별 특화된 매뉴얼 제작과 안전포스터 확대 배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제작하고 배포한 매뉴얼이나 관련 포스터 등이 현장에서 산재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다만, 다양한 업종을 고려한 매뉴얼과 업종내 다양한 직무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매뉴얼을 제공해주면 교육적 효과가 높을 수 있다. 그리고 건설과 같은 산재다발 업종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포스터와 리플렛을 작업장 곳곳에 게시 내지 배포하여 안전경고를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의 측면에서 제공된 포스터와 리플렛이 부족할 수 있다. 개인적인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근로자들의 의식개선과 안전불감증 감소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므로 보다 많은 포스터와 리플렛을 제작해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맞춤형 안전보건 어플 개발

현재 안전보건과 관련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은 안전보건 교육자료, 안전점검, 건강증진, 응급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그리고 다국어 회화 등 다양한 안전보건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장 내 위험요인 및 상황을 실질적인 형태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알려주고 조치해야 하는 활동을 안내해주는 소위, 실시간 안전보건관리 어플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원인

분석에 따른 통합자료를 바탕으로 업종, 장비, 시설, 시간대, 작업자나 유해물질 등과 실시간으로 연동된 표준화된 안전보건지원 및 활동 시스템(경고알림이나 소음 등)을 마련해 현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Ⅲ. 산재통계 개선방안

1. 의의

현재 고용노동부의 산재 원인통계자료(2017년도 산업재해분석)에 따르면, 산재원인 조사분석은 사망재해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용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재해 중 사망재해자를 발생형태별, 기인물별 등 원인별로 분석하고 있어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해 다발집단의 특성화된 원인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 '요양급여신청서'로 산재발생보고를 갈음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별개로 '산업재해조사사표' 제출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이유가 요양급여신청서만으로는 산재원인조사 분석에 한계가 있다 보니, 보다 상세한 재해발생 현황자료를 제공받아 효율적인 산재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재발생 예방통계와 산재발생 보상통계는 산업재해 통계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통계조사로 볼 수 있으나 산재발생 예방통계는 보상통계와 달리 상이한 조사항목(재해발생 과정 및 원인)과 추가적인 분석(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통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 둘은 상이한 목적으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이원화된 통계 분석의 당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통계와 산재발생 보고통계의 분리의 타당성은 지극히 현재의 통계산출 목적이 산재법상 산재발생 규모 집계와 산안법상 산재예방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산재유형과 산재건수의 정확도를 찾아서 국가 산재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산재통계가 생산되는 이유이므로 양 통계치 중에서 중복되는 것을 하나의 재해로 본다면 보

다 정확한 통계치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상통계와 보고통계의 연관성 분석과 그에 따른 산재보고와 산재미처리, 산재미보고와 산재처리 그리고 산재보고와 산재처리라는 3가지 중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중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컨대, 산재보고는 되어 있으나 산재처리가 공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산재미처리 유인을 찾고 산재처리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경우 그 의미를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보상통계와 보고통계의 효율적 연계성 확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재발생 전체 규모 파악과 그에 따른 산재발생 원인 분석을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산업재해조사표와 산재미처리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관련

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면담조사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확인되었다. 먼저 작성과 관련해서는 중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과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업무수행 경험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중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는 작성매뉴얼을 참고하지만, 실제 산재발생기록과 재해예방대책 작성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보다 충실한 보고서식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과 관련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예컨대, 50인 이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수강 후 작성하여 제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다음으로 산업재해조사표에 기록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확인제도의 실효적 운영도 필요하지만, 행정관청에서 제출된 조사표의 면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산업재해조사표는 접수 단계에서부터 산재여부 판단, 사업장이나 재해자의 기본정보 오류에 대한 확인, 재해발생 원인 및 개요의 충실성과 가장 중요한 재발방지계획의 타당성 등 통계 산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해야할 사항이 많다보니, 현재의 행정인력으로 고유의 분장업무와 더불어 조사표 검토 및 지도 등 즉각적인 대응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 일차적으로 산재예방 전문기관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 충실하게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또는 이차적으로 교육받은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문 행정인력의 추가 확충하여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재해발생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 기입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기록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보고통계자료서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필터장치 마련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3.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적 촉진조치

산재미신청 재해 건수 규모 파악을 위해서라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촉진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사업장 가운데 90.3%가 최초 재해발생 사업장이며, 미제출 사업장의 93%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추정되고 있어 산재발생 보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50인 이상과 미만 규모 사업장간 불균형상태가 균형잡힌 상태로 회귀할 때 산재발생보고 통계의 정책적 활용 방안이 효율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재에 대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연보고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업장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 전부를 대상

으로 앞서 살펴본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시 교육 및 상담의무와 산재발생조치사항 교육내용 포함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 제출을 활성화 내지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될 수 있다.

4. 통계전문 인력 확충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접수된 자료를 토대로 산재예방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계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통계담당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실제로 사업주가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는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해정도가 달라 정보 활용의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나 안전관리자가 아닌 경리와 같은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의해 작성될 경우 충실성 저하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산업재해조사표 기반 통계 생산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추가 인력의 확충을 통해 전산화된 정보의 정확한 이용과 재해 원인분석의 수립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게다가, 원하청 통계 지원이나 최근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데 신설되거나 강화된 조항이 60개 이상이다. 특히, 대부분 사업주 또는 도급인 사업주 그리고 발주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이며 보호대상도 확대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산재예방정책이 조속히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여서 새로운 통계기법의 정비나 변화하는 산업안전보건의 영역에서 기술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계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통계조직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 5 장 결론

현재 국가통계로서 요양승인 기초 산재통계가 국가 전체의 정확한 산재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이유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자가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요양승인을 받은 사례를 통계로 작성함에 따라 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산재발생은 통계에서 누락되는 경우이며 누락된 요양 미신청 사례의 일부가 산재발생보고통계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 산재보고+산재미처리는 산재보고는 하였지만, 산재보험으로 요양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고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산재미처리+산재미보고로 변형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산재미처리를 단절 또는 산재처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았다.

더구나 현행법상 산재미처리가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산안법상 산재보고제도 제재수준 강화로 인해 사업주의 산재보고율이 높아지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자의적으로 축소 기록되거나 또는 미흡한 수준으로 작성되어 궁극적으로 산재예방대책 수립과 활동에 일정한 한계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산재미처리를 선택하는 전략적 기제가 예컨대, 경미한 재해이거나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특성별 맞춤형 또는 중점적 산재예방대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데 불충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산재보험 신청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산재미처리+산재미보고로 변형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와 다른 한편으로는 산재보고통계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유인효과를 볼 수 있다. 재해자가 요양을 미신청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요양신청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산재통계의 정상화와 효율적인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연관관계를 통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은 산재신청 유도방안과 산재발생 감소방안 그리고 산재통계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산재신청 유도방안은 산재미신청 요인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미한 재해와 관련하여 적정한 경미한 재해 기준을 마련하여 개별실적요율제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감독행정의 이원화를 통해 경미한 재해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한 기술지도나 정보제공을 중대재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한 규제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산재발생조치사항이라는 새로운 산안법상 교육내용을 신설해 법정의무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의료기관 별도의 소견서나 진단서로 산재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수급요건의 명확화를 통해 불확실성으로 인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를 희망하는 원인 제거하자는 방안과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한 사항을 규율하는 방안 그리고 산재처리가 이루어지는 실무적인 부분의 개선요구 마지막으로 지연보고에 대한 예외적 인정을 허용하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산재발생 감소방안은 업종별 특화된 매뉴얼 제작과 안전포스터 확대 배포와 맞춤형 안전보건 어플 개발을 통한 표준화된 안전보건지원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 개선방안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지도나 교육의무 등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조사표 작성에서 접수 단계부터 이후 통계 분석까지 일괄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또는 담당기관의 인력 추가 확보 조치를 마련해 전체 산재통계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여 산재예방대책 수립 및 활용에 도움이 될 만한 보조자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참 고 문 헌

김수근 외 2인,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경제활동 지표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공단, 2009

고용노동부, 2017 산업재해현황분석, 2018

고용노동부,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19

고용노동부,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17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통계정보 보고서, 2017

산업안전보건공단, 영국의 2016-2017 산업재해 통계, 국제안전보건동향, 2017. 12

신영규·오상호, 독일 산재의사 신고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이경용 외 5인, 산업재해 예방제도 구축 및 운영,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13.

오상호 외 3인, 산재발생 보고실태 및 활용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17.

오상호 외 4인, 산재발생보고제도 사례조사 및 개편방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오상호, 산재은폐의 법적 쟁점과 과제, 노동법연구 제44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8.

오상호 외 4인, 산재발생보고제도 사례조사 및 개편방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총무성 행정평가국, '노동안전위생 등에 관한 행정평가 감시결과에 기초한 권고', 2007.8.7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15. Unfallverhütungsbericht Arbekt, BMAS & BAuA, 2016

후생노동성 통계정보 및 백서 (https://www.mhlw.go.jp/toukei/list/44-23.html)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unreported Industrial Accidents in Occupational Injury Reporting Statistics

Sang-Ho Oh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find a cause unreported industrial accident and a way to induce industrial accident and to prepare effective and suitable measure of Statistics for preventing industrial injury.

Method

First, we collected the data from Survey Research and the in-depth interview with focus group about unreported industrial accident. Second, we reviewed the various literature of industrial

Injury and systems of Industrial Injury Statistics both in domestic and OECD countries.

Results

1) The Results of case study

According to the survey research, the reason for the unreported industrial accident was highest a minor accident for workers and for employers government regulation.

2) The Improvement Plan

(1) For a minor Accident is it not imposed the application of Bonus-Malus-System and is excluded from work supervision

(2) the Clarification of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in medical care expenses and shutdown benefit

(3) Employers Liability Limitation from delayed Report

(4) Prepare a consulting channel for a Victims

(5) the Report Industrial Accident with Medical Examination Certificate of medical Institution

(6) Includes of measure for Industrial Accident in education contents under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7) Setting for Identification Methods in the drawing process and Education in the submit process of Industrial Accident Survey Table

(8) Enhancement of professional Staff Member

Key words

Occupational Injury Reporting Statistics, Reporting Statistics, Compensation-based Statistics, Untreported industrial accident

부록 1(업종별, 규모별 교차분석)

1. 근로자

A.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1. 산업재해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업종/규모			산업재해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전체
			4일 이하	30일 미만	90일 미만	90일 이상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4	12	9	6	2	33
			12.1%	36.4%	27.3%	18.2%	6.1%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3	11	9	2	0	25
			12.0%	44.0%	36.0%	8.0%	0.0%	100.0%
		300인 이상	0	2	1	3	0	6
			0.0%	33.3%	16.7%	50.0%	0.0%	100.0%
	전체		7	25	19	11	2	64
			10.9%	39.1%	29.7%	17.2%	3.1%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2	2	0	1	0	5
			40.0%	40.0%	0.0%	20.0%	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	3	1	0	0	6
			33.3%	50.0%	16.7%	0.0%	0.0%	100.0%
	전체		4	5	1	1	0	11
			36.4%	45.5%	9.1%	9.1%	0.0%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0	4	2	1	0	7
			0.0%	57.1%	28.6%	14.3%	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3	6	0	4	1	14
			21.4%	42.9%	0.0%	28.6%	7.1%	100.0%
		300인 이상	1	1	1	2	0	5
			20.0%	20.0%	20.0%	40.0%	0.0%	100.0%
	전체		4	11	3	7	1	26
			15.4%	42.3%	11.5%	26.9%	3.8%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6	18	11	8	2	45
			13.3%	40.0%	24.4%	17.8%	4.4%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8	20	10	6	1	45
			17.8%	44.4%	22.2%	13.3%	2.2%	100.0%
		300인 이상	1	3	2	5	0	11
			9.1%	27.3%	18.2%	45.5%	0.0%	100.0%
	전체		15	41	23	19	3	101
			14.9%	40.6%	22.8%	18.8%	3.0%	100.0%

2. 사고 발생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습니까?

업종/규모			사고 발생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지체방문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32	1	0	33
			97.0%	3.0%	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4	2	0	26
			92.3%	7.7%	0.0%	100.0%
		300인 이상	4	0	2	6
			66.7%	0.0%	33.3%	100.0%
	전체		60	3	2	65
			92.3%	4.6%	3.1%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4	0	2	6
			66.7%	0.0%	33.3%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5	1	1	7
			71.4%	14.3%	14.3%	100.0%
	전체		9	1	3	13
			69.2%	7.7%	23.1%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4	0	3	7
			57.1%	0.0%	42.9%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0	1	3	14
			71.4%	7.1%	21.4%	100.0%
		300인 이상	4	0	2	6
			66.7%	0.0%	33.3%	100.0%
	전체		18	1	8	27
			66.7%	3.7%	29.6%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40	1	5	46
			87.0%	2.2%	10.9%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39	4	4	47
			83.0%	8.5%	8.5%	100.0%
		300인 이상	8	0	4	12
			66.7%	0.0%	33.3%	100.0%
	전체		87	5	13	105
			82.9%	4.8%	12.4%	100.0%

3. 사고 발생 후 의료기관 방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업종/규모			사고 발생 후 의료기관 방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체
			119 후송	사설 엠블런스	자차/ 회사차 이용	도보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8	0	25	1	0	34
			23.5%	0.0%	73.5%	2.9%	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5	0	21	0	0	26
			19.2%	0.0%	80.8%	0.0%	0.0%	100.0%
		300인 이상	1	1	4	0	0	6
			16.7%	16.7%	66.7%	0.0%	0.0%	100.0%
	전체		14	1	50	1	0	66
			21.2%	1.5%	75.8%	1.5%	0.0%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2	0	4	0	0	6
			33.3%	0.0%	66.7%	0.0%	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0	0	6	0	1	7
			0.0%	0.0%	85.7%	0.0%	14.3%	100.0%
	전체		2	0	10	0	1	13
			15.4%	0.0%	76.9%	0.0%	7.7%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2	0	5	0	0	7
			28.6%	0.0%	71.4%	0.0%	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	1	9	1	1	14
			14.3%	7.1%	64.3%	7.1%	7.1%	100.0%
		300인 이상	2	0	2	0	1	5
			40.0%	0.0%	40.0%	0.0%	20.0%	100.0%
	전체		6	1	16	1	2	26
			23.1%	3.8%	61.5%	3.8%	7.7%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12	0	34	1	0	47
			25.5%	0.0%	72.3%	2.1%	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7	1	36	1	2	47
			14.9%	2.1%	76.6%	2.1%	4.3%	100.0%
		300인 이상	3	1	6	0	1	11
			27.3%	9.1%	54.5%	0.0%	9.1%	100.0%
	전체		22	2	76	2	3	105
			21.0%	1.9%	72.4%	1.9%	2.9%	100.0%

4. 재해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① 안전장치 미흡 ② 작업과정의 문제 ③ 본인의 과오 ④ 동료의 과오 ⑤ 기타

업종/규모			사고발생 원인					전체
			안전장치 미흡	작업과정의 문제	본인의 과오	동료의 과오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4	7	24	1	3	34
			11.8%	20.6%	70.6%	2.9%	8.8%	
		50인 이상 300인 미만	2	7	17	0	3	26
			7.7%	26.9%	65.4%	0.0%	11.5%	
		300인 이상	0	1	3	0	2	6
			0.0%	16.7%	50.0%	0.0%	33.3%	
	전체		6	15	44	1	8	66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1	3	3	0	0	6
			16.7%	50.0%	50.0%	0.0%	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0	3	4	1	0	7
			0.0%	42.9%	57.1%	14.3%	0.0%	
	전체		1	6	7	1	0	13
기타	규모	50인 미만	0	4	2	0	1	7
			0.0%	57.1%	28.6%	0.0%	14.3%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4	6	1	2	13
			7.7%	30.8%	46.2%	7.7%	15.4%	
		300인 이상	0	2	2	0	2	6
			0.0%	33.3%	33.3%	0.0%	33.3%	
	전체		1	10	10	1	5	26

6. 재해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업종/규모			재해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전체
			0%	30%	50%	100%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0	3	14	7	7	31
			0.0%	9.7%	45.2%	22.6%	22.6%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3	9	8	5	26
			3.8%	11.5%	34.6%	30.8%	19.2%	100.0%
		300인 이상	1	2	2	1	0	6
			16.7%	33.3%	33.3%	16.7%	0.0%	100.0%
	전체		2	8	25	16	12	63
			3.2%	12.7%	39.7%	25.4%	19.0%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0	2	2	2	0	6
			0.0%	33.3%	33.3%	33.3%	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0	3	3	0	7
			14.3%	0.0%	42.9%	42.9%	0.0%	100.0%
	전체		1	2	5	5	0	13
			7.7%	15.4%	38.5%	38.5%	0.0%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2	1	2	2	0	7
			28.6%	14.3%	28.6%	28.6%	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3	3	6	1	1	14
			21.4%	21.4%	42.9%	7.1%	7.1%	100.0%
		300인 이상	1	2	2	0	1	6
			16.7%	33.3%	33.3%	0.0%	16.7%	100.0%
	전체		6	6	10	3	2	27
			22.2%	22.2%	37.0%	11.1%	7.4%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2	6	18	11	7	44
			4.5%	13.6%	40.9%	25.0%	15.9%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5	6	18	12	6	47
			10.6%	12.8%	38.3%	25.5%	12.8%	100.0%
		300인 이상	2	4	4	1	1	12
			16.7%	33.3%	33.3%	8.3%	8.3%	100.0%
	전체		9	16	40	24	14	103
			8.7%	15.5%	38.8%	23.3%	13.6%	100.0%

B. 산재보험급여 미신청(공상) 처리 요인

1.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제도적 이유)(중복 답변 가능)

업종/규모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 이유(제도적)							전체
			관련 법규정을 몰라서	산재인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산재처리 절차가 까다로와서	요양 미신청(산재미처리)은 불법이 아니므로	회사가 산재보험 요율 인상 등 향후 발생할 불이익의 예상	산재보험 처리 시 사업장 감독 등 정부규제의 부담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3	3	3	3	7	7	5	20
			15.0%	15.0%	15.0%	15.0%	35.0%	35.0%	25.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	5	7	3	5	7	4	19
			10.5%	26.3%	36.8%	15.8%	26.3%	36.8%	21.1%	
		300인 이상	0	0	3	0	1	0	2	5
			0.0%	0.0%	60.0%	0.0%	20.0%	0.0%	40.0%	
	전체		5	8	13	6	13	14	11	44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1	1	1	1	2	2	0	4
			25.0%	25.0%	25.0%	25.0%	50.0%	50.0%	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0	0	1	0	3	1	2	5
			0.0%	0.0%	20.0%	0.0%	60.0%	20.0%	40.0%	
	전체		1	1	2	1	5	3	2	9
기타	규모	50인 미만	1	0	0	0	3	0	0	4
			25.0%	0.0%	0.0%	0.0%	75.0%	0.0%	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8	4	0	1	2	2	11
			9.1%	72.7%	36.4%	0.0%	9.1%	18.2%	18.2%	
		300인 이상	1	2	0	1	1	0	2	5
			20.0%	40.0%	0.0%	20.0%	20.0%	0.0%	40.0%	
	전체		3	10	4	1	5	2	4	20

2.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비제도적 이유: 재해자 관점)(중복 답변 가능)

업종/규모			산재보험급여 미 신청 이유(비제도적)						전체
			본인이 희망해서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재해당시 산업재해라 고판단하지 않아서	경미한 상해라고 생각해서	산재처리의 필요성을못 느껴서(개인 실비보험이 더 유리)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4	4	5	17	5	6	28
			14.3%	14.3%	17.9%	60.7%	17.9%	21.4%	
		50인 이상 300인 미만	3	7	3	12	5	3	24
			12.5%	29.2%	12.5%	50.0%	20.8%	12.5%	
		300인 이상	2	0	0	3	1	0	5
			40.0%	0.0%	0.0%	60.0%	20.0%	0.0%	
	전체		9	11	8	32	11	9	57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2	0	0	3	2	2	6
			33.3%	0.0%	0.0%	50.0%	33.3%	33.3%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2	0	6	4	0	7
			14.3%	28.6%	0.0%	85.7%	57.1%	0.0%	
	전체		3	2	0	9	6	2	13
기타	규모	50인 미만	1	1	0	2	1	1	5
			20.0%	20.0%	0.0%	40.0%	20.0%	2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3	2	4	6	5	0	14
			21.4%	14.3%	28.6%	42.9%	35.7%	0.0%	
		300인 이상	1	2	1	1	2	0	6
			16.7%	33.3%	16.7%	16.7%	33.3%	0.0%	
	전체		5	5	5	9	8	1	25

3.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비제도적 이유: 제3자 관점)(중복 답변 가능)

업종/규모			산재보험금 미 신청 이유(제3자 관점) 이유						전체
			회사가 공상처리를 종용해서	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준다고 해서	산재처리로 인해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안전관리자 등 상급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치료병원 등 제3자로부터 보험미처리 권유를 받아서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1	0	5	5	5	7	20
			5.0%	0.0%	25.0%	25.0%	25.0%	35.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	2	4	3	1	11	21
			9.5%	9.5%	19.0%	14.3%	4.8%	52.4%	
		300인 이상	1	0	1	0	0	2	4
			25.0%	0.0%	25.0%	0.0%	0.0%	50.0%	
	전체		4	2	10	8	6	20	45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1	0	2	1	0	1	4
			25.0%	0.0%	50.0%	25.0%	0.0%	25.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1	4	2	0	1	6
			16.7%	16.7%	66.7%	33.3%	0.0%	16.7%	
	전체		2	1	6	3	0	2	10
기타	규모	50인 미만	0	1	0	1	0	2	4
			0.0%	25.0%	0.0%	25.0%	0.0%	5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4	0	2	0	1	3	9
			44.4%	0.0%	22.2%	0.0%	11.1%	33.3%	
		300인 이상	1	0	2	0	0	1	4
			25.0%	0.0%	50.0%	0.0%	0.0%	25.0%	
	전체		5	1	4	1	1	6	17

4. 사고 후 치료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입니까?

업종/규모			치료비용 부담 주체			전체
			본인부담	회사부담	기타 (노동조합/공제조합 등)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1	28	1	30
			3.3%	93.3%	3.3%	
		50인 이상 300인 미만	2	22	0	24
			8.3%	91.7%	0.0%	
		300인 이상	1	4	1	6
			16.7%	66.7%	16.7%	
	전체		4	54	2	6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0	5	1	6
			0.0%	83.3%	16.7%	
		50인 이상 300인 미만	0	7	0	7
			0.0%	100.0%	0.0%	
	전체		0	12	1	13
기타	규모	50인 미만	2	1	2	5
			40.0%	20.0%	4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3	10	2	14
			21.4%	71.4%	14.3%	
		300인 이상	2	3	1	6
			33.3%	50.0%	16.7%	
	전체		7	14	5	25

5. 사고 후 치료비 계산방법은?

업종/규모			치료비계산방법						전체
			건강보험	개인실비보험	근재보험(회사)	일반	치료받지않음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5	4	14	5	1	3	27
			18.5%	14.8%	51.9%	18.5%	3.7%	11.1%	
		50인 이상 300인 미만	5	2	8	7	0	3	24
			20.8%	8.3%	33.3%	29.2%	0.0%	12.5%	
		300인 이상	1	1	1	2	0	1	6
			16.7%	16.7%	16.7%	33.3%	0.0%	16.7%	
	전체		11	7	23	14	1	7	57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2	1	2	1	0	0	6
			33.3%	16.7%	33.3%	16.7%	0.0%	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0	0	6	0	0	7
			14.3%	0.0%	0.0%	85.7%	0.0%	0.0%	
	전체		3	1	2	7	0	0	13
기타	규모	50인 미만	2	1	1	0	0	1	5
			40.0%	20.0%	20.0%	0.0%	0.0%	2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0	5	5	1	0	2	13
			0.0%	38.5%	38.5%	7.7%	0.0%	15.4%	
		300인 이상	1	2	1	2	0	0	6
			16.7%	33.3%	16.7%	33.3%	0.0%	0.0%	
	전체		3	8	7	3	0	3	24

6. 치료비 이외에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지급하여 준 경우 해당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업종/규모			별도보상				전체
			휴업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이외에 치료에 소요되는 비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	소정의 위로금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21	8	5	5	26
			80.8%	30.8%	19.2%	19.2%	
		50인 이상 300인 미만	13	9	5	1	22
			59.1%	40.9%	22.7%	4.5%	
		300인 이상	2	4	0	1	5
			40.0%	80.0%	0.0%	20.0%	
	전체		36	21	10	7	53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4	3	2	0	6
			66.7%	50.0%	33.3%	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5	1	4	0	7
			71.4%	14.3%	57.1%	0.0%	
	전체		9	4	6	0	13
기타	규모	50인 미만	1	1	1	1	4
			25.0%	25.0%	25.0%	25.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0	1	3	2	14
			71.4%	7.1%	21.4%	14.3%	
		300인 이상	2	1	3	2	6
			33.3%	16.7%	50.0%	33.3%	
	전체		13	3	7	5	24

7.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휴업기간은(실제로 휴업한 기간)?

업종/규모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휴업기간은(실제로 휴업한 기간)?					전체
			4일 이하	30일 미만	90일 미만	90일 이상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7	10	3	4	2	26
			26.9%	38.5%	11.5%	15.4%	7.7%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4	11	4	0	5	24
			16.7%	45.8%	16.7%	0.0%	20.8%	100.0%
		300인 이상	1	2	1	1	0	5
			20.0%	40.0%	20.0%	20.0%	0.0%	100.0%
	전체		12	23	8	5	7	55
			21.8%	41.8%	14.5%	9.1%	12.7%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1	3	0	0	2	6
			16.7%	50.0%	0.0%	0.0%	33.3%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5	0	0	1	7
			14.3%	71.4%	0.0%	0.0%	14.3%	100.0%
	전체		2	8	0	0	3	13
			15.4%	61.5%	0.0%	0.0%	23.1%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1	0	1	0	1	3
			33.3%	0.0%	33.3%	0.0%	33.3%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4	6	0	2	2	14
			28.6%	42.9%	0.0%	14.3%	14.3%	100.0%
		300인 이상	2	0	2	1	1	6
			33.3%	0.0%	33.3%	16.7%	16.7%	100.0%
	전체		7	6	3	3	4	23
			30.4%	26.1%	13.0%	13.0%	17.4%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9	13	4	4	5	35
			25.7%	37.1%	11.4%	11.4%	14.3%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9	22	4	2	8	45
			20.0%	48.9%	8.9%	4.4%	17.8%	100.0%
		300인 이상	3	2	3	2	1	11
			27.3%	18.2%	27.3%	18.2%	9.1%	100.0%
	전체		21	37	11	8	14	91
			23.1%	40.7%	12.1%	8.8%	15.4%	100.0%

2 . 산업체

B.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요양신청 관련 제도의 인지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재발생보고제도(제10조) 인지여부

업종/규모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재발생보고제도(제10조)를 알고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56	2	58
			96.6%	3.4%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32	3	35
			91.4%	8.6%	100.0%
		300인 이상	11	0	11
			100.0%	0.0%	100.0%
	전체		99	5	104
			95.2%	4.8%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16	1	17
			94.1%	5.9%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6	0	6
			100.0%	0.0%	100.0%
		300인 이상	1	0	1
			100.0%	0.0%	100.0%
	전체		23	1	24
			95.8%	4.2%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19	1	20
			95.0%	5.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7	4	31
			87.1%	12.9%	100.0%
		300인 이상	8	1	9
			88.9%	11.1%	100.0%
	전체		54	6	60
			90.0%	10.0%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91	4	95
			95.8%	4.2%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65	7	72
			90.3%	9.7%	100.0%
		300인 이상	20	1	21
			95.2%	4.8%	100.0%
	전체		176	12	188
			93.6%	6.4%	100.0%

2. 위 제도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업종/규모			위 제도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53	5	58
			91.4%	8.6%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31	4	35
			88.6%	11.4%	100.0%
		300인 이상	11	0	11
			100.0%	0.0%	100.0%
	전체		95	9	104
			91.3%	8.7%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16	1	17
			94.1%	5.9%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6	0	6
			100.0%	0.0%	100.0%
		300인 이상	1	0	1
			100.0%	0.0%	100.0%
	전체		23	1	24
			95.8%	4.2%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15	5	20
			75.0%	25.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7	4	31
			87.1%	12.9%	100.0%
		300인 이상	9	0	9
			100.0%	0.0%	100.0%
	전체		51	9	60
			85.0%	15.0%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84	11	95
			88.4%	11.6%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64	8	72
			88.9%	11.1%	100.0%
		300인 이상	21	0	21
			100.0%	0.0%	100.0%
	전체		169	19	188
			89.9%	10.1%	100.0%

3.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업종/규모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58	0	58
			100.0%	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33	2	35
			94.3%	5.7%	100.0%
		300인 이상	11	0	11
			100.0%	0.0%	100.0%
	전체		102	2	104
			98.1%	1.9%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15	2	17
			88.2%	11.8%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6	0	6
			100.0%	0.0%	100.0%
		300인 이상	1	0	1
			100.0%	0.0%	100.0%
	전체		22	2	24
			91.7%	8.3%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18	2	20
			90.0%	1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30	1	31
			96.8%	3.2%	100.0%
		300인 이상	9	0	9
			100.0%	0.0%	100.0%
	전체		57	3	60
			95.0%	5.0%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91	4	95
			95.8%	4.2%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69	3	72
			95.8%	4.2%	100.0%
		300인 이상	21	0	21
			100.0%	0.0%	100.0%
	전체		181	7	188
			96.3%	3.7%	100.0%

4. 위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까?

업종/규모			위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44	14	58
			75.9%	24.1%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5	10	35
			71.4%	28.6%	100.0%
		300인 이상	10	1	11
			90.9%	9.1%	100.0%
	전체		79	25	104
			76.0%	24.0%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9	8	17
			52.9%	47.1%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5	1	6
			83.3%	16.7%	100.0%
		300인 이상	1	0	1
			100.0%	0.0%	100.0%
	전체		15	9	24
			62.5%	37.5%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13	7	20
			65.0%	35.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1	9	30
			70.0%	30.0%	100.0%
		300인 이상	8	1	9
			88.9%	11.1%	100.0%
	전체		42	17	59
			71.2%	28.8%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66	29	95
			69.5%	30.5%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51	20	71
			71.8%	28.2%	100.0%
		300인 이상	19	2	21
			90.5%	9.5%	100.0%
	전체		136	51	187
			72.7%	27.3%	100.0%

C.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1. 귀사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최초로 보고합니까?(중복 답변 가능)

업종/규모			산재 최초 보고자						전체
			재해근로자	동료근로자	부서별 부서장	안전관리자	노동조합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17	38	30	22	1	0	58
			29.3%	65.5%	51.7%	37.9%	1.7%	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2	21	23	13	0	1	35
			34.3%	60.0%	65.7%	37.1%	0.0%	2.9%	
		300인 이상	3	6	6	7	0	1	11
			27.3%	54.5%	54.5%	63.6%	0.0%	9.1%	
	전체		32	65	59	42	1	2	104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4	9	9	7	0	0	17
			23.5%	52.9%	52.9%	41.2%	0.0%	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	3	4	4	0	0	6
			33.3%	50.0%	66.7%	66.7%	0.0%	0.0%	
		300인 이상	0	1	0	0	0	0	1
			0.0%	100.0%	0.0%	0.0%	0.0%	0.0%	
	전체		6	13	13	11	0	0	24
기타	규모	50인 미만	7	6	11	3	0	0	19
			36.8%	31.6%	57.9%	15.8%	0.0%	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4	10	18	8	0	4	30
			46.7%	33.3%	60.0%	26.7%	0.0%	13.3%	
		300인 이상	6	3	3	2	0	0	9
			66.7%	33.3%	33.3%	22.2%	0.0%	0.0%	
	전체		27	19	32	13	0	4	58

2. 귀사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최초로 보고받습니까?(중복 답변 가능)

업종/규모			산재 최초보고 받는자					전체
			부서별 부서장	안전 관리자	사업주	노동조합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42	25	27	2	2	58
			72.4%	43.1%	46.6%	3.4%	3.4%	
		50인 이상 300인 미만	28	20	10	0	2	34
			82.4%	58.8%	29.4%	0.0%	5.9%	
		300인 이상	10	11	1	0	0	11
			90.9%	100.0%	9.1%	0.0%	0.0%	
	전체		80	56	38	2	4	103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14	7	6	0	0	17
			82.4%	41.2%	35.3%	0.0%	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6	2	1	0	0	6
			100.0%	33.3%	16.7%	0.0%	0.0%	
		300인 이상	0	1	0	0	0	1
			0.0%	100.0%	0.0%	0.0%	0.0%	
	전체		20	10	7	0	0	24
기타	규모	50인 미만	15	5	8	0	0	19
			78.9%	26.3%	42.1%	0.0%	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8	8	8	2	2	31
			90.3%	25.8%	25.8%	6.5%	6.5%	
		300인 이상	7	3	1	1	0	9
			77.8%	33.3%	11.1%	11.1%	0.0%	
	전체		50	16	17	3	2	59

3. 재해근로자의 의료기관 방문 시 회사 담당자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업종/규모			재해근로자의 의료기관 방문 시 회사 담당자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상병 및 재해 정도에 따라 다름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49	0	9	58
			84.5%	0.0%	15.5%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30	1	4	35
			85.7%	2.9%	11.4%	100.0%
		300인 이상	6	0	5	11
			54.5%	0.0%	45.5%	100.0%
	전체		85	1	18	104
			81.7%	1.0%	17.3%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14	0	3	17
			82.4%	0.0%	17.6%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4	0	2	6
			66.7%	0.0%	33.3%	100.0%
		300인 이상	1	0	0	1
			100.0%	0.0%	0.0%	100.0%
	전체		19	0	5	24
			79.2%	0.0%	20.8%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8	2	10	20
			40.0%	10.0%	5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6	5	20	31
			19.4%	16.1%	64.5%	100.0%
		300인 이상	2	1	6	9
			22.2%	11.1%	66.7%	100.0%
	전체		16	8	36	60
			26.7%	13.3%	60.0%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71	2	22	95
			74.7%	2.1%	23.2%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40	6	26	72
			55.6%	8.3%	36.1%	100.0%
		300인 이상	9	1	11	21
			42.9%	4.8%	52.4%	100.0%
	전체		120	9	59	188
			63.8%	4.8%	31.4%	100.0%

4.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업종/규모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22	35	57
			38.6%	61.4%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4	21	35
			40.0%	60.0%	100.0%
		300인 이상	4	7	11
			36.4%	63.6%	100.0%
	전체		40	63	103
			38.8%	61.2%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9	8	17
			52.9%	47.1%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5	1	6
			83.3%	16.7%	100.0%
		300인 이상	1	0	1
			100.0%	0.0%	100.0%
	전체		15	9	24
			62.5%	37.5%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6	13	19
			31.6%	68.4%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5	26	31
			16.1%	83.9%	100.0%
		300인 이상	3	6	9
			33.3%	66.7%	100.0%
	전체		14	45	59
			23.7%	76.3%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37	56	93
			39.8%	60.2%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4	48	72
			33.3%	66.7%	100.0%
		300인 이상	8	13	21
			38.1%	61.9%	100.0%
	전체		69	117	186
			37.1%	62.9%	100.0%

5. 사업주가 재해근로자를 설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공상처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업종/규모			사업주가 재해근로자를 설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공상처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11	48	59
			18.6%	81.4%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8	27	35
			22.9%	77.1%	100.0%
		300인 이상	1	10	11
			9.1%	90.9%	100.0%
	전체		20	85	105
			19.0%	81.0%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3	14	17
			17.6%	82.4%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5	6
			16.7%	83.3%	100.0%
		300인 이상	0	1	1
			0.0%	100.0%	100.0%
	전체		4	20	24
			16.7%	83.3%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2	17	19
			10.5%	89.5%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	28	30
			6.7%	93.3%	100.0%
		300인 이상	0	9	9
			0.0%	100.0%	100.0%
	전체		4	54	58
			6.9%	93.1%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16	79	95
			16.8%	83.2%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1	60	71
			15.5%	84.5%	100.0%
		300인 이상	1	20	21
			4.8%	95.2%	100.0%
	전체		28	159	187
			15.0%	85.0%	100.0%

6. 귀사가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하는 대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업종/규모			산재보험급여결정이유								전체
			관계 법령의 준수가 우선이라 생각되어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 큰 금액이어서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의 장기간 휴업이 예상되어서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에게 이후 장애 발생이 예상되어서	재해근로자가 기대하는 금액과 회사가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 차이가 커서	재해근로자가 공상처리를 합의한 이후 합의를 위반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것이 예상되어서	공상처리 합의로 향후 관계 법령상의 불이익 발생이 예상되어서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32	17	22	15	5	7	12	2	55
			58.2%	30.9%	40.0%	27.3%	9.1%	12.7%	21.8%	3.6%	
		50인 이상 300인 미만	15	11	13	20	1	4	8	1	34
			44.1%	32.4%	38.2%	58.8%	2.9%	11.8%	23.5%	2.9%	
		300인 이상	7	1	6	4	0	2	0	1	10
			70.0%	10.0%	60.0%	40.0%	0.0%	20.0%	0.0%	10.0%	
	전체		54	29	41	39	6	13	20	4	99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7	2	2	8	1	7	5	0	15
			46.7%	13.3%	13.3%	53.3%	6.7%	46.7%	33.3%	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2	2	2	4	3	2	0	6
			16.7%	33.3%	33.3%	33.3%	66.7%	50.0%	33.3%	0.0%	
		300인 이상	1	0	1	1	0	0	0	0	1
			100.0%	0.0%	100.0%	100.0%	0.0%	0.0%	0.0%	0.0%	
	전체		9	4	5	11	5	10	7	0	22
기타	규모	50인 미만	12	3	4	3	0	2	3	1	15
			80.0%	20.0%	26.7%	20.0%	0.0%	13.3%	20.0%	6.7%	
		50인 이상 300인 미만	19	5	9	5	2	2	4	5	29
			65.5%	17.2%	31.0%	17.2%	6.9%	6.9%	13.8%	17.2%	
		300인 이상	3	1	3	3	0	0	0	2	8
			37.5%	12.5%	37.5%	37.5%	0.0%	0.0%	0.0%	25.0%	
	전체		34	9	16	11	2	4	7	8	52

7. 위 '6'와 관련, '③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의 장기간 휴업이 예상되어서'라고 답변한 경우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업종/규모			위 '6'와 관련, '③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의 장기간 휴업이 예상되어서'라고 답변한 경우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9	9	3	1	22
			40.9%	40.9%	13.6%	4.5%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4	6	2	1	13
			30.8%	46.2%	15.4%	7.7%	100.0%
		300인 이상	2	4	0	0	6
			33.3%	66.7%	0.0%	0.0%	100.0%
	전체		15	19	5	2	41
			36.6%	46.3%	12.2%	4.9%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0	1	0	1	2
			0.0%	50.0%	0.0%	5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0	0	1	1	2
			0.0%	0.0%	50.0%	50.0%	100.0%
		300인 이상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전체		1	1	1	2	5
			20.0%	20.0%	20.0%	40.0%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1	2	0	1	4
			25.0%	50.0%	0.0%	25.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5	2	2	0	9
			55.6%	22.2%	22.2%	0.0%	100.0%
		300인 이상	2	0	0	0	2
			100.0%	0.0%	0.0%	0.0%	100.0%
	전체		8	4	2	1	15
			53.3%	26.7%	13.3%	6.7%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10	12	3	3	28
			35.7%	42.9%	10.7%	10.7%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9	8	5	2	24
			37.5%	33.3%	20.8%	8.3%	100.0%
		300인 이상	5	4	0	0	9
			55.6%	44.4%	0.0%	0.0%	100.0%
	전체		24	24	8	5	61
			39.3%	39.3%	13.1%	8.2%	100.0%

8. 위 '6'와 관련, '④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에게 이후 장애 발생이 예상되어서'라고 답변한 경우 예상되는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공상 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업종/규모			위 '6'와 관련, '④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에게 이후 장애 발생이 예상되어서'라고 답변한 경우 예상되는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공상 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4	11	15
			26.7%	73.3%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0	9	19
			52.6%	47.4%	100.0%
		300인 이상	3	1	4
			75.0%	25.0%	100.0%
	전체		17	21	38
			44.7%	55.3%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1	4	5
			20.0%	8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0	2	2
			0.0%	100.0%	100.0%
		300인 이상	1	0	1
			100.0%	0.0%	100.0%
	전체		2	6	8
			25.0%	75.0%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2	1	3
			66.7%	33.3%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	3	5
			40.0%	60.0%	100.0%
		300인 이상	1	1	2
			50.0%	50.0%	100.0%
	전체		5	5	10
			50.0%	50.0%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7	16	23
			30.4%	69.6%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2	14	26
			46.2%	53.8%	100.0%
		300인 이상	5	2	7
			71.4%	28.6%	100.0%
	전체		24	32	56
			42.9%	57.1%	100.0%

9.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 귀사가 이를 최초로 인식하게 되는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업종/규모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 귀사가 이를 최초로 인식하게 되는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였음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가입자 의견서, 확인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통보받은 경우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26	10	16	52
			50.0%	19.2%	30.8%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6	13	4	33
			48.5%	39.4%	12.1%	100.0%
		300인 이상	4	6	1	11
			36.4%	54.5%	9.1%	100.0%
	전체		46	29	21	96
			47.9%	30.2%	21.9%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5	4	4	13
			38.5%	30.8%	30.8%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	3	1	6
			33.3%	50.0%	16.7%	100.0%
		300인 이상	0	0	1	1
			0.0%	0.0%	100.0%	100.0%
	전체		7	7	6	20
			35.0%	35.0%	30.0%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5	4	6	15
			33.3%	26.7%	4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1	3	6	30
			70.0%	10.0%	20.0%	100.0%
		300인 이상	6	2	0	8
			75.0%	25.0%	0.0%	100.0%
	전체		32	9	12	53
			60.4%	17.0%	22.6%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36	18	26	80
			45.0%	22.5%	32.5%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39	19	11	69
			56.5%	27.5%	15.9%	100.0%
		300인 이상	10	8	2	20
			50.0%	40.0%	10.0%	100.0%
	전체		85	45	39	169
			50.3%	26.6%	23.1%	100.0%

10. 귀사가 생각하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업종/규모			산재발생원인						전체
			안전보건조치 미흡(시설 장비 등)	작업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성	재해근로자의 과실	동료근로자의 과실	작업자의 교육 및 지식 부족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11	25	48	9	16	2	57
			19.3%	43.9%	84.2%	15.8%	28.1%	3.5%	
		50인 이상 300인 미만	11	22	28	5	12	2	36
			30.6%	61.1%	77.8%	13.9%	33.3%	5.6%	
		300인 이상	1	6	11	2	1	1	11
			9.1%	54.5%	100.0%	18.2%	9.1%	9.1%	
	전체		23	53	87	16	29	5	104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4	8	10	2	4	1	16
			25.0%	50.0%	62.5%	12.5%	25.0%	6.3%	
		50인 이상 300인 미만	2	5	5	3	2	0	6
			33.3%	83.3%	83.3%	50.0%	33.3%	0.0%	
		300인 이상	0	0	1	1	0	0	1
			0.0%	0.0%	100.0%	100.0%	0.0%	0.0%	
	전체		6	13	16	6	6	1	23
기타	규모	50인 미만	3	7	11	1	4	2	19
			15.8%	36.8%	57.9%	5.3%	21.1%	10.5%	
		50인 이상 300인 미만	7	9	19	3	9	7	31
			22.6%	29.0%	61.3%	9.7%	29.0%	22.6%	
		300인 이상	3	5	6	3	4	0	9
			33.3%	55.6%	66.7%	33.3%	44.4%	0.0%	
	전체		13	21	36	7	17	9	59

11.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종/규모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	아니오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44	7	51
			86.3%	13.7%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30	6	36
			83.3%	16.7%	100.0%
		300인 이상	10	1	11
			90.9%	9.1%	100.0%
	전체		84	14	98
			85.7%	14.3%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13	3	16
			81.3%	18.8%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6	0	6
			100.0%	0.0%	100.0%
		300인 이상	1	0	1
			100.0%	0.0%	100.0%
	전체		20	3	23
			87.0%	13.0%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17	1	18
			94.4%	5.6%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30	0	30
			100.0%	0.0%	100.0%
		300인 이상	9	0	9
			100.0%	0.0%	100.0%
	전체		56	1	57
			98.2%	1.8%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74	11	85
			87.1%	12.9%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66	6	72
			91.7%	8.3%	100.0%
		300인 이상	20	1	21
			95.2%	4.8%	100.0%
	전체		160	18	178
			89.9%	10.1%	100.0%

D. 산재보험급여 미신청(공상) 처리 요인

1.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제도적 이유)(중복 답변 가능)

업종/규모			산재보험 대신 공상처리 이유(제도적)							전체
			회사의 정책	산재보험 급여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서	산재보험 급여 미신청(산재미처리)이 불법은 아니므로	산재보험 요율 인상 등 향후 회사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예상되어서	산재보험 처리 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등 정부 규제가 부담되어서	산업재해 발생 시 PQ점수 감점 혹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공공부문과의 도급 계약 체결에 불이익이 발생하여서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1	11	9	30	27	12	14	50
			2.0%	22.0%	18.0%	60.0%	54.0%	24.0%	28.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3	10	17	25	5	4	34
			2.9%	8.8%	29.4%	50.0%	73.5%	14.7%	11.8%	
		300인 이상	1	1	4	3	4	0	1	9
			11.1%	11.1%	44.4%	33.3%	44.4%	0.0%	11.1%	
	전체		3	15	23	50	56	17	19	93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1	2	1	5	7	8	2	15
			6.7%	13.3%	6.7%	33.3%	46.7%	53.3%	13.3%	
		50인 이상 300인 미만	0	0	4	1	2	2	0	6
			0.0%	0.0%	66.7%	16.7%	33.3%	33.3%	0.0%	
		300인 이상	0	0	1	0	0	0	0	1
			0.0%	0.0%	100.0%	0.0%	0.0%	0.0%	0.0%	
	전체		1	2	6	6	9	10	2	22
기타	규모	50인 미만	0	1	1	6	4	1	4	12
			0.0%	8.3%	8.3%	50.0%	33.3%	8.3%	33.3%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3	3	7	9	0	13	24
			4.2%	12.5%	12.5%	29.2%	37.5%	0.0%	54.2%	
		300인 이상	0	1	0	4	2	0	2	7
			0.0%	14.3%	0.0%	57.1%	28.6%	0.0%	28.6%	
	전체		1	5	4	17	15	1	19	43

2.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비제도적 이유)(중복 답변 가능)

업종/규모			산재보험 대신 공상처리 이유(비 제도적)							전체
			재해근로자가 희망해서	재해근로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고 당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경미한 상병이라고 생각해서	안전관리자 등 상급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치료병원 등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 미처리 권유를 받아서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20	8	12	42	1	2	1	50
			40.0%	16.0%	24.0%	84.0%	2.0%	4.0%	2.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4	5	9	27	3	0	3	34
			41.2%	14.7%	26.5%	79.4%	8.8%	0.0%	8.8%	
		300인 이상	7	0	2	4	0	0	1	10
			70.0%	0.0%	20.0%	40.0%	0.0%	0.0%	10.0%	
	전체		41	13	23	73	4	2	5	94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6	4	2	11	2	0	1	15
			40.0%	26.7%	13.3%	73.3%	13.3%	0.0%	6.7%	
		50인 이상 300인 미만	4	0	0	5	1	0	0	6
			66.7%	0.0%	0.0%	83.3%	16.7%	0.0%	0.0%	
		300인 이상	1	0	0	1	0	0	0	1
			100.0%	0.0%	0.0%	100.0%	0.0%	0.0%	0.0%	
	전체		11	4	2	17	3	0	1	22
기타	규모	50인 미만	8	2	5	6	0	0	2	12
			66.7%	16.7%	41.7%	50.0%	0.0%	0.0%	16.7%	
		50인 이상 300인 미만	8	3	4	11	0	1	8	25
			32.0%	12.0%	16.0%	44.0%	0.0%	4.0%	32.0%	
		300인 이상	2	0	2	3	0	1	2	6
			33.3%	0.0%	33.3%	50.0%	0.0%	16.7%	33.3%	
	전체		18	5	11	20	0	2	12	43

3. 위 '2'와 관련, '① 재해근로자가 희망해서'라고 답변한 경우 재해근로자가 말하는 공상 처리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업종/규모			공상 처리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							전체
			산재보험급여 신청 절차가 어렵다	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상 처리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르다.	산재보험 급여보다 공상 처리로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많다.	상병이 경미하다.	휴업 기간 동안 동료근로자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	휴업 기간 이후 복직 시 원직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7	7	6	19	10	1	3	26
			26.9%	26.9%	23.1%	73.1%	38.5%	3.8%	11.5%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5	9	10	4	2	0	18
			5.6%	27.8%	50.0%	55.6%	22.2%	11.1%	0.0%	
		300인 이상	0	4	2	6	2	0	0	7
			0.0%	57.1%	28.6%	85.7%	28.6%	0.0%	0.0%	
	전체		8	16	17	35	16	3	3	51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2	3	5	3	0	1	0	8
			25.0%	37.5%	62.5%	37.5%	0.0%	12.5%	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0	1	3	1	0	0	0	4
			0.0%	25.0%	75.0%	25.0%	0.0%	0.0%	0.0%	
		300인 이상	0	0	1	1	1	1	0	1
			0.0%	0.0%	100.0%	100.0%	100.0%	100.0%	0.0%	
	전체		2	4	9	5	1	2	0	13
기타	규모	50인 미만	1	3	4	4	1	0	1	6
			16.7%	50.0%	66.7%	66.7%	16.7%	0.0%	16.7%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4	2	5	2	0	3	14
			7.1%	28.6%	14.3%	35.7%	14.3%	0.0%	21.4%	
		300인 이상	0	1	2	2	0	0	1	3
			0.0%	33.3%	66.7%	66.7%	0.0%	0.0%	33.3%	
	전체		2	8	8	11	3	0	5	23

4.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업종/규모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재해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이후 이 비용의 지급	재해근로자의 실비보험으로 처리한 이후 이 비용의 지급	회사가 별도로 가입한 근로자재해보험으로 처리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 등 별도로 처리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13	7	12	7	10	49
			26.5%	14.3%	24.5%	14.3%	20.4%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8	4	0	7	14	33
			24.2%	12.1%	0.0%	21.2%	42.4%	100.0%
		300인 이상	4	1	0	0	5	10
			40.0%	10.0%	0.0%	0.0%	50.0%	100.0%
	전체		25	12	12	14	29	92
			27.2%	13.0%	13.0%	15.2%	31.5%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7	2	1	2	2	14
			50.0%	14.3%	7.1%	14.3%	14.3%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3	0	0	1	2	6
			50.0%	0.0%	0.0%	16.7%	33.3%	100.0%
		300인 이상	0	0	0	0	1	1
			0.0%	0.0%	0.0%	0.0%	100.0%	100.0%
	전체		10	2	1	3	5	21
			47.6%	9.5%	4.8%	14.3%	23.8%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2	0	1	1	6	10
			20.0%	0.0%	10.0%	10.0%	6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7	3	2	3	8	23
			30.4%	13.0%	8.7%	13.0%	34.8%	100.0%
		300인 이상	1	0	0	1	3	5
			20.0%	0.0%	0.0%	20.0%	60.0%	100.0%
	전체		10	3	3	5	17	38
			26.3%	7.9%	7.9%	13.2%	44.7%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22	9	14	10	18	73
			30.1%	12.3%	19.2%	13.7%	24.7%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8	7	2	11	24	62
			29.0%	11.3%	3.2%	17.7%	38.7%	100.0%
		300인 이상	5	1	0	1	9	16
			31.3%	6.3%	0.0%	6.3%	56.3%	100.0%
	전체		45	17	16	22	51	151
			29.8%	11.3%	10.6%	14.6%	33.8%	100.0%

5. 치료비 이외에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지급하여 준 경우 해당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업종/규모			치료비 외 별도보상				전체
			휴업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이외에 치료에 소요되는 비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	소정의 위로금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21	16	8	1	25
			84.0%	64.0%	32.0%	4.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7	7	5	5	23
			73.9%	30.4%	21.7%	21.7%	
		300인 이상	7	5	0	1	8
			87.5%	62.5%	0.0%	12.5%	
	전체		45	28	13	7	56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8	2	4	1	10
			80.0%	20.0%	40.0%	1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5	1	6	0	6
			83.3%	16.7%	100.0%	0.0%	
		300인 이상	1	0	0	0	1
			100.0%	0.0%	0.0%	0.0%	
	전체		14	3	10	1	17
기타	규모	50인 미만	5	3	3	1	8
			62.5%	37.5%	37.5%	12.5%	
		50인 이상 300인 미만	4	2	4	6	12
			33.3%	16.7%	33.3%	50.0%	
		300인 이상	1	2	0	2	4
			25.0%	50.0%	0.0%	50.0%	
	전체		10	7	7	9	24

6.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재해근로자에게 후유장애 등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거나 추가 합의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업종/규모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재해근로자에게 후유장애 등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거나 추가 합의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0	47	47
			0.0%	10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4	30	34
			11.8%	88.2%	100.0%
		300인 이상	0	10	10
			0.0%	100.0%	100.0%
	전체		4	87	91
			4.4%	95.6%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3	12	15
			20.0%	8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3	3	6
			50.0%	50.0%	100.0%
		300인 이상	1	0	1
			100.0%	0.0%	100.0%
	전체		7	15	22
			31.8%	68.2%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1	10	11
			9.1%	90.9%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0	23	23
			0.0%	100.0%	100.0%
		300인 이상	1	6	7
			14.3%	85.7%	100.0%
	전체		2	39	41
			4.9%	95.1%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4	69	73
			5.5%	94.5%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7	56	63
			11.1%	88.9%	100.0%
		300인 이상	2	16	18
			11.1%	88.9%	100.0%
	전체		13	141	154
			8.4%	91.6%	100.0%

7. 위 '6'과 관련, '① 예'라고 답변한 경우 추가적으로 보상을 지급했는지 만약, 지급했다면 얼마정도 지급하였습니까?

업종/규모			위 '6'과 관련, '① 예'라고 답변한 경우 추가적으로 보상을 지급했는지 만약, 지급했다면 얼마정도 지급하였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0	5	5
			0.0%	10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	6	8
			25.0%	75.0%	100.0%
	전체		2	11	13
			15.4%	84.6%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1	5	6
			16.7%	83.3%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	1	3
			66.7%	33.3%	100.0%
		300인 이상	1	0	1
			100.0%	0.0%	100.0%
	전체		4	6	10
			40.0%	60.0%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1	1	2
			50.0%	5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0	1	1
			0.0%	100.0%	100.0%
		300인 이상	1	0	1
			100.0%	0.0%	100.0%
	전체		2	2	4
			50.0%	50.0%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2	11	13
			15.4%	84.6%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4	8	12
			33.3%	66.7%	100.0%
		300인 이상	2	0	2
			100.0%	0.0%	100.0%
	전체		8	19	27
			29.6%	70.4%	100.0%

8. 공상처리 이후 재해근로자가 회사에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회사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업종/규모			공상처리 이후 재해근로자가 회사에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회사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0	46	46
			0.0%	10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29	30
			3.3%	96.7%	100.0%
		300인 이상	0	10	10
			0.0%	100.0%	100.0%
	전체		1	85	86
			1.2%	98.8%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1	12	13
			7.7%	92.3%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	4	6
			33.3%	66.7%	100.0%
		300인 이상	0	1	1
			0.0%	100.0%	100.0%
	전체		3	17	20
			15.0%	85.0%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1	9	10
			10.0%	9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0	21	21
			0.0%	100.0%	100.0%
		300인 이상	0	5	5
			0.0%	100.0%	100.0%
	전체		1	35	36
			2.8%	97.2%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2	67	69
			2.9%	97.1%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3	54	57
			5.3%	94.7%	100.0%
		300인 이상	0	16	16
			0.0%	100.0%	100.0%
	전체		5	137	142
			3.5%	96.5%	100.0%

E. 개선방안

4. 현재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용목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업종/규모			예방수립 기초자료				전체
			산업재해 원인분석 및 이의 예방정책으로만 활용	사업장 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등 공표 대상에서 제외	기타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35	10	5	3	40
			87.5%	25.0%	12.5%	7.5%	
		50인 이상 300인 미만	23	12	4	4	26
			88.5%	46.2%	15.4%	15.4%	
		300인 이상	10	6	1	0	10
			100.0%	60.0%	10.0%	0.0%	
	전체		68	28	10	7	76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13	2	2	0	11
			118.2%	18.2%	18.2%	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4	4	1	0	5
			80.0%	80.0%	20.0%	0.0%	
		300인 이상	0	2	0	0	1
			0.0%	200.0%	0.0%	0.0%	
	전체		17	8	3	0	17
기타	규모	50인 미만	22	0	1	0	12
			183.3%	0.0%	8.3%	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7	9	0	2	18
			94.4%	50.0%	0.0%	11.1%	
		300인 이상	13	1	2	0	9
			144.4%	11.1%	22.2%	0.0%	
	전체		52	10	3	2	39

V. 부록(규모별 교차분석)

1. 근로자

A.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1. 산업재해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규모/업종			산업재해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전체
			4일 이하	30일 미만	90일 미만	90일 이상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4	12	9	6	2	33
			12.1%	36.4%	27.3%	18.2%	6.1%	100.0%
		건설업	2	2	0	1	0	5
			40.0%	40.0%	0.0%	20.0%	0.0%	100.0%
		기타	0	4	2	1	0	7
			0.0%	57.1%	28.6%	14.3%	0.0%	100.0%
	전체		6	18	11	8	2	45
			13.3%	40.0%	24.4%	17.8%	4.4%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3	11	9	2	0	25
			12.0%	44.0%	36.0%	8.0%	0.0%	100.0%
		건설업	2	3	1	0	0	6
			33.3%	50.0%	16.7%	0.0%	0.0%	100.0%
		기타	3	6	0	4	1	14
			21.4%	42.9%	0.0%	28.6%	7.1%	100.0%
	전체		8	20	10	6	1	45
			17.8%	44.4%	22.2%	13.3%	2.2%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0	2	1	3	0	6
			0.0%	33.3%	16.7%	50.0%	0.0%	100.0%
		기타	1	1	1	2	0	5
			20.0%	20.0%	20.0%	40.0%	0.0%	100.0%
	전체		1	3	2	5	0	11
			9.1%	27.3%	18.2%	45.5%	0.0%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7	25	19	11	2	64
			10.9%	39.1%	29.7%	17.2%	3.1%	100.0%
		건설업	4	5	1	1	0	11
			36.4%	45.5%	9.1%	9.1%	0.0%	100.0%
		기타	4	11	3	7	1	26
			15.4%	42.3%	11.5%	26.9%	3.8%	100.0%
	전체		15	41	23	19	3	101
			14.9%	40.6%	22.8%	18.8%	3.0%	100.0%

2. 사고 발생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습니까?

규모/업종			사고 발생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지체방문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32	1	0	33
			97.0%	3.0%	0.0%	100.0%
		건설업	4	0	2	6
			66.7%	0.0%	33.3%	100.0%
		기타	4	0	3	7
			57.1%	0.0%	42.9%	100.0%
	전체		40	1	5	46
			87.0%	2.2%	10.9%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24	2	0	26
			92.3%	7.7%	0.0%	100.0%
		건설업	5	1	1	7
			71.4%	14.3%	14.3%	100.0%
		기타	10	1	3	14
			71.4%	7.1%	21.4%	100.0%
	전체		39	4	4	47
			83.0%	8.5%	8.5%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4	0	2	6
			66.7%	0.0%	33.3%	100.0%
		기타	4	0	2	6
			66.7%	0.0%	33.3%	100.0%
	전체		8	0	4	12
			66.7%	0.0%	33.3%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60	3	2	65
			92.3%	4.6%	3.1%	100.0%
		건설업	9	1	3	13
			69.2%	7.7%	23.1%	100.0%
		기타	18	1	8	27
			66.7%	3.7%	29.6%	100.0%
	전체		87	5	13	105
			82.9%	4.8%	12.4%	100.0%

3. 사고 발생 후 의료기관 방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규모/업종			사고 발생 후 의료기관 방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체
			119 후송	사설 엠블런스	자차/회사차 이용	도보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8	0	25	1	0	34
			23.5%	0.0%	73.5%	2.9%	0.0%	100.0%
		건설업	2	0	4	0	0	6
			33.3%	0.0%	66.7%	0.0%	0.0%	100.0%
		기타	2	0	5	0	0	7
			28.6%	0.0%	71.4%	0.0%	0.0%	100.0%
	전체		12	0	34	1	0	47
			25.5%	0.0%	72.3%	2.1%	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5	0	21	0	0	26
			19.2%	0.0%	80.8%	0.0%	0.0%	100.0%
		건설업	0	0	6	0	1	7
			0.0%	0.0%	85.7%	0.0%	14.3%	100.0%
		기타	2	1	9	1	1	14
			14.3%	7.1%	64.3%	7.1%	7.1%	100.0%
	전체		7	1	36	1	2	47
			14.9%	2.1%	76.6%	2.1%	4.3%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1	1	4	0	0	6
			16.7%	16.7%	66.7%	0.0%	0.0%	100.0%
		기타	2	0	2	0	1	5
			40.0%	0.0%	40.0%	0.0%	20.0%	100.0%
	전체		3	1	6	0	1	11
			27.3%	9.1%	54.5%	0.0%	9.1%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14	1	50	1	0	66
			21.2%	1.5%	75.8%	1.5%	0.0%	100.0%
		건설업	2	0	10	0	1	13
			15.4%	0.0%	76.9%	0.0%	7.7%	100.0%
		기타	6	1	16	1	2	26
			23.1%	3.8%	61.5%	3.8%	7.7%	100.0%
	전체		22	2	76	2	3	105
			21.0%	1.9%	72.4%	1.9%	2.9%	100.0%

4. 재해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규모/업종			사고발생원인					전체
			안전장치 미흡	작업과정의 문제	본인의 과오	동료의 과오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6	12	44	1	6	34
			17.6%	35.3%	129.4%	2.9%	17.6%	
		건설업	2	5	5	0	0	6
			33.3%	83.3%	83.3%	0.0%	0.0%	
		기타	0	8	4	0	2	7
			0.0%	114.3%	57.1%	0.0%	28.6%	
	전체		8	25	53	1	8	47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4	11	31	0	6	26
			15.4%	42.3%	119.2%	0.0%	23.1%	
		건설업	0	5	7	2	0	7
			0.0%	71.4%	100.0%	28.6%	0.0%	
		기타	2	7	11	2	5	14
			14.3%	50.0%	78.6%	14.3%	35.7%	
	전체		6	23	49	4	11	47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0	2	6	0	4	6
			0.0%	33.3%	100.0%	0.0%	66.7%	
		기타	0	4	4	0	4	6
			0.0%	66.7%	66.7%	0.0%	66.7%	
	전체		0	6	10	0	8	12

5. 사업주가 재해근로자를 설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공상처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업종/규모			사업주가 재해근로자를 설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공상처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11	48	59
			18.6%	81.4%	100.0%
		건설업	3	14	17
			17.6%	82.4%	100.0%
		기타	2	17	19
			10.5%	89.5%	100.0%
	전체		16	79	95
			16.8%	83.2%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8	27	35
			22.9%	77.1%	100.0%
		건설업	1	5	6
			16.7%	83.3%	100.0%
		기타	2	28	30
			6.7%	93.3%	100.0%
	전체		11	60	71
			15.5%	84.5%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1	10	11
			9.1%	90.9%	100.0%
		건설업	0	1	1
			0.0%	100.0%	100.0%
		기타	0	9	9
			0.0%	100.0%	100.0%
	전체		1	20	21
			4.8%	95.2%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20	85	105
			19.0%	81.0%	100.0%
		건설업	4	20	24
			16.7%	83.3%	100.0%
		기타	4	54	58
			6.9%	93.1%	100.0%
	전체		28	159	187
			15.0%	85.0%	100.0%

6. 재해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규모/업종			재해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전체
			0%	30%	50%	100%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0	3	14	7	7	31
			0.0%	9.7%	45.2%	22.6%	22.6%	100.0%
		건설업	0	2	2	2	0	6
			0.0%	33.3%	33.3%	33.3%	0.0%	100.0%
		기타	2	1	2	2	0	7
			28.6%	14.3%	28.6%	28.6%	0.0%	100.0%
	전체		2	6	18	11	7	44
			4.5%	13.6%	40.9%	25.0%	15.9%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1	3	9	8	5	26
			3.8%	11.5%	34.6%	30.8%	19.2%	100.0%
		건설업	1	0	3	3	0	7
			14.3%	0.0%	42.9%	42.9%	0.0%	100.0%
		기타	3	3	6	1	1	14
			21.4%	21.4%	42.9%	7.1%	7.1%	100.0%
	전체		5	6	18	12	6	47
			10.6%	12.8%	38.3%	25.5%	12.8%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1	2	2	1	0	6
			16.7%	33.3%	33.3%	16.7%	0.0%	100.0%
		기타	1	2	2	0	1	6
			16.7%	33.3%	33.3%	0.0%	16.7%	100.0%
	전체		2	4	4	1	1	12
			16.7%	33.3%	33.3%	8.3%	8.3%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2	8	25	16	12	63
			3.2%	12.7%	39.7%	25.4%	19.0%	100.0%
		건설업	1	2	5	5	0	13
			7.7%	15.4%	38.5%	38.5%	0.0%	100.0%
		기타	6	6	10	3	2	27
			22.2%	22.2%	37.0%	11.1%	7.4%	100.0%
	전체		9	16	40	24	14	103
			8.7%	15.5%	38.8%	23.3%	13.6%	100.0%

B. 산재보험급여 미신청(공상) 처리 요인

1.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도적 이유)(중복 답변 가능)

규모/업종			산재 미 신청 제도적 이유							전체
			관련 법규정을 몰라서	산재인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산재처리 절차가 까다로와서	요양 미신청(산재미처리)은 불법이 아니므로	회사가 산재보험요율 인상 등 향후 발생할 불이익의 예상	산재보험처리 시 사업장 감독 등 정부규제의 부담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6	6	3	4	8	9	13	26
			23.1%	23.1%	11.5%	15.4%	30.8%	34.6%	50.0%	
		건설업	1	1	2	1	3	2	0	6
			16.7%	16.7%	33.3%	16.7%	50.0%	33.3%	0.0%	
		기타	2	0	0	0	7	0	0	5
			40.0%	0.0%	0.0%	0.0%	140.0%	0.0%	0.0%	
	전체		9	7	5	5	18	11	13	37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2	8	8	5	5	11	7	24
			8.3%	33.3%	33.3%	20.8%	20.8%	45.8%	29.2%	
		건설업	0	1	1	1	5	1	3	7
			0.0%	14.3%	14.3%	14.3%	71.4%	14.3%	42.9%	
		기타	2	10	5	0	1	2	4	13
			15.4%	76.9%	38.5%	0.0%	7.7%	15.4%	30.8%	
	전체		4	19	14	6	11	14	14	44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0	0	6	0	2	0	3	6
			0.0%	0.0%	100.0%	0.0%	33.3%	0.0%	50.0%	
		기타	1	3	0	2	2	0	3	6
			16.7%	50.0%	0.0%	33.3%	33.3%	0.0%	50.0%	
	전체		1	3	6	2	4	0	6	12

2.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비제도적 이유: 재해자 관점)(중복 답변 가능)

규모/업종			산재 미 신청 비제도적 이유						전체
			본인이 희망해서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재해당시 산업재해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경미한 상해라고 생각해서	산재처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개인 실비보험이 더 유리)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6	5	6	26	7	10	28
			21.4%	17.9%	21.4%	92.9%	25.0%	35.7%	
		건설업	2	0	0	5	2	4	6
			33.3%	0.0%	0.0%	83.3%	33.3%	66.7%	
		기타	2	2	0	4	1	1	5
			40.0%	40.0%	0.0%	80.0%	20.0%	20.0%	
	전체		10	7	6	35	10	15	39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5	9	3	20	6	5	24
			20.8%	37.5%	12.5%	83.3%	25.0%	20.8%	
		건설업	1	2	0	7	4	0	7
			14.3%	28.6%	0.0%	100.0%	57.1%	0.0%	
		기타	3	2	7	9	8	0	14
			21.4%	14.3%	50.0%	64.3%	57.1%	0.0%	
	전체		9	13	10	36	18	5	45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3	0	0	5	2	0	5
			60.0%	0.0%	0.0%	100.0%	40.0%	0.0%	
		기타	2	3	2	2	3	0	6
			33.3%	50.0%	33.3%	33.3%	50.0%	0.0%	
	전체		5	3	2	7	5	0	11

3.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비제도적 이유: 제3자 관점)(중복 답변 가능)

규모/업종			산재 미 신청(비제도적 이유: 제3자관점 이유)						전체
			회사가 공상처리를 종용해서	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준다고 해서	산재처리로 인해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안전관리자 등 상급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치료병원 등 제3자로부터 보험미처리 권유를 받아서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1	0	10	9	10	17	27
			3.7%	0.0%	37.0%	33.3%	37.0%	63.0%	
		건설업	1	0	4	2	0	3	6
			16.7%	0.0%	66.7%	33.3%	0.0%	50.0%	
		기타	0	2	1	2	0	4	5
			0.0%	40.0%	20.0%	40.0%	0.0%	80.0%	
	전체		2	2	15	13	10	24	38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5	4	7	5	1	23	24
			20.8%	16.7%	29.2%	20.8%	4.2%	95.8%	
		건설업	2	1	5	2	0	2	6
			33.3%	16.7%	83.3%	33.3%	0.0%	33.3%	
		기타	7	1	4	0	3	7	13
			53.8%	7.7%	30.8%	0.0%	23.1%	53.8%	
	전체		14	6	16	7	4	32	43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2	0	2	0	1	4	5
			40.0%	0.0%	40.0%	0.0%	20.0%	80.0%	
		기타	2	0	4	0	1	3	6
			33.3%	0.0%	66.7%	0.0%	16.7%	50.0%	
	전체		4	0	6	0	2	7	11

4. 사고 후 치료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입니까?

규모/업종			치료부담주체			전체
			본인부담	회사부담	기타(노동조합/공제조합 등)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2	56	2	30
			6.7%	186.7%	6.7%	
		건설업	0	10	2	6
			0.0%	166.7%	33.3%	
		기타	4	2	4	5
			80.0%	40.0%	80.0%	
	전체		6	68	8	41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4	44	0	24
			16.7%	183.3%	0.0%	
		건설업	0	14	0	7
			0.0%	200.0%	0.0%	
		기타	5	19	4	14
			35.7%	135.7%	28.6%	
	전체		9	77	4	45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2	8	2	6
			33.3%	133.3%	33.3%	
		기타	4	6	2	6
			66.7%	100.0%	33.3%	
	전체		6	14	4	12

5. 사고 후 치료비 계산방법은?

규모/업종			치료비계산방법						전체
			건강보험	개인 실비보험	근재보험 (회사)	일반	치료받지 않음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7	5	26	8	2	6	27
			25.9%	18.5%	96.3%	29.6%	7.4%	22.2%	
		건설업	4	2	4	2	0	0	6
			66.7%	33.3%	66.7%	33.3%	0.0%	0.0%	
		기타	4	2	2	0	0	2	5
			80.0%	40.0%	40.0%	0.0%	0.0%	40.0%	
	전체		15	9	32	10	2	8	38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9	4	16	13	0	6	24
			37.5%	16.7%	66.7%	54.2%	0.0%	25.0%	
		건설업	2	0	0	12	0	0	7
			28.6%	0.0%	0.0%	171.4 %	0.0%	0.0%	
		기타	0	10	10	2	0	5	14
			0.0%	71.4%	71.4%	14.3%	0.0%	35.7%	
	전체		11	14	26	27	0	11	45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2	2	2	4	0	2	6
			33.3%	33.3%	33.3%	66.7%	0.0%	33.3%	
		기타	2	4	2	4	0	0	6
			33.3%	66.7%	33.3%	66.7%	0.0%	0.0%	
	전체		4	6	4	8	0	2	12

6. 치료비 이외에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지급하여 준 경우 해당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규모/업종			별도부상				전체
			휴업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이외에 치료에 소요되는 비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	소정의 위로금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34	8	5	8	26
			130.8%	30.8%	19.2%	30.8%	
		건설업	7	4	2	0	6
			116.7%	66.7%	33.3%	0.0%	
		기타	2	3	2	2	5
			40.0%	60.0%	40.0%	40.0%	
	전체		43	15	9	10	37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21	15	7	2	23
			91.3%	65.2%	30.4%	8.7%	
		건설업	8	1	7	0	7
			114.3%	14.3%	100.0%	0.0%	
		기타	17	2	5	4	14
			121.4%	14.3%	35.7%	28.6%	
	전체		46	18	19	6	44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2	6	0	2	5
			40.0%	120.0%	0.0%	40.0%	
		기타	3	1	5	4	6
			50.0%	16.7%	83.3%	66.7%	
	전체		5	7	5	6	11

7.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휴업기간은(실제로 휴업한 기간)?

규모/업종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휴업기간은(실제로 휴업한 기간)?					전체
			4일 이하	30일 미만	90일 미만	90일 이상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7	10	3	4	2	26
			26.9%	38.5%	11.5%	15.4%	7.7%	100.0%
		건설업	1	3	0	0	2	6
			16.7%	50.0%	0.0%	0.0%	33.3%	100.0%
		기타	1	0	1	0	1	3
			33.3%	0.0%	33.3%	0.0%	33.3%	100.0%
	전체		9	13	4	4	5	35
			25.7%	37.1%	11.4%	11.4%	14.3%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4	11	4	0	5	24
			16.7%	45.8%	16.7%	0.0%	20.8%	100.0%
		건설업	1	5	0	0	1	7
			14.3%	71.4%	0.0%	0.0%	14.3%	100.0%
		기타	4	6	0	2	2	14
			28.6%	42.9%	0.0%	14.3%	14.3%	100.0%
	전체		9	22	4	2	8	45
			20.0%	48.9%	8.9%	4.4%	17.8%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1	2	1	1	0	5
			20.0%	40.0%	20.0%	20.0%	0.0%	100.0%
		기타	2	0	2	1	1	6
			33.3%	0.0%	33.3%	16.7%	16.7%	100.0%
	전체		3	2	3	2	1	11
			27.3%	18.2%	27.3%	18.2%	9.1%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12	23	8	5	7	55
			21.8%	41.8%	14.5%	9.1%	12.7%	100.0%
		건설업	2	8	0	0	3	13
			15.4%	61.5%	0.0%	0.0%	23.1%	100.0%
		기타	7	6	3	3	4	23
			30.4%	26.1%	13.0%	13.0%	17.4%	100.0%
	전체		21	37	11	8	14	91
			23.1%	40.7%	12.1%	8.8%	15.4%	100.0%

※ 추가분석

1) 산재 미 신청(비 제도적) 이유와 실제휴업 기간

구 분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휴업기간은(실제로 휴업한 기간)?					전체
		4일 이하	30일 미만	90일 미만	90일 이상	기타	
산재 미 신청 비 제도적 이유	본인이 희망해서	6	8	2	2	3	21
		28.6%	38.1%	9.5%	9.5%	14.3%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7	9	1	0	2	19
		36.8%	47.4%	5.3%	0.0%	10.5%	
	재해당시 산업재해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4	2	2	3	2	13
		30.8%	15.4%	15.4%	23.1%	15.4%	
	경미한 상해라고 생각해서	14	20	4	3	8	49
		28.6%	40.8%	8.2%	6.1%	16.3%	
	산재처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개인 실비보험이 더 유리)	6	13	4	1	1	25
		24.0%	52.0%	16.0%	4.0%	4.0%	
	기타	2	7	1	0	3	13
		15.4%	53.8%	7.7%	0.0%	23.1%	
전체		26	42	11	8	14	101

2) 산재 치료기간과 실제 휴업기간

구 분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휴업기간은(실제로 휴업한 기간)?					전체
		4일 이하	30일 미만	90일 미만	90일 이상	기타	
산업재해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4일 이하	11	3	0	0	5	19
		57.9%	15.8%	0.0%	0.0%	26.3%	
	30일 미만	7	29	2	0	3	41
		17.1%	70.7%	4.9%	0.0%	7.3%	
	90일 미만	3	6	8	0	1	18
		16.7%	33.3%	44.4%	0.0%	5.6%	
	90일 이상	3	3	1	8	1	16
		18.8%	18.8%	6.3%	50.0%	6.3%	
	기타	1	0	0	0	2	3
		33.3%	0.0%	0.0%	0.0%	66.7%	
전체		25	41	11	8	12	97

3) 사고발생 원인과 자신의 과실비율

구 분		재해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전체
		0%	30%	50%	100%	기타	
재해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 원인	안전장치 미흡	2	0	6	0	2	10
		20.0%	0.0%	60.0%	0.0%	20.0%	
	작업과정의 문제	3	9	15	2	2	31
		9.7%	29.0%	48.4%	6.5%	6.5%	
	본인의 과오	1	5	29	25	6	66
		1.5%	7.6%	43.9%	37.9%	9.1%	
	동료의 과오	2	0	1	0	0	3
		66.7%	0.0%	33.3%	0.0%	0.0%	
	기타	3	4	0	1	6	14
		21.4%	28.6%	0.0%	7.1%	42.9%	
전체		11	16	44	28	15	114

4) 사고발생 원인과 자신의 산재 미 신청 이유(제도적)

구 분		산재 미 신청이유(제도적)							전체
		관련 법규정을 몰라서	산재인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산재처리 절차가 까다로와서	요양 미신청(산재미처리)은 불법이 아니므로	회사가 산재보험요율 인상 등 향후 발생할 불이익의 예상	산재보험 처리 시 사업장 감독 등 정부규제의 부담	기타	
재해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 원인	안전장치 미흡	0	1	0	1	1	1	5	7
		0.0%	14.3%	0.0%	14.3%	14.3%	14.3%	71.4%	
	작업과정의 문제	2	8	8	3	5	5	3	21
		9.5%	38.1%	38.1%	14.3%	23.8%	23.8%	14.3%	
	본인의 과오	3	15	12	6	18	16	12	51
		5.9%	29.4%	23.5%	11.8%	35.3%	31.4%	23.5%	
	동료의 과오	0	0	0	0	2	1	1	3
		0.0%	0.0%	0.0%	0.0%	66.7%	33.3%	33.3%	
	기타	4	1	2	0	0	0	3	8
		50.0%	12.5%	25.0%	0.0%	0.0%	0.0%	37.5%	
전체		9	22	20	10	24	21	22	83

5) 사고발생 원인과 자신의 산재 미 신청 이유(비 제도적)

구 분		산재 미 신청이유(비 제도적)						전체
		본인이 희망해서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재해당시 산업재해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경미한 상해라고 생각해서	산재처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개인실비보험이 더 유리)	기타	
재해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 원인	안전장치 미흡	2	2	3	3	2	1	9
		22.2%	22.2%	33.3%	33.3%	22.2%	11.1%	
	작업과정의 문제	7	6	4	9	9	6	27
		25.9%	22.2%	14.8%	33.3%	33.3%	22.2%	
	본인의 과오	9	14	8	37	13	6	62
		14.5%	22.6%	12.9%	59.7%	21.0%	9.7%	
	동료의 과오	1	0	0	2	2	0	3
		33.3%	0.0%	0.0%	66.7%	66.7%	0.0%	
	기타	3	0	1	3	3	3	12
		25.0%	0.0%	8.3%	25.0%	25.0%	25.0%	
전체		20	20	14	52	26	14	105

6) 사고발생 원인과 자신의 산재 미 신청 이유(제3자 관점)

구 분		산재 미 신청이유(제3자 관점)						전체
		회사가 공상처리를 종용해서	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준다고 해서	산재처리로 인해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안전관리자 등 상급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치료병원 등 제3자로부터 보험미처리 권유를 받아서	기타	
재해자가 생각하는 사고발생 원인	안전장치 미흡	1	0	2	1	1	4	8
		12.5%	0.0%	25.0%	12.5%	12.5%	50.0%	
	작업과정의 문제	4	0	6	7	0	6	21
		19.0%	0.0%	28.6%	33.3%	0.0%	28.6%	
	본인의 과오	7	5	14	6	5	17	46
		15.2%	10.9%	30.4%	13.0%	10.9%	37.0%	
	동료의 과오	1	0	1	1	0	1	3
		33.3%	0.0%	33.3%	33.3%	0.0%	33.3%	
	기타	0	0	0	0	1	7	8
		0.0%	0.0%	0.0%	0.0%	12.5%	87.5%	
전체		12	5	23	13	7	32	80

7) 산재미신청 이유(비 제도적)와 치료비 계산방법

구 분		치료비 계산방법						전체
		건강보험	개인실비보험	근재보험(회사)	일반	치료받지 않음	기타	
산재 미신청비 제도적 이유	본인이 희망해서	3	4	5	7	0	2	20
		15.0%	20.0%	25.0%	35.0%	0.0%	10.0%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3	6	3	9	0	1	20
		15.0%	30.0%	15.0%	45.0%	0.0%	5.0%	
	재해당시 산업재해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3	2	5	2	1	2	14
		21.4%	14.3%	35.7%	14.3%	7.1%	14.3%	
	경미한 상해라고 생각해서	11	5	18	16	1	5	51
		21.6%	9.8%	35.3%	31.4%	2.0%	9.8%	
	산재처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개인실비보험이 더 유리)	3	8	6	9	0	2	26
		11.5%	30.8%	23.1%	34.6%	0.0%	7.7%	
	기타	3	2	4	1	0	4	14
		21.4%	14.3%	28.6%	7.1%	0.0%	28.6%	
전체		18	18	35	28	1	10	104

8) 자신의 과실비율과 치료비 계산방법

구 분		치료비 계산방법						전체
		건강보험	개인실비보험	근재보험(회사)	일반	치료받지 않음	기타	
재해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과실비율	0%	3	1	4	1	0	1	10
		30.0%	10.0%	40.0%	10.0%	0.0%	10.0%	
	30%	1	3	7	2	0	3	15
		6.7%	20.0%	46.7%	13.3%	0.0%	20.0%	
	50%	6	6	13	13	1	4	41
		14.6%	14.6%	31.7%	31.7%	2.4%	9.8%	
	100%	6	5	7	8	0	2	26
		23.1%	19.2%	26.9%	30.8%	0.0%	7.7%	
전체		2	3	3	3	0	1	11

2 . 사업주

B.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요양신청 관련 제도의 인지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재발생보고제도(제10조) 인지여부

규모/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재발생보고제도(제10조)를 알고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56	2	58
			96.6%	3.4%	100.0%
		건설업	16	1	17
			94.1%	5.9%	100.0%
		기타	19	1	20
			95.0%	5.0%	100.0%
	전체		91	4	95
			95.8%	4.2%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32	3	35
			91.4%	8.6%	100.0%
		건설업	6	0	6
			100.0%	0.0%	100.0%
		기타	27	4	31
			87.1%	12.9%	100.0%
	전체		65	7	72
			90.3%	9.7%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11	0	11
			100.0%	0.0%	100.0%
		건설업	1	0	1
			100.0%	0.0%	100.0%
		기타	8	1	9
			88.9%	11.1%	100.0%
	전체		20	1	21
			95.2%	4.8%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99	5	104
			95.2%	4.8%	100.0%
		건설업	23	1	24
			95.8%	4.2%	100.0%
		기타	54	6	60
			90.0%	10.0%	100.0%
	전체		176	12	188
			93.6%	6.4%	100.0%

2. 위 제도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규모/업종			위 제도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53	5	58
			91.4%	8.6%	100.0%
		건설업	16	1	17
			94.1%	5.9%	100.0%
		기타	15	5	20
			75.0%	25.0%	100.0%
	전체		84	11	95
			88.4%	11.6%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31	4	35
			88.6%	11.4%	100.0%
		건설업	6	0	6
			100.0%	0.0%	100.0%
		기타	27	4	31
			87.1%	12.9%	100.0%
	전체		64	8	72
			88.9%	11.1%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11	0	11
			100.0%	0.0%	100.0%
		건설업	1	0	1
			100.0%	0.0%	100.0%
		기타	9	0	9
			100.0%	0.0%	100.0%
	전체		21	0	21
			100.0%	0.0%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95	9	104
			91.3%	8.7%	100.0%
		건설업	23	1	24
			95.8%	4.2%	100.0%
		기타	51	9	60
			85.0%	15.0%	100.0%
	전체		169	19	188
			89.9%	10.1%	100.0%

3.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규모/업종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58	0	58
			100.0%	0.0%	100.0%
		건설업	15	2	17
			88.2%	11.8%	100.0%
		기타	18	2	20
			90.0%	10.0%	100.0%
	전체		91	4	95
			95.8%	4.2%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33	2	35
			94.3%	5.7%	100.0%
		건설업	6	0	6
			100.0%	0.0%	100.0%
		기타	30	1	31
			96.8%	3.2%	100.0%
	전체		69	3	72
			95.8%	4.2%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11	0	11
			100.0%	0.0%	100.0%
		건설업	1	0	1
			100.0%	0.0%	100.0%
		기타	9	0	9
			100.0%	0.0%	100.0%
	전체		21	0	21
			100.0%	0.0%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102	2	104
			98.1%	1.9%	100.0%
		건설업	22	2	24
			91.7%	8.3%	100.0%
		기타	57	3	60
			95.0%	5.0%	100.0%
	전체		181	7	188
			96.3%	3.7%	100.0%

4. 위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까?

규모/업종			위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44	14	58
			75.9%	24.1%	100.0%
		건설업	9	8	17
			52.9%	47.1%	100.0%
		기타	13	7	20
			65.0%	35.0%	100.0%
	전체		66	29	95
			69.5%	30.5%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25	10	35
			71.4%	28.6%	100.0%
		건설업	5	1	6
			83.3%	16.7%	100.0%
		기타	21	9	30
			70.0%	30.0%	100.0%
	전체		51	20	71
			71.8%	28.2%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10	1	11
			90.9%	9.1%	100.0%
		건설업	1	0	1
			100.0%	0.0%	100.0%
		기타	8	1	9
			88.9%	11.1%	100.0%
	전체		19	2	21
			90.5%	9.5%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79	25	104
			76.0%	24.0%	100.0%
		건설업	15	9	24
			62.5%	37.5%	100.0%
		기타	42	17	59
			71.2%	28.8%	100.0%
	전체		136	51	187
			72.7%	27.3%	100.0%

C.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1. 귀사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최초로 보고합니까?(중복 답변 가능)

규모/업종			산재 최초 보고자						전체
			재해근로자	동료근로자	부서별 부서장	안전관리자	노동조합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20	47	36	26	1	0	58
			34.5%	81.0%	62.1%	44.8%	1.7%	0.0%	
		건설업	4	12	11	8	0	0	17
			23.5%	70.6%	64.7%	47.1%	0.0%	0.0%	
		기타	10	8	17	4	0	0	19
			52.6%	42.1%	89.5%	21.1%	0.0%	0.0%	
	전체		34	67	64	38	1	0	94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12	23	29	16	0	2	35
			34.3%	65.7%	82.9%	45.7%	0.0%	5.7%	
		건설업	2	3	4	5	0	0	6
			33.3%	50.0%	66.7%	83.3%	0.0%	0.0%	
		기타	16	12	23	12	0	5	31
			51.6%	38.7%	74.2%	38.7%	0.0%	16.1%	
	전체		30	38	56	33	0	7	72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4	6	6	8	0	1	11
			36.4%	54.5%	54.5%	72.7%	0.0%	9.1%	
		건설업	0	2	0	0	0	0	1
			0.0%	200.0%	0.0%	0.0%	0.0%	0.0%	
		기타	8	4	4	3	0	0	9
			88.9%	44.4%	44.4%	33.3%	0.0%	0.0%	
	전체		12	12	10	11	0	1	21

2. 귀사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최초로 보고받습니까?(중복 답변 가능)

규모/업종			산재 최초보고 받는자					전체
			부서별 부서장	안전 관리자	사업주	노동조합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56	28	34	2	3	58
			96.6%	48.3%	58.6%	3.4%	5.2%	
		건설업	21	9	7	0	0	17
			123.5%	52.9%	41.2%	0.0%	0.0%	
		기타	23	7	9	0	0	19
			121.1%	36.8%	47.4%	0.0%	0.0%	
	전체		100	44	50	2	3	94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36	26	10	0	2	34
			105.9%	76.5%	29.4%	0.0%	5.9%	
		건설업	10	2	1	0	0	6
			166.7%	33.3%	16.7%	0.0%	0.0%	
		기타	41	10	8	2	3	31
			132.3%	32.3%	25.8%	6.5%	9.7%	
	전체		87	38	19	2	5	71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10	12	1	0	0	11
			90.9%	109.1%	9.1%	0.0%	0.0%	
		건설업	0	2	0	0	0	1
			0.0%	200.0%	0.0%	0.0%	0.0%	
		기타	13	4	1	1	0	9
			144.4%	44.4%	11.1%	11.1%	0.0%	
	전체		23	18	2	1	0	21

3. 재해근로자의 의료기관 방문 시 회사 담당자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규모/업종			재해근로자의 의료기관 방문 시 회사 담당자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상병 및 재해 정도에 따라 다름	
제조업	규모	50인 미만	49	0	9	58
			84.5%	0.0%	15.5%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4	0	3	17
			82.4%	0.0%	17.6%	100.0%
		300인 이상	8	2	10	20
			40.0%	10.0%	50.0%	100.0%
	전체		71	2	22	95
			74.7%	2.1%	23.2%	100.0%
건설업	규모	50인 미만	30	1	4	35
			85.7%	2.9%	11.4%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4	0	2	6
			66.7%	0.0%	33.3%	100.0%
		300인 이상	6	5	20	31
			19.4%	16.1%	64.5%	100.0%
	전체		40	6	26	72
			55.6%	8.3%	36.1%	100.0%
기타	규모	50인 미만	6	0	5	11
			54.5%	0.0%	45.5%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0	0	1
			100.0%	0.0%	0.0%	100.0%
		300인 이상	2	1	6	9
			22.2%	11.1%	66.7%	100.0%
	전체		9	1	11	21
			42.9%	4.8%	52.4%	100.0%
전체	규모	50인 미만	85	1	18	104
			81.7%	1.0%	17.3%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9	0	5	24
			79.2%	0.0%	20.8%	100.0%
		300인 이상	16	8	36	60
			26.7%	13.3%	60.0%	100.0%
	전체		120	9	59	188
			63.8%	4.8%	31.4%	100.0%

4.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규모/업종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22	35	57
			38.6%	61.4%	100.0%
		건설업	9	8	17
			52.9%	47.1%	100.0%
		기타	6	13	19
			31.6%	68.4%	100.0%
	전체		37	56	93
			39.8%	60.2%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14	21	35
			40.0%	60.0%	100.0%
		건설업	5	1	6
			83.3%	16.7%	100.0%
		기타	5	26	31
			16.1%	83.9%	100.0%
	전체		24	48	72
			33.3%	66.7%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4	7	11
			36.4%	63.6%	100.0%
		건설업	1	0	1
			100.0%	0.0%	100.0%
		기타	3	6	9
			33.3%	66.7%	100.0%
	전체		8	13	21
			38.1%	61.9%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40	63	103
			38.8%	61.2%	100.0%
		건설업	15	9	24
			62.5%	37.5%	100.0%
		기타	14	45	59
			23.7%	76.3%	100.0%
	전체		69	117	186
			37.1%	62.9%	100.0%

5. 사업주가 재해근로자를 설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공상처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규모/업종			사업주가 재해근로자를 설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공상 처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11	48	59
			18.6%	81.4%	100.0%
		건설업	3	14	17
			17.6%	82.4%	100.0%
		기타	2	17	19
			10.5%	89.5%	100.0%
	전체		16	79	95
			16.8%	83.2%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8	27	35
			22.9%	77.1%	100.0%
		건설업	1	5	6
			16.7%	83.3%	100.0%
		기타	2	28	30
			6.7%	93.3%	100.0%
	전체		11	60	71
			15.5%	84.5%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1	10	11
			9.1%	90.9%	100.0%
		건설업	0	1	1
			0.0%	100.0%	100.0%
		기타	0	9	9
			0.0%	100.0%	100.0%
	전체		1	20	21
			4.8%	95.2%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20	85	105
			19.0%	81.0%	100.0%
		건설업	4	20	24
			16.7%	83.3%	100.0%
		기타	4	54	58
			6.9%	93.1%	100.0%
	전체		28	159	187
			15.0%	85.0%	100.0%

6. 귀사가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하는 대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규모/업종			산재보험급여결정이유								전체
			관계 법령의 준수가 우선이라 생각되어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 큰 금액이어서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의 장기간 휴업이 예상되어서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에게 이후 장애 발생이 예상되어서	재해근로자가 기대하는 금액과 회사가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 차이가 커서	재해근로자가 공상처리를 합의한 이후 합의를 위반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것이 예상되어서	공상처리 합의로 향후 관계 법령상의 불이익 발생이 예상되어서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45	18	24	16	6	8	13	3	55
			81.8%	32.7%	43.6%	29.1%	10.9%	14.5%	23.6%	5.5%	
		건설업	10	2	2	9	1	7	5	0	15
			66.7%	13.3%	13.3%	60.0%	6.7%	46.7%	33.3%	0.0%	
		기타	18	3	4	4	0	2	3	1	15
			120.0%	20.0%	26.7%	26.7%	0.0%	13.3%	20.0%	6.7%	
	전체		73	23	30	29	7	17	21	4	85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20	11	13	25	2	4	8	1	34
			58.8%	32.4%	38.2%	73.5%	5.9%	11.8%	23.5%	2.9%	
		건설업	1	2	2	2	5	3	2	0	6
			16.7%	33.3%	33.3%	33.3%	83.3%	50.0%	33.3%	0.0%	
		기타	27	5	11	5	2	2	4	8	29
			93.1%	17.2%	37.9%	17.2%	6.9%	6.9%	13.8%	27.6%	
	전체		48	18	26	32	9	9	14	9	69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9	1	7	4	0	2	0	1	10
			90.0%	10.0%	70.0%	40.0%	0.0%	20.0%	0.0%	10.0%	
		건설업	1	0	1	1	0	0	0	0	1
			100.0%	0.0%	100.0%	100.0%	0.0%	0.0%	0.0%	0.0%	
		기타	4	2	3	4	0	0	0	4	8
			50.0%	25.0%	37.5%	50.0%	0.0%	0.0%	0.0%	50.0%	
	전체		14	3	11	9	0	2	0	5	19

7. 위 '6'와 관련, '③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의 장기간 휴업이 예상되어서'라고 답변한 경우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규모/업종			위 '6'와 관련, '③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의 장기간 휴업이 예상되어서'라고 답변한 경우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9	9	3	1	22
			40.9%	40.9%	13.6%	4.5%	100.0%
		기타	0	1	0	1	2
			0.0%	50.0%	0.0%	50.0%	100.0%
	전체		1	2	0	1	4
			25.0%	50.0%	0.0%	25.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10	12	3	3	28
			35.7%	42.9%	10.7%	10.7%	100.0%
		건설업	4	6	2	1	13
			30.8%	46.2%	15.4%	7.7%	100.0%
		기타	0	0	1	1	2
			0.0%	0.0%	50.0%	50.0%	100.0%
	전체		5	2	2	0	9
			55.6%	22.2%	22.2%	0.0%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9	8	5	2	24
			37.5%	33.3%	20.8%	8.3%	100.0%
		건설업	2	4	0	0	6
			33.3%	66.7%	0.0%	0.0%	100.0%
		기타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전체		2	0	0	0	2
			100.0%	0.0%	0.0%	0.0%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5	4	0	0	9
			55.6%	44.4%	0.0%	0.0%	100.0%
		건설업	15	19	5	2	41
			36.6%	46.3%	12.2%	4.9%	100.0%
		기타	1	1	1	2	5
			20.0%	20.0%	20.0%	40.0%	100.0%
	전체		8	4	2	1	15
			53.3%	26.7%	13.3%	6.7%	100.0%

8. 위 '6'와 관련, '④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에게 이후 장애 발생이 예상되어서'라고 답변한 경우 예상되는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공상 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규모/업종			위 '6'와 관련, '④ 상병으로 재해근로자에게 이후 장애 발생이 예상되어서'라고 답변한 경우 예상되는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공상 처리 대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4	11	15
			26.7%	73.3%	100.0%
		건설업	1	4	5
			20.0%	80.0%	100.0%
		기타	2	1	3
			66.7%	33.3%	100.0%
	전체		7	16	23
			30.4%	69.6%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10	9	19
			52.6%	47.4%	100.0%
		건설업	0	2	2
			0.0%	100.0%	100.0%
		기타	2	3	5
			40.0%	60.0%	100.0%
	전체		12	14	26
			46.2%	53.8%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3	1	4
			75.0%	25.0%	100.0%
		건설업	1	0	1
			100.0%	0.0%	100.0%
		기타	1	1	2
			50.0%	50.0%	100.0%
	전체		5	2	7
			71.4%	28.6%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17	21	38
			44.7%	55.3%	100.0%
		건설업	2	6	8
			25.0%	75.0%	100.0%
		기타	5	5	10
			50.0%	50.0%	100.0%
	전체		24	32	56
			42.9%	57.1%	100.0%

9.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 귀사가 이를 최초로 인식하게 되는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규모/업종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 귀사가 이를 최초로 인식하게 되는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였음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가입자 의견서, 확인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통보받은 경우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26	10	16	52
			50.0%	19.2%	30.8%	100.0%
		건설업	5	4	4	13
			38.5%	30.8%	30.8%	100.0%
		기타	5	4	6	15
			33.3%	26.7%	40.0%	100.0%
	전체		36	18	26	80
			45.0%	22.5%	32.5%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16	13	4	33
			48.5%	39.4%	12.1%	100.0%
		건설업	2	3	1	6
			33.3%	50.0%	16.7%	100.0%
		기타	21	3	6	30
			70.0%	10.0%	20.0%	100.0%
	전체		39	19	11	69
			56.5%	27.5%	15.9%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4	6	1	11
			36.4%	54.5%	9.1%	100.0%
		건설업	0	0	1	1
			0.0%	0.0%	100.0%	100.0%
		기타	6	2	0	8
			75.0%	25.0%	0.0%	100.0%
	전체		10	8	2	20
			50.0%	40.0%	10.0%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46	29	21	96
			47.9%	30.2%	21.9%	100.0%
		건설업	7	7	6	20
			35.0%	35.0%	30.0%	100.0%
		기타	32	9	12	53
			60.4%	17.0%	22.6%	100.0%
	전체		85	45	39	169
			50.3%	26.6%	23.1%	100.0%

10. 귀사가 생각하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규모/업종			산재발생원인						전체
			안전보건조치 미흡(시설 장비 등)	작업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성	재해근로자의 과실	동료근로자의 과실	작업자의 교육 및 지식 부족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12	26	59	9	17	3	57
			21.1%	45.6%	103.5%	15.8%	29.8%	5.3%	
		건설업	4	12	13	3	4	1	16
			25.0%	75.0%	81.3%	18.8%	25.0%	6.3%	
		기타	3	12	15	1	4	4	19
			15.8%	63.2%	78.9%	5.3%	21.1%	21.1%	
	전체		19	50	87	13	25	8	92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11	24	37	5	12	2	36
			30.6%	66.7%	102.8%	13.9%	33.3%	5.6%	
		건설업	2	6	6	3	2	0	6
			33.3%	100.0%	100.0%	50.0%	33.3%	0.0%	
		기타	9	11	23	3	10	10	31
			29.0%	35.5%	74.2%	9.7%	32.3%	32.3%	
	전체		22	41	66	11	24	12	73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1	6	13	2	1	1	11
			9.1%	54.5%	118.2%	18.2%	9.1%	9.1%	
		건설업	0	0	1	1	0	0	1
			0.0%	0.0%	100.0%	100.0%	0.0%	0.0%	
		기타	3	7	8	3	4	0	9
			33.3%	77.8%	88.9%	33.3%	44.4%	0.0%	
	전체		4	13	22	6	5	1	21

11.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모/업종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	아니오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44	7	51
			86.3%	13.7%	100.0%
		건설업	13	3	16
			81.3%	18.8%	100.0%
		기타	17	1	18
			94.4%	5.6%	100.0%
	전체		74	11	85
			87.1%	12.9%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30	6	36
			83.3%	16.7%	100.0%
		건설업	6	0	6
			100.0%	0.0%	100.0%
		기타	30	0	30
			100.0%	0.0%	100.0%
	전체		66	6	72
			91.7%	8.3%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10	1	11
			90.9%	9.1%	100.0%
		건설업	1	0	1
			100.0%	0.0%	100.0%
		기타	9	0	9
			100.0%	0.0%	100.0%
	전체		20	1	21
			95.2%	4.8%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84	14	98
			85.7%	14.3%	100.0%
		건설업	20	3	23
			87.0%	13.0%	100.0%
		기타	56	1	57
			98.2%	1.8%	100.0%
	전체		160	18	178
			89.9%	10.1%	100.0%

D. 산재보험급여 미신청(공상) 처리 요인

1.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제도적 이유)(중복 답변 가능)

규모/업종			산재보험 대신 공상처리 제도적 이유							전체
			회사의 정책	산재보험 급여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서	산재보험 급여 미신청 (산재미처리)이 불법은 아니므로	산재보험 요율 인상 등 향후 회사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예상되어서	산재보험 처리 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등 정부 규제가 부담되어서	산업재해 발생 시 PQ점수 감점 혹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공공부문과의 도급 계약 체결에 불이익이 발생하여서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1	13	10	31	31	12	24	50
			2.0%	26.0%	20.0%	62.0%	62.0%	24.0%	48.0%	
		건설업	1	2	1	6	7	11	4	15
			6.7%	13.3%	6.7%	40.0%	46.7%	73.3%	26.7%	
		기타	0	1	1	9	6	1	7	12
			0.0%	8.3%	8.3%	75.0%	50.0%	8.3%	58.3%	
	전체		2	16	12	46	44	24	35	77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2	3	11	17	34	5	6	34
			5.9%	8.8%	32.4%	50.0%	100.0%	14.7%	17.6%	
		건설업	0	0	6	2	2	2	0	6
			0.0%	0.0%	100.0%	33.3%	33.3%	33.3%	0.0%	
		기타	2	4	3	7	10	0	24	24
			8.3%	16.7%	12.5%	29.2%	41.7%	0.0%	100.0%	
	전체		4	7	20	26	46	7	30	64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2	1	6	3	5	0	2	9
			22.2%	11.1%	66.7%	33.3%	55.6%	0.0%	22.2%	
		건설업	0	0	2	0	0	0	0	1
			0.0%	0.0%	200.0%	0.0%	0.0%	0.0%	0.0%	
		기타	0	1	0	6	3	0	4	7
			0.0%	14.3%	0.0%	85.7%	42.9%	0.0%	57.1%	
	전체		2	2	8	9	8	0	6	17

2.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비제도적 이유)(중복 답변 가능)

규모/업종			산재보험 대신 공상처리 비 제도적 이유							전체
			재해근로자가 희망해서	재해근로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고 당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경미한 상병이라고 생각해서	안전관리자 등 상급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치료병원 등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 미처리 권유를 받아서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25	8	13	59	1	2	1	50
			50.0%	16.0%	26.0%	118.0%	2.0%	4.0%	2.0%	
		건설업	7	4	2	14	2	0	2	15
			46.7%	26.7%	13.3%	93.3%	13.3%	0.0%	13.3%	
		기타	10	2	5	7	0	0	2	12
			83.3%	16.7%	41.7%	58.3%	0.0%	0.0%	16.7%	
	전체		42	14	20	80	3	2	5	77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17	5	9	36	3	0	5	34
			50.0%	14.7%	26.5%	105.9%	8.8%	0.0%	14.7%	
		건설업	5	0	0	6	1	0	0	6
			83.3%	0.0%	0.0%	100.0%	16.7%	0.0%	0.0%	
		기타	13	3	4	16	0	1	15	25
			52.0%	12.0%	16.0%	64.0%	0.0%	4.0%	60.0%	
	전체		35	8	13	58	4	1	20	65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11		2	6	0	0	2	10
			110.0%		20.0%	60.0%	0.0%	0.0%	20.0%	
		건설업	1		0	1	0	0	0	1
			100.0%		0.0%	100.0%	0.0%	0.0%	0.0%	
		기타	3		2	4	0	1	4	6
			50.0%		33.3%	66.7%	0.0%	16.7%	66.7%	
	전체		15		4	11	0	1	6	17

3. 위 '2'와 관련, '① 재해근로자가 희망해서'라고 답변한 경우 재해근로자가 말하는 공상 처리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규모/업종			공상 처리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							전체
			산재보험급여 신청 절차가 어렵다	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상 처리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르다.	산재보험 급여보다 공상 처리로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많다.	상병이 경미하다.	휴업 기간 동안 동료근로자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	휴업 기간 이후 복직 시 원직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9	8	7	27	10	1	4	26
			34.6%	30.8%	26.9%	103.8%	38.5%	3.8%	15.4%	
		건설업	2	3	8	5	0	1	0	8
			25.0%	37.5%	100.0%	62.5%	0.0%	12.5%	0.0%	
		기타	1	3	4	4	1	0	2	6
			16.7%	50.0%	66.7%	66.7%	16.7%	0.0%	33.3%	
	전체		12	14	19	36	11	2	6	4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1	5	12	15	6	3	0	19
			5.3%	26.3%	63.2%	78.9%	31.6%	15.8%	0.0%	
		건설업	0	2	5	1	0	0	0	4
			0.0%	50.0%	125.0%	25.0%	0.0%	0.0%	0.0%	
		기타	2	6	3	9	3	0	5	14
			14.3%	42.9%	21.4%	64.3%	21.4%	0.0%	35.7%	
	전체		3	13	20	25	9	3	5	37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0	4	2	6	3	0	0	7
			0.0%	57.1%	28.6%	85.7%	42.9%	0.0%	0.0%	
		건설업	0	0	1	1	1	1	0	1
			0.0%	0.0%	100.0%	100.0%	100.0%	100.0%	0.0%	
		기타	0	1	2	2	0	0	2	3
			0.0%	33.3%	66.7%	66.7%	0.0%	0.0%	66.7%	
	전체		0	5	5	9	4	1	2	11

4.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규모/업종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재해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이후 이 비용의 지급	재해근로자의 실비보험으로 처리한 이후 이 비용의 지급	회사가 별도로 가입한 근로자재해보험으로 처리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 등 별도로 처리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13	7	12	7	10	49
			26.5%	14.3%	24.5%	14.3%	20.4%	100.0%
		건설업	7	2	1	2	2	14
			50.0%	14.3%	7.1%	14.3%	14.3%	100.0%
		기타	2	0	1	1	6	10
			20.0%	0.0%	10.0%	10.0%	60.0%	100.0%
	전체		22	9	14	10	18	73
			30.1%	12.3%	19.2%	13.7%	24.7%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8	4	0	7	14	33
			24.2%	12.1%	0.0%	21.2%	42.4%	100.0%
		건설업	3	0	0	1	2	6
			50.0%	0.0%	0.0%	16.7%	33.3%	100.0%
		기타	7	3	2	3	8	23
			30.4%	13.0%	8.7%	13.0%	34.8%	100.0%
	전체		18	7	2	11	24	62
			29.0%	11.3%	3.2%	17.7%	38.7%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4	1	8	0	5	10
			40.0%	10.0%	66.7%	0.0%	50.0%	100.0%
		건설업	0	0	0	0	1	1
			0.0%	0.0%	0.0%	0.0%	100.0%	100.0%
		기타	1	0	0	1	3	5
			20.0%	0.0%	0.0%	20.0%	60.0%	100.0%
	전체		5	1	0	1	9	16
			31.3%	6.3%	0.0%	6.3%	56.3%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25	12	12	14	29	92
			27.2%	13.0%	13.0%	15.2%	31.5%	100.0%
		건설업	10	2	1	3	5	21
			47.6%	9.5%	4.8%	14.3%	23.8%	100.0%
		기타	10	3	3	5	17	38
			26.3%	7.9%	7.9%	13.2%	44.7%	100.0%
	전체		45	17	16	22	51	151
			29.8%	11.3%	10.6%	14.6%	33.8%	100.0%

5. 치료비 이외에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지급하여 준 경우 해당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규모/업종			치료비 외 별도보상				전체
			휴업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이외에 치료에 소요되는 비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	소정의 위로금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38	21	12	3	46
			82.6%	45.7%	26.1%	6.5%	
		건설업	15	2	8	1	15
			100.0%	13.3%	53.3%	6.7%	
		기타	6	3	5	2	8
			75.0%	37.5%	62.5%	25.0%	
	전체		59	26	25	6	69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29	10	10	7	32
			90.6%	31.3%	31.3%	21.9%	
		건설업	5	1	7	0	6
			83.3%	16.7%	116.7%	0.0%	
		기타	11	5	6	12	21
			52.4%	23.8%	28.6%	57.1%	
	전체		45	16	23	19	59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9	5	0	4	10
			90.0%	50.0%	0.0%	40.0%	
		건설업	2	0	0	0	1
			200.0%	0.0%	0.0%	0.0%	
		기타	2	3	0	4	5
			40.0%	60.0%	0.0%	80.0%	
	전체		13	8	0	8	16

6.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재해근로자에게 후유장해 등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거나 추가 합의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규모/업종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재해근로자에게 후유장해 등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거나 추가 합의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0	47	47
			0.0%	100.0%	100.0%
		건설업	3	12	15
			20.0%	80.0%	100.0%
		기타	1	10	11
			9.1%	90.9%	100.0%
	전체		4	69	73
			5.5%	94.5%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4	30	34
			11.8%	88.2%	100.0%
		건설업	3	3	6
			50.0%	50.0%	100.0%
		기타	0	23	23
			0.0%	100.0%	100.0%
	전체		7	56	63
			11.1%	88.9%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0	10	10
			0.0%	100.0%	100.0%
		건설업	1	0	1
			100.0%	0.0%	100.0%
		기타	1	6	7
			14.3%	85.7%	100.0%
	전체		2	16	18
			11.1%	88.9%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4	87	91
			4.4%	95.6%	100.0%
		건설업	7	15	22
			31.8%	68.2%	100.0%
		기타	2	39	41
			4.9%	95.1%	100.0%
	전체		13	141	154
			8.4%	91.6%	100.0%

7. 위 '6'과 관련, '① 예'라고 답변한 경우 추가적으로 보상을 지급했는지 만약, 지급했다면 얼마정도 지급하였습니까?

규모/업종			위 '6'과 관련, '① 예'라고 답변한 경우 추가적으로 보상을 지급했는지 만약, 지급했다면 얼마정도 지급하였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0	5	5
			0.0%	100.0%	100.0%
		건설업	1	5	6
			16.7%	83.3%	100.0%
	전체		1	1	2
			50.0%	50.0%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2	11	13
			15.4%	84.6%	100.0%
		건설업	2	6	8
			25.0%	75.0%	100.0%
		기타	2	1	3
			66.7%	33.3%	100.0%
	전체		0	1	1
			0.0%	100.0%	100.0%
300인 이상	업종	건설업	4	8	12
			33.3%	66.7%	100.0%
		기타	1	0	1
			100.0%	0.0%	100.0%
	전체		1	0	1
			100.0%	0.0%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2	0	2
			100.0%	0.0%	100.0%
		건설업	2	11	13
			15.4%	84.6%	100.0%
		기타	4	6	10
			40.0%	60.0%	100.0%
	전체		2	2	4
			50.0%	50.0%	100.0%

8. 공상처리 이후 재해근로자가 회사에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회사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규모/업종			공상처리 이후 재해근로자가 회사에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회사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0	46	46
			0.0%	100.0%	100.0%
		건설업	1	12	13
			7.7%	92.3%	100.0%
		기타	1	9	10
			10.0%	90.0%	100.0%
	전체		2	67	69
			2.9%	97.1%	10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1	29	30
			3.3%	96.7%	100.0%
		건설업	2	4	6
			33.3%	66.7%	100.0%
		기타	0	21	21
			0.0%	100.0%	100.0%
	전체		3	54	57
			5.3%	94.7%	100.0%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8	10	10
			66.7%	100.0%	100.0%
		건설업	0	1	1
			0.0%	100.0%	100.0%
		기타	0	5	5
			0.0%	100.0%	100.0%
	전체		0	16	16
			0.0%	100.0%	100.0%
전체	업종	제조업	1	85	86
			1.2%	98.8%	100.0%
		건설업	3	17	20
			15.0%	85.0%	100.0%
		기타	1	35	36
			2.8%	97.2%	100.0%
	전체		5	137	142
			3.5%	96.5%	100.0%

E. 개선방안

4. 현재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용목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규모/업종			예방수립 기초자료				전체
			산업재해 원인분석 및 이의 예방정책으로만 활용	사업장 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등 공표 대상에서 제외	기타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35	10	5	3	40
			87.5%	25.0%	12.5%	7.5%	
		건설업	13	2	2	0	11
			118.2%	18.2%	18.2%	0.0%	
		기타	22	0	1	0	12
			183.3%	0.0%	8.3%	0.0%	
	전체		70	12	8	3	63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	제조업	23	12	4	4	26
			88.5%	46.2%	15.4%	15.4%	
		건설업	4	4	1	0	5
			80.0%	80.0%	20.0%	0.0%	
		기타	17	9	0	2	18
			94.4%	50.0%	0.0%	11.1%	
	전체		44	25	5	6	49
300인 이상	업종	제조업	10	6	1	0	10
			100.0%	60.0%	10.0%	0.0%	
		건설업	0	2	0	0	1
			0.0%	200.0%	0.0%	0.0%	
		기타	13	1	2	0	9
			144.4%	11.1%	22.2%	0.0%	
	전체		23	9	3	0	20

※ 추가분석

■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제10조)에 대한 인지여부와 산재보험급여 신청 대신 공상처리 이유(제도적)와의 관계

구 분		공상처리 이유(제도적)							전체
		회사의 정책	산재보험 급여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서	산재보험 급여 미신청(산재미처리)이 불법은 아니므로	산재보험 요율 인상 등 향후 회사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예상되어서	산재보험 처리 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등 정부 규제가 부담되어서	산업재해발생시PQ점수감점혹은입찰참가자격의제한등공공부문과의도급계약 체결에 불이익이 발생하여서	기타	
산재발생보고제도(제10조) 인지여부	예	5	19	28	67	77	27	36	146
		3.4%	13.0%	19.2%	45.9%	52.7%	18.5%	24.7%	
	아니오	0	3	6	8	4	1	5	17
		0.0%	17.6%	35.3%	47.1%	23.5%	5.9%	29.4%	
전체		5	22	34	75	81	28	41	163

■ 제도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부과대상에 대한 인지여부와 산재보험급여 신청 대신 공상처리 이유(제도적)와의 관계

구 분		공상처리 이유(제도적)							전체
		회사의 정책	산재보험 급여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서	산재보험 급여 미신청(산재미처리)이 불법은 아니므로	산재보험 요율 인상 등 향후 회사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예상되어서	산재보험 처리 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등 정부 규제가 부담되어서	산업재해발생시PQ점수감점혹은입찰참가자격의제한등공공부문과의도급계약 체결에 불이익이 발생하여서	기타	
위 제도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 인지여부	예	5	19	28	67	77	27	36	146
		3.4%	13.0%	19.2%	45.9%	52.7%	18.5%	24.7%	
	아니오	0	3	6	8	4	1	5	17
		0.0%	17.6%	35.3%	47.1%	23.5%	5.9%	29.4%	
전체		5	22	34	75	81	28	41	163

■ 4일 이상의 요양의 경우 산재급여신청인지 여부와 산재보험급여 신청 대신 공상처리 이유(제도적)와의 관계

구 분		공상처리 이유(제도적)							전체
		회사의 정책	산재보험 급여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서	산재보험 급여 미신청(산재미처리)이 불법은 아니므로	산재보험 요율 인상 등 향후 회사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예상되어서	산재보험 처리 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등 정부 규제가 부담되어서	산업재해발생시PQ점수감점혹은입찰참가자격의제한등공공부문과의도급계약 체결에 불이익이 발생하여서	기타	
4일 이상의 요양의 경우 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인지	예	5	21	33	70	77	26	40	156
		3.2%	13.5%	21.2%	44.9%	49.4%	16.7%	25.6%	
	아니오	0	1	1	5	4	2	1	7
		0.0%	14.3%	14.3%	71.4%	57.1%	28.6%	14.3%	
전체		5	22	34	75	81	28	41	163

■ 공상처리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인지여부와 산재보험급여 신청 대신 공상처리 이유(제도적)와의 관계

구 분		공상처리 이유(제도적)							전체
		회사의 정책	산재보험 급여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서	산재보험 급여 미신청(산재미처리)이 불법은 아니므로	산재보험 요율 인상 등 향후 회사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예상되어서	산재보험 처리 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등 정부 규제가 부담되어서	산업재해발생시PQ점수감점혹은입찰참가자격의제한등공공부문과의도급계약 체결에 불이익이 발생하여서	기타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것에대한인지	예	5	17	25	52	55	22	31	118
		4.2%	14.4%	21.2%	44.1%	46.6%	18.6%	26.3%	
	아니오	0	5	8	23	26	6	9	44
		0.0%	11.4%	18.2%	52.3%	59.1%	13.6%	20.5%	
전체		5	22	33	75	81	28	40	162

■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제10조)에 대한 인지여부와 산재보험급여 신청 대신 공상처리 이유(비 제도적)와의 관계

구 분		공상처리 이유(비 제도적)							전체
		재해근로자가 희망해서	재해근로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고 당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경미한 상병이라고 생각해서	안전관리자 등 상급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치료병원 등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 미처리 권유를 받아서	기타	
산재발생보고제도(제10조) 인지여부	예	67	20	37	106	6	4	17	152
		44.1%	13.2%	24.3%	69.7%	3.9%	2.6%	11.2%	
	아니오	4	2	1	7	1	0	2	12
		33.3%	16.7%	8.3%	58.3%	8.3%	0.0%	16.7%	
전체		71	22	38	113	7	4	19	164

■ 제도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부과대상에 대한 인지여부와 산재보험급여 신청 대신 공상처리 이유(비 제도적)와의 관계

구 분		공상처리 이유(비 제도적)							전체
		재해근로자가 희망해서	재해근로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고 당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경미한 상병이라고 생각해서	안전관리자 등 상급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치료병원 등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미처리 권유를 받아서	기타	
위 제도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 인지여부	예	63	19	33	103	5	4	16	146
		43.2%	13.0%	22.6%	70.5%	3.4%	2.7%	11.0%	
	아니오	8	3	5	10	2	0	3	18
		44.4%	16.7%	27.8%	55.6%	11.1%	0.0%	16.7%	
전체		71	22	38	113	7	4	19	164

■ 4일 이상의 요양의 경우 산재급여신청인지 여부와 산재보험급여 신청 대신 공상처리 이유(비 제도적)와의 관계

구 분		공상처리 이유(비 제도적)							전체
		재해근로자가 희망해서	재해근로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고 당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경미한 상병이라고 생각해서	안전관리자 등 상급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치료병원 등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 미처리 권유를 받아서	기타	
4일 이상의 요양의 경우 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인지	예	70	19	37	110	5	4	18	157
		44.6%	12.1%	23.6%	70.1%	3.2%	2.5%	11.5%	
	아니오	1	3	1	3	2	0	1	7
		14.3%	42.9%	14.3%	42.9%	28.6%	0.0%	14.3%	
전체		71	22	38	113	7	4	19	164

■ 공상처리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것에 대한 인지여부와 산재보험급여 신청 대신 공상처리 이유(비 제도적)와의 관계

구 분		공상처리 이유(비 제도적)							전체
		재해근로자가 희망해서	재해근로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고 당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경미한 상병이라고 생각해서	안전관리자 등 상급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치료병원 등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 미처리 권유를 받아서	기타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것에대한인지	예	51	13	30	82	2	4	12	118
		43.2%	11.0%	25.4%	69.5%	1.7%	3.4%	10.2%	
	아니오	20	9	7	30	5	0	7	45
		44.4%	20.0%	15.6%	66.7%	11.1%	0.0%	15.6%	
전체		71	22	37	112	7	4	19	163

■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제10조)에 대한 인지여부와 산재보험급여 신청 대신 공상처리 이유(비 제도적)와의 관계

구 분		공상처리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비 제도적)							전체
		산재보험 급여 신청 절차가 어렵다	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상 처리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르다.	산재보험 급여보다 공상 처리로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많다.	상병이 경미하다	휴업 기간 동안 동료근로자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	휴업 기간 이후 복직 시 원직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기타	
산재발생보고제도(제10조) 인지여부	예	10	25	33	49	18	4	8	83
		12.0%	30.1%	39.8%	59.0%	21.7%	4.8%	9.6%	
	아니오	3	3	1	3	1	1	2	8
		37.5%	37.5%	12.5%	37.5%	12.5%	12.5%	25.0%	
전체		13	28	34	52	19	5	10	91

■ 제도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부과대상에 대한 인지여부와 산재보험급여 신청 대신 공상처리 이유(비 제도적)와의 관계

구 분		공상처리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비 제도적)							전체
		산재보험 급여 신청 절차가 어렵다	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상 처리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르다.	산재보험 급여보다 공상 처리로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많다.	상병이 경미하다	휴업 기간 동안 동료근로자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	휴업 기간 이후 복직 시 원직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기타	
위 제도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 인지여부	예	9	23	30	48	18	4	9	81
		11.1%	28.4%	37.0%	59.3%	22.2%	4.9%	11.1%	
	아니오	4	5	4	4	1	1	1	10
		40.0%	50.0%	40.0%	40.0%	10.0%	10.0%	10.0%	
전체		13	28	34	52	19	5	10	91

■ 4일 이상의 요양의 경우 산재급여신청인지 여부와 산재보험급여 신청 대신 공상처리 이유(비 제도적)와의 관계

구 분		공상처리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비 제도적)							전체
		산재보험 급여 신청 절차가 어렵다	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상 처리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르다.	산재보험 급여보다 공상 처리로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많다.	상병이 경미하다	휴업 기간 동안 동료근로자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	휴업 기간 이후 복직 시 원직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기타	
4일 이상의 요양의 경우 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인지	예	13	28	34	50	19	5	8	88
		14.8%	31.8%	38.6%	56.8%	21.6%	5.7%	9.1%	
	아니오	0	0	0	2	0	0	2	3
		0.0%	0.0%	0.0%	66.7%	0.0%	0.0%	66.7%	
전체		13	28	34	52	19	5	10	91

■ 공상처리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것에 대한 인지여부와 산재보험급여 신청 대신 공상처리 이유(비 제도적)와의 관계

구 분		공상처리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비 제도적)							전체
		산재보험 급여 신청 절차가 어렵다	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상 처리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르다.	산재보험 급여보다 공상 처리로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많다.	상병이 경미하다	휴업 기간 동안 동료근로자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	휴업 기간 이후 복직 시 원직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기타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것에 대한 인지	예	5	21	25	31	15	3	7	61
		8.2%	34.4%	41.0%	50.8%	24.6%	4.9%	11.5%	
	아니오	8	7	9	20	4	2	3	29
		27.6%	24.1%	31.0%	69.0%	13.8%	6.9%	10.3%	
전체		13	28	34	51	19	5	10	90

〈〈연 구 진〉〉

연 구 기 관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오 상 호(교수, 창원대학교 법학과)
연 구 원 : 신 영 규(교수, 경남대학교 산학협력)
연 구 원 : 김 윤 찬(원장, 경남사회조사연구원)
연 구 원 : 박 용 수(노무사, 박용수 노무사)
연 구 원 : 강 문 성(노무사, 하나노동법률)

연구상대역 : 박 선 영(연구위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 구 기 간〉〉

2019. 03. 08 ~ 2019. 10. 31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9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산재발생보고통계 중 요양 미신청 산재사고 실태 현황 분석 연구

(2019-연구원-1473)

발 행 일 : 2019년 10월 31일
발 행 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원장 고 재 철
연구책임자 : 창원대학교 교수 오 상 호
발 행 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 화 : (052) 703- 0824
F A X : (052) 703 - 0332
Homepage : http://oshri.kosha.or.kr